
세계인권선언 70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위험한 안전, 불온한 안전> _ 8월 28일 (화)

<평등은 평등으로 가고 있는가> _ 8월 30일 (목)

<'을', 노동의 돈보기인가 지우개인가> _ 9월 6일 (목)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 _ 9월 12일 (수)

<피해자의 자리와 연대의 거리> _ 9월 13일 (목)

촛불항쟁 이후, 한국사회는 기존의 체제를 넘어서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를 통해 한국사회 변화를 이야기 합니다. 미투·페미니즘 등 한국사회에 등장한 익숙하지만 낯선 이야기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준비할 시간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구조화 되어 터져버린 갑질 논쟁은 형클어진 사회질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공정함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말일까? 혐오, 백래시 등 평등을 거부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움직임들이 더욱 거세지는 이유는 뭘까? 평화체제 그 이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구조화 된 불평등을 넘어설 수 있는 시작은 무엇일까?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인권운동은 어디쯤에 서 있을까? 인권운동이 마주한 질문들 앞에서 인권운동의 현재를 짚어보고,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연속 토론회를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활동가들이 만들어 온 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인권운동의 전략마련을 위해 필요한 공동의 인식을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전, 평등, 노동, 평화, 연대> 인권운동에 익숙한 주제이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했습니다. 2018년 8월 마지막 주부터 5차례 진행되는 토론회 기간동안 치열하고 토론하고, 고민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토론의 내용과 고민을 담아 후속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관심 있게 읽어주시길, 더 풍성한 고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적 인권, 인권의 문제

위험한 안전, 불온한 안전

8월 28일 (화)

세계인권선언70년
인권운동더하기 연속토론회

위험한 안전, 불온한 안전

랑희 | 인권운동공간 활

현재 한국 사회의 안전과 관련한 요구는 다양하게 쏟아져 나온다. 각종 성범죄와 젠더폭력의 위협, 각종 유해물질과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의 위협,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참사에 대한 대책,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각종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불안까지 우리 삶의 전반은 위험요소로 가득하다. 안전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이를 반영한 듯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규정하고 이어 헌법 개정안에 안전권을 신설하기도 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 세월호 참사 등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에 관한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안전을 권리로써 요구하는 것은 삶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위험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박탈된 권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한다. 따라서 ‘권리’로서의 요구는 나는 둘러싼 사회를 성찰하고 권력의 편재를 드러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행위로서 의미가 있으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법률을 정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자칫 보호에 대한 열망으로만 쏠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가는 종종 안전을 자유, 평등, 연대보다 우위에 놓고 후견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할 ‘안전한 상태’, ‘안전한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쏟아지는 안전의 요구들 속에서 ‘권리로서의 안전’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위험의 결정

사전적인 의미에서 안전한 상태란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인간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뜻한다. 단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잠재 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이란 만들어지는 상태를 뜻한다.¹⁾ 위험의 원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안전을 위한 ‘관리’가 핵심이 될 것이고, ‘관리되어야 하는 위험’이 무엇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위험’은 어떻게 결정될까? 가슴기 살균제 사건을 겪으며 유해물질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졌고 각종 화학물질(화장품, 식품 등)의 전 성분을 공개하라는 소비자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나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에서 확인되듯 무엇이 위험한가, 얼마만큼 위험한가를 규정하기란 쉽지 않고 소비자들의 불안만 커져갔다.²⁾ 정부도 기업

1) 두산백과

2) 여성환경연대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 11개의 유해성 연구를 의뢰해 모든 제품에서 200여 종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TVOC)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독성화학물질 20종이 들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전 성분 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했다.

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스스로 안전한 생리대를 찾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과거에는 알 수 없던 것들이 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위험으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원인을 찾게 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가시적이지 않고 인과관계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관련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된다. 따라서 위험은 전문가에 의하여만 포착되어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재구성될 또 다른 '위험'이 내재한다. 일반적으로 위험요소인가 여부는 정책결정자 또는 위험포착자의 결정에 기인한다.³⁾

생리대 문제는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와 관련해 나눴던 사적대화들이 공적 담론의 장으로 진입한 사건이 되었다. 자신의 몸과 관련된 문제를 드러내면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알고자 했다. 그러나 계량화된 수치와 검증이 어려운 과학적 문제는 좀 더 안전하다고 알려진 (비싼) 생리대의 구매 또는 대체품을 찾게 만들었다. 이처럼 위험의 사전예측, 위험의 결정 문제가 전문가의 손에 달려 있을 때 스스로 안전할 방도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권리는 무엇이어서 할까?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가 있을 수 없듯이 피할 수 없는 위험 가능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위험의 대응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노동자가 폭염으로 의식을 잃고 추락사했다. 당시 현장의 노동자들은 정부 가이드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를 요청했으나, 관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고용노동부의 옥외 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도 무용지물이었다. 무엇이 위험인지 확인되면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과 지침을 만든다. 이런 예방조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안전은 확보될 수 있을까?

위험은 모두에게 닥칠 수 있지만 위험의 대응은 동일하지 않다.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 정보와 지식, 기술적 관리도구 등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불평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⁴⁾ 위험의 결과 역시 사회적 계급, 젠더, 인종,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위험은 관리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산업계기가 되며, 다시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누가 위험에 취약한지, 왜 위험 예방에서 배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메르스의 확산으로 전 사회가 불안에 휩싸였을 때 매일 관련 뉴스가 나왔지만 미처 알지 못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 전염의 확산을 막고 감염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격리조치가 장애인에게 문제가 되었다. 활동보조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조치는 오히려 장애인을 더욱 고립시키고, 위험하게 만들었다. 이후 장애여성공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재난 상황에 대응한 단순한 매뉴얼 제작만으로 위험이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열악한 삶의 조건에 놓이게 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재난시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함에 있어 어떤 문제들을 살펴하는지 과제를 주었다.

전문가들이 위험을 판정하고 정책가들이 대책을 세운다. 이 대책 수립의 과정에서 전문가와 정책가가 포착하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위해성 평가결과를 공개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고, 시민사회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안전하지 않음을 공방했다.

3) 김혜경, "처벌의 원리-공동체 가치로서 연대성과 처벌의 인간화", 마인드맵, 2018, 6면

4) 2018년부터 외국인을 위해 긴급재난문자 영어, 중국어 서비스가 실시되었다.(국내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폰이나 '이머전시 레디(Emergency Ready)' 앱으로 가능) 그러나 이 서비스도 지자체에서 보내는 긴급재난문자는 수신할 수 없다.

못하는 것(혹은 안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위험요인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작성된 매뉴얼, 매뉴얼대로의 시행이 전부인 관료적인 수행, 재난 피해자들이 안전관리자의 명령대로 따라야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권위 등이 우리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매뉴얼이 재난의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매뉴얼에만 의존한다면 안전하기 위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 것이다. 재난의 당사자들은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각자도생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응하고 좀 더 안전한 상황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양하게 닥쳐오는 위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

불안의 생산, 도달할 수 없는 안전

위험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적절한 대처를 만든다. 위험을 직시할 때 위험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인지된' 위험은 개인들이 특정한 현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주체적 대응과 안전을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 재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끌어낸 것처럼. 그러나 안전을 권리로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힘이 종종 정부의 엉뚱한 대책으로, 왜곡되고 과잉된 안전담론으로 수동적인 위치로 미끄러지거나 다른 소수자를 혐오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예멘 난민과 관련해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마치 안전이 다른 사회적 원칙과 가치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사회가 추구할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다. 물론 공포와 혼란 및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욕구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불안과 공포에 대한 감각은 사회 전반적 요소에 대한 불안으로 확산한다. 이로 인하여 안전에의 욕구는 안전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고 스스로 불안전을 확대재생산한다. 뿐만 아니라 불안요소들은 확인될 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사회적 소통에 의하여 재생산된다. 상승된 안전욕구는 이 안전욕구를 위한 방어조치와 동시에 그 안전욕구 자체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보장조치까지 요구하게 됨으로써 스스로가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순환관계로서, 이 관계 속에서 안전은 계속 추구하는 대상된다.⁵⁾ 예멘 난민의 사례에서 보듯이 위험은 객관적이지도 않지만, 위협적이거나 불안한 상황이 행위자에 의하여 야기되기 훨씬 이전단계에서 통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통제대상은 행위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이나 상황, 특정 영역이 된다. 이런 문제는 이미 여러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상/비정상, 남성/여성, 내국인/외국인, 합법/불법, 문명/야만 등 수많은 경계를 생산해 우리의 삶을 규범화하여 질서를 유지한다.

우리 사회는 불안의 공동체로 묶여 있는 듯하다. 공포가 만들어 낸 경계의 구획 안에 형성된 '불안의 우리들'은 사실 개인의 집합일 뿐이다. 관계를 만들고 상호성을 확인하고, 갈등했다가도 회복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아니다. 피해자로만 위치 지은 '우리'가 불안의 동질성 말고 무엇을 형성할 수 있겠는가? 당신과 내가 피해와 가해로만 존재한다면 우리 '사이'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듣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예멘 난민과 관련한 여론조사의 질문은 "불안한가, 아닌가"만 있다. 삶이 '불안하다 vs 안심하다' 외에 없는 걸까? "불안하기는 하지만 괜찮아"처럼 우리는 불안과 안심 사이 그 어디쯤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해볼 수는 없는 걸까? 질서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구축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최근 페미니즘의 확산과 성차별과 젠더폭력의 관계성의 인식이 높아진 것은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대응한 여성들의 행동에서 출발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여성들은 '여성혐오' 사건으로

5) 김혜경, "처벌의 원리-공동체 가치로서 연대성과 처벌의 인간화", 마인드맵, 2018

규정하고 여성혐오 사회를 부정하는 국가, 특히 경찰과 일베를 비롯한 극우행동파들에 대한 비판과 대항활동으로 나아갔고 희생자는 내팽개친 채 타자화된 피의자와 '남성일반'을 구분하려고 시도하는 남성들과 싸웠고, 여성혐오를 전체 혐오 안에 종속시키려는 관점을 비판했다.⁶⁾ 또한 정신장애인 단체들도 목소리를 보태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몰고 가려는 힘을 밀어냈다. 여성을 피해자로 고정하는 조치들을 반대하고(공용화장실 남·여 분리나 CCTV를 확충), 다른 소수자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을 거부한 이들의 행동은 '안전은 평등과 연대 속에 모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보호를 넘어서

'불안의 공동체'가 확장될수록 개인의 보호문제는 보다 강화되어, 국가가 범죄나 기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거나 최소한 보호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개인의 안전과 안전을 위한 차단은 사회통제의 목표가 된다. 잔혹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형벌을 강화시키고 사형을 집행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정치와 행정은 이러한 요구에 손쉽게 부응한다. 엄벌주의와 사형은 범죄를 예방하는 실효성이 없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대한 문제제기를 하니 이런 대답을 돌려준다. "그래도 그놈은 죽잖아요." 국가는 이미 공포와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법을 알고 있다. 이는 안전을 사회적 불안요소의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되는 특정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불안정한 요소들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통제에 순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공포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을 피해자의 자리에 고정시키기 쉽다.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 따라야 하는, 감수해야 할 제약들이 늘어날 뿐이다. 위협요인으로 지목된 사람들 역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워지고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쉽지 않다. 안전을 위협당한다고 느끼는 사람,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목된 사람 모두를 무력하고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안전한 사회는 아니다. 본래 안전의 권리를 요구했던 것은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삶의 폭을 넓히고 자유로운 선택의 가지 수를 늘려나가며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나? 국가의 후견만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억압의 작동을 드러내고,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로 등장함과 동시에 복종을 거부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하기 위한 주체의 위치로 도약하는 것을 상상한 것이 아니었나? 두렵고 망설여지지만 용기를 내 행동하는 것, 실패할까 불안하지만 시도해보는 것, 이상하고 낯설지만 다가가는 것. 이런 것들은 안전의 권리로 말할 수 없는 것일까?

6) 타리, "국가가 하거나 하지 않는 것", 토론회 <평등해야 안전하다-중첩된 혐오를 넘어 안전할 권리를 말하기>, 2016.6.14

위험, 장애화, 국가

- 안전할 권리에 대한 관계론적 성찰 -

김도현 | 노들장애학공리소 연구활동가

참사에 노출된 삶/생명, 장애인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단연코 위험한 일이다. 그들의 삶/생명은 참사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마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사회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삶/생명의 경계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넘어가게 되는지를 보라.

2001년 오이도역에서 일어난 수직형 리프트 추락 참사로 장애인 부부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는다. 그 이후 이동권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3년 송내역에서는 한 시각장애인이 유도블럭의 미비로 출구를 찾아 헤매다 선로로 추락했고,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그대로 사망하고 만다. 그 이후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죽어 갔다. 2002년 발산역에서, 2004년 부천역과 이수역에서, 2006년 신수역에서, 2008년 화서역에서, 2009년 제물포역에서, 그리고 2017년 10월 신길역에서의 추락 참사 후 올해 1월 25일 유명을 달리한 한경덕 씨까지. 확인된 사망 사고만 이 정도일 뿐, 중경상을 입은 사고까지 헤아리자면 그 참사의 목록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단지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것이다. 제7호 태풍 뿌리뽀룬이 제주에 상륙하던 시점인 지난 7월 2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진행된 지하철 타기 투쟁에서 한 장애인이 말한다. “나는 태풍보다 지하철 리프트가 더 무섭다”고.

2005년 12월, 경남 함안에서 한 중증장애인이 보일러가 터져 흘러나온 물에 이불이 젖어들면서 그 이불과 함께 그대로 얼어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 이후 활동보조[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필요(needs)에 따라 제공되지 않았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정한 예산과 장애등급에 의해 난도질되었다. 그러한 제도적 조건 속에서 2012년 10월 김주영이 불타 죽었고, 박지우·박지훈 남매가 불타 죽었다. 2014년 4월 송국현이 또 불타 죽었다. 그들은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사고가 나도록 방치돼서’, ‘불이 나서’가 아니라 ‘달아나지 못해서’ 죽었다.⁷⁾ 그리고 또 며칠 뒤 근육장애인 오지석이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호흡기가 빠져서, 이를 바로 잡아줄 이가 곁에 없어서 죽어갔다. 송국현에게 사고가 난 것은 세월호 참사 3일 전, 오지석에게 사고가 난 것은 바로 세월호 참사 당일이었다. 장례 투쟁에 모여 서럽게 울고 분노하던 사람들은 말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이 사회는 언제나 세월호였다”고.

다시, 송국현과 오지석의 죽음으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2014년 말부터 서

7) 홍은전, 「당신에게 이 사회는 언제나 참사였구나, 『한겨레21』 제1014호, 2014. 6. 9.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175.html

울·인천·대구·광주 등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24시간 제공이 지자체 예산을 통한 시범 사업의 형태로나마 시작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소위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에 의해 이 사업의 대상자 확대는 멈춰서거나 사업 자체가 아예 폐지되고 만다.⁸⁾ 이로 인해 2014년 11월부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전신마비 장애인 권오진 씨는 2016년 2월부터 갑자기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야간에 체위 변경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욕창이 심해져 결국 지난 6월 17일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또한 권오진 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울여름의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고 있다.⁹⁾

어디 이것뿐일까. 2012년 8월 21일 시작되어 2017년 9월 5일까지 1,842일간 진행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놓여있었던 18개의 영정. 그 영정 속의 생명들 중 누군가는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고 기초생활수급권에서 탈락해 죽음으로 내몰렸고, 또 누군가는 돈 30만 원이 없어서 맹장이 터진 것을 끌어안고 있다가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그 영정들 속의 누군가는 바로 그 시설에서 온 몸에 피멍이 들도록 맞아서 숨졌고, 또 누군가는 소위 ‘의문사’를 당하고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12년 동안 냉동고에 방치되었다. 아니 그 이전에 그 수용소는 인격체로서의 삶, ‘나의 삶이 없는 곳이었다. 어쩌면 그들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생명’(bios)을 한 번 잃고,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삶/생명’(zoë)을 또 한 번 잃었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번 죽었다’고 말해야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사회에서 장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이지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장애인 무엇이며, 장애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장애인의 삶이 참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장애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는 위험이 아니라,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무능력

우리의 삶 속에서 위험과 안전은 A과 not A의 관계, 그러니까 이분법적 대립(opposition) 내지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요컨대 우리는 위험이 전무한 상태로 안전을 정의할 수는 없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 위험은 불가피하며,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을 즐기기도 한다. 당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시설에 머무르라는 이 사회를 향해, 자립생활운동의 주창자들이 ‘위험을 경험할 권리’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¹⁰⁾ 그렇다면 위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무능력이다. 유엔국제재난경감전략기구(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는 재난/참사와 위험의 관계에 대해 “자연” 재난/참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자연적 위험(요소)들이 있을 뿐이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natural’ disaster, only natural hazards)라고 말한다.¹¹⁾ 역사유물론의 핵심을 담지하고 있는 맑스의 저 유명한 구절을 패러디해 보자면,¹²⁾ ‘위험(hazard)은 위험일 뿐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위

8)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96개 사업을 통폐합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고, 여기에 활동지원 24시간 지원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이 동원되었다.

9) 이재덕·박용하, 『“움짱달걀 못한 채 폭염과 사투, 이러다 죽겠다 싶어”... 중증장애인의 ‘혹독한 여름’』, 『경향신문』, 2018. 8. 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62215015&code=940601

10) “장애인의 자립생활 원리에 있어 핵심 사상은, 장애인에게 자신이 어디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떤 생활양식을 선택할 것인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생활전반에 걸친 제반 상황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립생활의 개념은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모험이나 그 결과에 따른 위험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성공 혹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김동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한국적 모색, 미출간 논문).

11) <https://www.unisdr.org/who-we-are/what-is-dr>.

12) “흑인은 흑인일 뿐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흑인은 노예가 된다. 면방직기는 면방직을 하는 기계일 뿐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그것은 자본이 된다.”

험은 재난/참사(disaster)가 된다'. 그렇다면 그 특정한 관계란 무엇인가? 바로 위험에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관계/조건일 것이다.

다른 한편 '장애'는 영어로 'disability'로 표기된다. 'disability'는 '무능력/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장애가 아닌 상태, 즉 '비장애'는 영어로 'ability'로 표기된다. 'ability'는 '능력/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장애=무능력/할 수 없음', '비장애=능력/할 수 있음'이 되며, '장애인'이란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인 것이다. 흔히 우리는 자유주의-개인주의-실체론의 시각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관계론적 혹은 관계체적(transindividual)¹³⁾ 시각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문법적 환상에 불과하다. 능력/비장애와 무능력/장애는 근본적으로 '소유하고'(have)있는 것, 혹은 '지니고 있는'(with) 것이 아니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정치적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지지하는 법철학자이지만, 그녀는 "소극적 자유' 개념은 모순이다. 모든 자유는 적극적 자유다"라고 말한다.¹⁴⁾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내가 무언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혹은 할 수 없다)'는 것은 항상-이미(always-already)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 속에서만 논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인 ('people with impairment'이기는 하지만) 'people with disabilities'가 아니다. 'disabled people'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후자의 표현에는 언제나 'by'(~에 의해서)가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생략되어 있는, 그래서 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위험의 대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일반에 있어서도 '능력/할 수 있음'과 '무능력/할 수 없음'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의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정치적인 문제다. 장애운동이란 그러한 관계-어떤 존재가 '장애화/무력화'(disablement)되는 관계-를 문제 삼는 운동이며, 그러한 한에서 또한 보편적 정치성을 갖는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관계, 즉 차별적·억압적이고 불평등하며 부당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성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건, 그래서 성폭력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언제나 불평등한 젠더 관계 속에서의 문제인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녀들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은 '무력화'된다. 인권활동가들이 외쳐왔던 '평등해야 안전하다'는 구호는 이러한 맥락에서 또한 새길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존재들이 '장애화/무력화'되는 관계를 해체하고 평등한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권한강화/세력화'(empowerment)는 안전이라는 권리의 확보를 위한 전제이자 핵심이 된다.

이러한 성찰을 앞서 언급한 장애인들의 죽음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자. 그들은 어떤 위험을 마주했지만, 그 위험에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렀다.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해했다면, 거기에는 그들이 것처럼 위험에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든' 무언가가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리프트가 아닌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면, 활동지원서비스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제공되었다면, 부양의무제나 불합리한 근로능력 평가 따위로 기초생활수급권을 제한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탈시설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지역사회에 마련되어 있었다면(아니, 애초부터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시설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위험에 마주하지 않거나 최소한 그 위험에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생물학적 장애인-즉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규정되는 손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 그러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참사인 것은,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보여준 총체적 무능력(disability)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무능력한 국가에 소속되어 있던 국민들이었기에, 그 수많은 생명들이 기울어져가는 세월호에서 탈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disabled).

다(칼 맑스, 『임금 노동과 자본』,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최인호 외 옮김, 박종철출판사, 1997, 555쪽, 문구는 일부 수정).

13) 스피노자에 대한 에티엔 발리바르의 해석과 연관되어 있는 '관계체성'(transindividuality)이라는 개념은 모든 개체들을 가로지르는 무한한 연관 관계가 각 개체의 실존 및 활동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14) 마사 누스바움, 『역량의 창조』, 한상연 옮김, 돌베개, 2015, 86쪽.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다른 한편 안전을 권리로서 사고한다고 할 때, 국가는 하나의 쟁점 내지 딜레마로서 위치되는 듯하다. 요컨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법률을 정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지만, “국가는 종종 안전을 자유, 평등, 연대보다 우위에 놓고 후건을 약속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요구가 “자칫 보호에 대한 열망으로만 쏠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것이다.¹⁵⁾ 그런데 여기서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국가’는 어떤 식으로 인식/파악되고 있는 것일까?

포스트-맑스주의까지를 포함한 맑스주의 국가이론에서 국가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주체(의 도구), 실체(적 기계), 관계가 그것이다.¹⁶⁾ 첫째, 국가를 ‘주체’로 본다는 것은 그것을 지배계급 자체, 혹은 지배계급의 도구와 동일시한다는 것을 말한다. 맑스가 『공산(주의)당 선언』에서 국가를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 업무를 처리하는 하나의 위원회일 뿐”이라고 규정했을 때의 관점.¹⁷⁾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운동의 목표는 그 도구를 지배계급으로부터 탈환해 피지배계급의 손에 들어주는 것, 즉 ‘장악’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를 하나의 ‘실체’로 본다는 것은 그것을 자체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 부르주아적 질서를 (재)생산하도록 설계된 장치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즉 국가란 누가 장악을 했는가와 상관없이 애초에 설계된 목적에 따라 작동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맑스가 1871년의 ‘파리 코뮌’을 경험하면서 『프랑스 내전』이라는 텍스트에서 발전시킨, 그리고 레닌이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와중에 『국가와 혁명』이라는 책자를 쓰면서 재발견한 관점.¹⁸⁾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란 피억압 계급이 장악해서 인민대중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파괴하고 ‘사멸’시켜야 할 대상이 된다.

셋째, 국가를 ‘관계’로 본다는 것은, 그것을 단지 지배계급의 맥락에서만 아니라 피지배계급 및 그들의 대중투쟁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니코스 풀란차스(Nicos Poulantzas)가 기술했던 바를 따르자면, “국가는 본질적인 실체로 간주될 수 없으며… 계급들과 계급 분파들 사이의 세력 관계의 물질적 응축”이다.¹⁹⁾ 그러나 여기서 ‘세력 관계’ 앞에 계급만이 놓일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당연히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나이, 장애 등의 요소가 함께 놓여야 한다. 즉 인권의 정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있는 다양한 다수자 집단과 소수자 집단 간(자본가-노동자, 남성-여성, 성다수자-성소수자, 다수인종-소수인종, 성인-청소년, 비장애인-장애인) 세력 관계의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물질적 응축이 바로 국가다. 요컨대 소수자 집단의 ‘세력화’(empowerment)와 그것의 물질적 제도화 정도에 따라 국가의 양태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국가란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정치적 동물인 인간이 구성해 내는 정치(공동)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가 소멸하지 않는 한 국가(=정치체)는 언제나 존재한다. 맑스주의에 내재한 ‘이론적 아나키즘’의 경향-프롤레타리아 독재 이후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사멸한다-을 비판했던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는 “모든 국가가 반드시 민주주의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정의상 비국가는 민주화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²⁰⁾ 그의 입장은 바로 이러한 관계로서의 국가라는 맥락에서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의 문제인데, 정치가 소멸한 공동체인 비국가가 민주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치와 관련하여 국가를 초과하는(transnational) 조직/단위는 존재할 수 있지만, 국가 외부에서 국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조직/단위란 존재할 수 없다. 즉 시민사회 역시 국가의 외부가 아니며,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소위 ‘NGO’란 단어

15) 랑히, 「위험한 안전, 불온한 안전」(세계인권선언 70년, 연속토론회① 기초발제문), 둘째 문단.

16) 국가를 ‘주체’, ‘실체’, ‘관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은 최원, 「세월호 이후의 국가」, 『황해문화』 91호, 새얼문화재단, 2016년 여름, 20-36쪽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밝혀둔다.

17) 칼 맑스, 「공산주의당 선언」,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최인호 외 옮김, 박종철출판사, 1997, 402쪽.

18) 최원, 「세월호 이후의 국가」, 26쪽.

19) 니코스 풀란차스, 『국가, 권력, 사회주의』, 박병영 옮김, 백의, 1994, 165쪽.

20) 에티엔 발리바르, 『우리, 유럽의 시민들?』, 진태원 옮김, 후마니타스, 2010, 297쪽.

의 뜻 그대로 비정부기구일 뿐 비국가기구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국가란 장악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멸의 대상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운동이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천의 노선은 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이 된다.

이 글에서 조금은 길고 장황하게 이러한 논의를 소개한 이유는, 이것이 안전에 대한 권리(어쩌면 권리 일반)와 관련하여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사고하고 어떠한 전략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어떤 정태적인 주체 내지 실체로 파악할 때, 그것은 무엇보다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러므로 경계되고 제어되어야 할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국가가 관계로 사고될 때, 우리는 조금 더 동태적이고, 정세적·역사적이며,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변환을 사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치에서 결코 우회할 수 없는 대표/대의(representation)²¹⁾라는 요소와 관련하여, (적녹보의 가치를 담지하는) 진보정당이 부재하거나 그 존재감이 미미하고 승자독식의 소선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일본·한국 등의 국가와, 진보정당이 일정한 전통과 세력을 갖고 있고 실질적 비례대표제에 의해 다양한 소수정당이 활동하고 있는 독일 및 북유럽의 국가들이 같은 다당제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난민/이주민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경에 거대한 장벽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미국과 “다양성은 우리의 힘이다”(Diversity is our strength)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캐나다가 동일한 국가는 아니다. (더불어 ‘이민자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며 비교적 관대한 이주 정책을 시행했던 과거의 미국과 현재의 미국 또한 같은 국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시설 수용 인원을 늘리고 있는 한국과 시설폐쇄법을 제정하여 이미 1990년대 중후반에 장애인 수용시설 자체를 없앤 노르웨이 나 스웨덴이라는 국가는, 활동지원 24시간 제공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국가와 개인의 필요에 따라 48시간 까지 활동지원이 제공되는 국가 역시 안전이라는 권리와 관련하여 같은 국가라고는 할 수 없다. 즉 국가가 문제라면, 단지 그러한 국가를 경계하고 제어하는 것을 넘어, 국가를 바꿔야 한다.

‘No one left behind’와 ‘Leave no one behind’

노들장애인야학은 지난 7월 4일 리스투더시티와 공동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재난 대비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는데, 리스투더시티가 정한 이 워크숍의 타이틀은 ‘누구도 뒤에 남겨지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였다. 누구도 뒤에 남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논의했던 ‘관계’로서의 (무)능력과 (비)장애 개념에 비추어 보자면, (2018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내 걸었던 바로 그 슬로건과 같이)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아야’(Leave no one behind) 한다. ‘관계’로서의 우리가, 이 정치공동체가, 국가가 말이다. 또한 누구도 뒤에 남겨지지 않으려면, 혹은 누구도 뒤쳐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그 속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누구를 기준으로? 가장 뒤에 있는 이들을 기준으로.

신자유주의적 국가는 이 속도를 가장 앞선 자에게 맞춰놓음으로써 뒤에 오는 이들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노오력’해야만 하는 국가, 혹은 정상/평균(normal)에 그 바늘을 맞춰놓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죽게 내버려 두는’ 국가의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장애인운동은 정상성에 기반을 둔 시간-속도가 아닌 장애인의 신체성 및 시간성을 이 사회에 각인시킴으로서 그 속도를 늦추는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시공간에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지만, 아마도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듯이, 과속은 늘 위험하므로.

21) 여기서 ‘대표/대의’는 단지 정당이나 의회로 환원되지 않는 훨씬 더 폭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나 사회단체들에서 발표되는 성명서의 관용적인 문구—예컨대 민주노총이라면 “천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면 “500만 장애인을 뜻을 모아...” 등—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이들 또한 일정한 계층, 집단, 대중의 처지와 의사와 요구를 대표했거나 대표한다. 나는 2015년 이후의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정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대중들이 어떤 정치적 관련함을 겪고 있다면, 적어도 그 원인 중 하나는 그녀들을 대표/대의할 수 있는 세력·조직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해서는 안되도록 관리한다

박정형 | 한국이주인권센터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목도하며, 한국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하지 않는 나라라며 울분에 찼다. 국가의 공 권력이 도대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불신은 촛불집회의 가장 큰 도화선이었을 것이다. 촛 불집회 당시 수도 없이 외쳤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호는 국가의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투쟁이다.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아 급격하게 번진 난민에 대한 차별적이고 국수 주의적인 언동들은 이제 ‘국민이 먼저다’, ‘(난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런 구호들을 보면서 이런 물음이 든다. 당시의 이 구호는 “모든 권력”의 주체가 ‘누구까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아니었을 까.

나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 이주민들에게 안전이란 무엇인가

이주민들에게 안전이란 무엇인가. 올해 8월 7월 확정 발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안전권을 신설했다는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있는 ‘안전권’에서의 ‘안전’이란 재 난, 범죄피해, 안전사고와 같은 것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이주민의 인권에 대해 명시된 부분은 교육을 통 한 사회통합 강화에 치중되어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약간의 한국의 법과 문화에 대한 교육과 대부분의 한국어 교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을 체류자격과 연관시킨다. 과연 이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강화되면 이주민 은 안전한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안전은 이주민의 안전인가, 국가의 안전인가.

단언컨대 ‘이주의 시대’라는 이 시대에, 이주민들은 안전하지 못하다. 이주민의 체류를 활동범위를 허가하고 통제 하고 구분하고 관리하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구조 안에서 이주민들은 안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용허가제라는 시스템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자격의 여탈권은 고용주에게 있다. 고용주가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가 없다. 국가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고용주에게 준 것이 고용허가제 대상 업체들의 고용의 수요가 인력의 공급보다도 많은 상황임에도 이주노 동자들의 처우가 향상되지 않는 원인이다. 최저임금, 장시간의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및 주거환경, ‘일하기 싫으면 너네 나라로 가라, 내가 가게 해줄게’라는 위협과 욕설,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직장으로 갈 수가 없어서 일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안전’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노동의 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또한 고용주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동기가 있을 수 없는 제도적 조건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선주민들보다 훨씬 많은 산재에 노출되고 있다.²²⁾

한국사회의 필요에 의해 도입된 이주민이 아닌 난민신청자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가가 비준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2013년 시행된 ‘난민법’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는 난민신청한 사람들을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폭력적으로 송환하고 있다. 난민은 불인정된 채로 인도적인 체류를 하게 된 이주민은 6개월~1년마다 체류허가를 받으며 의료, 양질의 직장, 양질의 거주, 직업교육, 아이 양육, 아이 교육 등 복지체제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²³⁾

허가하지 않은 체류, 미등록 체류, 취업자격이 없는 체류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국가는 ‘불법체류자’라고 하면서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단속한다. 이미 이주민들의 안전은 국가에 의해 언제나 심각하게 훼손되어져 왔다.

이렇게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야 하는 자들, ‘국가’에 의해 체류자격이 선별되고, 허가받고, 통제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안전’이란 무엇인가. 국가인권기본계획에 앞서 올해 3월 정부에서 헌법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역시, 정부가 홍보한 것은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안전권’을 신설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개정안은 사회권에 있어서는 철저히 국민이라는 주체를 유지시키면서, 이주민이 보장받을 수 없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했다. 이들에게 ‘안전’이란 비단 재난, 범죄, 안전사고에 한정될 수 없다. 이들에게 안전이란 이주한 국가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권리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이 아닌 ‘사회적 권리의 보장’이다.

안전에는 돈이 든다 한다.

사람을 노동력으로 치환하는 자본주의, 그리고 점점 더 유연한 노동력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주민’은 경제시스템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국민국가가 보장해야하는 권리의 측면에서는 항상 열외였다. 노동력은 활용하되, 권리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쉬운 존재였다.

주지하였다시피 이주민의 안전에 필요한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의 ‘보장’이다. ‘사회적 권리’는 ‘사회적 비용’과 함께 얘기되어 왔다. 우리사회에서 이주민의 안전은 중요한 것이 아니어도 되게 하는 논리들 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비용’의 문제이다. 최근 난민신청자들을 심지어 강제송환하라며 반대하는 논리도 그러하다. 난민신청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과도한 생계비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²⁴⁾ 2014년 12월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강한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그 논리 중 하나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 불법체류자의 아동이 국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조건 없이 누리게 된다’는 것에 있었다.

매년 국가의 계획 하에 5만명 가량의 외국인을 도입하면서도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까지) 별다른 국민적 반대여론이 없었던 고용허가제는 철저히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이주의 자격이 가장 건강한 노동력을 소비

22)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외국인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총 3만3708명으로 사망자 511명, 부상자 3만3197명이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은 국내 노동자가 0.18%, 외국인 노동자는 1.16%로 외국인이 국내 노동자에 비해 약 6배가량 높다. 전체 산재률은 2012년 0.59%에서 2016년 0.49% 낮아짐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률은 6.9%에서 7.4%로 증가했다. [출처: 안전뉴스 2017.10.17.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발생률, 국내 근로자보다 6배 높다', 이는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에 한정된 것으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2017 경기도 외국인 사업재해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산재피해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절반(52.9%)은 산재를 당해도,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정보전달, 사업주의 비협조 등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지조차 못하고 있다.

23) 2018년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2018 난민아동지원 성과평가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중 54.4%가 지난 1년간 자녀가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고, 이 중 49.2%는 기 이유를 병원비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24) 하지만 실상을 드러다 보면 국가는 어떻게든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기 위해, 난민신청자들이 생계비 신청을 해야지만 선별해서 생계비를 지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생계비의 지원 액수도 한국사회 정착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생계비 신청이 가능한지 모른 채로 난민신청한지 6개월이 지나 취업허가가 되면, 취업을 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비 신청 자격은 없어진다.

할 수 있는 20세 이상에서 40세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가족결합을 통한 장기 체류의 욕구조차 가지지 못하도록, 이주노동자의 가족들에게 관광비자조차 발급해주지 않는다. 앞에서 서술했었다시피 사업주에게는 이주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고 고용주의 수익을 보장하였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자 중소기업중앙회 및 일부 언론들이 서둘러 보도한 것은 고용주의 부담(수익성의 저하)에 대한 우려와, 이주노동자가 내수시장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왜곡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주거 및 식비의 상태 및 가치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에 비례한 숙식비 공제를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응답하였다.²⁵⁾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내국인의 최저임금과 차등해야 한다는 주장과 입법발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보장이 사회적 비용으로 치환되고, 사회적 비용의 투여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속에서, 국가/사회의 수익 창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되는 이주민의 안전은 공격받거나 외면당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사람을 노동력으로 치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기획들이 수반되는가. 이주민을 ‘노동력’으로만 치환시켜도 되는 존재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국가는 적극적인 기획자 역할을 한다.

안전해서는 안 되도록 관리한다.

많은 이주관련 활동가들은 국가에 이주민의 안전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근본적으로 고민한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요구는 국가의 행위에 얼마만큼 와 닿는가. 국가는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주민들의 문제들로 치환시키는 시각들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유포한다.

생각해 보자.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이슈 초기에 ‘무사증 악용자’, ‘난민신청남용자’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공식적으로 유포시켰던 것도 법무부였다. 이주민을 혐오하는 사회적 목소리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등장해도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 후에 나타난 정부의 입장들은 난민들을 왜 보호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동요와 불안에 대한 응답이었다.

심지어 이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배제는 정권의 관심사에 따라 서로 다른 스토리들로 정당화 된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국가의 통치와 내국인 보호의 성과로서 언제나 홍보되어 왔다. 지난 정권에서는 ‘불법체류자의 단속’을 ‘외국인들의 범죄 단속’이라는 측면에서 홍보해 왔다. 이번 정권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서민의 일자리 보호’와 연관지어 홍보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는 국민을 불안정하게 하는 외국인의 범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신호를, 이번 정권에서는 외국인이 국민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를 통해 각자가 자신들의 공권력을 발휘하여 내국인을 보호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이주민은 건강보험의 취약성을 강화시키는 존재들로도 동원되었다. 올해 6월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개정안 보도자료’의 제목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는 것이다.²⁶⁾ 그러면서 이주민들의 소득파악이 어려워 내국인보다 건강보험료가 적게 부담되어왔다며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25) 고용노동부는 2017년 2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제공받는 기숙사가 판넬 주택 등의 임시주거시설이면 월 통상임금의 13%까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상용 주거시설이면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숙식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발표하였다.

26) 출처: 2018.6.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존의 지역건강보험은 한국에 온지 3개월이 지난 외국인들 중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비자 자격의 이주민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해 왔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외국인들은 지역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하고, 이 때의 지역건강보험액은 내국인의 평균 가입액을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를 체류관리와 연동시켜서 관리하겠다고 한다.

의료는 많은 이주민들의 안전에 절박한 문제이다.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어 임시적인 체류허가를 받은 ‘인도적 체류자’²⁷⁾들에게 지역건강보험 가입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보건복지부는 계속해서 무시해 왔다. 운 좋게 직장건강보험이 가입이 되는 직장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자녀와 부인의 피부양자 자격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주민들도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내국인의 경우 추정되는 소득에 따라서 지역건강보험료가 정해지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내국인들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때문에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득에 상관없이 한달에 거의 10만원에 달하는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말하는 공정성에서 이주민은 배제되어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에서 배제된 이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함께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로 인해 내국인들이 불공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주민은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상상하도록 하는 무궁한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이 기획 속에서 이주민은 ‘국민’이 아닌 자로 구분되면서, ‘국민’에 포함되는 자들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 상상된다. 이러한 틀 속에서 이주민은 ‘국민’과 동등해서는 안 되는, 안전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로 관리되고 있다.

이주민의 안전은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이주민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국가는 이주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도구적으로만 소비해도 된다는 논리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유포한다. 이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국민 대 이주민이 아닌, 이주민들의 사회적 역할과 존재를 통한 권리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노동자의 권리, 시민의 권리, 청소년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러나 이주민들의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한 배제와 통제 속에서, 그리고 국가가 지정한 경계 안에서의 안전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쉽게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돼버린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해놓고 사실은 ‘국민이 먼저다’라는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국가와 국민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고는 어떻게 가능한가. 국가의 선별적인 승인으로, 선택과 배제로 이루어지는 협소한 안전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확장된 안전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이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치열한 고민과 실천들은 그래서 더욱 값지다.

27)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신청은 불인정되었으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어 한국에서의 한시적인 체류를 허가받은 난민신청자들을 지칭한다. 법무부는 이들을 ‘인도적체류’로 분류하여 G-1-6의 비자를 부여한다.

안전요구의 저변에 놓인 불안과 공포는 어떤 종류의 것인가?

이현재

1. 불안과 공포가 특정 계급, 특정 젠더, 특정 집단에게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불안과 공포의 정도는 물론 객관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가령 안전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높은 장벽으로 둘러쳐진 게이티드 시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로부터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가 덜 하다고 할 수 없다. 이방인들에 대한 공포가 크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공간을 요청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객관적으로 장애인, 이주민,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의 정도는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르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지금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없으므로. 가령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공포는 비합리적인 심리상태여서 일단 공포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면, 당신이 타인보다 객관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적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공포를 느끼는 순간 그것은 인간을 습격해 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공포는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2. 무분별한 기술문명의 발달이 현대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가?

올리히 벡은 산업혁명, 과학혁명을 통해 인간이 환경을 통제하려했지만 기술발전과 더불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위험도는 더 통제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본 바가 있다. 우리는 상당한 기술을 발전시켜 안전을 도모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더 큰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신제도경제학자 노스(Douglass North)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노스에 따르면 경제가 복잡한 신념체계의 영향을 받는 한, 과거의 평균에 비추어 미래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비역사적인 태도이다. 그에 따르면 에르고드릭(ergodic) 가설, 즉 지금 과거로부터 계산한 평균이 미래에 나타날 평균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경제적 효율성이나 합리적 선택의 가능성을 계산하고 예측하는 경제이론은 인간의 복잡하고 가변적인 삶에 대해 진정한 이해를 제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규칙, 규범, 관습, 상호관계를 틀 짓는 행동방식 등은 시간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복잡화되었고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복잡화된 세계의 불확실성을 “비에르고드릭 세계에서 불확실성”이라고 명명하는데 이는 우리가 외부환경을 완전히 지각하지 못할 때뿐 아니라, 이를 완전히 지각하고 있을 때에도 발생한다. 외부환경에 대한 지각이 불완전할 경우, “특정 시점에서 채택된 제도가 그 시점에서는 최선이었다고(즉 올바르게 지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 인문환경이 변함에 따라 최적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 환경에 대한 지각이 완전할 경우에도 발생한다. 즉 “규칙적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고 따라서 의도치 않은 손상을 낳을 수 있다.(North 2005,33)²⁸⁾

여기에 신자유주의라는 경쟁체제의 확산 역시 보편적 불안의 심리를 가중시킨다.

만약에 이것이 오늘날 안전담론이 상당히 부상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면, 우리는 실제로 완벽하게 안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 안전담론을 시작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안전담론은 기술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성, 경제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파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문적 모색에 대한 강화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행위자를 사후적으로 처벌하고, 이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더욱 근원적인 것은 특정 제도나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논의해보는 일이 중요함을 역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가령 몰카의 발전은 여성의 이미지 착취를 통한 워하드업체의 확장을 가져왔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사회 관계의 변화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3. 베스트팔렌적 안전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사소한 상상.

난민: 안전권과 안전권이 대립하는 상황: 베스트팔렌적 안전권

시민권(국민)과 도시권(이방인)이 대립하는 상황

결국 누구의 안전권인가와 더불어 누가 안전권을 보호하는가가 중요해 짐.

난민이나 이주민의 문제는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이다. 따라서 이는 국가라는 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일수록 난민수용이 어렵다. 도시권을 통해 지역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에도 한계는 있다. 특히 난민과 같은 사안을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재분배의 문제와 직결시키는 시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

그렇다면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다시금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가령 국제적 기금 만들어 난민을 경제적으로 보조하면, 국가 차원에서 난민은 자국민의 혈세를 가져간다는 낙인도 없어지지 않을까?

28) North, Douglass C.(2005),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Chan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전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원배

1. 안전의 사전적 의미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안전한 상태란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인간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뜻한다. 단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잠재 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공장에서의 작업 환경에 대응하여 안전 칸막이, 안전 통로, 안전 장치 등을 설치,
넓은 의미에서는 지구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포함)

○ 즉 안전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하는 복합적 인 대책이 포함된 개념임.

2. 안전사고는 왜 되풀이 되는가?

○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고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음. 그 결과 금전적인 가치 이외의 것은 무시되어 왔고, 황금만능주의를 유발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가치도 후순위로 밀리게 됨.

○ 안전문제를 등한시한 결과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증가함. 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부터 94년도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95년도 삼풍백화점붕괴, 99년도 씨랜드참사, 이후에도 각종 안전사고들이 증가함

○ 특히 삼풍백화점 사건을 보고 외신들은 ‘성장을 우선시하고, 안전은 뒷전’이라고 하였으며 그 당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예측하게 해줌.

○ 발제문에 나와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안에 안전권을 신설하기도 했지만 현 정부에서도 밀양 세종병원 참사,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건 등 각종 안전 사고는 계속되고 있음

3. 대상별로의 안전접근도 필요함

○ 발제문에는 이주민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주로 다루었지만 이주민과 장애인 외에도 젠더, 청년과 청소년, 아동, 노인, 노동자, 환자 등에 대한 접근도 필요함.

○ 여성부분에서는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미투 운동, 그리고 혜화역 시위에까지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성평등 보다는 여성을 보호, 약자라는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 특성화고의 취업률과 정부 재정지원, 기업의 인건비 감소라는 이해관계로 현장실습제도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며, 이는 결국 제주 이민호 군 사망사건과 같은 안전사고로 이어짐.

○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를 겪는 대다수가 하청노동자이며, 정규직 노동자의 일차적인 실수로 하청노동자는 생명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화학약품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로 되어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보장해 주지 못함. 특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간호사들에 대한 태움 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며, 이 문제는 결국 환자에게까지 돌아가게 됨.

○ 마지막으로 발제자의 의견에 덧붙이자면 정상/평균에 그늘을 맞춰놓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도태되며, 도태되길 원하지 않을 경우 극복을 통한 성공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임. (예: 장애 패럴림픽, 쿼어소설, 페미니즘 소설)

○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보험료 문제도 고려해야 될 사안임.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방향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경우는 이슈화되고 있지만 이주민들의 상황은 고려되고 있지 않음.

‘안전’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

민들레 | 장애여성공감

발제자인 량희와 김도현은 각각 <위험한 안전, 불온한 안전>, <위험, 장애와, 국가: 안전할 권리에 대한 관계론적 성찰>이라는 발제문에서 모두 안전을 얘기하면서 ‘위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량희는 우리는 안전을 권리로서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무엇이 위험인지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이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정책가들이 세우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지금의 우리를 ‘불안의 동질성으로 피해자화 된 불안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결국 안전하기 위해서는 ‘보호받는 존재’가 되어 국가의 후견만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즉, 발제자는 “본래 안전의 권리를 요구했던 것은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삶의 폭을 넓히고 자유로운 선택의 가지 수를 늘려나가며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질문을 통해 과연 안전을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김도현 또한 우리가 진정 원하는 안전은 위협이 전무한 상태가 아니며,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누리고 싶은 선택과 결정의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고,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선택에 따른 위협에 얼마나 적절한 대책을 통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즉, 위협이 진정 위협이 되는 이유는 위협 자체가 아닌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무능력, 그리고 위협에 대처할 수 없게 만드는 관계와 조건들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는 결국 정치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다.

발제자들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이에 더불어 본인은 안전이라는 말과 함께 짝지어진 위험과 관련된 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폭력’이 아닐까 한다. 특히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관련해서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기를 제안한다.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성차별적 사회문화에 기인한 왜곡된 성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높은 성평등 의식에 기반한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 등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장애여성이 사는 집에 CCTV를 달아주고, 대통령의 해외순방에서 여성인턴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니 여성인턴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대책이라고 한다. 과연 장애여성은 안전을 위해서라면 사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는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여성인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나? 만약 자신의 사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CCTV 설치를 거부하거나, (사실 CCTV는 폭력피해 자체를 방지하는 것보다 피해 이후 범주자 검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여성인턴이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폭력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책임이라고 해야 할까?

안전을 위해서라면 종종 다른 권리들은 침해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즉, 안전을 위해서라면 장애여성의 사생활이나, 여성의 직업적 성취의 기회쯤은 무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안전이 모든 권리와 욕구를 초월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일까? 안전을 핑계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나 욕구에서 배제되거나 통제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김도현의 말처럼 안전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이기에 무엇이 안전한 상태인지는 그것을 말하는 이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을 가치중립적이거나 인권에 우선되는 무엇으로 상정하려는 것에 경계하면서 안전을 이유로 누군가에게는 인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일시 2018년 8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6시 30분

기초발제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심화발제 김도현(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이현재

사회 타리 (장애여성공감)

속기 랄라

타리 :사회를 맡은 장애여성공감 타리라고 합니다. 인권활동가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변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낡은 틀을 어떻게 변화시켜가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4월부터 이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기초발제를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주제들을 뽑는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획팀에게는 힘들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초발제문에 담으려 했습니다. 각자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할 내용을 심화 발제로 준비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5개의 주제 중 하나의 주제에 대해 지정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자들이 토론회 끝까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마지막 날은 공식 뒷풀이가 있습니다. 저녁시간까지 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안전'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는 평등, 노동, 평화, 연대라는 키워드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안전과 관련해서 인권운동이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한 질문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인권과 안전의 문제는 전쟁/재난 평화운동 안에서 국가안보인가, 인간안보인가라는 질문을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소수자운동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누구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있는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안전이 권리이기 위해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가, 안전을 위해 누구에게 책임이 지워져야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발제자와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안전이 부각되면서 인권이 아니라 국민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국민국가 체계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국민은 모든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부정하거나 타자화 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인권의 언어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초발제부터 들겠습니다. 전날 공지가 갔기 때문에 아실텐데, 심화 발제자 1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셨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인권운동 안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제기해온 맥락 속에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랑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초발제: 랑희 - 발제문 참조>

타리: 소재목별로 중요하게 제기하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와 연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책임을 지적하고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보호주의와 엄벌주의와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 짚어주셨

습니다. 우리의 지향은 명확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안에서 우리 주도를 놓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위험에 대한 측정이나, 대응을 시장화하고 사회적 비용으로 만드는 과정이 불안을 생산하는 기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불안의 공동체에 누가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요? 소속원이 되더라도 딱히 안전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 이런 것을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안전이 인권의 언어이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들이 동반되어야 하고, 안전이 권리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함께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엄벌주의가 폭력에 안전할 권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중심으로 구성된 권리일 때 난민 등은 어떻게 권리를 함께 할 수 있을까 등등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 안전이 뭔지 규정하고 논의를 출발하기 어렵습니다.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 장애인 운동을 하는 활동가인데 장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급적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겠지만 다른 지점을 찾아가겠다는 맥락에서 발제문을 써봤습니다.

<심화 발제1 : 위험, 장애화, 국가 - 안전할 권리에 대한 관계론적 성찰>

타리 : 능력의 문제, 역량의 문제 등 장애운동이 갖고 있는 고민의 측면에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누가 위험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해주셨고, '장애'인은 무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관계 속에 위치한 사람이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대처할 능력을 박탈당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계를 누구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주민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형: 인천에서 3년 정도는 이주노동자들과 활동해오다가, 2~3년 전부터 인천에서 난민신청자들과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어서 와하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아랍여성들과 함께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문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어느 곳이나 있지만 제 경험의 한계로 고용허가제 대상자들과 난민 체류자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화 발제2 : 안전해서는 안 되도록 관리한다>

타리 : 구체적인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국가와의 자리 설정에서 애초에 박탈된 사람은 누구인지 떠올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해놓고 국민이 먼저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가의 목소리만이 아니라는 것도 말해 주셨습니다. 일자리를 보호하는데 국가가 나서라 할 때, 이 복잡해진 상황 안에서 어떤 위치에서 누구와 함께 국가와 관계를 맺고 틀을 짤 수 있는가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발제자가 줄어서 시간이 남겠다 싶었는데 아니네요. 지금 시점에서 쉬고, 지정토론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휴식>

<지정토론1: 이현재(서울 시립대 철학과)>

지정토론을 하게 된 후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는데, 뭐가 불편할까, 왜 불편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맨 처음 문제제기 해주신 랑희 님 글 보면서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성주의도 안전담론을 펼치고, 성소수자, 난민문제까지 제기되는 과정이 안전이슈로 잡혀가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를 건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심리적으로 추동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이야기도 되었지만, 이방인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와 관련이 되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공포경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었어요. 역량 불능이 된 사람이 누군가를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공포 관념에서 시작된 안전담론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의 안전이 더 시급한가, 불능한가, 무능한가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설득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포에서 시작된 안전담론이 타인을 대상으로 한 공포라면 타인을 대상으로 벽을 쌓는 공포는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강화하게 되면 안전담론은 인권담론으로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처럼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답이 될까요? 안전에 대한 논의가 공포에서 시작되었다, 중산층이 이방인에 대한 공포로 벽을 쌓는데, 너보다 더 공포감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먹힐까요? 운동으로 먹힐 수 있을까요? 특정집단에게 더 큰 공포가 있고 무능력함의 조건이 있다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조건으로 뭐가 깔려야 할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공포나 안전 문제 보다는 재난상황인데. ‘자연적인 재해도 인재다’라는 말처럼 과학기술의 혁명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어떤 인간이 어떤 과학기술 혁명을 하게 되는 데 종종 그것이 더 큰 재난을 낳게 되고, 더 큰 재난은 계산과 예측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스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기술발달, 과학혁명과 관련된 재난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경쟁체제가 나온 불확실설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문명사회가 발달하면서 문명이라는 것이 더 큰 재난을 낳는 거라면, 문명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안전할 수 없음에 대응을 하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몰카라는 기술이 발달될 때 이런 재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재난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것이 개발된다고 해서 끝일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술이 개발되고, 또 다른 기술들이 발달 될 것입니다. ‘기술담론으로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구나,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중지부를 찍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안전과 기술에 관련된 안전의 문제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을 하거나,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난에 관련한 방향모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안전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각자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다. 그것이 더 근본적인 것 아닐까요? 특정 기술이 낳는 예측할 수 없는 곤경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기술문명에 따른 재난들도 인식개선과 더불어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정책에 매달리거나, 국가에만 호소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몰아주는 더 큰 재난을 낳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상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국가에서 안전 담론을 이야기합니다. 난민 문제는 특정집단의 안전권이 대립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국민이 먼저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여성이 먼저다’, 페미니즘 안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도시권 안에서 확장 시키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도시권 안에서의 해결에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특정집단에 대한 안전 제공이 재분배의 문제로 귀결되는 신자유주의 안에서 이는 특혜를 받는 집단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면서 싸워서 더 큰 집회를 하는 집단의 손을 들어주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도시권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모든 담론은 베스트팔렌적 틀 안에서 이야기되기 때문입니다. 특혜와 재분배의 이야기가 됩니다. 대립각을 첨예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

습니다. 탈 베스트팔렌적 틀 안에서 인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전지구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재분배의 측면에서 대립각이 날카롭고 대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피해자적 시각 없이 갈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타리 : 여러 가지 상상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술에 대한 고민은 경찰력 감시 활동을 인권단체에서 계속하는데, 중국 같은 곳에 사거리에 서 있으면 불심검문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이력이 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장애인을 위한 보철기술과 전쟁기술로 연결되고, 정보민주화의 기술과 정보 통제의 기술이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발전에 대한 논점이 있었는데, 활동하면서 고민해왔던 것들을 나눠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분배의 문제,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의 기술로 프레임이 이동하는 측면에서 재분배의 문제는 안전과 연결되어 간다' 이 측면도 함께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정토론2: 하원배>

저는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안전사고·사건에 대해 포괄적 측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안전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처하는 대책이 수립되는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되풀이 되는 과정은 개발 위주의 정책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 법도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다른 안전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주민과 장애인 외에도 젠더, 청소년, 아동, 환자 등에 대한 복합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여성 관련부분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성평등보다는 여성을 약자, 보호자로 보는 경향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제도는 학생들을 착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위험의 대상화 되고 있습니다. 원청이 책임을 지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로 되어 있고, 그 내에서 경쟁하도록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호사 태움 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며, 의료사고까지 이어집니다. 정상이나 평균이라는 범위에서 도태되길 원하지 않으면 극복을 통해 성공하라는 스토리에 맞춰져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기보다는 극복을 통해 성공하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타리 : 안전사고가 어떤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대상별이라 표현해주시긴 했지만 지적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제안해주시고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상성에 대한 강요가 문제로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공감되면서도 왜 그것이 퀴어소설, 페미니즘 소설까지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후 설명을 붙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정토론3: 민들레(장애여성공감)>

성폭력 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들레입니다. 장애여성 공감이란 곳에서 성폭력 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 안전과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공감이었습니니다. 안전이라는 얘기와 짝을 이루는 것이 위험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폭력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니다. 폭력 중에서도 젠더에 기반한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에서 안전하게 되는 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니다.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짝으로 나오는 게 피해자 보호, 예방, 예방 교육 이야기 되는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안전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어떻게 안전으로 이야기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폭력의 피해자들을 보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집단이라는 부르곤 합니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구분되는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혼자 사는 여성, 어린아이, 소위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잠재적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상정됩니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대책은 CCTV를 달거나 하는 거지만 그 ‘보호’라는 것이 무엇이지 묻고 싶습니니다. 책임의 피해는 폭력이 발생한 가해자가 아닌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건가 고민을 하게 됩니니다. 안전에 대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니다. 앞에서 불안의 동질성으로 피해자화 된 불안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안전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을 불가능케 하는 게 아니나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니다. 안전을 통해 자유롭고 싶은 게 아릅니니다. 안전 자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 안전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안전을 위해서라면 참아야 해, 가지마, 하지만 통제하고 배제된 순간들이 많습니니다. 통제되고 배제된 이들은 여성이거나, 아이거나, 청소년이거나, 장애인입니니다.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통제하면서 모든 것의 합리적 이유는 널 위해서야 라고 합니니다. 안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니다. 모두가 안전만을 원하는 것은 아릅니니다. 그렇다면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누구에게는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니다. 안전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인간으로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모든 권리에 우위에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정하지라는 생각이 함께 듭니니다. 진짜 난민 가짜 난민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미투, 가짜 미투 이야기도 나오습니니다. 진짜 피해자냐, 가짜 피해자냐. 꽃뱀이나 성폭력이나. 안전, 보호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구분 짓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때 진짜 안전을 원하는 것인지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니다. 안전하다고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통제함으로써 과연 그 통제를 통해서 이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이 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니다.

타리 : 성폭력 상담, 현장에서 든 고민들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니다. 안전에 압도당한 채 살아야 하는 사람, 그것이 정체성이 되는 사람, 그 정체성으로 호명될 때 보호되어야 하는 사람. 그 이야기들이 공포의 기제들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니다. 안전이 권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고. 안전과 더불어 도전하고 실패를 감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니다. 성관계할 자유가 있다면 성관계에 실패할 자유가 있어야 하고, 실패할 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라고 묻게 됩니니다. 한번 잘 못됐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진다면 성관계를 할 수 없습니니다. 국가가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국가의 민낯, 본질을 어떻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니다.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배신할 때, 국가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권의 운동의 언어로 만들고, 그동안 없었던 언어를 만들어 낼 힘을 뭘까. 다른 자원은 뭘까. 언어가 있다면 뭘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니다.

참가자 :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그림책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니다. 갑자기 그림책이 생각났어요. ‘감기 걸린 물고기’라는 책입니니다.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에 대항해서 물려다니는데, 큰 물고기가 소문을 냅니니다. ‘빨간 물고기 감기 걸렸데.’ 그런 소문에 커다랗게 무리를 지어 다니던 물고기들이 각자 색깔로 모였습니니다. 또 소문을 내니, 또 내쳐지게 되고. 결국에는 물고기 집단이 흩어지게 된 거죠. 다 잡아먹히게 되고 아귀는 덩치가 커지게 되었습니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에 이 그림책이 응축 된 듯 합니니다. 공포는 무엇일까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보육운동하다 쉬면

서 인권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전의 문제가 물리적 문제라 생각했지 심리적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심리적 안전을 이야기하면서 범주가 커지더라고요.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린이집 CCTV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에는 몰래카메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국가가 CCTV를 달게하고, IPTV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CCTV 돌려보는 날을 갖겠다고 합니다. 기계로 갈라놓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관계를 만듭니다. CCTV가 없다면 그 현장은 어땠는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서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교사, 원장 등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연대감을 갖게 되는데, CCTV는 갈라치기를 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기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모여보자, 함께하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과 힘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이크를 대줄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 언론이든, 공동체로서 연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리 : CCTV 문제가 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임은 확실합니다. 참여자중에서 발제 토론중에 궁금하신 내용 질문 해주셔도 좋고, 의견을 보태주셔도 좋습니다. 발제자들이 추가적으로 할 이야기는 참여자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참가자 : 타리님께서 성관계에 실패할 자유를 이야기 했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타리 : 성관계를 안전과 연결한다면 내가 원하는 상대가 안 해주거나, 피임의 실패, 소문이 나거나. 내가 원하는 성관계가 아니었을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개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여겨질 수 있거나 위협의 문제로 연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회적 장치가 연결되어 실패를 복구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안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때 각각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전이라고 했을 때, 엄마들이 떠올리는 것은 먹거리 안전, 가슴기 문제 등 자녀들의 안전을 떠올리고, 큰 자녀가 있다면 밤거리 안전, 성관계 위험 등을 떠올립니다. 난민 문제를 봤을 때 난민들의 성폭력을 갖고 협박을 합니다. 음모론적 가설이지만 여성을 길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종의 음모가 작동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험을 강조하고, 피해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 안전한 장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강조되는 위험한 지대에 대한 담론을 받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게 맞는건가 고민했습니다. 장애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권리를 이야기했는데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누군가를 향해서 처벌,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게 되는 방식인가 고민됩니다. 어릴 때는 성폭력이 더 심했던 것 같은데, 언론이 다루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성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저절로 된 것일까요? 집단적인 사고방식이 물고 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라든가 지배적 미디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집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랑희 : 고민하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전문제가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문제여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맨 난민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난민들은 위험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 하는 게 얼마나 무력한
 가 생각하게 됩니다. ‘난민협약 가입국’이라는 타이틀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요? 공포가 극대화 되어 있고. 이성의 영역, 설득의 영역으로 다가가지지 않습니다. 공포는 재생산 되고 확대됩니
 다. 진실만 있지 않고 가짜도 섞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맨 난민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강
 력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늘 나온 게 ‘처벌을 높여라’였습니다. 인천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
 건에서 ‘소년법이 문제다. 소년이 얼마나 위험하냐.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면 처벌을 해야 한다’라며
 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중요치 않게 여겨집니다. 이 사회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담론이 확장됩니다. 피해를 받는 아동
 들이, 여성들이 확장되고 있기에 어떻게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안전의 문제를 법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려는 한 측면과 기술의 영역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에 대한 의존
 도가 높아지는 거죠. 안전, 특히 안보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기술의 문
 제로 바라보게 되면 그 안의 관계 문제는 삭제되고, 기술로 관계를 걸러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건이 발생
 하면 그 기술의 허점을 이야기하며, 기술을 보완하게 됩니다. 경계의 안보화로 가고 있는데, 국경의 문제, 도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경계 안보화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국가, 도시가 안전할
 수 있는가. 관계의 문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기술이 안전을 담보해 줄 것이라는 기대
 감을 갖습니다. 산업화 되고, 기술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영역으로 되면서, 전쟁과 군대의 문제로 파생된 기술
 이 활용되게 됩니다. 사람의 문제를 삭제하면서 이 문제는 신체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신체를 통
 제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국경을 넘는 신체, 도시를 넘나드는 신체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내 생체
 정보로 내가 나인 것을 확인합니다. 문제는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야 한다. 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면서 내가 안전한 사람인가를 판단합니
 다. 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페이스북까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축적되어야지만 안전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보증되고, 그것이 어느 국가, 도시,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 하기가 쉽지 않다. 불편함도 없고, 효율적이고, 특히 위험한 가짜난민을 걸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기술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이 안전을 담보할 수도 있다고 할 때 어떤 데이터가 축적되는가, 어
 떤 알고리즘인가 이런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만든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안전과 관련된 트
 렌드라고 하면서 기술로 경계의 안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장소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세계100대 재난 회복력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트렌드는 회복력입니다. 위험은 없
 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재난과 재해가 올 수 있습니다. 늘 대비해야 하죠. 재난을 겪고 나서 생
 존하고, 극복하고, 성장해야해 라는 프레임 안에서 회복력 도시로 선정된 것입니다. 도시 자체를 그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뿐 아니라 회복하는 도시로 만들려는 것이죠. 이 안에 존재하는 사람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
 습니까? 박원순이 한 것은 서울역 고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를 환경적으로, 사람적으로 걸을 수 있는 도시
 를 만들 거라는 거죠. 자연친화적, 인간친화적 도시로 만든다고 합니다. 회복력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개발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서 쫓겨난 장애인, 홀리스들도 있습니다. 도시는 도시 안에 존재하
 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재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이야기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접근해서 공동의 구성으로 이야기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무엇이 이야기되고, 힘
 을 실어주고 있는지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 처음에 안전이라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이야기하려는 건가 생각했는데 안전이 너

무 광범위 한 것 같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평등을 보장받는 것이 안전으로 가는 것,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안전을 이루는 것이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을 인권의 문제로, 운동의 의제로 삼아야 할 키워드 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단어들이 있고, 안전은 안보와 더불어 보수의 언어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재난, 사고를 겪으며 사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전의 이야기를 인권적으로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면 알겠는데, 계속적으로 가져갈 인권운동의 언어로 가져 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참가자 : 바로 연속토론회의 주제로 '안전'을 뽑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안전'하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국가형벌권 강화되는 것 관련하여 워크숍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마주하면서 우리가 안전이라는 말을 써도 되나 이런 논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엄과 안전을 가지고 이 참사를 겪어보자 하면서 안전의 의미망들이 새롭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국가로 포섭해 냈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떠올립니다. 어느 정당도 안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최근 대중으로부터 난민에 대한 안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주제의 출발선이었다. 이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정리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위험과 연관 지어서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서 선정한 과제에 오늘 이야기한 모든 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해방을 위해 싸운다고 할 때, 폭력으로부터 해방, 전통적인 인권의 담론으로는 작위와 부작위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야기한 폭력에 맞서는 안전에서 여전히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디스에이블링(disabling)에 맞선다는 것을 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스에이블링은 폭력으로부터 보호가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이주민의 경험에서 확인되듯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단절 시키는 것이 디스에이블링일텐데 그것을 하나의 전선으로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주민, 난민을 정체성으로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국가를 세력화와 물질적 제도화를 둘러싼 싸움으로 본다면 여성은 성별이 여성인 사람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성별을 지정당한 사람으로 보듯이 난민, 이주민이라는 신분을 규정당한 사람들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을 디스에이블링 시키는 조건이라는 측면으로 앞으로 다가올 난민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게 비 베스트팔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국가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모호한 상황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조난자들, 탈북이주민들이 정체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의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의 틀을 재구성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참가자 : 폭력으로부터 적극적인, 디스에이블링으로부터 작위적인 것. 그건 평등으로 이야기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은 무엇으로부터, 어떤 안전인지 물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길을 걷는 것을 위험하다 느낀다거나, 성폭력에 노출되어 공포스럽다 하는 것과 세월호 참사에서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다. 이 둘은 안전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접근의 방식이 다릅니다. 70,80년대 국가폭력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안전이 아니라 자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말을 쓴 맥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위협을 느끼면 모두 안전으로 이야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안전'이라는 말이 재기되었던 재난 참사의 문제가 있었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의 침해에 국한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넓혀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위험하고 두렵고 힘든 모든 상황의 보장책이 안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쓴 권리 언어가 객체화 됩니다. 안전 프레임으로 규정되면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참가자 : 여성안전귀가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폭력 안할 사람만 있을 것인가. 분명

히 여기는 많은 CCTV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폭력이라고 말하면 무섭다고 느껴집니다. 여성혐오를 혐오로 말하지 않고 차별이라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안전이라는 말을 썼다가 보다는 이 사회에 먼저 안전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껏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안전이란 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측면에서 오늘 토론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것에서 안전이라는 말을 쓰면서 예방을 이야기 하는데.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특수학급 아동들에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예방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이들은 잠재적 피해자니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떤 피해인지 알게 해, 피해를 당하면 신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재적 가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맞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교육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은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로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가진 것이 없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그 마저도 당신의 책임이라 묻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타리 : 안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는 포인트가 질문을 통해 나온 것 같다. 한국에서의 권리의 언어가 변하는 상황이 있고, 그것이 안전이라는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입할 전략이 무엇이고, 드러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이 구체적인 적대를 지우거나, 추상화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이 있었고,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필요한 언어이긴 하지만 위험한 언어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폭력이 구조적 차별을 통해 드러난다고 했을 때 안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 한계라고 지적되는 추상화, 국가와의 문제는 완전히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참가자 : 왜 안전 담론이 팽배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온라인 문화와 관계있다고 봅니다. 오프라인이 주된 시대였을 때와는 퍼져나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온라인은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대면하거나 몰카에 찍히지 않더라도 공포감이 확산됩니다. 안전담론은 온라인 특성상 이미지가 줄 수 있는 자극성, 공포와 맞닿아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성폭력 횡수가 과거보다 늘어난 것이라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논평, 자극적인 말들을 들었을 때 느끼는 신체적 경험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안전담론은 매체를 통해 확산 되는 것 같습니다. 무능화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담론이라면 주체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강화가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맡기는 역량강화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역량강화입니다. 왜 무능력 담론인가요? 무능력화, 능력강화 라고 이야기 했을 때는 유용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참가자 : 우리가 이것을 운동에서 이야기하려면 명확한 정의 내지는 정의의 구획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넓고 다양한 이야기를 안전으로 풀다보니, 난 그 안전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능력이라 하는 것, 미류가 이야기한 폭력에 맞서는 안전, 무력화에 맞서는 안전 이야기 했을 때 폭력이라는 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도 학습된 무기력이 폭력을 수용하게 되는 큰 이유라 생각하는데 무능력에 대응하는 것으로 인권의 언어가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구획으로 안전의 이야기로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별 때문에 생기는 안전의 침해라고 명확히 나눠지면 좋겠다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위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양한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안전이라는 말이 관계와 맞물렸을 때 안전한 공간에 대한 감각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연대와 환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도현 : 안전이라는 것은 치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보담론 안에서 지향점을 삼거나 키워드를 삼은 것은 아는데 흐름과 대중담론 안에서 커져버렸고, 인권은 이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가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2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평등해야 안전하다는 담론을 인권적으로 잡아나갔는데 지금도 유효한 명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져나가야 할 상황에서 개입지점을 다르게 틀 수 있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일상의 위험, 폭력이라 이야기 되었는데, 저는 불안이 떠올랐습니다. 삶의 불안정성, 삶이 불안해지고 있는 시대에서 대중들이 반응이 이 시대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이라는 말이 대중에게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가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재님이 이야기하신 굉장히 다른데 발생하고 있는 문제지점을 전위시키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안희정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것은 제대로 된 입법이 없어서인데, 우리도 국제적인 것이 없어서 그것이 생기기 전에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의 피해 때문에 난민을 받지 않는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싸우며 요구할 수 있는데,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중전략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 다른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박정형 : 국제적 기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경제적인건 부차적이라는 점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먹히는 것이 경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듯 합니다. 한 나라의 측면이 아니라 국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난민들은 전쟁을 멈추는 것을 원합니다.

참가자 : 선진국이나 유럽국가들이 난민들을 떠 맞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독일 정도나 부담하고 있지, 주변 국가들을 서구 선진국이 지원해주면서 난민을 떠안고 있습니다. 기금 등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닌 듯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시민권을 넘어서는 세계성, 인권이 정체로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국가를 넘어설 수 있는가. 국경을 넘어설 수 있는가. 권리에 있어서는 시민권의 범위를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국민을 인간으로 바꾼다는 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비자 문제에도 결국 부딪치지 않을까요? 국가의 경계라는 것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본질적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듭니다. 랑희 님이 이야기한 개인의 주체의 문제, 국가의 역할을 풀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고 난민은 국가가 공포를 조장해서 생긴 것이니까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촉구해야 하는 지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엄벌주의를 강화하고, CCTV설치해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기해야 하지만 국가의 의무를 어떤 면에서는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인권적, 반인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제기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참가자 : 오늘 주제가 저의 고민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곤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인권, 여성과 난민의 인권이 배치되는 것처럼 설정되면서 너무 괴롭기도 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풀까 고민이 되었는데 여기서 안전과 이야기 하는 측면과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성폭력 수사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내가 도촬되어 영상이 온라인에 돌아다닐지 모른다는 공포가 극대화 되면서 국가가 제대로, 경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서 문제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국가가 대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도 한 측면이지만, 다른 한 측면은

올라오는 영상을 삭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카르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얻혀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맥락에서 위험을 얘기할 권리를 이야기하면 잘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듯이 심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경험할 권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해방을 위한 안전의 기준, 가치들이 함께 이야기 되지 않고서는 공감을 얻기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피해와 피해자는 다르고, 약자들끼리 고통을 경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글로 설명하는 것하고 실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다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들에 가보면 사회가 외면하는 것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당연한 인권운동의 과제 중 하나로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가자 : 저는 그런 점에서 위험을 겪을 권리를 이야기한 부분을 에이블하게 될 권리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험이나 모험을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마주했을 때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관계를 통해 가능한데, 국가의 단절을 통해서 이를 무력화 시킵니다. 예맨 난민 사건을 봤을 때 여성들이 '우리는 위험하지 않아요'라고 하고, 공포가 조장된 상태가 위험하다고 이야기 했다면 국가가 가짜 뉴스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정책 요구들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에 대해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의 반대말이 불안이 아니라 불안정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안정성의 문제에 대처했을 때 어떻게 에이블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관계와 제도들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담론을 가져야 할까요? 전장에서 인간의 존엄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참가자 : 위험을 경험할 권리라는 것은 위험을 즐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나 장애인처에게 주로 하는 말 '하지만, 네가 힘들어져'라고 하면서 애시 당초 차단되는 도전에 대한 가능성,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듯합니다. 안전에 대해 도돌이표로 돌아오는데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참가자 : 안전이라는 것이 인권의 언어로 이야기 되는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안전담론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 할 때 안전은 국가의 언어였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보장, 안전장비 등 오랫동안 국가적인 용어로 쓰였습니다.

랑희 : 프랑스혁명부터 사용된 언어였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안전을 요구하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흐르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가 변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왕정이나 폭압적인 전의 폭력으로부터 국가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자라는 취지였다면 시간이 흘러서 국가가 우리에게 개입하고, 자유를 억압하면서부터는 국가가 손대야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되는 동시에 테러 등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의 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것인가, 어떻게 규율에서 벗어날 것인가. 현재에는 안전의 문제가 전 사회를 휩쓸면서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 요구해야 할 안전은 무엇이지를 묻고 있습니다. 분명히 국가가 해야 할 몫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봅니다. 국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분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위험은 무엇 일까요. 자살물은 위험의 공포로 인식되지 않는다. 어떤 것은 위험으로 인식되고, 어떤 것은 간과 되고 있지 않은가요? 난민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전이 아니고, 차별, 배제, 인종주의라고 하고 싶습니다. 안전이 드러내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결을 다르게 촘촘하게 이야기해내면서 무엇이 안전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

일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타자화, 이미지화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권력과 패권을 가로채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이웃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이웃이 된다는 것은 권리를 보장해야 할 존재가 되는 것,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박정형 : 정말 배워가는 것이 많습니다. 국가가 관계성을 구획시키고, 절연시키느냐는 더 고민해야 할 측면인 듯합니다.

타리 : 다른 지정토론자들도 이야기해 주세요.

이현재 : 언제부터 시민사회가 안전에 대해 이야기 되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자면, 재분배투쟁이 가장 양극화 되었을 때 사라지고, 정체성 투쟁, 신사회운동 등 운동의 조류들이 등장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안전의 문제를 평등의 문제로 연결 해왔는지 고민해 왔습니다.

타리 :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이야기처럼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지금의 한국사회 자체를 이야기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예전 언어, 지금 언어, 소통방식의 변화, 운동의 대응방식 변화를 통해 이야기 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인권운동 자체를 어떻게 해야하지 멍해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 이번 주 목요일엔 평등, 재분배투쟁, 공정함, 평등에 대해서 한국사회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인권운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광의 역량과 안전의 관계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위험은 모두에게 닥칠 수 있지만 위험의 대응은 동일하지 않다.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불평등 때문인데, 위험의 결과 역시 사회적 계급, 젠더, 인종,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28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중 1차 토론회인 ‘위험한 안전, 불온한 안전’에서 기초발제를 맡은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의 말이다.

이날 토론회의 기초발제는 최근 내가 한 기사를 읽고 느꼈던 안도감의 정체를 고민하게 했다. 기사에 따르면 사람의 방광은 생각보다 역량이 커서, 자주 소변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아무리 소변이 참아도 오줌보가 터지는 일은 없으니 그 역시 안심해도 된단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공중화장실은 가기가 영 꺼려지던 차에, 의외로 쓸모 있는 기사였다. 그러다 문득 억울해졌다. 나는 왜 방광이 가진 의외의 역량에 기뻐하며 외출 시 용변을 참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자구책으로 허리춤에 간이 화장실이라도 묶어 다니는 어이없는 상상도 해본다. 기술이 더 발달한다면 손바닥 사이즈만큼 접을 수 있는 간이용 화장실을 개발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마치 던지면 퍼지는 텐트처럼 말이다. 그 발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말이다. 이런 황당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여성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자유롭게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안전의 문제이기만 할까. 최근 경찰은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장실 벽면에 난 구멍을 메울 스티커를 나눠주거나 몰카 설치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모습을 홍보했다. 스티커 몇 장으로 잣아들 불안과 공포가 아닐 텐데, 정부의 노력이 위험의 근본적인 원인을 포착하지 못하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일까. 예컨대 직장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퇴근 시간 이후 이성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연락을 금지했다는 경찰청의 ‘노오력’은 단언컨대 권력으로 하여금 직장 내의 부당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성찰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안전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권력의 위계와 평등의 문제와 연관되는데, 이를 신체의 안전 혹은 위험의 문제로만 연결 지으려고 하니, 국가에게 바랄 것은 그저 내 안전 혹은 안위를 위협한 개인에게 높은 형벌을 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로 수렴되었다. 그래서 토론회 내내 ‘안전’이 과연 인권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자문했다. 평등이라는 인권의 언어로 충분히 안전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심화발제를 맡은 노들장애학공리소의 김도현은 「위험, 장애화, 국가: 안전할 권리에 대한 관계론적 성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위험이 불가피한 문제라면, 정작 문제는 위험이 아니라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무능력이라 주장했다. 위험에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관계 내지 조건이 위험을 재난과 참사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관계, 즉 차별적·억압적이고 불평등하며 부당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를 단순히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경계되고 제어되어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인간이 구성해 내는 정치체와 같은 것으로 보고, 그 안에 존재하는 다수자와 소수자 간의 (역)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비로소 국가의 변환을 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전히 잘 모르겠다. 안전이 권리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 하지만 이번 토론회가 새겨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국가라면, 공중화장실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여성들의 공포가 스티커 한 장으로 사라질 거라고 감히 상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말이다. 또한 손바닥 크기로 줄어드는 접이식 간이화장실을 개발하는 것이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결코 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여성들에게 요구되지도 않을 것이다.

후기 2

1강 위험한 안전, 불온한 안전

림보

5회에 걸친 토론회를 다 다녀왔다. 사실 조금은 숨차다 싶었지만, 안전 - 평등 - 노동 - 평화 - 연대라는 주제를 다룬 토론회에서 함께 나눈 논의들은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연결되었다. 그 연결이 퍽이나 흥미진진했기에 즐거웠다. 이 자리를 기획하느라 애쓴 기획단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1강 안전 토론회의 후기를 써달라는 요청을 너무 흔쾌히 받았나 하는 후회를 한다. 좀 일찍 썼어야 했는데, 전체 토론회 일정이 마무리되고, 토론회 덕분에 생각의 타래가 복잡해져서인지 후기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다.

‘안전’이라는 주제는 인권운동과 엮어서 살필 것이 너무도 많다보니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려웠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국가나 기업이 안전을 내세우고 안전제일을 말할 때, 안전을 빌미로 감시와 통제를 마주하게 되는 국민/노동자가 있다. 오히려 이럴 때 국민/노동자는 내가 안전하기 위해 국가나 기업이 해야 할 것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한국 근현대사의 경험이 확인해주는 바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세월호 참사 이전에 안전을 인권의 언어로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안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무래도 ‘안전’을 요구하는/말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는 중요해 보인다.

랑희의 발제는 안전을 둘러싼 여러 질문을 정리했다. 먼저 위험을 누가 결정하고 관리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누구 앞의 위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 어떤 위험을 중대한 것으로 판단하는가’의 문제라고 했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존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은 위험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차이 즉 사회경제적 처지와 조건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누가 위험에 특히 더 취약하고 왜 위험 예방에서 배제되는지 살피게 한다. 위험 상황에서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안전관리자의 권위에 집중되어 있고, 재난피해자는 관리자와 매뉴얼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 존재이기만 할 때, 우리가 지워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재난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주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평등과 연대에 기반하지 않고 안전을 고민할 때 우리는 산산이 흩어진 ‘불안한 우리들’에 머무르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담은 발제문은 마지막으로 보호자를 자처하는 가부장으로서의 국가를 인권운동은 어떻게 봐야 할지 묻는다. 국가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위험스럽다. 위험과 안전, 억압과 해방, 권리의 회복 등 안전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르고 무력하게 만드는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아닐 텐데 말이다.

이어진 김도현의 심화 발제에서 '안전 앞에 사람들을 무력하게 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와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두가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제안이 반가웠다. 특히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무능력'에 대한 논의를 인권운동이 더 풍부하게 해보면 좋겠다. 종종 인권교육을 하면서 폭력을 용인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학습된 무기력'을 얘기하게 된다. 뭘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여기며 힘을 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와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무능력 - '아무것도 할 수 없음' - 이 어떻게 맥락으로 통하도록 할 것인가. 인권의 실현을 요구하는 주체로 권한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가 가르치고 주입한 담론들과 싸우는 과정을 거친다. 소위 '학습된 무기력'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권한강화로 나아가기 힘들다. 그러나 힘을 내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다시 마주하게 될때 권한강화는 더욱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어떤 존재가 무력해지는 과정에 대해 나는 관심이 많다. 인권운동도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어쩌면 정말 다루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관계로서의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기력과 무능력 사이의 맥락을 더 찾아보자.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피해 당사자의 옆에 함께하는 인권운동이 국가와 같은 울타리가 될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 않을까. 국가를 바꿔야 한다는 명제는 너무나 선명하고 당위적이지만, 어떻게 그 멀어만 보이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할까.

문제적 인권, 인권의 문제

평등은 평등으로 가고 있는가

8월 30일 (목)

세계인권선언70년
인권운동더하기 연속토론회

평등은 평등으로 가고 있는가

미류 | 인권운동사랑방

평등을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정치적 지향으로 내세우는 세력도 없다. 한국사회의 기이한 풍경이다. 70년 전은 오히려 달랐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사회로 평등에 대한 열망이 쏟아져 나왔다. 한반도 이남에 수립된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걸었지만 체제 경쟁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등을 무시할 수 없었다. 제헌헌법은 평등의 관점에서 꽤나 앞서나간 조항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남녀 동권’이나 노동자의 ‘이익 균점권’ 같은 내용이 명시되었다. 그러나 독재정권의 반공주의는 끝내 평등을 질식시켰다. 평등은 불온한 말이 되었고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는 운동은 흐름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문재인 정권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취임 연설 중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말은 시대의 좌표 중 하나로 ‘평등’을 등극시켰다. 역대 대통령 중에도 취임하면서 평등을 말하는 사람은 있었으나 양성평등 정도의 언급이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물론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고 운동이 불평등에 저항하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덕분이다. 그런데 정작 평등이 사회적 가치로 제시되는 시대에 운동은 평등에 대한 열망을 조직해내고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다.

채용 ‘차별’은 사라질까

문재인 정부 들어 채용비리와 차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은행권의 채용 차별은 너무나 유치해서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었다. 남성을 더 뽑기 위해 여성을 일부러 탈락시키거나 여성의 합격 커트라인을 높이거나 하는 식이었다. 특정 대학 졸업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순위를 조작하기도 했다. 지난 6월 5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고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다.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이미 필기시험을 도입한 은행들도 있다.

한국에서 평등이 쟁점으로 부각된 대표적 이슈 중 하나는 군가산점제다. 군가산점제 역시 채용 차별 문제였다. 군가산점제 논란은 평등에 대한 감각보다 더 빠르고 폭넓게 ‘역차별’ 담론을 만들어냈다. 군가산점제를 물리친 지 20년 만에 블라인드 채용이 시도되고 있다. 가시적인 구분과 분리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편견’까지도 걷어내자는 도전은 평등으로 정주행할 수 있을까? 블라인드 채용도 역차별이라는 불 멘 소리들이 있지만 역전시킬 만큼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마음을 놓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블라인드 채용은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인 동시에 ‘직무능력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인 ‘직업기초능력’, 해당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지식, 기술, 태도)인 ‘직무수행능력’ 등”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직무능력은 과연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일반적 남성 평균에 해당하는 신장을 가진 사람을 위해 제작된 사다리에서의 등판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여성에게 불이익을 준 소방관 구직 절차”를 차별로 판단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경찰과 소방관 채용 과정에서 여성의 체력 평가 기준이 남성보다 낮은 점을 벌써 문제 삼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은 ‘똑같이 시험 볼 권리’에 멈출 수도 있다.

공정함에 갇힌 평등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오랜 요구가 현실로 전환하려는 시점에 정작 노동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방안에 관한 공청회장에는 ‘결과의 평등 NO 기회의 평등 YES’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임용고시를 본 ‘정교사’뿐만 아니라 임용고시 준비를 하는 ‘예비교사’들까지 나서서 반발했다. “우리 아이를 자격 없는 교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학부모’들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다가 잠시 휘청거리게 한 이슈는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문제였다. 한국사회에서 대입시험제도가 극도로 민감한 제도인 것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서 유난히 교육개혁이 표류²⁹⁾하는 이유도 공정함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반칙과 특권’을 넘어선 공정함에 대한 기대는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었다. 적어도 공정함에 대한 열망은 평등을 향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별을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힘으로 현현했다. 공정함에 대한 기대가 능력주의로 수렴되어 오히려 평등의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런데도 공정함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미를 묻는 말들은 많지 않았다.

‘비정규직’이라는 축적구조를 정규직과의 차별이라는 현상-고용형태의 문제-로 설명해온 운동의 후과일 수도 있다. ‘차별’에 대한 감각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당해야 하는 현실의 부당함에 대한 공감을 이끌기도 했으나 공정함 앞에 멈춰버렸다. 정규직이 고용형태를 넘어 신분이 되어버린 시대에 시험 결과가 신분을 증명하게 됐다.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 것이 평등으로 여겨지게 됐다. 다시 평등으로 한걸음 내딛기 위해 운동은 어떤 말들을 준비해야 할까?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평등을 가로막는

공정함이나 기회의 평등이 평등의 모든 의미를 점령할 때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약자를 향하기 쉽다. 동등하게 응시할 자격은 주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개인이 책임져야 할 때 분노는 방향을 잃게 된다. 경쟁에 시달리고 낙오가 낙인이 되는 현실은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여성혐오에 대한 분석들도 익히 지적하는 바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의 여성혐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난민들에게 쏟아진 분노에는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공감대가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가뜰이나 불안정한 사회에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라는 공감대를 얻어 확산된다.

혐오를 지적하며 평등을 외치면 ‘역차별’이라며 으르렁거리는 말들에 부딪친다. 여성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이 ‘선거에서 여성 정책은 있지만 남성 정책은 없다’며 남성이 오히려 차별당한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남성/비장애/이성애/백인/비청소년(등)이 이미 보편인간이므로 그들이 겪는 문제는 ‘인권침해’나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29) 노동의 영역에서는 아예 역행하고 있다.

는 점은 간과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동성애자 인권이 보장되면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이 유예 될 거라며 역차별이라고 한다.

차별을 집단 대 집단의 문제로 바라볼 때,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누군가의 권리를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시키는 조치들은 특정한 집단(‘소수자’)의 지위를 높이는 구제 조치로 이해된다. ‘나도 힘든데 왜 재 먼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사회, 입직 경로가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여기는 사회는 이미 여기 왔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차별이 정체성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도록 ‘모두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모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게 되는 첩바퀴를 돌게 된다. 정체성의 정치를 경계해야 하지만 정체성의 정치를 경유하지 않을 도리도 없다.

누구도 ‘보편인간’일 수 없으므로 ‘남성’이 누리는 지위가, 성별이 남성인 모든 사람들의 지위를 보증하지 않는다. ‘남성’이 역차별당한다는 인식으로는 성별이 남성인 개인들의 상황이 개선되지도 않는다. 성소수자 인권이 제한당할 때 장애인의 인권이 증진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기업에서 정규직 노동자도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의 권리를 부정하는 말들에 길들여지며 정작 자신의 권리 침해를 수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권’은 누구의 손에 쥐어질 수 있을까?

평등에 대한 도전

평등이 한국사회에 시대적 좌표로 겨우 명함을 내미는 때 전세계적으로는 평등에 대한 백래쉬가 거세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고, 죽어도 누가 눈길 한 번 안 주는 사회. 만성적인 실업과 열악한 일자리가 강요되는 사회에서 ‘능력’이 우연을 포장해주었고 정당화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는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되어버렸다. 안정적인 일자리, 적당한 임금, 휴식 등이 ‘능력 있는’, ‘노오오력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전리품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체성이 호출되고, 그것에 맞서는 투쟁은 역차별 논란에 휩싸인다. 차별에 저항하는 투쟁이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조직하는 운동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평등이 껍데기만 남은 시대적 좌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로 다시 쓰려는 도전을 하고 있다. 특정한 정체성의 자리에 지정되어 주어진 조건에서만 살아가기가 허용된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다시 정의하려고 한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어떤 정체성의 자리로 배치하는 폭력이 구조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동등한 사람들이라는 감각에 기초한 구조를 만드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차별은 언제나 물질적이다. 차별금지법제가 실제로 고용과 노동의 영역에서 주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아도 그렇다. 그러나 여전히 정체성에 따른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은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여성 혐오의 시대적 배경으로 신자유주의를 지목하며 ‘청년’의 현실을 말할 때도 유사하다. 모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남성)청년들을 좌절하게 했고, 좌절을 반영한 혐오는 여성들을 향하게 됐고, 여성들의 분노는 여성혐오에 맞서는 흐름을 만들었고, 놀란 남성들은 역차별을 주장하며 더욱 여성을 혐오하게 됐고……. 이런 접근은 (여성)청년들이 살아내는 세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 혐오에 맞선 투쟁은 인정을, 청년실업에 맞선 투쟁은 분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때 우리는 평등으로 한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이다.

불평등에 맞서 변혁을 기획하던 해방의 정치학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 지배권력은 언제나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권리를 부정한다. 권력이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들이 ‘차별’을 지탱한다. 그러나 ‘차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모두의 권리를 지킬 수는 없다. 권력은 ‘차별’을 통해 집단을 구분하며 존엄을 분배하지만, 분배할 존엄을 권력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차별’을 가능하게 한다. 정체성으로든 능력으로든 우리가 분배의 대상에 머무를 때 평등은 미끄러진다.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지배권력에 맞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힘은 무엇일까? 결과가 평등할 때만 결과는 정의롭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걸음 내딛을 자리를 만들어보자.

능력주의와 차별의 동학을 어떻게 깰 것인가

공헌 | 대학입시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공교육이 차별의 생산지라는 모순

특정한 차별이 다른 여러 차별들의 뿌리나 원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초기에 체험한 차별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차별일 가능성은 높다. 사람들의 생애 주기 속에서 차별 경험의 출발점에는 공교육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교사나 학생 개인의 편견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학교교육의 원리 자체가 정상과 비정상을 분류하고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서열화하여 차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학교는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 따라오지 못하며 학교가 요구하는 학습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역할을 해왔던 바 있다.³⁰⁾

학교교육이 만들어내는 차별의 핵심에는 능력주의(meritocracy)가 있다. 모두에게 제공되는 학교교육은 그것만으로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간주되며, 학교교육 안에서의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고 지필고사 등 평가를 통해 나온 점수와 순위는 곧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에서는 능력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도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가르친다. “개인이 받는 교육의 양과 종류는 능력의 척도로 여겨지며 동시에 직업적 적격성 및 직업과 관련된 물질적인 보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교육은 능력주의의 핵심 동력이다.”³¹⁾

교육권은 인권의 중요한 내용이며, 교육권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공교육은 평등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공교육이 차별이 정당하다는 이데올로기를 학습시키고, 심지어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이는 학교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서열화와 차별은 학교 졸업 이후까지도 학력·학벌 차별 등의 형태로 이어진다. 또한 학교교육의 이러한 현실은, 평등의 개념과 감각을 익히기 어려운 한국 사회의 속성을 반영하고 재생산한다. 학교에서 사람들은 ‘평등’ 보다는 ‘공정’을, 능력과 자격에 따른 차별을 배운다. 시험 성적이 좋지 못한 자,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자, 성공하지 못한 자는 그만한 노력과 능력이 없어서 자기의 선택과 책임에 따라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능력주의 이외의 것을 상상할 수 없는

30) 박정수(2018), <우리, 혹은 장애인에게 '학교란 무엇인가?'>, 《오늘의 교육》 42호 48쪽.

31) 스티븐 J. 맥나마·로버트 K. 밀러 주니어(2013), 김현정 옮김(2015), 《능력주의는 허구다》, 사이, 45쪽.

능력주의, 메리트크라시는 개인의 능력(=merit)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보상과 인정 시스템을 말한다.³²⁾ 1958년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이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때의 능력은 지능과 노력의 합이라고 정의했다. 이후 미국의 기능주의적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공헌과 성과·실적에 따라 사회적 보상과 지위 분배가 일어나는 것을 산업사회의 특징으로 보았다. 다니엘 벨은 후기 산업사회가 교육 수준과 성과에 따라 차등된 소득과 지위를 얻는 능력주의 사회라고 주장했다.³³⁾ 능력주의는 때로는 측정된 지능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차별하는 체제를, 때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나 실적에 따라 차별하는 체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능력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한 마이클 영은 이를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했는데, 능력주의로 인해 인간이 평등하다는 신념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또한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가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능력주의가 능력을 상속, 세습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상류계급을 세습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며, 상류계급에서 능력이 낮은 자식에게 편법적으로 지위와 특권을 세습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능력주의가 혁명으로 전복되리라는 것이었다.³⁴⁾

그러나 돌아보면 이러한 전망조차 다소 낙관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능력주의는 이미 ‘능력이 있으면[지능이 높으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역으로 ‘저 사람이 성공한 것은 무언가 특출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능력/노력이 부족했던 거겠지’ 하는 식으로, 현실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더 많이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능력이 세습되고 불평등이 확대되는 사회 현실 속에서도, ‘능력에 따른 신분 상승의 공정한 기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뿐이다. 자식에게 부정확한 방법으로라도 ‘능력 인증’과 지위를 제공하려는 행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철저한 능력주의를 바라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던 소위 ‘국정농단’ 게이트의 중요한 고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인이 그 자식을 ‘명문대’에 부정 입학시켰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분개한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더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주의’ 사회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게이트의 비유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러한 동학을 드러낸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이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불평등은 정당하다는 능력주의는,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노동자를 관리·통제하는 핵심 이데올로기이다. 동시에 능력주의는 제도적 장치와 인력 배치 및 선발의 원리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라고도 할 수 있다. 능력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내부에서 작동하면서 자본주의를 정당화한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가 평등을 대체하면서,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는 움직임도 다시 능력주의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에 빠졌다. 능력주의는 분명히 차별이지만 차별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평등’, 더 정확히 말하면 ‘공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학력·학벌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개인의 진정한 능력/실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나 ‘고졸 성공 신화’로 치환되는 것이 대표적 예이며,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공정성’을 요구하며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지역균형선발 등에 반감을 보이는 것도 또다른 예일 것이다.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 이외의 평등을 상상하고 이야기하고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희망적인 것은 능력주의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주장이 2000년대 이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맥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능력주의는 허구이고 완전하고 진정한 능력주의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능력주의는 허구다》(원제는 《The Meritocracy Myth》로 미국에선 2004년 출간되었고 한국에는 2015년 번역 출간되었다),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원제는 《Success and Luck》으로 2016년 미국에서 출간되었고 한국에는 2018년 번역 출간되었다)와 같은 책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능력주의가 민주주의/공화주의에 해악이며 능력주의 원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그 폐해를 강조하는 것이다. 강준만의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가 대표적이고, 장은주의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역시 능력주의가 민주주의와

32) 성열관(2015), <메리트크라시에서 데모크라시로: 마이클 영의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53권 제2호.

33) 권성민·정명선(2012), <실력주의의 이해와 비판적 고찰: 교육, 선발 및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제30집.

34) 성열관(2015), 앞의 논문.

충돌하고 교육에서 능력주의 원리를 극복해야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발견되며, 대중적으로도 과거에 비해 능력주의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담론을 비꼬는 ‘노오오오오력’ 등의 신조어가 이를 방증한다.

‘공정’을 넘어, 그리고 ‘효율’을 넘어

나는 우선 능력주의가 평등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래 능력주의는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일률적 평가로 능력을 측정하여 선발한다는 방식의 효시적인 과거시험제도도 내세웠던 것은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었지, 모든 선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것 따위는 아니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능력주의에서 수단일 뿐이다. ‘진정한 능력주의’는 불가능하고 능력주의는 평등이 될 수 없으며, 능력주의는 선발하는 측(국가, 기업, 학교 등)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문제의식을 가진 여러 사회세력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능력주의가 평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왜 존재해야 하는가? 결국은 능력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효율성’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결정과 지휘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며, 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하면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효율성의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도 안 된다. 일단은 자본주의 안에서 능력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고, 능력주의 원리에 제한을 걸며,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의 능력에 맞추어진 논의의 초점을 사회와 제도로 옮겨가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교육과 같은 공공영역이 대표적으로, 학생 개인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와 학교의 교육의 의무를 먼저 물어야 한다. 노동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개별적인 차별의 원리와 제도를 바꾸어나가는 싸움은 다양한 현장에서 벌어질 것이다. 제일 처음 언급한 학교교육에서 시험성적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고 입학 기회를 다르게 부여하는 현실을 바꾸는 것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그 외에도 능력주의를 내세운 여러 사회적 차별과 싸우고 이를 시정하고 다른 원리를 심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이 하는 기능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나 제도를 바꾸는 일 등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하다. 경쟁과 차별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하지만, 어떠한 경쟁이고 그 결과 어떤 가치의 분배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사회 체제의 문제이며, 국가는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학입시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이고, 1995년에는 기업들의 입사 필기 시험 폐지를 정부가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는 능력주의 체제에서 무슨 능력을 평가하고 어떻게 보상을 할지를 정한다.³⁵⁾ 어떤 교육과정으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부여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가 어떤 능력을 사람들이 학습하고 수련하게 할지 어떻게 인력을 관리할지 하는 의도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다. 국가에 대해 교육과 평가, 선발과 차등 과정 등에서 능력주의를 약화시키거나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요구하고 얻어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내세웠던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표어는, 비록 ‘평등’을 직접 언급하고는 있지만 결코 대안은 될 수 없었다. 이 표어는 능력주의 세계관을 아주 잘 담고 있다. 평등한 것은 ‘기회’이고 ‘결과’가 아니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회-과정-결과의 도식 자체가 개개인간의

35) 이경숙(2017), 《시험국민의 탄생》, 푸른역사, 95-99쪽.

경쟁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주의의 대표적인 비유는 달리기 등의 경주이다. 이때 우리는 출발선(기회)이 같았는지, 규칙(과정)은 공정한지,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된 승패(결과)가 정당한지를 보게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나 삶은 개개인이 참가하는 경주나 시합이 아니다. 경주나 시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일 뿐이다. 사회 전체를 경주로 보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속도와 타임을 재기 위한 시험과 평가로 삶을 채워 나가야 하고, 일방적인 평가의 권력은 가려지게 된다. 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경주 바깥과 주변을 보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경주의 세계관을 벗어나 다른 세계관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미래의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을 파악하고 세계를 설명할 말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권운동이 능력주의를 넘어 다른 평등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함’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되는 사회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난 12년간 투쟁을 해왔던 KTX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특채하기로 합의한 후 이에 대한 비난 댓글이 올라왔다. ‘특채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승무원들을 채용할 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철도공사가 약속을 어긴 것이라거나, 고법까지 정규직 인정을 받았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결과가 바뀐 것, 승무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이 KTX 승객들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등은 댓글을 다는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어떤 일의 사회적 가치나 약속은 안중에 없고, 단지 ‘공채’를 거쳤는가 아닌가로 비난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서, 차별과 권리의 훼손이 공공연한 노동자의 현실을 보게 된다.

1. ‘직무’를 기준으로 ‘합리화’되는 차별

‘차별은 나쁘다’고 말하지만 노동에서의 ‘차별’은 그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따진다. 이 ‘합리성’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특정 노동자를 권리에서 배제하려고 ‘경쟁’을 활용하고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 때 ‘합리성’이 등장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이후 명시적인 성별 임금격차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이 남성노동자 임금의 50% 밖에 되지 않는 여성들이 임금이 낮은 특정 직무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성과 노인과 청소년과 장애인과 저학력자 등 사회적으로 차별당하는 이들은 특정한 직무에 긴박당하고, 그 차별은 ‘합리적’이 된다. 예전에는 ‘정규직은 왼쪽바퀴, 비정규직은 오른쪽 바퀴’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정규직은 핵심업무, 비정규직은 보조업무’라는 방식으로 일을 분리하고, 그 직무간 위계를 만들어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지금 노동 차별의 핵심은 ‘위계’이다. 기업과 정부는 이 위계를 노동자들이 체현하도록 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직무의 연관성을 파괴하여 분리하고 여기에서 전문성, 중요, 핵심과 같은 가치를 부여했다. 모든 업무는 연관되어 있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연관성과 필요성을 부정하고, 업무를 쪼개서 위계를 만들게 되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 위계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된다. 여기에 임금체계와 승진구조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도화하고, 옷 색깔이나 휴게공간 등 명시적인 차별을 가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이러한 위계를 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쉽게 순응하게 된다. ‘차별’은 못된 관리자나 오너들의 잘못된 행태가 아니라, 지금의 경쟁구조, 위계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현장통제 전략이다.

그런데 이런 직무 위계는 기업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라도 변화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권리는 온전하게 기업과 정부가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병원이 전기실을 비핵심업무라는 이유로 외주화를 하게 되면 아무리 필수유지업무라고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다. 직무평가라는 매우 주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노동자들의 직무위계는 수시로 바뀌고, 노동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된다. 여성이 중심이 되는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취급하면서 직무위계를 낮게 만든다. 보육이나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조금더 전문적이고 중요한 위상을 갖게 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시장화면서 진입을 쉽게, 그 안에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놓았다. 정부는 어떤 직무의 경우 시험 합격 인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위상을 다르게 만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위계에 순응할 의무만 있을 뿐, 이 위계에 의문을 품거나 문제제기하지 못하게 된다. 이 차별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 구조를 수용하고, 높은 위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하거나 자신의 낮은 위계에 순응하게 된다.

2. '공정성'을 차별의 근거로 삼는 정규직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반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시험'이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졌고 모두가 공정한 시험을 거쳤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시험'이 허구라는 것이 문제이다. 작년 포항 지진 때 '공정한 경쟁'을 위해 수능시험을 연기했다. 그런데 바로 그 날 같은 학년이었던 제주 특성화고 학생은 현장실습을 간 공장에서 기계에 깔려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 특성화고 학생은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수저론'은 우리사회에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공정한 기회라고 하지만 해마다 공시생은 늘어나고 경쟁률은 높아진다. 공채 인원도 줄어든다.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공정한 기회'라는 말 자체가 허상이다. 그런데도 이 허상에 근거하여 '시험'에 근거한 차별이 정당화된다. 그리고 그 허상은 '노력'이라는 말로 포장된다. 그 '노력'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 치열한 삶은 인정되지 않는다.

젊은 정규직이나, 공시생들은 왜 '공정성'에 매달리는가? 최근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많이 알려지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문제제기했던 이들이 조용한 것을 보면 '공정성'이 문제의 핵심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젊은 노동자들은 부정의한 현실에서 자신이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시험'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끔찍한 세월을 시험에 바친다. 그런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이런 자신의 삶이 부당하다는 것, 자신의 고통이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안정 노동자들은 왜 이런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가? 시험과 경쟁 논리에 익숙한 노동자들은, 권리를 경쟁에서 승리한 자의 전유물로 여김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고통을 패배자가 마땅히 감내해야 할 처벌로 인식한다. 구조가 아니라 개인에게로 책임을 전가하며, '권리'의 보편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하면서 이 '공정성'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이들이 세력화하도록 부추겼다. '청년선호직무'에 대해서는 시험이 필요하며,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등 위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등 '공정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매우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전교조 중집의 결정, '기간제교사의 즉각적이고 일괄적인 정규직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자신감을 갖게 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왜곡된 고용구조로 인해 훼손되는 '공공성'을 다시 되돌리는 정책이었고, 비정규직에게서 빼앗은 권리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했으나, 결국은 '시혜'적인 정책이 되고 차별과 위계를 유지하는 정책이 되었다.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젊은 정규직의 카르텔이었다.

3. '사회적 신분'이 되고 있는 '차별'

‘차별’과 ‘위계’는 권리 박탈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효과를 가지며, 노동자들이 단결할 가능성을 봉쇄한다. 차별을 당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았거나 혹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처지에 놓인다고 생각하여 무력감을 느낀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애써 ‘잠시 지나는 일자리’라거나 ‘차별은 없다’고 자기합리화를 하며 버틴다. 높은 위계의 노동자들은 허구적 우월감을 갖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조건에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더 높은 위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게 된다. ‘집단적 힘’은 사라지고 노동자들은 개별화된다. 이렇게 위계가 만들어지면 노동자들이 이 현실이 문제라고 투쟁할 때 그 노동자들을 ‘이기적’이라거나 ‘노력하지 않고 권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들’이라는 비난이 집중된다. 결국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기업과 정부는 노동에서의 차별을 단지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이로만 두지 않는다. 누군가가 임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나는 다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기업과 정부는 낮은 위계의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만든다.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이 되지 못하고, 위계가 낮을 수록 저임금이다보니 생계를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하고, 더 나쁜 조건에서 위험하게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이런 차별을 ‘사회적 신분’으로 만든다.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소위 ‘갑질’이라고 표현되는 행위들은 이렇게 임금과 노동조건을 사회적 신분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기업은 이런 위계를 완전히 고착시켜놓지는 않는다. 언제라도 사다리를 흔들어서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게 만든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질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런 위계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상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만들려고 한 것은 사다리 흔들기를 모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였다. ‘정리해고’는 현재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런 신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 잘 보이려고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GM 정규직들이 사실상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용인하고 본인들의 노동조건을 유지하려는 것은 단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의 하락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다. 사회적 신분의 하락은 삶의 질이 완전하게 바닥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만인대 만인의 투쟁 시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4. 평등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노동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꼽는다. 그런데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동일함이 평등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그 일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경쟁에서 승리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며, 비정규직의 권리 훼손이 경쟁에서 패배한 자가 감내해야 할 형벌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 모든 노동자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량의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생활임금을 받을 권리, 정치 사회 문화적 생활의 권리, 건강하고 편안하게 일할 권리 등 성별이나 연령, 성적지향이나 직무, 학력, 고용형태, 장애유무에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권리이다. 이것은 집단적인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의 능력으로 쟁취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조합 운동은, 심지어 비정규직 운동도 ‘조합원’의 위계를 지키거나 상승시키는 운동이 되고 있으며, 보편적인 권리의 기반을 만드는 운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 안에서 평등의 구현이 힘든 이유이다.

‘노동의 양극화’에 대해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위를 끌어내리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권리’가 평등을 구현하는데 핵심이라면 ‘아래를 끌어올리는 전략, 권리의 훼손에 맞서 권리를 찾아가는 방안’이 중요하다. 그런

데 아래를 끌어올린다는 것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노조할 권리의 확보 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단 인간다운 삶이 유지될 수 있어야 경쟁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곡된 능력주의, 조금이라도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향하고 자신의 노동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삶의 유지는 필수적이다. 또 하나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연관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모든 일은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연관된 일들은 필요한 일이다. 그 필요한 일을 하는 모두는 권리에 있어 동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노동의 가치를 재구성하는 일이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기본 정신이었으나 이 정신은 많이 훼손되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은 단지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사회운동 모두의 역할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많은 비정규직들은 "우리가 완전하게 정규직화해달라는 것은 아니고"라고 이야기 하곤 했다. 스스로 하위 위계를 자처한 셈이다. 그러나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질문한다. '왜 우리가 시험에 의한 위계에 동의해야 하는가' '왜 정규직화가 누군가의 특권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가' 라고 말이다. 그런 인식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경쟁 이데올로기를 흔드는 질문들이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난했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 때 방어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경쟁논리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했지만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공정성'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 그래도 자신의 노동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능력주의와 위계화에 질문을 던지며 싸우는 이들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위축되지 말고 더 크게 질문하고 더 크게 싸워 왜곡된 신자유주의적 인식에 균열을 내야 할 때이다. <끝>

‘평등’의 전제를 뒤집어 평등을 실현하는 ‘정의’로

나영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8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조병구 판사는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 선고문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남성우월적, 전근대적 사회구조나 가치관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는 보호하여야 하고 여성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보호법익으로서 ‘정조’라는 개념은 폐기되고, 성적 주체성을 가진 존재가 행사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이 보호법익으로 교체된 점 뿐만 아니라 개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자기 책임 아래 각자의 생활을 결정,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 시민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성은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자기 책임 아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당연하고, 이러한 여성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해석은 오히려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나아가 여성의 성적 주체성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이 상대방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자유의사의 제압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였음에도 자신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렇게 해석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볼 때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 안희정의 위력에 의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즉, 앞의 전제와 뒤의 결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여성의 성적 주체성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적 주체성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책임까지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 판결은 권력 기관과 기득권 집단이 평등에 대한 구조적 책임을 부인함으로써 어떻게 권리의 실현을 다시 개인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실 이러한 상황은 최소 지난 20여 년 간 한국사회가 권리 담론을 신자유주의와 결합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왜곡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김현미는 2011년 발표한 글에서 신자유주의 개혁과 여성(또는 남성)이 형성하는 ‘mixed blessing’ 관계를 설명하면서 신자유주의 개혁이 새로운 영역들에 권위와 정치적 권력, 경제적 자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전통적인 영역’은 약화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사회적 배제와 포섭을 만들어 나간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인적자원개발론’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줄 ‘인적담론’의 이미지에 맞으면 ‘젠더’를 초월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렇게 주류 사회로의 진출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여성들의 경쟁력과 경쟁심이 강화되고, 따라서 집단적으로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운동에 대한 반감이 증대되었다고 보았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능력이 있고,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차별은 이제 종식되었다고 선언되기도 하며, 때문에 여성을 집단적으로 '피해자화'하는 여성운동이나 페미니즘에 동참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³⁶⁾

당시의 '신자유주의적 주체'로서의 여성들의 자기 인식,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는지는 2015년에 페미니스트들을 통해 다시 끌어올려져 널리 회자되었던 아래의 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2003년 이화여대의 한 남성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니들이 대개 웬만큼 사는 집에서 곱게 자라서 여기까지 온 애들이다. 니들 대부분은 이 세상의 밑바닥이 뭔지 상상을 못하는 애들이다. 니들은 세상물정을 모르는데 니들이 이 땅에서 제일 약자다. 근데 니들은 니들이 대단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든다. 니들이 이화여대에 다니고 공부 좀 했고 집안이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니들보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능력없는 남자들, 00대나 ##대 다니는 지금 니들이 쳐다도 안 보는 남자애들 있잖니, 니들은 니들이 위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 애들을 도우려 하는데 실은 니들보다 개네가 훨씬 위에 있다. 한데 니들은 아직 그걸 모른다. 바다 건너 저 미국에서도 백인 여자의 인권보다 흑인 남자의 인권이 우선이다. 그게 세상이다. 미국이 그렇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다. (중략) 세상의 모든 남자들 너희보다 훨씬 못한 남자들까지 다 구제된 다음에 너희 인권이 구제가 될 거다. 그게 지구의 역사였다. 왜 그렇게 되냐면 여자는 너무 착해. 그렇게 착하도록 교육받았어. 착하게 길러졌어. 자기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받았어. 니들은 니들 이익을 주장하기 전에 니들 자신을 스스로 검열부터 한다. 그래서 니들은 공격성이 떨어져. 니들은 그래서 여자인거고 그래서 여자로 사는거다. (중략)

앞으로 사회에 나갈 때, 그래서 니들이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또 애인을 만날 때, 항상 이걸 명심하고 살아라. 절대 너 자신을 뒤돌아보려 하지 마라. 너희들은 너무나도 때가 안 탄 영혼이다. 그런데 너희는 자꾸 너희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지 더러운 건 아닌지 스스로 시험하려 든다. 그게 너희를 약자로 만든다“

마치 스스로를 피해자나 약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현실을 일깨워주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신자유주의의 메시지와 다를 바 없다. “자신을 뒤돌아보려 하지 말고” “약자가 되지 말라”는 것. 시스템의 문제를 뒤로 하고 여성의 사회적 취약성을 “약자가 되지 말라”는 메시지로 전달하는 그의 이야기에서 권리는 결국 스스로 챙겨야 할, 그리고 다른 이에게 나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배타적으로 경합해야 하는 요구로 설정된다.

한편, 같은 시기 '피해자', '약자'의 정체성에도 이상한 역전이 일어난다. 기존에는 자연스럽게 기득권을 가지는 위치에 있었으나 신자유주의적 노력, 스펙 경쟁에서 쳇바퀴를 아무리 굴려도 그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이들이 스스로를 '피해자', '약자'로 정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모든 것을 개인의 능력 문제로 인식하게 하면서 그 피해의 원인을 레이스에 뛰어들어 여성, 이주민/이주노동자 등의 탓으로 돌리게 만들었고, 그 불만은 역차별 논란과 혐오의 방식으로 터져나왔다. 그리고 2015년에는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를 맞이하면서 여성들에게 이에 대한 집단적 각성이 일어난다. 개인의 노력만 있으면 살아남는다는 믿음이 깨지고 구조적 약자이자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사회적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에서 여전히 그

36) 김현미, 『여성노동, 신자유주의 그림자를 벗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여성의 삶』, 『2011 여성노동상담원교육 자료집-여성노동교육, 시원하게 다이빙하라』,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2011.

요구는 불평등의 구조를 문제삼기 보다는 불평등한 위치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 사이 벌어진 권리 담론의 간극이다. 언제나 피해자이자 약자의 위치로서만, 아주 소극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위치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체적 권리를 확보하려했던 노력이 구조적 불평등을 가리고 개인의 스펙만을 강조하는 시스템과 만나 권리마저도 개인 책임이 되는 레토릭으로 돌아와 버린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주체적’이라는 말은 “너의 선택에 대해 니가 책임져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의미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그에 뒤따르는 폭력적 결과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피해자, 약자로서의 위치를 자각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 피해자, 약자로 남고 싶지 않은 이들, 동시에 ‘주체적’이기엔 두렵고 차라리 ‘탈’하고 싶은 이들이 수만 명씩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운동장 자체가 문제다

분노와 고발이 이어질수록 남성-가부장 중심의 권력은 오히려 더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터져나오는 분노를 가라앉혀 보겠다고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지만 결국 ‘보호’의 패러다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대책들이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주동자를 색출하겠다는 듯이 워마드 색출에 나서면서(하지만 당연히 워마드는 현 상황의 주동자도, 배후도 아니다), 청와대의 탁현민이나 미투로 고발된 가해자에게는 거듭 그들의 무죄를 확인 시켜준다. 동시에 다른 쪽에는 ‘생물학적’ 여성들이 권력을 차지해야 한다며 박근혜의 업적을 다시 소환하고, ‘야망보지’ 프로젝트로 서로를 부추기면서 트랜스젠더와 난민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신자유주의적 권리 주체’로 남은 여성들이 있다.

결국, 명백히 이는 ‘정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의 정치사회가 그동안 불평등의 구조를 제대로 문제 삼지 않고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파이를 한 조각(의 아주 일부만) 떼어놓은 다음, 그 조각을 차지하는 것을 개인이 쟁취해야 할 권리로 인식하게 만든 결과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지만, 그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파이 한 조각을 안전하게 차지할 권리,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의 선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차별금지법, NAP, 낙태죄, 난민에 대한 태도는 거듭 그 사실을 확인 시켜주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 자격을 선별하고 강화하려 할수록 파이 한 조각을 둘러싼 갈등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커져가는 분노를 안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평등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운동장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이 운동장은 이미 편향적으로 권리 주체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국민, 이성애, 가족의, 성인, 비장애인, 남성, 가부장을 중심으로 셋팅되어 있는 운동장에서 기울기를 조절하려는 싸움은 결국 파이 싸움이 될 뿐이다. 따라서 평등은 각기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운동장을 해체시키고 재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임금노동과 이성애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전제된 제도를 바꾸고 임금소득과 가족부양이 권리의 파이를 결정하지 않도록,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위계가 그에 따라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 권력이 폭력에서 보호해줄 가부장적 수호자를 자임하는 대신에 모든 이들이 권리를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게 해야 한다. 자격을 인정받을 경계를 쌓아가는 대신에 경계를 구분짓게 하는 권력의 작동을 문제삼고 해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연대’를 넘어선 공동의 문제설정과 공동의 대응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이 미투 운동에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의 문제를 현재 노동구조의

전제에서부터 연결시켜 함께 제기하고, 여성운동이 성평등을 성소수자를 '더하는'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대신 현재 정치경제에서의 성(섹스-젠더-섹슈얼리티)적 위계 구조가 교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문제를 페미니즘의 문제 의식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난민이 시민으로서의 경계 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보호나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운동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사법부의 판결에 기대거나 정치권력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운동장을 뒤집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운동장을 뒤집을, 새로운 공동의 판을 함께 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평등은 평등으로 가고 있는가

김찬영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네 개의 기초 및 심화 발제문을 읽으며 자본주의, 능력주의의 풍토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스스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 타인들의 삶과 감정들을 가치 판단하고 재단하며 특정 집단 혹은 정체성으로 환원시켜버리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보게 되었다.

- 이렇게 복잡다단한 한 개인의 삶을 손쉽게 분류시켜버리는 사회의 분위기는 개개인들이 삶에 대해 깊게 성찰하는 기회들을 박탈시키고 또 위계와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회문제들을 집단의 문제 혹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사고의 전환 및 사건을 둘러싼 맥락과 구조를 읽어 내는 힘을 약하게 만들고 평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 이처럼 기회로서의 평등이 아닌 인간에 대한 존엄을 기반으로 한 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삶속에서 스스로가 특정 세대, 혹은 집단, 정체성으로 호명되는 것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호명되어지는 경험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사회는 어떠한 집단 혹은 사회적 현상들을 나타내는 낱말들은 넘쳐나지만 실상 그 것을 구성하는 각 개인들을 지칭하는 말들은 너무나 궁핍하다. 그 속에서 그 개인들의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가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지 성찰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타인의 삶에 대한 존중과 다름에 대한 고민들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 더불어 다양한 인간군상들 속에서 위계를 나누고 경쟁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국가와 기업의 아래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보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며 낙오자, 패배자로 낙인찍고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팽배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경주 바깥과 주변을 보며 경주의 세계관을 벗어나 다른 세계관을 제시해야 한다.'는 공현님의 발제 부분이 인상적. 토론회 자리가 지금을 읽고 각자 어떤 세계관을 그리고 있는지와 함께 평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초발제에 대한 두 가지 질문

정정훈 | 서교인문사회연구소

1. 어떤 평등인가?

평등이라는 말은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다. 모든 이에게 경제적 자원의 보장이라는 의미에서 평등(경제적 평등)과 차별 없는 상황으로서 동등을 의미하는 평등(인격의 평등). 기초발제문에서 말하는 평등은 이 두 가지 의미의 평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물론 양자는 불가분한 관계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적 총위나 정책적 접근에서 두 지평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무엇이 더 근본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평등과 인격의 평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경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론적으로 두 평등은 교차적이라거나 상호 전제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상호 전제적으로, 교차적으로 평등을 실현해 가기 위한 인권운동의 전략은 무엇일까? 경제구조의 개혁(소득주도성장? 복지국가? 사회적 경제? 아니면 사회주의?)과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어떻게 상호 전제적으로, 교차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2. 국가가 아니라 대중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의 인권운동

한국의 인권운동은 아주 오랫동안 국가와 투쟁해왔다. 인권운동의 요구는 주로 국가기구, 그것도 행정부로 집중되어 있었다. 민주화운동 시절의 1세대 인권운동만이 아니라 김영삼 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된 2세대 인권운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국가, 행정부가 나서서 인권침해구조를 개혁하고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요구였다.

하지만 기초발제가 잘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제는 대중이 인권운동의 반차별요구, 동등성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평등은 공정성의 문제가 되었고, 공정성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보장하는 것이 되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중의 반대가 찬성보다 더 강도 높게 표출되었다. 더욱이 소위 '혐오세력'은 이제 조직된 대중으로서 일종의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와 투쟁할 때는 요구대상도 분명하고, 쟁점도 명확하였다. 하지만 공정을 명분으로 불평등을 옹호하고, 노골적으로 혐오와 차별의 정념을 표출하는 대중과의 투쟁에서는 요구대상도 불분명하고 쟁점도 불투명하다. 인권운동은 국가가 아니라 대중과 투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에서 인권운동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 대중투쟁이 아니라 대중에 대한 투쟁을 인권운동은 어떻게 수행해 가야 할까?

평등은 평등으로 가고 있는가

치이즈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정성은 평가를 위한 것

얼마 전에 교육부가 주최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위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기록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내신 성적을 포함해서 수상경력, 봉사활동, 독서 기록, 진로 희망사항, 체험활동 등이 기재된다. 이러한 항목 중에 어떤 항목들을 제거할지 말지, 또는 해당 항목들에 기재되는 글자 수를 줄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이었다.

토의의 화두는 ‘공정함’이었다. 봉사활동에 문제를 삼는 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재력에 따라 어떤 이들은 번역 봉사 같은 ‘수준 높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다른 이들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 같은 것’만 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독서 기록이나 체험 활동 같은 경우, 수시를 전문으로 코치하는 학원들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체험 활동을 하면 유리한지 알려주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사교육의 개입을 제거하고, 부모의 재력이라는 요소를 제거하고, 오롯이 학생의 능력만을 기재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나는 대체로 이런 항목들을 제거하는 데 동의했지만 그것이 기존 학생부가 공정하지 않아서인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불편했던 이유는, 공정한 과정을 강조하는 목표가 결국 청소년을 입시 앞에 ‘깨끗한 평가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토의 자리에서 배포된 자료집에는 대학 협의회가 이 공론화 자리에서 결정된 학생부 변경 내용을 수용해 학생들을 잘 평가하겠다는 약속이 서면으로 실려 있기도 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나는 굴욕적이었다. 토의 내내 청소년들이 봉사 활동을 통해 ‘얼마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인지’ 인성을 평가당하는 것, 독서나 진로 희망사항을 검열 받으면서 생각의 수준을 평가당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은 이야기 할 수 없었다. 학생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아, 더 높은 순위의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말하지 않는 것도 답답했다. 결국, 학생부 정책숙려제는 입시 결과라는 종착지에서 순위 매겨지기 위해 무조건 달려야 한다고 강요받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그저 학생들을 ‘같은 출발선’ 위에 놓기 위한 과정이었다. 평가 대상들끼리 서로의 공정성을 심판하고 능력을 비교하며 죽어라 경쟁하고 있을 때 대학 입학사정관과 교육부는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

사회 제도와 조직을 평준화해야

학교에서는 성적의 등수에 따라 얻는 기회가 다르고, 그 기회의 차별이 입시의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 교정을 더 해준다거나 따로 대학 입시설명회에 데려가는 식이다. 애초에 입시라는 것 자체가 청소년을 순위 매겨서 서열화 된 대학에 옮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과는 거리가 먼 제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정 투쟁이 벌어지는데, 학교 내 성폭력 고발이 이어지는 요즘, 일부 학생들은 지금껏 ‘교사가 학생부

에 불리하게 적어줄까봐'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사의 주관에 개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 조만간 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높일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정시 비율이 높아져봤자 여전히 일부 학생들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똑같다. 우리는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해야 한다. 대학이라는 기득권 조직을 평준화시키는 대학평준화 제도와 같이, 서열화 된 사회 제도와 조직들부터 평준화시켜야 한다.

진정한 평등을 위해 공정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기회의 평등에서 기회와 결과의 혼합된 평등으로)

하원배

1. 평등의 의미

평등은 자유와는 배치되는 이념으로 3가지 종류의 평등이 있는데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비례적 평등이다. 3가지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기회의 평등: 출발선은 동일하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음
- 결과의 평등: 개인의 욕구,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자원의 평등한 분배
- 비례적 평등: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에 따른 상이한 분배

2. 우리 사회는 기회의 평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

○ 한국 사회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시험의 기준에 따라 대학을 진학하며, 대학을 졸업한 후 시험을 치르고 입사하게 됨. 물론 특채와 같이 별도의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공채 즉 시험임.

○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험이 가장 공정한 기준이라고 생각함. 사시와 로스쿨의 갈등, 최근 2022대입개편안에서 보면 학종이나 정시냐의 갈등,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한다는 논리와 공무원 시험이 가장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논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음.

○ 또한 공채를 거치지 않고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되는 경우는 뒷문으로 들어왔다고 하며, 특채채용을 반대하는 논리를 제공함. 이러한 원인에는 특채가 고위층들이 쉽게 취업하는 전유물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됨.

3. 기회의 평등의 한계와 대안

○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은 동일하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우파적인 개념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은 필수불가결하는 것과 동일함.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호황 끝에 불황이 오고 보이지 않는 손이 다 결정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케인즈 주의에 입각한 복지국가가 시행되었으며, 따라서 기회

의 평등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으며 결과의 평등도 때로는 고려해야 함.

○ 특히 누구든 할 수 있는 직무는 임금격차와 처우불안으로 이어짐. 일례로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면서 바우처를 도입하고, 과당경쟁으로 종사자의 처우 불안전과 이용자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짐. 이는 아동학대나 치매노인 묶어 놓기와 같은 이용자의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공채만으로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기 어렵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의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음. 불평등도는 점점 심해지고,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같은 시험지를 본다고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시험에서의 변수까지 고려하면 시험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발제자의 의견에 덧붙여서 임금소득과 가족부양이라는 생계부양자와 보호자 모델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음. 베네수엘라 헌법에서 가정노동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회보험을 최근에 도입했듯이 가정노동에 대한 보상도 필요함. 또한 사회수당 같은 데모그란트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도 필요함.

○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와 직무에 따른 차별이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직무급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임금체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공정’을 ‘평등’의 언어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날맹 | 인권교육센터 ‘들’

“공정한 기회”라는 말 자체가 허상이다. 그런데도 이 허상에 근거하여 ‘시험’에 근거한 차별이 정당화된다.”(김혜진)

“공정함에 대한 열망은 평등을 향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별을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힘으로 현현했다. 공정함에 대한 기대가 능력주의로 수렴되어 오히려 평등의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런데도 공정함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미를 묻는 말들은 많지 않았다.”(미류)

#1. ‘불공정한 평등’과 ‘공정한 불평등’

- 실은 사람들이 ‘불평등’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을 싫어하는 건 아닐까?³⁷⁾ "평등에 대한 선호를 증명하는 실험은 많지만 불평등 자체에 대한 반감은 근거가 없다. 사람들은 불평등 자체가 아닌 경제적 불공정함에 사람들은 반감을 나타낸다."(Starmans)

- 공정함에 대한 감각은 진화론적으로 수렵채집 생활 시절 무임승차자를 줄이고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감각으로 발달한 측면이 있음. 동시에 어떤 업적/기여merit 에 근거하여 자원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감각은 시대적으로 바뀌기도 했다. 무엇이 권리어야 하는지 즉 업적/능력merit에 상관없이 동일하게equally 일관되게unchanged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둘러싼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Starmans은 1인1표를 둘러싼 생각의 변화를 예로 들었음).

- “열심히 일한 것, 기술, 필요, 도덕성 등 다양한 요소 중 어느 것이 분배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의 부분이다. 가령 어린이들이 자원 분배 과정에 어떤 요소(노력, 필요 등등)들을 고려하고 어떤 요소(예를 들어 키)는 고려하지 않는지의 질문 말이다.”

- “불평등에 대한 염려는 빈곤에 대한 우려, 기본권의 후퇴, 불공정함에 대한 반발이 서로 섞여서 작동하고 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불평등 자체는 아니라면, 우리는 이 요소들을 섬세하게 구별해내고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요소를 찾아 접근할 수 있을 것”(Starmans)

- “결국 능력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효율성’이다.”(공현) 분배의 공정성을 말할 때 ‘효율성’이 아닌 다른 언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예외의 경우. 장애인의 노동을 생산성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감각. merit, 즉 그 존재의 ‘기여’와 ‘업적’을 효율성이 아닌 대체될 수 없는 ‘존엄’ 그 자체로 보자는 인권의 언어가 공허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공정함-무임승차자 배제’가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

- “인권운동이 능력주의를 넘어 다른 평등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어떤 세계를 만

37) Christina Starmans(2017), <Why people prefer unequal societies>.

들어가자고 제안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공현).

#2. 인권적 공정함(?)

- 인권/운동이 ‘평등’을 말하는 데 ‘공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절차적 공정함에 집착한 나머지 어떤 공정함인지 묻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 대신 각자도생으로 귀결되기에.

-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공정한 시험’을 기대하게 되는걸까?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에 분노하는 딱 그만큼 ‘공정한’ 시험을 원하는 힘도 존재함.

- 영화 <배드 지니어스>의 경우. 금수저가 돈을 주고 사는 ‘시험 점수’는 부의 상습을 승인하는 알리바이에 불과할 때, 흙수저로 태어나 본인의 노력만론 ‘적절한 삶’을 살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컨닝’이 그저 ‘나쁜’ 선택으로만 보이진 않는.

- ‘절차적 공정함’에 대한 집착은 ‘투명성’에 대한 기대의 다른 표현 아닐까. ‘금수저’가 비정규직 특채로 들어온 걸 뻔히 본 사람은 정규직화를 반대하지 않기 어렵다.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온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맞을 때가 많다는 함정. 싸움의 번지수를 돌리기 쉽지 않음.

- “하는 일이 동일하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vs. “어렵게 취업을 준비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의 차등 대우는 불가피하다.”³⁸⁾ 비례 원리가 보편 원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 “차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모두의 권리를 지킬 수는 없다.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지배권력에 맞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힘은 무엇일까?”(미류)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난민이 시민으로서의 경계 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보호나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운동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나영)

- 공정성이 개인의 노력, 능력, 필요, 도덕성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각자의 정당한 몫을 납득가능한 수준에서 배분하는 것에 연결된 감각이라면, 결국 자기 몫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관계/공동체에 대한 생각과 연결될 수밖에 없음. ‘공정한 시험’ 프레임이 ‘제인생 자기책임 or 인생한방’이 강력한 곳에서 등장한다면, (공정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공공성(예. “자기는 못 받게 되더라도 청년배당이 유지되기를 바라십니까?”에 대한 응답)에 기반한 공정성을 말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예. 추첨 선발)를 만들고 떠드는..인권/운동에 대한 고민. “인권은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다.” 끝.

38) 천관울(2018), “문재인 정부를 흔든 ‘공정의 역습’, 시사인 제546호.

평등은 평등으로 가고 있는가

주리

○ ‘평등을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도 않은 것 같다. 발제자들이 지적했듯이 능력주의와 관련한 사안들도 그러할 것이고... 평등의 정당성은 “의무를 평등하게 수행하지 않으니 평등해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만큼의 권력이 없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의 권리 요구에 대해 청소년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병역과 납세를 하지 않고³⁹⁾ 소년법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성년과 동일하게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식의. 여성의 권리 요구에 늘 ‘군대 가라’는 반응이 따라붙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청소년의 인권 문제는 대개 ‘인도적인 대우’ 차원으로만 제기되고, 청소년과 성인 간의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로는 잘 여겨지지 않는다. 청소년이 받는 차별이라고 하면 청소년 간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잦은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청소년 인권 문제를 반차별과 평등의 관점으로 바라본 경험이 적다는 의미다.

○ 차이가 있다는 것이 곧 어느 한 쪽의 열등함과 다른 한 쪽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전체를 동일화해서 그 안의 차이를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드러난 차이를 확대해석해서 성인에게 있는 것이 청소년에게는 전혀 없다는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다. 생물학적 차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종종 사회적으로 구성된 차이임이 드러난다. 청소년의 신체와 행위를 ‘미성숙함’이라는 가치판단으로 읽어내는 것은 사회적 해석이다.⁴⁰⁾

○ 차이와 차별, 의무와 권리, 평등함과 공정함을 둘러싼 견고한 장벽을 어떻게 깨야 할까. 차이가 있으니 의무가 달라도 권리가 평등해야 한다 해야 할까, 차이가 진짜 차이인지 먼저 물어야 할까, 의무와 권리라 불리는 내용 자체가 이미 권력이 있는 쪽의 입장에서 구성된 것이라 제기해야 할까, 의무와 권리라는 것이 상호배타적 범주도 서로에 대한 대가도 아니라고 주장해야 할까, 아니면 권리에 따르는 의무의 내용을 다르게 정의하는 데 집중해야 할까...

△ 능력주의 사회임을 부정할 순 없지만, 대학입시를 둘러싼 ‘수시, 정시’ 논쟁을 보고 있으면 대중들이 원하는 정의가 과연 능력주의일까 하는 의문도 든다. 수능으로 대표되는 오지선다형 지필고사 점수매기기가 능력을 제대로 측정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대중은 능력이 아니라 노오오력이 증명되는 사회를 원하는 것 아닐까? 그렇

39) 사실은 (참정권이 만 19세부터만 부여되는 반면)만 18세 이상이면 병역과 납세 의무를 지고, 18세 미만이라도 노동을 하거나 소비를 할 때 세금을 내게 된다.

40)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투표도 못 하고, 2등 시민 취급... 이게 ‘차별입니다’에서 복사-붙여넣기

기에 수시 옹호자들이 논술이나 면접 방식이 수능에 비해 개인이 가진 문화적 자원, 문해력, 창의력 같은 ‘능력’을 검증하기 더 적절하다 주장해도 대다수는 ‘수능이 더 공정하다’ ‘수능으로 대학입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믿는 것 아닐까. 수시 정시 논쟁에서 대중적 호소력이 있는 건 어떤 것이 더 능력을 검증하기 적절한가보다는 어떤 것이 더 공정한가이며, 공정함의 의미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 같다.

평등할 수 없는 사람들

이은지 | 장애여성공감

‘평등’은 정말 평등할까?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는 평등의 사전적 정의와는 다르게,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만 같다. 발제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평등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평등이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닌, 평등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왜일까?

초중고에서 핸드폰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공부를 위해 당연하다는 댓글은 아무렇지 않게 달리고, 최저임금이 인상논의가 되는 중에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어 있고, 국민의 권리를 말하지만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은 아니다.

아직은 미숙하다는 말로 권리가 유예되는 사람들, 위험하니까 격리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 능력이 없으니까 지원을 받는 것이 낭비인 사람들, 정상규범에 맞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어쩔 수 없다는 말로 차별이 정당화되고, 통제가 작동한다.

강요되는 주체성

피해자, 약자로서의 위치를 자각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 피해자, 약자로 남고 싶지 않은 이들, 동시에 ‘주체적’이기에 두렵고 차라리 ‘탈’하고 싶은 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도 영원한 어린아이처럼 불리기도 하는데, 반면 종사자는 언제나 선생님이다. 보호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은 규격화된 생활을 하며, 그 속에서 온전히 ‘나’로써 존중받는 경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누군가에게겐 일상이, 누군가에게겐 그 일상을 체험하는 형태로만 경험되어진다. 이 속에서 평등한 관계맺기를 기대하기란 힘든 일이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어떤 책임을 지고..이런 경험을 하기 어려웠던 이들에게, 국가는 이곳에서 나오기 위해선 그런 주체적인 사람이 되라고 한다.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개인이 준비가 덜 되었고, 경험과 연습이 부족하기때문이라고 한다.

하루가 낱낱이 타인에 의해 관리되고, 평가받는 상황은 지워진 채 독립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순위매겨지고,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도 몸의 모습과 움직임을 재단하여 숫자로 나눠진다.

나와의 연결지점 찾기

예멘난민의 위험함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그 ‘위험한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소수자의 행동은 왜곡되거나 확대되어 위험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배제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생겨도, 그 자리는 채워진다. (시설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누군가 입소하고, 빈곤에서 벗어나는

개인이 있어도, 누군가는 가난해지는 등 불균형과 불평등이 있어서 착취의 사회구조가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평등’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다.

일시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6시 30분

기초발제 미류(인권운동 사랑방)

심화발제 공현(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회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속기 강곤

랑희: 두 번째 시간은 '평등'에 대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토론자가 참여했고, 4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기획팀이 준비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가 풍부하게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평등은 평등으로 가고 있는가' 이번 시작에는 9명의 지정 토론자가 있습니다.

<기초발제 : 미류 - 발제문 참조>

랑희: 앞에서 말한 현상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정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정이 평등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체성으로 차별을 구별 짓는 것과 경제적 불평등을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현: 능력주의라는 키워드, 발제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 대학입시'거부'를 중심으로 발제하겠다.

<심화 발제1: 능력주의와 차별의 동학을 어떻게 깰 것인가>

랑희: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참 공고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의 세계관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심화 발제2: '공정함'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되는 사회>

랑희: 노동현장에서의 고통과 치열함이 심한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삶의 위기감을 통해 이 사회의 위기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삶의 안전성과 노동의 연계성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심화 발제3: '평등'의 전제를 뒤집어 평등을 실현하는 '정의'로>

랑희: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운동장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운동영역들이 공동의 운동의제를 설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많아서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 지정토론은 자료집 순서대로 할 예정입니다.

<휴식>

<지정토론1 : 김찬영(친구사이), 토론문 참조>

<지정토론2 : 정정훈(서교인문사회연구실), 토론문 참조>

정정훈: 차별의 반대를 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나눠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등으로서의 평등, 사회경제 평등- 서로 같은 것인지, 다른 문제 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랑희: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중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 아닐까요?

<지정토론3 : 치이즈(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토론문 참조>

<지정토론4 : 하원배, 토론문 참조>

<지정토론5 : 이은지(장애여성공감), 토론문 참조>

참가자: 발제문 보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습니다. 문제적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막막하고 답답한 지점이 있습니다. 정정훈 선생님 글 보고 고민이 되었고 덧붙여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지금은 혐오를 쫓아가는 대중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평등과 공정함이 구별되지 않았는데 그걸 구별해서 쓰셨습니다. 결과에 대한 공정함과 평등함? 그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별과 공정을 구별하는 지점이 뭘까 궁금합니다.

참가자: 대중이 분노하는 지점은 공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순실, 이대, 갑질에 대한 분노인데 그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직장갑질 119도 의미있는 활동입니다. 촉발되었던 지점은 불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분노인데, 결국에는 개인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참가자: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평가하되 혐오를 선동하는 그룹과는 분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한꺼번에 말하면 함께할 수 있는 대중이 너무 없을 것 같습니다.

량희: 발제자 돌아가면서 이야기 듣고, 이어 토론하겠습니다.

미류: 문제의식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발제 질문 중심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평등의 반대말은 차별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등에 대한 감각을 건드리는 것을 모두 개념을 정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약자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인데 이 문제가 개인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의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구조를 어떻게 창안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조를 깨야 하는데- 난민혐오를 노동운동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지금 국면이 대중과 투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권운동이 혐오에 대한 의식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그만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혐오로 수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정치,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닌가요.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들 말입니다.

해체해야 할 것은 혐오가 아니라 능력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상대의 상태를 능력주의로 설명하는 것, 권리를 공정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 시키는 힘 말입니다. 혐오를 중심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설명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운동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공정한 기회의 확대 외에는 없는 거 아닌가요. 노동현장에서 전해지는 일상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김혜진: 평등 개념 관련해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결과 관련해서 평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고, 그것을 권리라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보편적 권리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가 평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금을 구성하는 기준이 왜 직무/근속/숙련이어야 합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정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회의 차별의식, 한계가 반영 됩니다. 임금에 있어서 집단교섭이 작동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키는가가 중요합니다.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올해 독일에 잠시 머물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은 보통 규칙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새치기 했는데 독일에서 아무 말 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독일 사람들은 아무 말하지 않느냐? 20년 산 아는 동생이 이야기하기를, 독일 사람들에게는 새치기라는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 바쁜 사람이라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새치기 하면 공정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임승차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공정성에 문제제기하며 소환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정유라의 위치,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 소환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소환하면서 자신의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비정규직과 함께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더 큰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가능 합니다. 임금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교육 공정성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임금과 정규직화로 운동해야 하

는 것이 슬프습니다. 더 큰 가치를 그릴 수 있을 때 ‘우리’라는 감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공 비정규직화 공정성 시비가 이는 걸까요? 공공부분 정규직이 최상층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분 정규직은 철밥통입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향인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모두가 경주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 노동조건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영: 신자유주의가 효과적으로 준 메시지는 선택과 능력입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이죠. 우리은행이 금융계에서 처음으로 직군을 분리하고, 정규직화를 도입했는데 그 당시 논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었습니다. 직군제의 논리에 따르면 다른 직군에서 옮기려면 경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교육에서도 선택과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7차 교육과정은 수능/논술/수시 도입으로 나타납니다. 노점상을 철거할 때 불쌍하다고 반응하는 것은 거의 못 봤고 거의 다 악플이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고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성소수자, 문란하기로 결정한 성소수자에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불평등이 아니라 불공정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의 트랙이 있습니다. 누가 그 트랙에 올라갈 것인가의 선별은 국가/사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 트랙에서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것만 없애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불공정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랙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제거의 수준 이외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트랙에 들어오는 선별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트랙에 들어오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선택에 대한 문제라고 치환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공정/공평/평등을 공공으로 이야기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속제로 안고 가겠습니다.

공현: 사회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정성/평등 담론 핵심인 듯합니다. 고통에 대한 인지부조화의 심리적지인 것입니다. 시험은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주술적 믿음이 쌓여있습니다. 온전히 개인의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능력주의/개인의 책임 벗어난 다른 영역과 공유되는 상식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가자: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혐오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혐오세력은 비정규직 문제에 무관심하고, 성소수자를 사회 부정적인 세력으로 보는 특정 기독교 세력들이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목소리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조직되어 있는 목소리인가요? 정말 조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김혜진: 정규직화 반대 목소리도 세력화되었다고 봅니다.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인천공항 경우, 정부가 반대해서 정규직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정규직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 맞아 떨어져서 움직이는 어용조직입니다. 그들이 세력화되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철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게시판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들. 그것 때문에 한명이 목숨이 끊기도 했습니다. 따로 만나면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들이 세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빠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기 시작하면 운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흩어놓고, 설득하고 가능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영: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몇 년째 고민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초반에는 엑셀 만들고 홈페이지 찾아보고 했는데 어느 순간 소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응하는데 많은 역량이 소모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성소수자들이 아니라 엘라이트 지지그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의 영향력을 줄였어도, 교회 안에서 지지그룹을 무력화시키고 단속하는 방식의 전략을 만들어내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혐오하는 그룹에 공감하는 그룹이 있는데 공감그룹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량/속도/자료 등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평등/권리를 우파들이 이상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라이프들을 태아권리를 노예에 비교하면서 태아도 누군가의 소유로 여겨져서 권리가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혐오세력이라고 부를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물학적 중심 여성주의 방식 역시 그룹 내에서도 혐오가 확산되고 있고, 공고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세력의 전략, 조직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류: 세가 많은 것과 세력화는 구분해야 합니다. 혐오의 정치세력화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으로 주체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패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인증혐오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세력화를 가능케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조직화에 성공할 사람이 있는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인권을 이야기 할 때 공정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듯 합니다. 평등은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참가자: 정체성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이 제 고민입니다.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는데 차별금지법이 노동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는 말들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소수만 경제적으로 나아진다는 것 알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지만 우리는 평등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와 존엄에 대해서 상상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하향평준화 되더라도 무엇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솔직히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등하다는 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평등해 질 수 있는 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어떻게 존엄한지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참가자: 차별금지법 제정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권운동에서 공정함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의 가치, 평등이라는 말을 더 많이 활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촛불혁명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는 판을 바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영: 여성, 성소수자가 불평등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며 아예 전제를 바꿔야 하는 것인가요? 중국 페미니즘 서적을 보면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불공정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김혜진: 공공부분 비정규직이 높은 편이긴 한데 다른 분야는 왜 차별적인 현실을 수용하는 것일까요? 이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분노의 댓글을 답니다. 비정규직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처벌받는 것이

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으로서 존엄하다는 것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 포기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량희: 발제자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미류: 끝나고 나니까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 공정 이야기를 통해서 민주주의/공동체로 전화하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계가 구축된 것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 아닌가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안하는 주체성, 관계의 획득. 관계의 형성, 소수자일수록 주체화를 가용하고 있는데 여성/노동 키워드를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현: 공정은 결과를 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하는 문제입니다. 그에 비해 평등은 내가 관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참석자: 나의 무능력함을 처벌로 인식한다는 말이 다가 왔습니다.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도 도 그렇게 생각했던 듯합니다.

평등으로 길을 내자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은 ‘평등’을 인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제시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심각한 불평등이 전지구적 의제가 된 지도 오래다. ‘촛불항쟁’을 거친 한국사회에도 평등을 향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평등을 향한 열망은 제 길을 찾고 있을까? 평등은 평등으로 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게 하는 풍경들을 마주하며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두 번째 토론을 준비했다.

복잡한 풍경들

‘비정규직 철폐’라는 오랜 구호가 문재인 정부에서 메아리를 만난 듯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같은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도 좌초했다.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에 밀린 것이다.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 역시 공정함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에 파묻혀 길을 잃었다. 개인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그것에 부합하는 대우를 하는 것이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로 여겨지는 듯하다.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감각은 분명 불평등에 대한 분노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에 갇혀버린 공정함은 결과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면서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목소리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무임승차 논리는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함께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휩쓸려가기도 한다.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주장과 함께 무슬림/난민에 대한 혐오가 거세게 등장한 최근의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더욱 복잡한 풍경도 펼쳐진다. 여성혐오와 성차별에 맞서 ‘불법 몰카 근절’을 주장하며 운집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또 다른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뒤섞이기도 하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에는 ‘혐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혐오의 시대적 배경에 경제적 불평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지구적으로 인종주의를 앞세운 극우정치세력이 급성장하는 현상도 같은 맥락에 있다.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또 다른 불평등을 조장하고 서로 맞물리며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지금 여기에서 평등으로 한걸음 더 내딛기 위해 인권운동은 어떤 길을 열어야 할까? 기초발제에 이은 세 명의 심화발제는 실마리를 건네주었다.

평등이 평등으로 가게, 길을 내야 할 때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활동가 공현은 능력주의의 문제를 짚어주었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보상과 인정 시스템”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능력주의가 작동

하는 방식은 거꾸로다. 보상과 인정의 불평등한 분배를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공현은 능력주의가 평등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능력주의는 애초에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선별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능력주의는 흔히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규칙’에 따라 이뤄진 경주의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이 경주나 시합일까? 평가하는 권력을 직시하며 경주 바깥의 세계관을 제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김혜진은 KTX 승무원들의 정규직 채용 합의에 대한 비난 댓글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이라고만 보기에 이미 노동시장은 ‘직무’를 기준으로 철저히 위계화되어 있고 차별을 합리화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기업은 이런 차별을 ‘사회적 신분’으로까지 만들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멘소리를 이기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의 하락을 막기 위해 모두가 몸부림쳐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김혜진은 최근의 노동조합 운동이 조합원의 위계를 지키는 운동이 되어 보편적 권리의 기반을 만드는 운동이 되지 못하는 씁쓸한 현실도 짚어주었다. 지금이야말로 “더 크게 질문하고 더 크게 싸워 왜곡된 신자유주의적 인식에 균열을 내야 할 때”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나영은 안희정 1심 판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불평등한 구조의 문제가 만들어낸 결과를 오히려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권력기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스펙 경쟁에서 쳇바퀴를 아무리 굴려도 그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이들이 스스로를 ‘피해자’, ‘약자’로 정체화하기 시작”하면서 경주에 뛰어들어 여성, 이주민 등을 타하는 현상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구조적 불평등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문제설정과 공동의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운동이 내야 할 길

토론회 참여자들의 지정토론을 시작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평등으로 길을 낼 고민들이 더욱 깊어졌다. 공정함에 대한 집착은 능력주의로 이어져 개인의 무권리 상태를 정당화할 수도 있지만 비판만으로 방향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유행어가 되어버린 ‘흙수저’에서도 드러나듯 사람들은 이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운동이 공정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 이상을 제시할 전망이 없다는 점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는 아닐까? 공정성이 “각자의 정당한 몫을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배분하는 것에 연결된 감각”이라면(날맹), 문제는 분배 정책이나 기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동체다.

구조적 불평등에 맞서 길을 내려면 정책에 앞서 ‘정치’를 모색해야 한다. 불평등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집합적 주체로 구성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조 섞인 ‘흙수저’로는 집합적 주체가 구성되기 어렵다. 남성과 여성, 국민과 이주민,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사회가 구분한 자리에 붙들려 타 집단에 대한 배타성으로 단결을 꾀하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반차별의 시선으로 계급적 조건을 분석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인권의 주체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탐색해야 한다.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능력 없어서 그런 것’으로 치부될 때, ‘그건 너의 책임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관계 맺기가 저항의 시작일 수 있다.

토론을 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모두가 개인의 책임을 추궁당할 때 ‘니가 그 집단/정체성이라서 그렇다’는 비난까지 덧대는 것이 차별이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은 도덕의 언어에 그칠 수 없다. 불평등의 조건을 함께 겪으면서도 서로 적대하는 집단이 되어 저항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때, 평등에 대한 감각을 재건하면서 서로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관계 맺기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혐오가 민주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대에 평등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이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지형을

평등과 공정함은 분명히 다르다. 평등은 존엄에 관한 문제라면 공정은 평가에 관한 문제다. 평등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면 공정은 당신이 승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능력 있는 개인’이 주체성의 요건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역량이야말로 우리가 꾀해야 할 과제다. “나 능력 없다, 그러나 나 존엄하다.”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권의 조직과 장소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인권운동의 과제가 아닐까.

비판이 운동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 길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인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흐름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토론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과제까지 도출한 것은 아니다. 각자의 운동에서 맞부딪뜨린 고민들을 나누면서 더욱 너른 시야에서 지형을 살필 수 있었던 만큼, 조금 헤매더라도 우리가 함께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즐거운 토론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평등’과 ‘인격의 평등’이 교차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되 서로 다른 두 지평을 무작정 섞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 능력주의와 효율성에 매달리게 되는 조건을 무시한 채 말하는 ‘존엄’이 공허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고백을 기억하려고 한다. 잠시 멈추기도 하고 결눈질도 하면서, 가볼 만한 길이라는 건 분명하다.

평등은 평등으로 가고 있는가.

난다

작년(2017년)에 투명가방끈에서 “나(우리)는 무엇을 학력학벌차별이라고 느끼는가/내(우리)가 겪은 학력학벌 차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당시 투명가방끈에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주장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이 주제의 이야기는 많이 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비대학생/대학거부자들)가 겪는 차별 문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에 “학력학벌차별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알바를 구하는데 고졸/대졸 이상이어야 하는 등 기회 자체가 적게 주어진다”, “같은 작업을 했는데 대졸이 아니어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성과를 인정받지 못했다)”, “학번/전공을 물어보는 등 당연히 대학생일 거라고 전제한다” 등등의 경험들이 이야기되었다.

이후 “학력학벌 차별에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고민을 이어갔다. “요즘은 학력학벌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 “시험 성적도 능력이다.”,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등등의 말들이 마치 학력학벌 차별에 반대하는 말처럼 쓰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며 결국 우리 사회에 ‘능력주의’가 밑바탕에 있음을 발견했고, ‘능력주의’의 기원, 비판 담론, 한국사회에서의 ‘능력주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을 다룬 단행본 및 논문을 찾아보며 투명가방끈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평등은 평등으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들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노력의 결과가 곧 능력이고, 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잡혀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공정함(능력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이 결국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는 것, 시험제도야말로 가장 공정하다는 환상을 깨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공정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정규적이 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능력에 따른 차등/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다보니 똑같이 대접받는 걸 억울해한다는 것... 특히 ‘억울함’은 요즘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물론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의 문제가 클 것이다.

만약 우리 삶이 충분히 여유롭고 안정적이라면,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다른 삶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 힘든데 재는 왜 안 힘들어?” 이런 마음은 덜 가질 수 있을 텐데. 이 억울함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도, 그 감정이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을 향한 비난과 혐오가 되는 현상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한편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평등이 무엇인지, 어떻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여자들이 나눠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사회에서는 ‘평등’의 자리가 너무 작고 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기에 앞서 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겠다 싶어 아득해지기도 했다.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운동장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경주의 세계관’을 벗어나 ‘다른 세계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평등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 상상을 펼쳐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마음도 생겨났다. 이번 토론회가 소중했던 것은 이렇듯 비슷한 고민들과

각 현장에서 우리나라, 서로 닮은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앞으로의 방향도 함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토론회에서 얻은 화두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덧붙이며 더 풍성한 담론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문제적 인권, 인권의 문제

'을' 노동의 지우개인가 돋보기인가

9월 6일 (목)

세계인권선언70년
인권운동더하기 연속토론회

‘을’ 노동의 지우개인가 돋보기인가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모든 것을 갑질로 설명하는 세상이 되었다. 갑질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땅콩회항· 온갖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대표적인 갑질 부터,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던 몽고식품의 갑질, 경비원폭행·가맹점주 착취의 미스터피자 갑질, 제품밀어내기 강매로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한 남양유업 갑질, 최근 아시아나의 갑질 사례까지 ‘갑질’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상징하는 하나의 말이 되었다.

1. 갑질을 통해 확인 한 공백들

2017년 11월 첫 출범한 직장갑질 119는 갑질에 대한 사회적 반향과 분노에 주목하며, 노사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적 행위들에 대해서 갑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담 및 활동을 시작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지만, 이것을 무엇이라 지칭하기 어려운 문제들, 어떤 침해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직장 내 갑질’이라는 의미로 확산되었다. 그 이후 갑질은 대기업 총수나, 오너일가의 횡포를 넘어서 직장상사, 동료,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 등 일터에서 불평등한 관계와 권력에 의해 노동과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상징적 언어가 되었다. 직장갑질119가 6개월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보 건수는 총 1만1938건에 달하고, 이는 하루에 대략 70건 정도의 수준이다. 제보의 수는 일터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갑질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적지 않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갑질은 무엇일까?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임금을 떼었다’가 3072건, 25.73%로 1위를 차지했고, ‘잡무지시 등’(청소, 김장, 장기자랑, 결혼식 등 잡무, 기타)가 2위(1762건, 14.76%), 직장 내 괴롭힘이 3위(1610건, 13.49%)를 차지했다. 이어 징계·해고가 4위(1069건, 8.95%), 휴가가 5위(799건, 6.69%), 야근 등 노동시간(795건, 6.66%)이 6위, 법적 절차(487건, 4.08%)이 7위를 차지했다.⁴¹⁾ 직장 갑질 119의 통계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노사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갑질로 설명하고 있었다.

갑질의 등장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부당한 행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권리언어의 공백과 제도의 부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실제 노동자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평등한 관계와 부당한 대우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참으로 빈약하다. 직장상사의 집 청소, 김장 도와주기, 장기자랑 강요 등 부당한 행위들을 노사관계에서 어떤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떤 법률 위반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일터에 노동조합이 있다하더라도 개별 노동자들이 당하는 이 문제를 어떤 노동권의 침해로 규정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매일 당하고 있는 일이지만 나쁜 오너의 몰지각한 짓, 직장상사 잘못 만났다 정도로 설명하기엔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

41) 갑질제보 1만2천건, 하루 66건 <직장갑질119, 6개월의 기록> 중

는 그 행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 내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을 무슨 권리 침해인지 설명하긴 어렵고,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할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은 참으로 멀다.

침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권리 침해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부재와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갑질로서 나의 피해를 부각하는 것, 비슷한 처지의 이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을 넘어 문제적 상황을 돌파하거나, 당연히 누려야 권리를 요구하는 힘이 빈약해졌다. 권리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와 제도의 공백은 ‘갑질’이 일어나는 구조적 문제들을 바꿔나가기 보다는 내가 당하는 문제적 행위들에 대해서 SNS를 통해 사회적으로 알리고 함께 공감/분노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는 경우 역시도 드물다. 갑질을 통해 고통을 설명하기 손쉬워졌으나 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노동권의 침해, 인권의 문제로 설명하기 어려워진 것은 아닐까? SNS상 발화되는 분노와 공감을 넘어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는 문제적 상황을 노동권의 침해로 확장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

몇 해 전 노동권을 고민하는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의 관점에서 일터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적 상황을 일터 괴롭힘으로 설명하며 일터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제시하고자 했다. 일터에서의 문제들을 갑질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 관계의 문제와 노동, 일터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고민을 던져야 할 때는 아닐까?

2. ‘을’ 노동의 지우개인가 돋보기인가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노동존중이 실현되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노동기본권 신장 및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권익 구제 강화, 비정규 문제 해소, 노동인권교육 등 다양한 과제를 제출했다. 국가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노동존중을 실현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개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존중에 대한 사회적 틀거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 속에서 노동자 집단의 권리와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노조혐오주의로 일관해오던 이전 정권의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의 문제, 쌍용차 노동자들의 국가 손배 문제 등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개별 노동자들이 침해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구제하려 노력하지만, 노동조합과의 상생은 여전히 더디다. 또한 개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정책은 국가가 부여한 권리에 한정되어 있다. 말 잘 듣고, 착한 노동자. 국가는 그들이 부딪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줄 뿐,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자 집단의 권리로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부여하는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개별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주체로 여기면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권리에 제한적인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을 파편화시키고, 이는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자본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동등한 위치와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집단의 권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집단의 권리 요구와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은 빨갱이로 매도당하거나, 귀족노조라 손가락질 당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드러난 노조의 얼굴은 용역폭력에 의한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나,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또 다른 심판자의 얼굴이었다. 국가, 기업 등 지배층이 만들어 낸 노조혐오주의는 자본과 대등한 노동자 집단의 권리,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소중한 의미를 퇴색시켜버렸다. 결국, 집단의 권리를 요구한 다는 것, 노동조합을 결성한 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닌,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는 행위, 목숨을 건 행동으로 왜곡되어

버렸다. 이런 현실에서 권리침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찾는 것은 너무 먼 법제도도 아니고 집단의 권리도 아닌 공감과 분노, 사회적 힘에 기대는 것이었다. 악덕 사업주 갑의 횡포에 고통을 호소하는 ‘을’. 피해자로서 을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저항하는 ‘을’, 집단적 권리로서 힘을 내세우는 노동자 집단에 대해서는 냉소적이다. 노동자는 피해자로서만 공감과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집단의 노동권을 확장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을들의 분노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이 필요할까?

몇해 전부터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를 이야기하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하는 것,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것을 노동자의 권리로 설명하며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힘쓰고 있다. 미조직 전략 조직화 사업 등 노동조합으로의 조직을 확장하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갑을 관계 하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요구한다는 점, 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전통적 정규직 중심의 조직화에서 비정규직 등 더 많은 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조합 조직, 노동자 집단의 권리 요구 주체는 한정되어 있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는 노동의 주체들, ‘을’로 설명하기 어려운 병, 정, 무 등의 권리로 노동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3. 갑질에 대한 저항과 인권운동의 연결고리

갑질은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인식이 결여되었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타인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느끼지 못하는 불평등한 인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과 차별이 갑질의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갑질은 인간 존엄 훼손과 모멸감 등 ‘을’의 고통에 주목하며 함께 분노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과정 속에서 해결하거나,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 시킨다. 갑질에 분노하는 지점과 인권은 참으로 닮은 곳이 많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문제의식을 통해 발화 된다는 점, 인간존엄 훼손과 모멸감 등을 느꼈을 때 구체적인 침해 사안으로 느낀다는 점, 타인과 나의 일상적인 관계 등에서 발현한다는 점 등에서 동질감이 드러난다. 갑질을 통해 을이 느끼는 모욕과 존엄성의 훼손은 인권운동이 한 사건을 인권침해라 규정했을 때 갖는 문제의식, 노동운동에 연대할 때 노동자들이 겪었던 피해와 아픔에 공감하는 감각들과 맞닿아 있다. 타자를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인간존엄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갑질과 인권운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권운동은 침해당하는 권리들을 어떻게 보장받아야 할지, 사회적 책임, 국가의 책무, 제도적 고민들도 함께 연결하며 인권침해의 사안을 해결하고 있다. 단지 한 개인이 겪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말이다. 갑질에 저항하는 운동은 현재 어느 지점에서 있을까?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발화, 분노·공감을 넘어 어떤 운동의 방향으로 나아갈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인권침해와 갑질에 대한 저항의 다른 듯 닮은 서로의 연결 고리 속에서 인권운동은 어떤 힘과 이야기를 보낼 수 있을까?

‘갑질’, 제도적 해결은 가능한가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 서론

최근 ‘갑질’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면서 ‘갑질’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노동자들은 대기업 총수나 오너 일가의 몰지각한 행위와 기업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횡포를 ‘갑질’로 명명하며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드러난 ‘갑질’은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문제가 된 대기업 총수 및 오너 일가에 대한 고소·고발과 해당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갑질’이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되면서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불평등과 부당한 대우를 ‘갑질’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갑질’에 대한 폭로와 문제 제기가 쏟아지는 상황이 무색하게 ‘갑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는 충분하지 않다. 임금체불이나 장시간 노동 등과 같이 기존의 법과 제도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갑질’도 있지만, 모욕이나 무시, 따돌림, 업무 배제 등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갑질’은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렵다. 실제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일터 괴롭힘 사건 중 다수가 현행법상 규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다. 제도의 미흡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현행법상 규율되기 어려운 양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법상 규율하기 어려운 ‘갑질’을 실질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갑질’을 규율하는 국내 법·제도의 현황 및 한계를 살펴보고 해외의 관련법과 제도를 검토하여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기존의 법과 제도로 규율되지 못하는 ‘갑질’

가. ‘갑질’을 규율하는 현행법과 한계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대기업 총수나 오너 일가의 몰지각한 행위 뿐 아니라, 임금 체불, 잡무지시(청소, 김장, 장기자랑, 결혼식 등 잡무), 따돌림, 폭행, 폭언, 부당한 징계, 해고, 노동시간 위반 등 그 행위 유형을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중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기존 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해결을 모색할 수 있고⁴²⁾ ‘갑질’이 현행법을 위반하여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을 했다면 「형법」상 규율할 수 있다. CCTV 등을 통해 노동자를 감시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 만약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 성별, 장애, 연령,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차별을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관련 차별금지법⁴³⁾으로 규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현행법들은 주로 채용, 승진, 임금, 해고 등 노동 조건 및 인사 처분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처우로 적용이 제한되거나, 특정 행위를 명시하여 금지하는 경우에만 규율이 가능하다. 따라서 모욕이나 무시, 따돌림, 업무 배제, 불법에 이르지 않는 폭언이나 폭행 등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일상적인 갑질 행위를 모두 규율하기 어렵다. 최근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문제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들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제65조 제6항)이 마련되었지만, ‘부당한 지시’의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갑질’을 규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 ‘갑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

한국에는 아직 모욕이나 무시, 따돌림, 업무 배제, 불법에 이르지 않는 폭언이나 폭행 등과 같은 ‘갑질’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나 제도는 없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와 같이 사실상 ‘갑질’에 해당하는 사안을 규율하고 있다.

1) 인격권 침해로서 ‘갑질’

법원은 ‘근로자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며, 따라서 ‘근로제공 행위는 인격의 발전 실현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⁴⁴⁾. 법원은 직장 상사 등이 퇴직을 종용하고, 갑작스럽게 근무지를 변경하고, 책상 및 컴퓨터 회수, 따돌림을 한 가해 행위와⁴⁵⁾, 재단비리 지적한 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그 의사에 반하여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결국 강의를 할 수 없게 한 행위⁴⁶⁾, 부서 책임자가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여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고 건강까지 해치게 한 행위를 ‘인격

42)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등 부당한 인사 처분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에 의한 폭행이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모집·채용 등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집채용임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4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6가단3337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1077 판결 참조

4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인격권 침해행위 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⁴⁷⁾.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의무와 '갑질'

또한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직장 상사 등이 퇴직을 종용하고, 갑작스럽게 근무지를 변경하고, 책상 및 컴퓨터 회수, 따돌림을 한 가해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원고가 작업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장해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러한 의무의 위반을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로 보았다⁴⁸⁾.

3)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갑질'

법원은 사용자가 관리자 및 사용자의 업무 지휘 및 업무 명령의 권한을 넘는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채무 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한 사안과⁴⁹⁾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사들과 선배 간호사의 심한 꾸중과 욕설 등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안⁵⁰⁾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회사나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미 법원이 인격권이나 건강권을 침해하는 '갑질' 행위를 판례를 통해 규율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나 제도의 필요성이 이미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갑질' 관련 입법 발의안 검토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입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다수 발의 되었다. '갑질'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의 입법은 불가능하므로, 행위 유형이나 업종·분야별로 나누어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우선 일터 괴롭힘⁵¹⁾의 금지를 규정하여 직접 일터 괴롭힘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한정에 의원

47)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참조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6가단3337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1077 판결 참조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참조

50) 광주지방법원 2007. 8. 8. 선고 2006가단80617 판결 참조

51) '일터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등 여러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이 기업의 체계 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고용관계의 복잡화와 다변화에 따라 동일 장소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기업의 분리가 존재(간접고용, 외주 하청 등)하기도 하는 등, 기업의 형식적 틀을 넘어서

(의안번호2002684), 이인영 의원(의안번호 2000318), 윤종오 의원(의안번호 20001134), 이용득 의원(의안번호 2000995)이 대표 발의 하였다. 위 법률안들은 일터 괴롭힘을 금지하고 예방교육의 실시 및 수강의무,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이에 대한 벌칙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인영 의원안의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일부 경감하고, 손해배상 등 일터 괴롭힘 발생 시의 구제와 관련한 사용자가 교육의무를 실시하지 않거나 일터 괴롭힘 발생 이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및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유형으로, 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2012169)은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 금지를 폭행 및 가혹행위의 금지로 확장하고 그 의무의 수범자를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로 확장하여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중간관리자나 동료 등의 경우에도 이 의무조항의 위반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2011735)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일터 괴롭힘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초점을 맞추어 ‘군대식 연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다. 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2012105)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및 교육·훈련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최근 공판병에 대한 ‘갑질’, 간호사 ‘태움’, 항공회사 오너 일가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면서 군대, 의료 분야 등 직종 분야별 ‘갑질’을 규율하는 형식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군대와 관련하여 김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008820) 상급자가 군대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해당 군인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 경우 부탁, 지시, 명령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군인에게 개인적 사무의 처리나 완성을 부탁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직권 남용 개념을 명시하였다. 의료분야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12448)은 「의료법」에 의료기관 내 직장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하였다. 또한 윤종필 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2014492)과 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2011845)은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인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13139)은 중대한 불법행위자의 경영 배제를 위해 「항공사업법」을 개정하여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업무와 직결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미등기임원(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 등)을 포함하도록 인적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다.

‘갑질’을 규율하는 내용의 위 법률안들은 일터 괴롭힘이나 인권침해행위의 금지를 선언하여,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금지되는 문제적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터 괴롭힘’의 정의를 규정하거나 ‘직권남용’,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갑질’을 실질적으로 규율하고자 하였다.

3. ‘갑질’을 규율하는 해외의 법과 제도: 일터 괴롭힘에 관한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서 일터의 관계들이 형성되고 있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기존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있는 경우 노동법상의 규율이 배제되고 있으나 이들 상당수는 대면서비스를 노동의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직종이기도 하다. 이렇게 일과 일터에 기반하여 발생하고 확장되는 노동관계 및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직장 내’라는 용어보다는 ‘일터’라는 용어로 보다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글에서는 ‘일터 괴롭힘’이라 명명하고자 한다(이종희 외(2016),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2-3쪽 참조).

‘갑질’의 유사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일터 괴롭힘’과 관련된 논의는 해외에서 9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따라서 여러 국가가 관련법이나 제도를 도입하여 일터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일터에서의 폭력이나 괴롭힘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일터 괴롭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일터 괴롭힘이 현재 국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수많은 ‘갑질’ 가운데 특히 현행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들, 예컨대 모욕이나 무시, 따돌림, 업무 배제, 불법에 이르지 않는 폭언이나 폭행 등과 같은 갑질 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갑질’의 제도적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프랑스는 「노동법」에서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들과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훼손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직접적으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L.1152-1조). 또한 이를 위반하여 일터 괴롭힘 가해행위를 할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더러 형사책임도 진다(L.1155-2조 제2항). 또한 ‘사용자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L.1152-4조),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규정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L.4121-1조 제2항).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한다(L.1321-2조 제2호)⁵²⁾.

일터 괴롭힘 피해자의 법적 구제수단으로, 가해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조항을 위반하여 행해진 근로계약의 파기, 법조항에 반하는 모든 규정 또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L.1152-3조). 또한 피해자는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정신적 괴롭힘으로 여겨지는 행위를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는다(L. 1152-2조 및 L.1152-3조). 또한 정신적 괴롭힘에 관련된 소송에서 노동조합은 피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적 괴롭힘에 대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고(L. 1152-2조 제1항), 소송과정에서 근로자는 괴롭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면 족하고(L. 1154-1조 제1항), 괴롭힘 자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⁵³⁾.

캐나다 퀘벡주 「노동기준법」은 정신적 괴롭힘(psychological harassment)을 “반복되면서 적대적이거나 의사에 반하는 행위, 말, 제스처 등의 형태로 가해지는 괴롭히는 행동으로, 노동자들의 존엄 또는 정신적 신체적 완전성에 영향을 끼치고 노동환경을 저해하는 것⁵⁴⁾”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1993년 스웨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조례를 통해 일터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괴롭힘(Victimization)을 ‘개인 근로자에 대해 공격적인 방식으로 반복되어 행해지는 비난받을 만하거나 명백하게 부정적인 행동으로 서 해당 근로자가 직장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이는 근로자가 괴롭힘을 겪을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사용자는 일터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직무를 설계하고 조직하여야 하며 괴롭힘이 수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일터 괴롭힘이 발견되면 즉각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52) 조임영(2012), ‘직장내 괴롭힘과 프랑스 노동법’, 「노동법논총」 제25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0-24쪽.

53) 조임영(2012), ‘직장내 괴롭힘과 프랑스 노동법’, 「노동법논총」 제25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8-29쪽.

54) the Act respecting Labour Standards (ALS) <https://www.educaloi.qc.ca/en/capsules/psychological-harassment-workplace>

야 하고 괴롭힘의 대상이 된 노동자에게는 필요한 도움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⁵⁵⁾.

일본의 경우 일터 괴롭힘에 대한 입법은 마련되어있지 않으나,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직장 내 권력적 괴롭힘의 예방·해결을 위한 제언」을 통해 권력적 괴롭힘(パワーハラ; Power Harassment의 일본식 표현)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상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의 우위성을 배경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직장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권력적 괴롭힘은 ① 폭행·상해(신체적 공격) ② 협박·명예 훼손·모욕·심한 폭언(정신적 공격) ③ 격리·동료와의 소외·무시(인간관계에서 분리) ④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 업무의 방해(과도한 요구) ⑤ 업무상의 합리성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가 낮은 일을 명하거나 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소한 요구) ⑥ 사적인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사적 침해)으로 분류하여 파악한다.⁵⁶⁾

국제기구인 ILO의 경우 서비스 분야의 일터(workplace) 폭력과 이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에 관한 행동강령(Code of practice on workplace violence in services sectors and measures to combat this phenomenon, 2004년 채택)에서는 일터 폭력(workplace violence)을 “일의 과정에서 또는 일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합리적인 행동범주에서 벗어나 그에 따라 폭행, 위협, 해를 입거나 상해를 입는 모든 행위, 사건 또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신체적 공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괴롭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⁵⁷⁾.

EU의 경우 명시적으로 일터 괴롭힘에 대해 다룬 지침은 없으나, 노동건강, 평등에 관한 지침 등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일터 괴롭힘과 폭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약(Framework Agreement on Harassment and Violence at Work, 2007)에서는 “괴롭힘은 일과 관련된 환경에서 한명 또는 여러 명의 노동자 또는 관리자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학대하고/거나 협박하고/거나 모욕하는 것”, “괴롭힘과 폭력은 한명 또는 여러 명의 관리자 또는 노동자에 의해 관리자 또는 노동자의 존엄의 침해, 그/녀의 건강의 훼손의 목적이나 결과를 낳고/거나, 적대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⁵⁸⁾

일터 괴롭힘에 대한 해외 입법례는 ‘갑질’의 제도적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위 각 입법례는 대다수가 일터 괴롭힘의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노동자의 경험에 주목하여 ‘일터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일터 괴롭힘을 인권침해 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위 대다수의 입법례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와 존중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일터 괴롭힘을 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조직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일터 괴롭힘의 예방과 관련하여 각 국의 산업안

55) VICTIMIZATION AT WORK Ordinance AFS 1993:17 https://www.kth.se/polopoly_fs/1.5279261/Provisions%20on%20measures%20against%20Victima.pdf
56) 「職場のパワーハラスメントの予防・解決に向けた提言」
57) Code of practice on workplace violence in services sectors and measures to combat this phenomenon, 2003(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protect/@protrav/@safework/documents/normativeinstrument/wcms_107705.pdf)
58) 이 협약은 유럽 차원의 사회적 파트너인 유럽노동조합연맹(ETUC/CES), 유럽경영자연연합(BUSINESSEUROPE), 유럽중소기업연합(Ueapme), 유럽공공부문 사용자단체(CEEP)가 2007년에 체결한 것으로, 사용자, 근로자 및 노사대표들의 일터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모든 단계의 사용자, 근로자 및 노사 대표에게 일터괴롭힘과 폭력 문제를 파악, 관리, 예방할 수 있는 행동지향적 기본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일터괴롭힘과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진행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9월호 10쪽 참고, 한국노동연구원)

전보건법 상의 의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되고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통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일터 괴롭힘이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을 침해하는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노동조합이 소송대리권을 갖도록 하고 괴롭힘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과 보복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일터 괴롭힘을 쉽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또한 프랑스 노동법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일터 괴롭힘 예방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의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갑질'을 규율하는 현행법들은 고용관계의 경우 주로 채용, 승진, 임금, 해고 등 노동 조건 및 인사 처분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처우로 적용이 제한되거나, 형법이나 의료법 등 개별법에서 특정 행위를 명시하여 금지하는 경우에만 규율이 가능하다. 따라서 모욕이나 무시, 따돌림, 업무 배제, 불법에 이르지 않는 폭언이나 폭행 등과 같이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갑질 행위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갑질'을 규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갑질'을 행위별로 모두 법과 제도에 나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직종·분야별로 각 개별법에 규율하는 방식은 일부 직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갑질'을 규율하는 법제도는 금지되는 행위를 나열하기보다 노동자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터 괴롭힘에 대한 해외의 입법례나 국내 관련법 발의안은 이에 대한 유용한 시각을 제시한다. 일터 괴롭힘에 관한 입법례와 같이 '일터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일상적으로 겪는 불평등과 부당한 경험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갑질'을 규율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때, '갑질'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는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평등과 부당한 경험을 노동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인권침해 문제로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노동자들에게 기존 법과 제도에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웠던 자신의 경험을 인권침해의 문제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권리 침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또한 '갑질'이 일터에 존재하는 다양한 권력관계 즉, 나이, 성별, 지위, 고용형태, 근속년수, 학력, 출신 지역 및 출신 국가 등을 둘러싼 위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법과 제도가 '갑질'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려면 '갑질'을 가능케 하는 일터 내 조직 문화와 규범, 권력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문제 삼아야 한다. 이는 '갑질' 가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여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할 것을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는 '갑질'을 폭로하고 이에 분노하는데 집중된 우리 사회의 관심을 '갑질'을 가능케 하는 환경, 즉, 일터 내 민주주의 부재, 위계적 권력관계의 문제로 이동시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갑질'이 가해자의 인성의 문제라거나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갑질’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도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갑질’을 일일이 규정할 수도 없고, ‘갑질’을 가능케 하는 일터의 민주주의 부재, 일터에 존재하는 위계적 권력관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러나 ‘갑질’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피해 노동자의 구제 뿐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갑질’이 개인의 인성의 문제나 사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노동관계의 문제로 인식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러한 법과 제도는 일터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선언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권리의 사각지대가 생겨나지 않도록, 노동하는 을들의 보다 촘촘한 연대를 위하여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삶에서 노동을 지우고 어떤 걸 논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되고 힘든 일을 해온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것은 노동이고 어떤 것은 노동이 아닐 때 나의 노동은 무엇으로 구별되고 정의될 수 있는 걸까. 남성중심, 이성애중심, 비장애중심, 관료중심, 학벌중심, 정규직중심, 서울중심 등등 그물망처럼 얽히고 설긴 공동체들은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총총이 진입장벽을 만든다. 그 사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의 진입 창구에 들어서려는 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노동으로 불리지도 않던 많은 노동들이 드러나고, 노동하는 '을'들이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결박되어 삶이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을'로 호명하고 있을까.

불행을 경쟁하는 을 이하들의 인정 투쟁

대기업 남성 정규직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이라는 오랜 비판은 여전히 이들이 가진 정체성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다. 조직이 쉽고 크며 조합비가 안정적으로 걷힐 수 있는 집단, 여성보다는 생계부양에 더 절실한 존재로 인식되며 잘릴 위험이 덜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파업 한번하면 파괴력이 있는 단위, 무엇보다 '노동자'라고 했을 때 여전히 떠오르는 계층. 한편 그 뒤로는 임노동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존재들도 그림자처럼 자리한다. 무임노동을 하는 여성들, 산업 전반의 '저임금 단순인력'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이주노동자와 현장실습생들, 장애인들의 노동은 기능 훈련이지 노동이 아니다. 많은 '을'들이 다종다양한 현장에서 차별 받고 있어도 '을'의 프레임이 포괄하지 못하는 무수한 병, 정들이 있다. 위치가 삶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그 사회에 들어갈 기회조차 없는 이들이 부지기수이며 불행을 경쟁해야 하는 을 이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나 역시 아이가 아픈 뒤로 바로 일을 해야 했던 적이 있었다. 생협 매장 파트타임으로 나름 열심히 일하려고 애썼었다. 각종 물품을 나르고 진열하는 일, 선입선출과 검수를 동시에 하며 계산과 응대를 하는 일, 모든 감각에 촉을 세우고 한시 바빠 움직여야 하는 조그만 매장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사치였다. 냉동물품이 발에 떨어져도 약 소리 하나 못 낼 때, 쌀을 나르다 잘못해 터질 때, 단 몇 시간 노동만으로도 내가 파괴되는 느낌, 씬 없이 물량을 처내는 노동, 이게 주부들의 노동인 건가를 실감했다. 그 때 동료들과 제일 많이 나누던 이야기는 “여자가 아이 낳고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이런 일”이라는 편견 가득한 탄식이거나, “우리에게도 노조가 필요해”라는 각오였다. 생협은 윤리적 생산과 소비는 있으나 노동은 없었다. 그저 단시간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여성노동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착취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전형만 있었다.

최저임금 노동의 일상에서 절로든 비참함. 술한 올들이 느끼는 것들도 이와 닮아 있지 않을까. 동료는 건넌 ‘노조’라는 단어에 흠칫 놀랐던 기억에는 ‘노동조합하면 인생 조진다’는 공포도 함께 있었다. 무수한 갑질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언니들에게 털어놓는 진상 고발과, 퇴근 후 함께 나눴던 맥주 한 잔 같은 공감 덕택이었다. 비참함에서 벗어날 통로, 우리가 하는 노동의 실체를 설명해줄 언어가 필요했고 요구를 관철시킬 무기가 필요했다. 그건 노동조합이었다.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대통령이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시대다. 민주노총 역시 가입문의에서부터 직접 현장에서 노조를 조직하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노동조합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노조에 대한 긍정적 여론과 함께 우리도 노조해 보자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일고 있음은 제 밥그릇 지키는 이기적인 노동조합이라는 표상이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인 걸까?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일이 왜 이기적인가. 노동자 밥그릇 지키는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교섭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다. 같은 전제를 가진 질문은 또 있다. 정규직 고임금론에 기대어 자본의 역할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소위 사회연대전략은 대체 그 밥그릇을 빼앗는 주체가 동료들인가, 라고 묻게 한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연대의 조건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최종 권한자에 대항한 공동의 싸움이어야 한다. 언제든 노동자 목숨 줄 쥐고 좌지우지하는 사측에서 비정규직 ‘도와줄’ 테니 기금 조성하자 해서 타협할 의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투쟁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으로 도와주라는 지시는 외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너희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화하고 같은 ‘을’로도 인정하지 않으며 연대를 시혜로 전락시킨다. 이렇게 ‘조장되는’ 집단이기주의의 실체를 내부에서 깨나가기 보다는 손쉽게 인정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결론을 내버리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정규직 마타도어를 강화하는 일밖에는 없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내치며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규직 집단에 대한 비판과는 구분되는, 외려 그것을 더 강화하는 이데올로기 이상을 형성하지는 못 한다. 너희는 병-정 이지만 우리는 ‘을’이야 라는 선언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이게 아니라 을이 병이 될 수도 정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내고 함께 손잡고 맞서야 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돌봄’이라는 말의 위계

전통적 의미에서 남성들이 사회의 생산에 복무했다면, 인간의 생애주기마다 필요로 하는 돌봄 노동은 인간사에서 핵심적인 일이었고, 주로 여성들에게 무임으로 전가되어 왔다. 현재는 보육교사, 초등 돌봄 전담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도우미에서 노동자로, 보조나 도움이 아니라 돌봄 노동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전문적인 직업으로 호명하는 작업들을 거쳐 왔다. 돌봄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노동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다시금 묻고자하는 것은 대체 ‘돌봄’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 ‘돌봄’은 돌보는 대상들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단어다.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아이 돌봄 등 각각 대상이 다르듯, 돌봄의 성격이 다 다르다. 어떤 노동은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며 상당한 육체노동을 한다. 어떤 노동은 대상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필요로 하며 말 그대로 인내를 동

반한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돌봄 노동자들은 통상적 의미에서의 ‘돌봄’을 일관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돌봄의 대상인 장애인, 노인, 아이를 그저 ‘돌봐야’하는 대상으로만 규정한다. 게다가 ‘돌봄 노동’을 주로 전담하는 여성들에게 아이나 노인, 질병·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다면 평생의 부담일 수밖에 없다. 가족의 역할로만 여겨졌던 ‘돌봄’의 영역이 종일의 시간으로 가면 또 다른 쟁점이 생긴다.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휴게시간 의무화를 우려하는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의 입장차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갭-을 문제처럼 누가 권력의 우위에 있는가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 둘 사이에 착취자 자본가들과 정부의 역할은 빠져 있다.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만드는 착취자의 전략은 외려 이 착취시스템에 진입한 자와 진입하지 못한 자 사이의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하며, 후자를 대상화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민간시장에 맡겨지던 돌봄 노동자들을 공단이 직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 가슴이 돌봐 온 인간들의 삶, 그 손을 보이게 하고 공식화했다면, 이제는 사회 전체가 기울여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돌봄 노동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가 대치되지 않는 사회, 이윤을 위한 속도보다는 관계를 위한 성숙과 이를 지향 삼아 돌아가는 사회. 저출산 위기 속에서 아이 낳게 하고, 아이·부모 맡겨 일 잘하라는 사회의 요구와 노동자 개인의 요구가 꼭 합치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존중은 그런 의미도 아니다. 자본주의 생산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 돌봄 노동의 현재적 의미라면, 이걸 뛰어넘는 전망을 가져야 권리의 사각지대가 생겨나지 않으며 상생이 가능하다.

차별이 당연한 존재, ‘왜’를 묻지 않는다

착취의 사슬 제일 끝에 있는 사람들, 소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은 어떠한가. 한국은 이주노동자가 농사를 짓는 사회다. 이 사회의 먹거리는 온전히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사람들은 단 돈 천원에 깻잎 한단을 살 수 있는 대형마트를 향한다. 그러나 그것을 만드는 노동은 생각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갑질은 말 그대로 슈퍼 갑질이다. 한 달에 이틀 쉬며 70-80시간 무임으로 노동하는 농촌의 이주노동자들, 비닐하우스는 화장실 밖에 있고, 잠금 장치가 없어 사장들이 여성 기숙사에 수시로 드나든다. 위험한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온갖 부당대우는 훈련으로 위장되기도 한다.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는 심각한데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는 배를 탄 지 7일 만에 맞아 숨져 냉동 창고에서 주검으로 발견돼 경악케 한 바 있고, 사업주의 폭행으로 바다로 떠밀린 이주노동자의 절규가 아직도 대중 매체를 타고 있다. 이들은 이전처럼 밀집된 제조업 현장과는 다르게 바다, 농촌 등 도시와 분리된 공간에서 일을 한다. 열 달 가까이 망망대해 한 가운데 있기도 하고,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야 하는 조건에 놓여 있기도 하다. 작년 밀양 깻잎밭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 제목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캠페인이었다.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진과 자유한국당에 의해 발의된 최저임금 차등안은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어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산재 적용도 안 되고, 똑같이 일해도 월급 15만원을 받는 연수생제는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제도라는 이름으로 온존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어 이탈하면 바로 미등록 체류가 되는, 악법 고용허가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체류와 신분이 불가분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제도 자체

는 이주노동자들의 조직적 저항을 막는다. 저항을 하지 않으니 부려 먹어도 되는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 적은 임금만 줘도 되는 사람들, 정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들로 규정되고, 또 다시 다른 제도를 두어 착취한다.

전쟁 등의 정치 상황으로 쫓겨 온 난민들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협당하는 이들의 분노로 프레이밍 되기도 했다. 고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거나 정치 상황 등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이주민들은 그저 쉽게 차별해도 되는 존재,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 무권리 상태의 노예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다. 자본가들은 그러한 존재들의 당연함을 활용하여 착취하고, 이 착취를 위해 차별을 극대화한다.

‘을’ 이하 가장 밑바닥에서 없어서도 그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에게 행해지는 공격은 결국 ‘을’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작년 노동부가 발표한 숙식비 공제 지침은 단협이나 법률로써만 임금 공제가 가능함에도, 상한선을 두어 임금을 깎도록 만든 근기법, 최저임금법 위반 지침이었다. 이러한 위반은 이주노동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무기로 산입범위를 확대해 정주노동자들도 똑같이 임금을 강탈당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었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전체 노동계약의 신호탄이었다는 지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식상하지만 ‘을’의 ‘위치’가 다르다고 하여 연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을, 노동의 지우개인가 돋보기인가

핵심을 설명하는 언어의 힘은 중요하다. 수많은 ‘을’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 이후로 내가 겪는 일상의 차별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갑질'로 대중화되고 있다. 탄압이나 착취보다 쉬우면서 일상에 스며든 폭력들을 바로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통로가 된 언어, '갑질'. 모든 형태의 권력관계가 갑-을로 소급되고, 사소화 되거나 가볍게 치부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레토릭에 의거한 대중 전략은 일단 장점이 많다. 차별에 대한 인지와 감수성을 높이며 일상의 갑질을 발견하게 한 것, 또한 갑질을 폭로하는 데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실제 조직화로 이어진 성과는 해당 주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터다.

그러나 여전히 갑질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남는다. 왜 갑질을 하게 되는지,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인지, 성찰할 기회를 갖지 않거나 못하는 문제 말이다. 갑질에 맞선 저항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상황,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위계와 폭력들, '착취'를 위해 '차별'을 조장하는 지배자들의 전략은 교묘하면서도 노골적이다. 그렇기에 갑질에 맞선 을들의 연대가 갖는 함의를 보다 더 풍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불평등과 차별의 단면을 포착한 레토릭에서 실체를 발견하는 일, 소위 '대자적'계급으로의 조직화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인입시켜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갑질에 맞선 산발적인 저항들을 보다 조직적·체계적으로 잇는 작업, 갑질에 배경하는 사회경제적 관계, 위계가 작용하는 분명한 구도들을 드러내고 이에 맞선 행동들을 조직할 책임, 그 중심에는 민주노총도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직장갑질119가 드러낸 한국 직장폭력의 백태와 해결방안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텝

한림성심병원 장기자랑에서 대한항공까지. '직장 갑질'은 여전히 뜨겁다. 연일 이어지는 제보로 직장갑질119는 설 틈이 없다. 지난 6개월간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1만 9038명이 방문했고, 29만 3737번의 대화가 오갔다. 오픈채팅을 통해 접수된 갑질 제보 8,447개. 신원이 드러나고 내용에 신빙성이 높은 이메일 제보 3415개, 블로그·페이스북 제보 76개, 총 갑질제보는 1만 1938개다. 하루 평균 65.9명의 제보. 직장갑질119는 지금까지 더럽고 치사해도 참았던 직장인들의 작은 숨구멍이다.⁵⁹⁾

유형	내용	오픈채팅	이메일	기타	계	비율
임금	임금을 떼었다(수당,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체불 등)	2152	901	19	3,072	25.7%
노동시간	휴게시간, 야근강요, 많이 일한다. 휴일에 일한다.	619	168	8	795	6.7%
휴게	연차휴가 없거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통제	566	224	9	799	6.7%
인사이드	일방적인 발령을 받았다.	222	112	0	334	2.8%
징계.해고	사소한 이유로 징계(해고)당했다.	684	376	9	1,069	9.0%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당했다.	166	84	0	250	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안 쓴다.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 있다.	418	121	1	540	4.5%
취업규칙	회사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약했다.	274	44	2	320	2.7%
산재	일하다 다쳤는데 내 돈 내고 치료했다.	137	70	0	207	1.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299	54	0	353	3.0%
직장내괴롭힘	따돌리고, 괴롭혔다. 상사 또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	1069	530	11	1,610	13.5%
비정규직	직원인줄 알았는데개인사업자,수습,사용,알바,계약직차별	226	113	1	340	2.8%
법적절차	회사편인 근로감독관, 합의 중용한 노동위원회	379	108	0	487	4.1%
잡무지시 등	청소, 김장, 장기자랑, 결혼식 등 잡무, 기타	1236	510	16	1,762	14.8%
합계		8447	3415	76	11,938	100.0%

▲ 직장갑질119 제보 유형별 통계(2017년 11월 1일-2018년 4월 30일)

직장갑질119는 '직장 갑질'을 "권력의 우위에 있는 회사 또는 직장상사가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라 본다. 법적용어가 아니기에 해결방법 역시 천차만별이다. 임금체불과 같이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

59) <직장갑질119, 6개월의 기록> 보고서, 2018년 5월 22일 발행

할 수 있는 갑질이 있다면, 현행법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갑질도 있다. 법에 내용은 있지만 처리기관이 불명확한 갑질도 있고, 가해자를 비호하는 처리기관의 미온적 처리가 문제인 갑질도 있다.

아래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을”이라는 가상 인물이 입사부터 퇴사까지 겪는 갑질 이야기다. 실제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사례로 재구성했다. 다양한 갑질을 다 담을 수는 없기에 현행 법·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갑질,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갑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 입사편

근무조건

근무기간 1년이상 (기간협의가능)
 근무요일 주6일
 근무시간 10:00 ~ 23:00 (시간협의가능)
 복리후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우대사항 동종업계 경력자, 장기근무 가능자, 연근거주자

근무지주소 지도 상세보기

급여 **월급 2,000,000원**
법 급여계산기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을’씨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구직사이트에 접속한다. 사이트는 지역별, 기간별, 테마별로 검색할 수 있게 구성되어 누구든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서울을 선택해, 세부지역, 업종, 근무기간, 근무요일을 고른다. 조금 덜 쉬더라도 돈을 벌고 싶기에 ‘1년 이상’, ‘주 6일’을 택한다. 프리미엄(광고비를 많이 낸) 채용정보를 지나 한 음식점의 채용정보를 클릭한다. 10시-23시 근무, 복리후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혀있는데 한 달 월급은 2백 만 원이란다. 이상하다. 4대 보험을 복리후생이라 적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⁶⁰⁾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거짓 구인광고가 범람하지만 구직사이트는 처벌받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구직사이트는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⁶¹⁾이다. ‘직업소개사업(구인자-구직자 직접 연결)’도 아니고, ‘근로자공급사업’도 아니니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장을 구하는데... 법과 현실의 괴리감이 느껴진다.

[월급제] 택배 배송사원 모집(차량지원/월350만원이상 가능).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택배기사 채용정보다. 한진택배 배송기사로 일하고 싶었던 A씨는 구직사이트를 보고 회사를 찾아갔다. 노동자를 채용하는

60) 5인 미만 사업장, 하루 11시간(휴게시간 2시간) 근무로 가정시
 기본급 : 7,530원 × 11시간 × 25일 = 2,070,750
 주휴수당 : 7,530 × 8시간 × 4일 = 240,960
 총계 : 2,311,710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22시 이후 노동에 대한 야간수당(하루 1시간), 1일 8시간 이상 노동에 대한 연장수당(하루 3시간) 등이 가산된다.)
 61)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8호

줄 알았지만 지입차 모집이었다. 회사는 탑차를 사야 한다고 했다. 시세보다 비싸게 차를 사서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지만, 40여 일만에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됐다. 대리점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고, 출근하지 못하면 다른 용달차를 써서 물어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물어내야 하는 손해배상 비용만 2400만원. 지입차 비용을 포함해 진 빚만 5천만 원이다.

채용갑질 제보는 꾸준히 들어온다. “면접보고, 출근날짜까지 확정했는데 출근 전 날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되었다.”는 제보에서부터 “구직사이트에 나온 채용정보만 믿고 지원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강요한다. 사인을 해야 하느냐.”는 제보까지 천태만상이다. 구인업체가 돈줄인 ‘구직사이트’는 ‘직업안정법’의 틈새에서 구직자들을 희롱한다. 한 달 벌이가 급하기에 새 직장을 찾겠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여력은 없다. 채용정보와 전혀 다른 근무조건을 제시하는 인사담당자 앞에서 웃으며 겨자 먹듯 출근날짜를 확정 짓는다. ‘인터넷 구직사이트’는 직장 갑질의 입구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 조현민 갑질

입사 후 몇 달이 지났다. 상사는 특하면 욕하고, 눈에 보이는 물건을 집어던진다. 조현민은 대한항공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있었다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끔찍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용기를 낸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핸드폰 녹음 어플을 켜 놓고, 첩보작전을 하듯 상사 옆에 붙어있었다. 끔찍했던 하루, 다행히 상사의 욕설과 물건이 날아가 부딪히는 소리를 녹음할 수 있었다. 이제 너는 끝났어.

노동부를 찾아갔으나 답변은 허탈했다. “진정해봤자 처벌하기 어렵다.” 노동법에는 상사의 폭언이나 준폭행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제8조)”라고 되어있지만 폭행의 주체는 사용자다. 노동부는 사용자라 볼 수 없는 상사의 폭언은 노동법 상 규율이 어렵고, 결국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서를 찾아가라는 이야기다. 아직 직장을 더 다녀야 하기에, 경찰서는 퇴사 후에나 찾아가기로 했다.

직장갑질119가 문을 연 2017년 11월1일부터 2018년 4월까지 들어온 폭행 관련 제보는 200여건.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는 42건이다 이메일 제보를 폭행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폭행 57.2%, 특수폭행 9.5%, 준폭행은 33.3%이다. 가해자에 따라 분류하면 대리, 팀장 등 상사인 경우 66.6%(28건), 사장과 임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는 21.4%(9건)이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폭행은 권력과 지위라는 우월성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폐되기도 쉽고, 일상적·반복적인 경우도 많기에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행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폭언’이나 ‘준폭행’은 노동법으로 다룰 수 없다. 넓은 의미의 폭행을 다룰 수 있고, 회사 내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조현민 방지법’이 필요하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 CCTV 감시

첩보작전 실패의 상처가 아물 즈음,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 CCTV. 사장은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직원을 감시하고 있었다. 사장은 집에서 CCTV 어플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때로는 전화를 걸어 “앉아

있지 말라.”고 지시하고, CCTV로 출퇴근을 확인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노동감시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도난 방지의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으나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법까지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노동부도 다른 소리 못하겠지.

CCTV를 문제제기 하기 위해 노동부를 찾아갔더니 노동부는 관련법(개인정보보호법)은 다루지 않는다며, 개인정보침해센터로 떠넘겼다. 개인정보침해센터를 찾아가니 사업체와 관련된 신고는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니 ‘민간기업’은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란다. 아. 이제는 지친다.

2018년 3월 23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중 CCTV와 관련된 갑질제보는 총 37건이었다. 사업주들은 표면적으로는 ‘화재예방’이나 ‘도난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직원들의 근태를 감시하고, 근무자세를 감시하는 등의 ‘노동감시’형 23건(62.2%), 단순한 감시수준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징계하는 근거로 CCTV 사례를 제시한다는 ‘징계’형 6건(10.8%)이었다. 또한 회사의 부조리한 관행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기 위해 CCTV를 악용하는 사례도 6건(10.8%)이나 되었다. 사용주는 주휴수당을 청구하거나 휴게시간 미부여를 항의하는 노동자에게 “CCTV를 돌려 트집을 잡아 징계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문제는 직장 내 CCTV와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을’씨처럼 문제제기 하기 위해 용기를 내도 ‘뽕뽕이’만 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 노동부 진정

직장을 그만둔 선배를 만났다. 이제까지 당한 것이 억울해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고 했다. 이제까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니 진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 너희도 좀 편해지지 않겠냐.”고 말하는 선배가 참 고마웠다.

며칠이 지났을까. 사장이 매장으로 뛰어 들어온다.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부랴부랴 사인을 시킨다. ‘근로계약서’였다. 일하면서 1시간 이상을 쉬어본 적이 없는데 휴게시간은 2시간이란다. 급여도, 근무시간도 실제 일하던 것과 달랐다. 심지어 근로계약서 작성일자를 오늘이 아니라 입사일로 적으라 한다. 이걸 아니다 싶었지만 까라면 까야지.

다시 선배를 만났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못 받은 임금 일부를 받았다고 한다. 선배가 따로 따져본 것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근로감독관에게 하루에 1시간도 채 못 쉬었다고 말하고, 못 받은 임금이 얼마라고 보여줘도 돌아오는 답은 “일 크게 만들지 말자.”다.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벌금을 물었을 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벌금액은 20만원. 근로기준법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적혀있지만 원래 그 정도로 끝난다고 했다.

무엇보다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행태다. 지난 6개월간 근로감독관에 대한 갑질 제보는 100여건이 들어왔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한 직장인의 정보를 회사에 넘겨주는 사례였다. 지난 1월 직장갑질119가 고용노동부를 만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명단을 정리해 넘겼는데, 그 자료가 통째로 회사로 들어갔다는 제보도 있었다.

한 직장인은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첨부한 음성파일로 녹취록을 만들어 고소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진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상처라도 있어야죠. 이걸 대화일 뿐이야.”, “먹살 잡는 거 폭행 아니에요.”라며 노골적으로 가해자 편을 들었다. 그는 “마치 가해자와 대화하는 듯 했고 그래서 포기하라는 것인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고 토로했다.

사전에 근로감독을 회사에 통보해 회사가 불법을 은폐할 시간을 벌어주는 근로감독관도 있었다. 한 직장인은 “노동감사(근로감독)를 나온다고 일주일 전에 알려준 탓에, 미리 저쪽 사장과 사모가 짜고서 임금을 가짜로 맞춘 계약서와, 직원 간에 말을 맞추라고 사전에 모의했다.”라고 제보했다. 이쯤 되면 고용노동부는 ‘직장 갑질 활성화’의 공범이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 퇴사편

상사와의 마찰이 잦아졌다. 법·제도가 내 편이 아니니 맨몸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이 작은 매장에 노동조합은 하늘의 별따기니 돈키호테가 되어 상사와 맞선다. 어느 날 사장 면담이 잡혔다. 이번 기회로 조금은 바뀔 수 있을까. 사장의 판정은 해고통보였다. 해고된 건 나다.

1년 이상 일을 했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데, 해고가 자발적 이직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이놈의 회사는 퇴사하는 순간까지 발목을 잡는다. 고용센터를 찾아가니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회사가 입력하는데, 해고가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입력해 놓은 것이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직장갑질119가 받은 제보 11,938건 중 353건(2.96%)가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이다. “강요로 사직서를 썼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괴롭힘으로 출근하기가 너무 끔찍한데,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주된 질문이다. 노동자가 이직할 경우 사업주가 해당 노동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사업주가 이직 사유까지 작성하다보니 해고시켜놓고, ‘자발적 이직’으로 기록한다. 노동자가 정정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절차는 까다롭고, 마음은 이미 지친 상태다.

자발적 이직이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⁶²⁾’가 있긴 하지만 그 범위가 협소하다. 회사의 괴롭힘에 못 이겨 그만두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생사여탈권을 사장이 갖고 있다 보니 실업급여로 생색을 내는 사업주도 많다. “지금 사직하면 실업급여는 받게 해줄게.”라며 선심을 쓰고, “퇴직금 포기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줄게.”라며 협박한다.

나가며

6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개별 노동자들이 직장 갑질에 맞서기는 어렵다. 법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회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직종별로 모여 회사에 맞서는 것이 직장 갑질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턱없이 낮고,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뼈뺌하다.

광장을 뒤덮었던 민주주의호는 일터 앞에 멈춰있다. 적폐청산을 말하는 ‘촛불정권’의 발걸음이 유독 ‘노동’ 앞에서 더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에 청와대가 개입되었다고 밝혀지건 말건,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이재용의 손을 맞잡는다. 재벌에 관대한 정부는 불법파견·전교조 합법화와 같은 현안 노동문제에선 침묵한다. 노동과 관련된 법안은 단 하나도 처리하지 않은 국회는 환경노동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의 손에 넘겼고, ‘최저임금 만원’은 산업범위 확대로 넘겨주기가 되었다. 많이 늦었지만 더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라도 민주주의호의 노를 일터로 다잡아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갑질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직장갑질 근절 긴급과제’와 우리 회사의 갑질 점수를 채점할 수 있는 ‘갑질 지표’를 준비 중이다. ‘긴급과제’와 ‘갑질지표’에는 직장갑질119에 제보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이 담길 것이다. ‘을씨’가 다음 직장에서는 갑질을 겪지 않기를, 또 다른 ‘을씨’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것이 의사의 조건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임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장인들의 숨구멍, 직장갑질119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태프

1. 2016년 촛불을 기점으로 생긴 변화들

○ 박근혜 퇴진 촛불

- 연인원 1700만 명 참여.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박근혜가 물러나면 끝이 나는 건가요. 박근혜가 물러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나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저는 못살 것 같습니다.”

- 경남 박근혜 탄핵 촛불에서 발언한 전기공의 자유발언 중

○ 촛불 이후 직장 민주주의 관심 증가⁶³⁾

-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관계는 : 업주 · 종업원 관계(44.0%), 직장 상사와의 관계(36.1%)

- 속한 조직 내에서 비민주적인 관행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 자주 있다.(11.0%), 가끔 있다.(43.4%)

- 당신도 조직 내에서 민주화를 가로막는 문화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적이 있는가(35.5%, 있다.)

: 내가 나선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40.0%), 조직 내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29.7%),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23.3%)

* 네이버 지식인 ‘직장 갑질’ 키워드 검색 결과 : 2016. 3분기 114건 ⇨ 2017. 3분기 879건(7.7배)⁶⁴⁾

○ 촛불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⁶⁵⁾

- 노동조합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대체로 필요하다(57.5%), 반드시 필요하다.(28.0%)

63) 중앙일보, 한국 사회 ‘생활 민주주의’ 어디쯤 와있나(2017. 9.21)

64) 직장갑질119 자체 조사(2017. 11. 1.)

65) 201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2017년 8월)

-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나 : 그렇다(30.0%), 매우 그렇다(5.2%), 보통(33.2%)

- 근로자들은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62.0%),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38.0%)

○ 노동조합 조직률 - 「2016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년도	1989	2002	2004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조직률(%)	19.8	11.6	10.6	10.3	9.8	10.1	10.3	10.3	10.3	10.2	10.3 ¹

△ 「2016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고용노동부, 2017.12

구분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임금근로자수	11,434,000	3,750,000	1,993,000	2,458,000
조합원수	19,290	130,805	299,531	1,353,698
조직률	0.2	3.5	15.0	55.1

△ 사업체 규모별 조직현황 「2016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고용노동부, 2017.12

○ 촛불 이후 민주노총 조직률 증가 현황⁶⁶⁾

년도	95.11	10.11	11.12	12.12	14.1	15.1	16.1	16.12	18.4
조합원수	418,154	677,790	674,279	693,662	681,142	691,136	698,026	734,369	810,816
비교	.	▽ 25,808	▽ 3,511	▲ 19,383	▽ 12,520	▲ 9,994	▲ 6,890	▲ 36,343	▲ 76,447

결성(가입) 동기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임금 삭감	처우 개선	최저임금 편법	일터 차별	임금 체불	구조 조정	임금체계 개편	고용 불안	계약 해지	협회 비리
사업장 (130)	18	7	39	15	18	1	19	2	4	6	1
비율	13.8%	5.3%	30%	11.5%	13.8%	0.76%	14.6%	1.5%	3.0%	4.6%	0.76%

○ 대선 직후 정부의 태도 변화⁶⁷⁾

- 대통령 노조조직률 제고 언급(100일 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 등

2. 직장갑질119 출범까지

○ 출범경과

66) 촛불항쟁 이후 민주노총 조직 확대 현황 발표 기자회견 자료, 민주노총(2018. 4. 30)

67) 2017년 기준

-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비없세) 주최, 4차례 공개토론회 진행
- 노동건강연대와 비없세 주최로 <갑질 반사! 직장을 바꿔! 누구나 노조가 필요해!>라는 명칭으로 워크샵 및 단체별 간담회 진행

<직장갑질119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6차례의 회의 진행

비정규노동자 권리 찾기, 문재인 시대, 비정규운동의 방향 토론회 (2017.7.18.) 중
<p>노동부 내에 부당노동행위 실적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포항 한수원 내 하청업체에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했는데,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발표 이후 태도가 돌변해 노동자들에게 진정이나 고발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p> <p>새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등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열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기대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p> <p>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본다. 공약집을 보면 비정규 문제에 관해서도 운동진영이 요구하는 걸 많이 담고 있다. 한계는 있다 손 치더라도 촛불투쟁 이후에 들어선 정부고 그렇게 자기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고, 하청노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분위기를 고무시켜 대중운동을 일어나게 하고, 감하지 않고 활발하게 운동할 것인지, 아니면 한계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선을 칠 것인지 판단이 필요</p> <p>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했는데 물 다 빠지고 노를 저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촛불 때 민주노총이 열심히 활동했으나 노동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만드는데 부족했고, 노동자계급으로의 역할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가 고민이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p> <p>노조 가입 문의를 많고 사회적 분위기가 노조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피씨방 등 가만히 있어도 노조가입 문의를 들어오는 분위기다.</p> <p>목적이 노조가 아니라 건강한 일터라는 걸 천명하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는 일에 대해 금기시되어왔던 걸 바꿔보자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조직화라는 목적을 빼고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p>

○ 문제의식

직장을 바꿔! 누구나 노조가 필요해! 워크숍(2017.8.29.) 중

권리의 언어, 집단의 언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이 과거와 달라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을 하게 됐다.

넷마블 사건 때 설문조사를 해서 블라인드앱에 올렸는데, 설문지의 문항이 기존의 설문지와 달랐다는 평가가 있었다. 설문지를 검토해준 사람들은 코딩을 72시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면 “집에 몇 시간에 한 번 집에 갔습니까?”라는 질문이었다.

노동조합을 조직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노동자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회적으로 표출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 기존의 노동조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은 기피의 대상이거나 기득권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다. 이미지를 개선해야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다보니, 뭔가 바뀌는 경험을 조금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틀 말고 다른 틀이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됐다.

집단적인 기업별 조직화가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느꼈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들이 노조를 접근할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콜센터라는 노동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직률도 높고 노동강도가 높고 임금이 낮고 무엇보다 고립화된 노동이다. 노동자들끼리 연대, 연계를 통한 집단적 가입이 어려운 노동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개별 상담은 온다. 임금, 이명 근골격계 등이 산재도 오는데 이걸로 접근을 해봐야 별로 성과가 없고 법률적 조언에서 그친다.

실습생들이 콜센터, 제2금융권 언저리에 많이 간다. 학생들이 노동교육 받고 간다고 할 때 상사의 차를 타면 어디에 앉아야 하나, 커피를 타서 어떤 순서대로 줘야 하나, 이런 걸 교육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 직장 안에서 힘과 권력과 자리로 찍어 누르는 걸 일찍부터 경험한다. 정비소에 실습을 나갔는데 기계소리 때문에 안들리면 내가 정신을 더 차리지 못해서 안 들렸다고 얘기한다. 이걸 담아내지 못하면, 노조로 직선화살표로 가기 어렵다. 사람들이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직장의 도리, 직장의 생활법이라고 느끼는 상황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과거 조직화 방식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000명이 신청한 건 촛불 이후에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고 본다. 우리가 직업윤리라고 생각하는 직장내 권력과 갑질을 깨뜨리겠다는 발상을 하지 않으면 노조가입서를 쓰는 건 불가능해진다고 본다.

업종별 공통의제 모임 이게 중요한데, 넷마블 문제를 게임산업 전반 노동시간 문제로 확장한 것처럼 개별사업장 문제를 넘어 사회적 캠페인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업종 전반의 문제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기의 중심이 직종별 모임이나, 전체 모임이냐인데, 직종별 모임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은 진화 과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인데, 직종별 권리 획득을 지향하며 가는 것인지도 고민이고, 전체 모임이 단지 공지 수준이 아니라 “직장을 바꿔!”라고 한다면 현장에서도 할 일이 있지만, “호칭부터 바꾸자”는 것처럼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보험, 노동시간제도, 임금체계도 바뀌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조직노동자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발표한다면, 이 플랫폼이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또 많이 들어온다.

3. 직장갑질119 출범까지

○ <직장갑질> 실태조사⁶⁸⁾

- 직장내 23가지 갑질 중에서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당했다는 유형은 (1)업무량보다 인원이 적다(60.8%), (2) 추가근무 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다(51.5%), (3)하는 일보다 임금을 적게 준다(49.9%), (4)계약보다 더 많이 근무시킨다(46.5%), (5)교육없이 업무투입(46.3%), (6)휴가 제때 못 쓴다(45.5%), (7)퇴근무렵에 업무부여(43.8%) 등 모두 7

68) 직장인 의식 조사 결과보고서, 직장갑질119(2017. 11. 1)

개였다.

- 직장인들은 직장갑질을 당했을 때 소극적 대응이 53.6%인데 반해 적극적 대응은 15.7%에 그쳤다. 소극적 대응은 참거나 모르척(41.3%)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12.3%) 방식이었다. 적극적 대응은 동료와 집단대응(8.2%) 하거나 관련기관에 신고(7.5%)하는 것이었다.

- 불합리한 대우 시 참거나 모르척 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5.5%로 가장 많았고,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34.1%였다.

○ 직장갑질119 목표

- 노동자들이 직장 문제를 토로하고, 해결하는 온라인 모임을 구성해보자

: 직장에서 겪는 갑질을 해결하는 직종별 모임을 온라인공간에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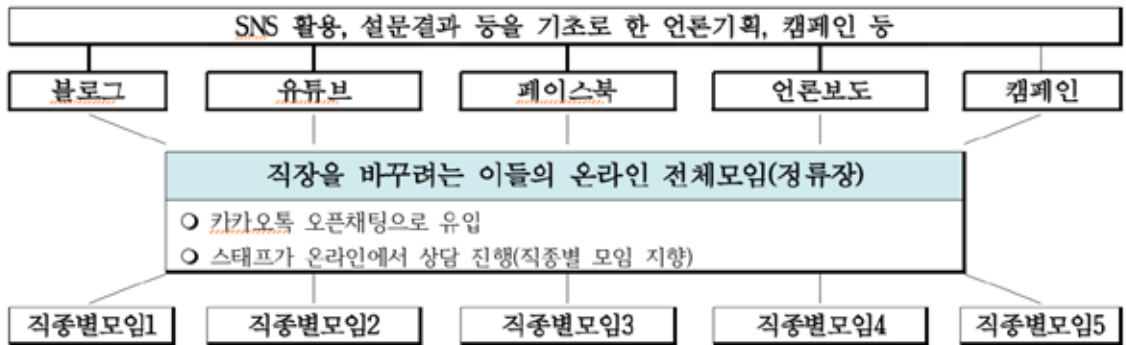
: 직종별 모임에서 제기된 불공정한 관행을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직장 바꾸기 운동을 만든다.

: 개인민원 해결방식이 아닌, 집단적으로 업종의 관행을 바꾸는 해결모델을 개발한다.

- 온라인에서 직장 갑질을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확립

: 직장갑질119 온라인 모임 가입 → 동종직종 노동자들과 온라인에서 갑질 토로 → 온라인모임에 가입된 법률가

· 노동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 → SNS나 언론을 통해 해결과정 및 결과 공유 → 이 소식을 접한 다른 이가 직장갑



질119에 가입신청

4. 직장갑질119 활동

유형	내용	오픈채팅	이메일	기타	계	비율
임금	임금을 떼었다(수당,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체불 등)	2152	901	19	3,072	25.7%
노동시간	휴게시간, 야근강요, 많이 일한다. 휴일에 일한다.	619	168	8	795	6.7%
휴게	연차휴가 없거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통제	566	224	9	799	6.7%

인사이동	일방적인 발령을 받았다.	222	112	0	334	2.8%
징계.해고	사소한 이유로 징계(해고)당했다.	684	376	9	1,069	9.0%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당했다.	166	84	0	250	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안 쓴다.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 있다.	418	121	1	540	4.5%
취업규칙	회사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악했다.	274	44	2	320	2.7%
산재	일하다 다쳤는데 내 돈 내고 치료했다.	137	70	0	207	1.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299	54	0	353	3.0%
직장내괴롭힘	따돌리고, 괴롭혔다. 상사 또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	1069	530	11	1,610	13.5%
비정규직	직원인줄 알았는데 개인사업자, 수습, 시용, 알바, 계약 직 차별	226	113	1	340	2.8%
법적절차	회사편인 근로감독관, 합의 중용한 노동위원회	379	108	0	487	4.1%
잡무지시 등	청소, 김장, 장기자랑, 결혼식 등 잡무, 기타	1236	510	16	1,762	14.8%
합계		8447	3415	76	11,938	100.0%

△ 직장갑질119 제보 유형별 통계(2017년 11월 1일-2018년 4월 30일)

○ 더럽고 치사해도 참아왔던 직장인들의 작은 숨구멍

- 한 달 제보 2,021건 → 석 달 제보 5,478건 → 반 년 제보 11,938건
- 접근이 쉬운 SNS와 이메일을 통한 상담 · 노동조합 가입의 창구
- 직장갑질119 출범 이후 SNS를 통한 집단적 대응형식이 확산 됨

○ 직장인들의 구체적인 목소리 공론화 및 이슈화

- 노동조합에 가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대리되거나 소외되어왔던 직장인들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려짐.
- 직장 갑질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보도되고, 화제가 됨
- 최저임금, 태움, 조현민 갑질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냄.

○ 실시간 상담 및 일상적 교육 · 홍보(권리의식 제고)

- 근로기준법보다 못한 처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정보를 얻어가고, 도움을 얻는 창구.
- 본인 사례를 묻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례를 보면서 정보를 얻고, 위로를 받기도 함.
- 주변의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를 얻고, 행동에 나서기도 함.⁶⁹⁾

*법적절차 제보가 11월 29건(1.1%)에서 4월 487건(6.9%)으로 급증

○ 노동조합 가입 · 집단적 해법 마련에 대한 인식 확산

- 직장갑질119는 5개의 온라인 직종별 모임을 운영 중

69) 직장갑질119로 질문해오는 사람들의 첫마디의 대다수는 '제가 겪은 이 일도 갑질이 맞는지요.'임

- : 온라인모임 1호 [노동존중 한림성심병원모임(<http://band.us/n/a1aeve3618n8l>)]
- : 온라인모임 2호 [병원 간호사-직원 노동존중모임(<http://band.us/n/a3aev68121Fdk>)]
- : 온라인모임 3호 [어린이집갑질근절! 보육교사 모임(<https://band.us/n/a6acvbR325u62>)]
- : 온라인모임 4호 [방송계갑질119(<https://open.kakao.com/o/gOk7PnD>)]
- : 온라인모임 5호 [반월시화공단 노동권리모임(<https://band.us/n/a2adv9oeo9c5b>)]
- 상담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설립 및 집단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 → 노동조합 가입 및 문의 유도

5. 하반기 직장갑질119

○ 정부동향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5)」,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18.7.18)」 발표(별첨 참조)
- 직장내 괴롭힘 관련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 10월 예정
-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 11~12월 예정
-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 12월 예정

○ 직장갑질119 제보(상담) 사례를 통해 확인 된 '직장 갑질'

- 입사(직업정보제공사업)부터 퇴사(실업급여 수급)이후까지 부조리한 관행이 드러남
- 직장 갑질을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태도 변화의 필요성, 노동조합 가입률 확대에 관심 증가
- 직장갑질119의 1직장인들의 소통창구로서의 사회적 역할 및 2공신력이 커지고 있음.
- 상담 및 제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캠페인 및 법·제도 개선 등 추진

- 사회적 환기·직장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생산
- 갑질 지표 제작 등, 본인이 직접 내가 다니는 회사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척도 마련
- 구직, 임금, 퇴사, 실업급여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 제작
- 법·제도 개선 : 직장갑질119 제보 사례를 통해 본 법·제도 개선안 마련(TF 운영 중)
- 온라인 모임 개설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직장갑질119 출범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SNS를 통한 운동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 접근이 용이한 SNS의 특징과 집단적 문제해결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7월	8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공급	부문별 대책 수립·시행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등(3/4분기)	
	권익위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 ⁴ →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 확대 운영(상담 가능)
		권익위
		기관별 '신고센터' 개설(신고접수,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별(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광역교육청+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권익위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정비		갑질 옴부즈만 운영 (기관별 자율적 운영)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대한법률법률공단 무료법률 구조사업 시행지침 개정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 지원)
		법무부
민간 분야 확산	직장 괴롭힘 종합대책 수립	공익광고 송출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배너 광고 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8-10월)
	국조실, 노동부	문체부 및 지자체 홍보수단 활용(옥외 대형 전광판, 코레일 전광판, kt, 8월-12월)

책(2018. 7. 5, 관계부처 합동)

9월	10월	11월	12월	기타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² 금지 규정 등 신설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권익위		국조실	
	예방교육 의무(연1회이상, 교안개발, 전문강사양성 ³)			
익명상담이 가능토록 국민콜 110 개선				카톡과 국민콜110 연결 ('19.7, 권익위)
기관별 익명상담 및 제보 사이트 운영				
				△ 관리감독강화(직권조사, 실태조사) △ 외부기관 점검·감사 확대
		중대 갑질 징계기준 개정		△ 주기적 단속(경찰청), △ 적극적 수사 의뢰, △ 엄정대응(법무, 경찰) △ 관리자 보직배제(내부적 갑질), 직무 배제 (외부적 갑질) 등
		행안부 악의적·중대 갑질 징계 감경 사유 적용 배제		
		인사처, 행안부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확대 ⁵			△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규제 △ 법률·심리상담 안내(법률) △ 소송 입증 부담 완화 △ 기관장의 보호조치, 피드백 시스템, 피해자 진술권 보장
	권익위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등 갑질근절 방안 추진	△ 직장내 괴롭힘 특별법 제정 검토 △ 기관별 홍보계획 수립 △ 민간 네트워크 활용 △ 학교교육강화 등
			기재부, 행안부	

'을' 노동의 지우개인가 돋보기인가

대응 인권운동사랑방

개인적으로 갑질이라는 말 자체는 유행처럼 쓰이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무엇이건 결국 반복되는 일터에서의 권력관계 문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김두나 님의 심화발제에서 해외의 일터 괴롭힘에 관한 법, 제도를 소개해주신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월·시화 공단에서 조직화 활동을 하면서 일터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이 들어오면 꽤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녹음을 하고, 증거를 모아 두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 공단 조직화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조건과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늘 어려움인데요. 지역 단위, 공단 단위 조직화 활동을 고민하지만 현실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회사 규모 별로 사장이나 관리자와 관계가 제각각이고, 노조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 사이에 노동조건의 차이 등이 너무 달라서 같은 문제의식을 나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닐까하는 막막함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노동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터에서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할 때 제도가 일터 괴롭힘이 드러나는 다양한 모습을 일관되게 포착해 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법적인 구제절차에 따라 어떤 사안은 임금체불로 어떤 사안은 형법으로 법에 맞추어 1:1 대응만하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대응이 다를지라도 개별적인 노동자의 경험을 연결된 경험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권리의 언어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제가 고민하는 조직화라는 활동도 다른 인권운동과 다르지 않게 구체적인 경험을 보편적인 문제로 포착해서 나누는 일이라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힘이 생겼을 때는 그 말 자체의 어떤 힘에 기대서가 아니라 각기 다른 노동자의 구체적인 경험이 이 사회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나누어 질 때 였던 것 같습니다. 노동자 조직화 역시 개별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넘어 집단적으로 권리로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갑질을 경험한 개별 노동자의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보편성의 문제이자 존엄의 문제로 해석하고 나누는 것이 갑질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연결고리를 늘려나가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질, 폭력 그리고 노동과 위계(민주주의)

림보

갑질을 노동문제라고 해야하는가? 갑질이 아니라 폭력이고 차별이라고 정확히 말해야 하지 않나. 을로서 겪게 되는 폭력이나 차별에 저항하기 보다는 '갑'이 되기를 욕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갑이 될 때까지 을로서 겪는 차별을 감당하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임. 2013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기획한 <평등예감 '을'들의 이어말하기>라는 기획처럼 인권을 위협하는 폭력과 차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할 듯.

노동의 위계화, 노동과 민주주의, 노동의 정의를 새로 쓰기 위한 논의가 절실해 보임. 임노동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괜찮은지 함께 질문할 필요. 요즘 누군가들이 '감당하는 노동'이 세상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고민이 됨.

갑이 되기 위해 차별과 폭력을 감당하고, 부수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통쳐지는 여러 노동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회사, 단체, 조직에 있다면,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인권운동, 활동가의 활동, 그리고 노동이 만나는 이야기 거리에도 늘 관심이 많지만, 관심만 많을 뿐. 이런 논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력과 시간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바람.

- 이 기회에 우리는 갑질의 정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근원적인 문제에 집단적 성찰을 해야 한다. 갑질의 정체는 바로 위계주의적 사유 방식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 간의 위계를 설정하자마자, '갑을 멘탈리티'가 작동한다.... 갑을 사회를 넘어서기 위한 이러한 저항과 전복의 집단적 행위에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갑을 위계주의에 대한 저항은 외부로만이 아니라, 각 개인이나 집단 내부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각 개인이나 집단은 각각의 '인식론적 사각지대'가 있다. 누군가의 갑질의 피해자이면서, 또 다른 편에서는 가해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 갑과 을은 각기 고정되어 존재하지 않고 우리 자신 속에 갑과 을이 공존하고 있다. 갑질에 대한 집단 시위는 '을들의 연대'가 아니라, '갑을 위계주의 자체에 대한 저항'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저항과 변혁에 개입하는 개인과 집단이라도, 자기비판적 성찰이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이유이다.

- <우리 안의 '갑을 멘탈리티'>, 강남순, 시사인 560호(2018.6.14.)

'을' 노동의 지우개인가 돋보기인가

희정 기록노동자

1) 갑질

- 갑/을, 그리고 '갑질'은 요 몇 년 사이 파급력을 지닌 대중 언어가 되었다. 앞서 발제에서 '갑질'이라는 명명이 지닌 의미와 의의가 이야기되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지만, 이것을 무엇이냐 지칭하기 어려운 문제들, 어떤 침해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직장 내 갑질'이라는 의미로 확산되었다.”

“갑질의 등장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부당한 행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권리언어의 공백과 제도의 부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랄라)

- 갑질은 직장에서 겪는 부당한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 줌. 언어가 있었기에 수많은 발화와 그에 따른 공감이었다.

- 그러나 동시에 '갑질'은 대중적이고 쉬운 언어이기도, 위험한 언어이기도 하다. 특히 “모든 것을 갑질로 설명하는 세상이 되었다(랄라)”면 말이다.

2) '갑'이 있다는 상정

- '갑질'은 갑과 을을 규정하지만, 하늘 아래 '을'이기만 한 '을'은 없다.(편의점 점주와 알바생, 하청업체 공장과 단기/파견직 노동자)

- 이것은 우리 모두 '갑'이 될 수 있다는 자아 성찰적 깨달음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다. 갑/을로 명명되는 위계를 필요로 하는 구조의 문제다. 그러나 갑/을 명명은 자칫하면 노동 내 '위계'를 막강한 힘(늘 갑인 자) 또는 반대로 갑질하는 특정한 개인으로 치환시킨다.

- 또는 우리 모두 '갑질'과 '을질'의 행위자라는 양육강식의 세계, 그러니까 “안은 전쟁터 밖은 지옥” 정도로 세상을 이해하게 한다. 이는 위계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가린다.

3) 갑질에 대한 분노와 공감?

- 갑질에 대한 분노가 있다. 그것이 공감을 얻고, 직장 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공론화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 분노하는가?

- 현재 대중의 분노는 상식마저 지켜지지 않을 때 일어난다. 그래서 갑 '행위'가 아니라, 갑'질'이다.(대한항공 땅콩 회항)

- 상식은 기존 사회의 편견 하에 통용되는 생각이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주입한 보편적 생각. 그 하에서 어떤 것은 상식이지만, 어떤 것은 상식이 아니다. 사람들은 운전기사를 향한 '도에 지나친' 욕설에는 분노하지만, 장애인/청소년/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에는 분노하지 않는다. 대학 청소노동자가 이사장 집 이사에 동원되는 일은 갑질이지만, 청소노동자를 그런 처지로 만든 불안정한 지위-파견노동을 유지하는 것은 분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처지를 벗어나려고 하면(정규직화 등) 분노하기도 한다.

- 갑질로 설명할 수 없는 노동의 권리들이 있다. 그 권리들이 침해당하고 박탈당하는 것은, 의도적인 국가의 노동정책에 의해서다.

- 상식에서 비릇된 분노는 시작일 뿐, 문제의 본질로 가는 걸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갑질 명명에 안주한다면 운동(?)마저 대중이 분노할 사안만 좇게 할 위험이 있다.

4) 연대와 조직

- 을은 구조적 위계 속에서 각자도생하며 전쟁터와 지옥을 넘나드는 개별 주체들을 명명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런 을에 '들'을 붙이는, 을들의 조직과 연대를 꿈꾸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갑질'이라는 언어로 찾은 주체들이 조직되고 연대하지 않는다면 '쉬운 언어'의 위험은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직장갑질119 등 미조직 사업을 통해 노조/모임이 설립되는 움직임들은 의미가 크다(직장갑질119의 경우, 5개의 온라인 직종별 모임이 있다/ 오진호)

- 그럼에도 보다 더 고민하고 싶다. 단일한 정체성도 집단도 아닌, 그럼에도 우리가 연대가 가능하다 상상하는 을들의 조직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 '쉬운 언어'로부터의 시작을, 시스템과 본질적 권리에 대한 물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담으려면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직장 내 젠더 괴롭힘을 방지하여 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

청년과 미래 하원배

1. 직장 내 젠더 괴롭힘 실태와 현황

- 한국 사회에서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함.
- 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여성의 경우 손님 응대, 탕비실 정리와 같은 감정노동과 유사한 업무에 몰려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차별 적인 용어를 듣는 등 젠더 괴롭힘이 발생함.
- 또한 임신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나 불이익을 주고 괴롭힘을 유발하는 모성보호 갑질도 많으며 공공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음. 이는 저출산 극복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올해 초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미투 운동과 특히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장기자랑 사건과 병원에서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신순번제에서 보면 이는 젠더 괴롭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2. 직장 내 젠더 괴롭힘을 방지할 법체계는 없는가?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 존재하지만 고용과정상의 성차별만 성희롱에 포함될 뿐 일상생활에서의 성희롱을 규제하기엔 부족함.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아랫사람의 대리수강으로 이루어지거나 전문강사 초빙과정도 전문성보다는 관리자의 주관에 개입되어 있음.
-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육아기근무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제도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무시간 단축을 선택한다는 것이 현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해고, 한직발령, 경력단절, 블랙리스트로 인한 재취업 불가까지도 고려하고 있어야 함.
- 지난 7월 정부차원의 저출산 대책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젠더괴롭힘을 방지하고 성평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 또한 헌법 개정안에서도 성평등보다는 여성의 보호측면에 치중한 경향이 있음.

3. 직장 내 젠더 괴롭힘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 현행 법 체계로는 직장 내 젠더 괴롭힘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젠더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무시간 단축제도 신청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육아휴직부터 휴직 후 복직까지 모성보호를 실천하는 사례를 공공기관부터 적용해야 함.

○ 기업 내에서도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며 공공기관부터 적용해서 민간기업까지 확산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평등 교육의 시간과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일시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후 3시~6시 30분

기초발제 랄라(다산인권센터)

심화발제 김두나(희망을 만드는 법), 오진호(직장갑질119 총괄스텝), 백선영(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사회 강곤 (인권저널(준))

속기 타리

강곤: 안녕하세요. 3번째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곤이라고 합니다. 광고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권저널에 속해 있습니다. 인권운동을 주제로 해서 반년간 잡지를 12월에 창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잡지가 나오게 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자료집 순서와는 다르게 얹은 순서대로 랄라, 오진호, 백선영, 김두나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봐서 쉬고 지정토론과 전체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랄라님의 기초발제 들겠습니다.

랄라: 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 랄라입니다. 엄청 떨립니다. 기획팀하면서 의견을 모았고 발제문을 작성했습니다. 인권운동에서 노동은 가까이는 하지만 '나의 운동이다' 라는 느낌을 받기 어렵습니다. 연대하고 있지만 어떤 권리로 노동을 설명해야 할까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기호 책에서 한국사회는 모욕을 선물하는 사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갑질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인 것 같습니다.

<기초발제 : '을' 노동의 지우개인가 돋보기인가. - 랄라(발제문 참조)>

강곤: 제 개인적으로는 군대에서 가장 갑질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 탈출구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책 출간하게 되면 저자와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좋은 책을 만드는 과정은 제가 갑이기도 했다가 제가 을이기도 했다가 계속 바뀌는 노동 이었고, 그 속에서 좋은 책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노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로로 도달할 것인가가 고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17페이지, 슬기로운 직장생활 발제를 들겠습니다.

오진호: 제일 먼저 발제문을 냈습니다. 직장갑질에서 총괄 스텝을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발제문을 두 개 냈어요. 24페이지를 중심으로 봐주세요. 17페이지는 노동사회에 이번에 기고한 글입니다. 참고자료로 했으면 해서 드렸어요. 어떻게 발제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우개인지 돋보기인지. 토론은 잘 해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했고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충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화 발제1 : 슬기로운 직장생활 - 오진호>

강곤: 앞에 글이 발표문인줄 알고 뒤에는 자료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현장의 생생함이 입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미조직이라는 말 안 쓴다고 하는데 다음은 미조직전략을 고민하는 발제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영: 거대한 전략 밑그림을 가져온 게 아니라 갑질119도 솔한 경험이 쏟아져 나오면서 힘이 된 것처럼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짧은 사유를 담았습니다.

<심화 발제2 : 권리의 사각지대가 생겨나지 않도록, 노동하는 이들의 보다 촘촘한 연대를 위하여 - 백선영>

강곤: 갑을은 가깝고, 병정은 멀다는 얘기. 돌봄과 돌봄 노동 등 고민해야 할 점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제도 부분이 운동적 상상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갑질, 제도적 해결을 가능한가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김두나: 희망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일터 괴롭힘 관련 조사 연구, 소송하고 있습니다. 법제도가 현재 문제점을 충분히 규율하는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제도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법적 대안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 한 두명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터 구조를 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심화 발제3 : '갑질', 제도적 해결은 가능한가 - 김두나>

강곤: 기획에 처음부터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운동하면서 막막함 불편함 불안함 등의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보자' 라기보다는 우리만 답답할 수 없으니 같이 답답하자가 기획의도이지 않았을까. 잠시 쉬었다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휴식>

강곤 : 다섯 분이 지정토론문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사회자 마음대로 자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정토론1 : 대응(인권운동사랑방)>

토론문 참조

<지정토론2 : 림보(인권교육센터들)>

맨 아랫부분에 있는 강남순의 글이 있었는데 갑질이 우리사회 회자 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갑이 대단히 악마적이고 폭력적이기도 한 존재들의 악행을 말하는 것 같고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누구나 자행하기도 경험하기도 하는 일입니다. 악마적 괴물의 등장, 낙인, 조리돌림으로 끝나버리는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갑이 되면 되는 걸까 욕망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강남순의 글이 언어화해서 잘 표현해줘서 인용해보았습니다. 군대, 생협매장의 경험을 얘기하셨는데 당시 노동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고, 갑질이 아니라 폭력이나 차별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희정 사태 관련해서 위력에 대한 고민이 나왔는데 갑질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참고 갑이 되겠다는 욕망을 어떻게 다룰까가 고민이고, 그 욕망 때문에 지금 모욕과 차별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백선영님의 갑을 가깝고 병정 멀다가 설득력 있었습니다. 노동이 위계화, 분절화 되어 있는 것, 조직의 민주주의, 노동의 정의를 새로 쓰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안희정도 노동의 문제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동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라고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감당하든, 압박을 못 이겨 감당하든, 감당하는 노동이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왜 우리가 감당하고 있나 라는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강곤: 노동의 문제를 민주주의 문제로 확장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남순의 글도 인상적이었구요.

<심화발제3 : 희정>

최근 몇 년간 공정, 안전, 갑질이 불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오해받기 쉬운 언어인데 직장갑질119 떴을 때 ‘이름 정말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이 가진 양날의 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쉬운 언어, 대중적인 언어가 가진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갑이 되고 을이 될 수 있는 위계는 노동위계시스템입니다. 그냥 양육강식 세계라고 통 칠 수 없죠. 시스템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을 때 해방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노예였는데 거기에 대한 공감을 얻고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지점들이 어디인가. 갑질. 어떤 것은 상식이고 어떤 것은 상식이 아닌가. 최저임금을 누군가에게 안주는 것은 갑질이 아닌 상식이다. 하지만 청소노동자의 파견노동 불안정에는 분노하지 않는다. 공정 논의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고자 하는 게 상식 밖이라고 판단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갑질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갑질이라는 명명에 안주한다면 대중들이 분노할 사안만 좇게 할 위험이 있다.

<심화발제4 : 하원배>

토론문 참조

<심화발제5 : 노다혜(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여성 회원분들이 일상에서 많은 노동을 하고 취업을 열망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나눴던 일상을 떠올리고 발제문에서 공감되는 글을 보면서 정리했습니다. 백선영님의 활보24시간에서 정부역할 빠져있다는 지적, 이것은 누가 갑을인가를 떠나서 국가가 갑질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장연은 점거가 특징인데요. 근로복지공간 85일간 점거했었는데. 장애인이 최임적용대상 제외되고 있죠. 보호 작업장에서의 문제가 시혜적인 갑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동 복지 착취 재활도 아닌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보호된 환경이 대체 무엇인가. 노동해서 적응해서 사회복귀 한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귀할 사회는 어디인가. 한달에 10만원의 월급으로 어떻게 독립하는가.

활동 지원사는 고용주 없는 고용형태입니다, 휴게시간 관련해서도 활동지원사가 4시간 일하면 30분 쉬어야 하는데 그동안 누가 할까요. 복지부가 대안으로 청년이 채우자고 했다가 두드려 맞고 엎어지긴 했습니다. 장애노동 현장에서 장애인은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의 대상일 뿐 그 사람의 노동권은 이야기되지 않아요. 할라님이 얘기했던 권리로써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알리고 분노하는 방식으로 갑질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 검색하면 00노예만 나오고 자극적인 이미지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고 노동할 권리, 장애인이 노동하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터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발달장애여성 회원의 경험을 통해서 일터괴롭힘의 양상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발달장애인 고용기업은 착한기업의 이미지를 하고 있어요. 또 한 사례는 복지관에서 취업훈련을 하다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일어서서 일하라는 사건을 통해서 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과 인사 관리자 관계인지, 발달장애인과 비발달장애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단지 고용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거죠. 차후에 차별금지법의 고민과도 만날 것 같아요. 이러한 교차적인 차별들은.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갑질을 넘어서려면 연대를 하자고 하는데 더 어려운 것이 동료가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되요.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뒤섞이고 뒤엎기는 관계.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장애인이 내 동료라면 어떻게. 그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가. 갑질은 상대와 내가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발달장애가 있는 노동자와의 관계에서도 동등한 관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강곤: 다른 자리에서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연대보다 연루라는 말이 더 와 닿고 연루된다고 했을 때 사람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하기보다 답답하고 복잡해지네요. 우리를 둘러싼 복잡성과 여러 경계가 가로지르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심화발제6 : 가원(인권운동사랑방)>

준비가 안됐는데 죄송해요.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제 경험으로 말해보자면 작년 8월에 제가 일했던 단체,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 상임활동가가 모두 사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을로만 설명될 수 없는 인권운동 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위계에 따른 폭력 문제, 일하면서 을이라고 생각 안해 봤는데 갑질의 내용들이 저희 단체서 일어난 일과 흡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운동진영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갑질이라고 해야 할까. 성명서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쓰면서도 우리가 겪은 일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나 궁금증이 일더라구요. 갑질이라는 말도 제 느낌은 여러 가지 층위의 문제가 그 안에 있는데 갑질이라고 통쳐 버리니까 갑이니까 할 수 있는 악행으로 느껴져서 뭔가 꼬우면 니가 갑이 돼. 일잘하면 되잖아. 이런식의 역전현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갑질이라는 용어자체에 대한 고

민도 들긴 했어요. 여기까지가 저의 고민입니다.

랄라: 백선영님 노다혜님 얘기 들으면서 갑질이라는 것이 정상성의 범주 안에 속한 건 아닐까 이주노동자, 장애인 받은 경험을 갑질이라고 하지 않고. 노예, 착취, 학대. 현장실습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노동으로 이야기 하지 않고 정체성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들을 을로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병정무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일터에서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까. 일터 괴롭힘으로 이런 게 규율 되고 방지될까. 노동의 위계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선영 : 연대보다 동료 되기 어려움. 사소한 것부터 평등해야 한다는 말에 꽂히네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은 뭐여야 할까. 민주노총의 고민이 깊지 않다는 자각이 들어요. 부천 복지관에서 임신했는데 임신도 조직의 가해자다. 가임기 여성을 잘라라.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을 한 사건이 3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 분위기였다면 제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싸울 것인가 고민이 들었죠. 내가 근처에 사는 동네라서 앞에서 집회도 참여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집단적인 힘이 있을 줄 알았는데 꿈적도 안하고 극한으로 몰고 가더라구요. 결국 비정규직 조력자는 잘리고 임신여성은 계속 따돌림을 당했죠. 하지만 문제제기 하기 어려웠어요. 산재 청구를 했는데 불승인이 났고요.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되었죠. 그 싸움을 같이 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노자가 조직되면서 투쟁 과정들을 거쳐 가는데 당사자에게 힘이 되는 방식이 뭘까. 조력자는 페미니스트로 거듭나고 힘을 얻는 과정이 되었는데 당사자는 계속 육아를 해야 하고 고립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민주노총에 여성위원회가 있어요. 사업도 활발히 하고. 형식만 갖추는 게 아니라. 하지만 다른 소수자 위원회는 없어요. 적극적으로 대변할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질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혐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주민 혐오 노동혐오 여성혐오. 갑질도 마찬가지지만 배제 차별 폭력을 혐오가 대체하고 있어서 대중화된 전략은 의미가 있지만 그럼 혐오하지 않아 라는 말이 되돌아오면 어떻게 대처하지. 혐오가 사회 시스템을 가로막는 장치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민주노총 사무총국은 의무교육을 받아요. 민족의 만아들 때문에. 여성위원회도 난리 나고. 하지만 남북노동자들의 자주교류를 망칠까봐, 만아들은 북한에서 굉장히 격을 높이는 언어라서 수정하기 어렵다는 맥락도 있었죠. 민주노총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많고 한편으로는 배타성이 있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더 높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양하게 드러나는 저항. 외침이 있죠. 직장갑질119도 그 문화 안에 있다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 익명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다보니까 더욱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노조조직, 집단성, 정체성에 근거한 것과는 다른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닌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주노총 미조직단위도 있지만 사실상 조직된 노동자가 근간이 되고 있죠. 기존 민주노총의 조직된 대오는, 노동하는 사람이지만 노동자라고 명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경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노동 혐오, 노조 혐오가 큰 상황에서 익명성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거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백선영: 주목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놓치지 말고 우리 전략으로 삼아서 조직화에 나서자고 하는데. 수

치적으로는 200만을 조직하자고 내걸었고. 다양한 전략 조직화에 대한 고민이 나온 게 갑질119와의 연대사업이었죠. 하지만 충분히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상담이오면 자신을 밝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공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노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전향적인 인식을 보이는 분도 있어요. 최근에는 노옥희 교육감이 되고 나니까 노조가 조직이 되기도 했어요.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들은 존재가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죠. 복수노조 때문에. 우리는 악법이라고 생각했지만 많이 조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조직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사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은 조직화의 호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가자 : 너무 많이 배웠어요. 갑질이 지우개인가 돋보기인가. 제목이 정말 좋았습니다. 두 개다 인 거 같아요. 조금 더 지적하신 부분은 갑질로 접근했을 때 한계는 지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인권문제를 가지고 시민을 만날 때 느끼는 감으로 생각하면 이런 개념, 조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유효하다고 봅니다. 인권에 대한 인식은 좋다고 하지만 실제 부딪히면 반감을 느끼죠. 그럴 때 일반 시민들에게 인권, 노동 말할 때 좋은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개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계급적 관계로만 볼 때 한계가 많은데 그것을 커버해줄 수 있는 거 같아요. 노조 결성과 활동이 유효하지만 어떤 사안들이 경중도 있고 현실적으로 싸울 때 방법은 다양한 것이어서 갑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유효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있죠. 노동문제에서의 갑질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조어들을 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예컨대 갑질을 폭력 인격권침해, 차별, 가부장적, 계급성... 경찰 개혁위 활동할 때 여경들의 자조모임을 제안했어요. 노조뿐만 아니라 크고 작고 다양한 모임과 조직을 통해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노동 이라는 말도 중요한 조어지.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백선영 : 익명성에서 나아가 조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역 산별에서 파장이 커서 우리도 오픈 채팅방을 열자고 해서 하고 있어요. 충남은 불편파견119를 하고 있는데 상담 내용이 어렵고 내방이 필요한 상황이죠.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워요. 지역에서 호프도 열고 가벼운 모임도 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진호 : 미조직 이라는 단어를 안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미혼 비혼이랑 비슷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거죠. 그게 노조 조직화라고 할 때 염두에 있는 것. 노조를 자신이 결의하고 준비하는데, 미조직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그것은 비조직은 아닌 거 같아서. 두 번째는 익명성과 관련된 것은. 조직화가 염두에 있으면 익명이 어려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노조를 만드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이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분이라고 봅니다. 직종모임일 수도 있고, 5인 미만 모임에게 노조 하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 필요하면 업종별 협약을 맺을 수도 있고. 지역에서 전략조직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익명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라도 할 수 있게. 국가기관은 이렇게 말할 통로를 열어야 하는 것이고. 총리실, 권익위에서 연락이 오는데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익명 제보 가능한 시스템 만들어라. 갑질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그 다음을 못나가는 이유는 거기에 아무도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노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지향이지만 시작점에 너무 강박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장 조직화해야 한다는.

강곤: 인권, 노동인권은 민주노총을 조직하는 것을 돕는가, 아니면 조직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인가. 연대는 조직화와 무엇이 다른가 고민들이 드네요.

참가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갑질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나온 모든 사람이 말했듯이 운동이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나온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이라는 말을 이명박이 들고 나왔을 때랑 비슷하게 비치는 것 같은데. 오늘의 토론을 들으면서는 운동이 이것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가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을이라서 당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을로 만드는 힘으로 개념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교도소에 갇힌 사람은 같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 관리를 위해 같은 옷을 입는거죠. 갑질은 이미 주어진 계약관계에서 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을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갑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보면. 무슨 문제이든 개별 경험들을 어떻게 보편화할까 라는 언어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당한 행위 유형이 아니라 나의 존엄이 훼손됐다고 설명될 수 있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그 업무를 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너는 그걸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5인 미만이나가 기존의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고, 미조직이라는 말도 근로자를 전제로 한 말이죠. 하지만 최근에 갑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전통적인 노사관계를 넘어서는 것 속에서 누군가를 을로 만들어내는 작용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참가자: 오늘 되게 많이 느꼈어요.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노총이 대기업 남성 중심이라는 게 확 와 닿았고 우리가 언제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배웠나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노동자라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육119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도 어린이집 교사를 조직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느꼈던 것을 쏟아 내는 게 너무 좋더라구요. 거기서 막히는 게 자세한 상담은 조합으로 연락주세요 라는 대목이에요. 하지만 연락하기 어렵죠. 조합원이 되어야만 상담 받을 거 같은. 그 다음부터 글이 잘 안 올라오게 되더라구요. 노동자라는 인식을 신성시하는데 그들은 그렇기 어렵죠. 예전에는 빨갱이단체이지만 지금은 권력 단체이기도 하죠. 그게 와 닿지 않는거죠. 그래서 연대가 아니라 동료가 된다는 것은 시간이 축적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하는 것인데. 밴드가 시작 된지 얼마 안됐는데 계속 노조로 상담하라는 것이 올라와서 불편했어요. 5인 이하 사업장은 노동자도 아니고 갑을도 아니고, 병정도 아니죠. 그걸 열어 줬다는 게 감사해요. 인권에서 갑질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당신은 노동자다 여성이다 정체성을 부여것이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참가자: 여기서 제 위치가 특이할 거 같아요. 시인이라서 갑질이라는 말에 민감하고 노동자가 되어본 경험이 많지 않아요. 30인 이하, 5인 이하 에서 일해보고 경영도 해보고 공직에도 있어 봤고. 갑을의 다양한 국면을 경험했어요. 5인 이하는 병정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직원도 해보고 경영도 해봤어요. 5인 이하에서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일심동체가 되면 살아남고 아니면 망해요. 고용주 중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 있다면 갑질이 가능하지 않은 조건이죠. 강남순 글 인용은 애매하지만 중요해요. 사람은 왜 갑질을 할까. 안 해도 되는데. 위계를 인식시키고 직장 에서 내가 상사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권한, 마땅한 권한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왜 마땅한 것을 넘어설까. 오늘 들으면서 아 우리는 노동자라는 이름은 많이 듣지만 노동자성은 무엇인가라는 건강한 토론은 별로 안 해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마땅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파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하지 않아요. 갑질이라는 말 자체의 느낌은 별로 안 좋은데 말하면 상대가 움찔하거든요. 인격적인 지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침해를 넘어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거죠. 인권용어가 되려면 갑질 하지 않기 위한 인격적 훈련도 필요하고. 5인 이하, 30인 이하도 마찬가지로 노사관계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도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은 위계가 제도화되면서 갑질이 더 나타나는 것 같은데. 갑을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문제들은 어떻게 드러낼지. 자영업자들도 겪는 어려움은 어떻게 드러낼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오진호 : 언어는 좀 더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5인 미만 얘기하는 이유는 근기법 예외가 있어서예요. 법 때문에. 직장 갑질에 들어오는 5인 미만은 아비규환이예요. 법과 제도의 구멍이 있으면 악용하는 사람이 있죠. 아름다운 민간이 규율하는 것은 이상적이죠. 5인 미만이라고 서열을 매기면 안 되는 것이라 생각되요. 갑질이라는 말은 잘 쓰는데 갑을이라는 말은 고민이 되요. 병정...이 잇기 때문에. 조현민 카톡 만들어지고 아시아나에서 진짜 을들의 카톡방이 만들어졌어요. 대한항공은 월급이 높다는 이유로. 갑질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한데 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죠. 자영업자를 갑을로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법과 제도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는 회사가 토요일에 워크숍 가는 게 갑질이 아니었어요. 시대적 변화는 있죠. 법제도적 빈틈이 시대와 만나서 갑질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참가자 : 익명성 얘기를 들으면서 노조하면 인생 조진다. 병역거부 대학거부 이런 말 있는데 대부분 높은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익명성이 좋은 거 같아요. 내가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도망쳐도 이 체제가 싫은 거고 포기해도 이 시스템이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메시지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도망치고 포기해도 이 체제에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말이죠.

참가자 : 직장갑질 119와 일터 괴롭힘 사이에서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부 대책의 개념이 문제의식을 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고민이 들어요.

참가자 :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지면 헛갈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 같아요. 큰 규모에서는 회사에서 이롭게 세팅하는데 작으면 그런 세팅을 하기 어렵다보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제도적으로 비어있는 것 외에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가 혼재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궁금합니다.

김두나 : 직장갑질 119 법률 TF가 있고 공감 희망법 노동건강연대 등이 모여서 관련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조항까지. 직장갑질119에서 대표적인 유형별로 정해서 법적 해결을 위한 대안을 고민 중이예요. 곧 발표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직장갑질119 오픈상담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신고할까 대응할까가 많아요. 비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기준이 애매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요. 법률이 다 해결 못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잘 이루어졌으합니다.

백선영 : 작은 사업장해서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 단속이 뜰 때 보호해줘요. 생협에서 문제제기 못한 것은 나의 고용이 달려있기도 하고 그 공정에 대해서 아니까 나를 적응시킬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죠. 노조가 있으면 나왔을 거 같긴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죠. 사업주에게 달려 있는게 많아요. 이주노동자의 합법성은. 하지만 다른 노

동자들도 고용주에게 달려있죠. 그것을 깨나가는 것은 여전히 노조의 조직된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고용이 불가분의 문제가 있는데 역이용한 사례가 건설노조의 사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조 생각 못하고 정규직이 갑질 했는데 소위 노가다라고 부르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으니까 파업하면 짝소리 못하는. 오히려 정규직이 끼워달라고 하게 된거죠. 이렇게 조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조에 가입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작으면 공정이 분리되지 않으니까 나 없으면 여기 안돌아간다는 생각을 노동자도 하게 되요. 하지만 최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서 일하다 죽은 사람, 노조가 있어야 할 곳은 저기인데 현장실습생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 이죠. 민주노총이 최대한 아래로 내려가자는 지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진 호: 관계에서 생기는 괴롭힘은 규모와 별개라고 생각해요. 회사 내 고충 처리위 같은 게 있었는지, 유사사건이 있었는지, 절차, 규정에 따라 처리 되냐 등의 문제가 있어요. 저희에게 5인 이하의 제보가 많지는 않아요. 규정과 제도가 못 끼어드는 자리에 악수처럼 피어나는 것 같아요. 긴급 100대과제 같은 것을 발표하려고 벌룬 TF 만들었어요. 직장내 CCTV 문제 등. 목표는 11월 1일 출범 1주년이라서 그때 짬 해보려고 해요. 저희 스텝 분이 다 바쁜 분들인데 노무사도 바쁘고 시간 내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게 있네요. 직종별 모임도 하고 싶은데 어려운 게 전념할 스텝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쉽지 않아서 이 운동이 확산이 잘 안되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직장인을 모일 수 있도록 할까. 오늘 용어들 문제의식들 나누어서 좋고 지금이 이런 고민을 나눌 때라고 생각해요. 이제 갑질은 이런 거다. 이런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랄라: 노동 이야기를 인권활동과 함께 해서 좋았어요. 갑질 원인을 권위주의, 고용시장 과잉, 노동정책 등으로 이야기하죠. 원인의 대안은 뭐냐. 노동자가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거죠. 정부도 노동자들을 경제성장을 위한 하위파트너로만 생각하기에 노동존중이 불가능 해지는거죠.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도 수반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들었어요. 인권운동은 어떤 상상을 해야 할까. 노동운동 안에서 인권운동이 다양한 권리의 연으로 현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순간부터 그런 감들이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을 계기로 좀 더 이야기를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노총에서 함께 하면서 누군가를 조직하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일하는 일터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만들까. 이거는 인권활동가들과 충분히 함께 해나갈 수 있을거 같아서 과제를 함께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강곤: 남북관계 이후에 개성공간이 몇 개 더 세워진다면 거기에서 노동문제는 어떨까요. 자랑스럽게 민족의 만아들을 자처하는 이들은 노동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웃음). 다음주 수요일에 평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주에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수고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질문의 방향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언젠가부터 등장한 갑을관계라는 말, 갑질이라는 말은 노동자와 사장, 원청과 하청, 관리자와 직원 등 노동의 영역에서도 권력 관계를 상징하는 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권력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만큼 갑을로만 설명되지 않는 여러 노동의 문제들을 인권운동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권운동더하기에서 준비한 연속토론회 중 3차 “을, 노동의 지우개인가 돋보기인가”에서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미’조직

“저는 직장갑질 119 활동을 하면서 ‘미조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되었어요.”

심화 발제를 맡은 오진호 님이 했던 말이 와닿았다.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 역시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토로하고 싶은 사람이다. 다만 말할 조건이 갖추어져있지 않기에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갑질’을 매개로 노동자를 만나온 직장갑질 119의 지난 1년의 과정은 이런 현실을 보여줬다. 익명성을 전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열리자 이들은 참아왔던 말을 하기 시작했다. 6개월 상담 건수만 1만 건이 넘었고,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쉽게 미조직 노동자라고 말해온 사람들은 조직을 만나지 못한 미완의 상태가 아니라 조직을 선택하지 않아왔던 것이다. 미조직이라는 말이 노동자의 현실보다 노동자를 조직해야할 대상으로밖에 보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에 대해 운동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었다. 촛불이 정권을 바꿨어도 직장에는 아직 민주주의가 없는 지금의 현실에 가장 뼈아파 해야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나와 같은 활동가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을은 가깝고 병정은 멀다.”

또 다른 심화 발제자 백선영 님이 했던 말이다. 새삼스럽지만 핵심을 마주하게 만든 말이었다. 갑질 문제가 세상에 던져졌을 때 기업 회장도, 정부도 호들갑을 떨면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청 사장이 원청에 갑질을 당하는 처지여도 자신은 노동자에게 또다시 갑질을 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갈등하고, 내국인 노동자가 이주민 노동자를 배척하는 현실이다. 흔들리지 않는 권력관계, 서열화된 노동의 구조에서 갑질만 이야기 될 때 병과 정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 갑질만 문제제기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다. ‘갑질’은 분명 노동자들이 모이고 말을 꺼낼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했지만 바뀌어나가야 하는 현실은 갑질 근절 대책만으론 부족했다.

노동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그래서 도대체 어떤 대책이 가능할까를 궁리하면서 발제에 집중할 때 흥미로운 문제의식이 던져졌다.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의 문제를 어떻게 공동의 문제로 만들 수 있을까’였다. 갑질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직장내 괴롭힘의 입법례와 관련하여 발제를 맡은 김두나님은 “경험”을 이야기했다.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가, 어느 직종의 사람이 괴롭힘을 당했는가, 성별이나 나이 등의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대안과 해결책이 난무하는 사이에 공동의 해결은 사라지기 십상이다. 개별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괴롭힘을 인권 침해의 문제로 규정할 때,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문제제기하는 언어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명령, 요구에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공단에서 노동자들을 만나는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부당함에 맞서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권력관계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또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서 참는 것이 남는 것이라 당해주고 마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질문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견딜까?’가 아니라 나와 내가 속한 운동, 더 넓게 인권은 이들에게 어떤 선택지를 줄 수 있는지 묻는 방식으로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토론회는 이 고민의 현재를 확인시키고 지평을 넓혀주는 이야기가 오갔던 자리였다. 앞으로는 다시 나의 몫이 생긴 것 같다. 내가 활동하는 공간을 어떻게 노동자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말이다.

언어에 머물고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끝끝내 갑을이라는 말은 지우개가 될 것이다

한상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갑을’이라는 프레임으로 한국 사회의 각종 불평등과 불균형을 문제 삼는 건 이제 익숙한 풍경이다. 그런데 ‘노동’ 문제를 ‘갑을’이라는 말을 통해 문제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세 번째 토론회의 제목 “을, 노동의 지우개인가 돋보기인가”가 표현해주듯 노동의 문제, 노동자의 권리라는 문제를 ‘갑을’이라는 말이 얼마나 잘 드러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으로 나아가는 데 얼마나 유용한 것이냐를 두고 토론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 활동을 통해 확인 되었듯, 한림성심병원 문제의 여론화와 노조 조직화에서부터 방송 노동자 문제의 여론화와 스태프노조 설립 등에 이르기까지, ‘갑을 관계’라는 프레임을 통해서도 충분히 노동 문제를 의제화하고 노동자들의 조직화까지 이루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 번째 토론회의 발표자이기도 한 오진호 활동가(직장갑질119 총괄스태프)의 지적처럼, 이러한 ‘갑을’ 프레임에 기반한 노동 문제의 여론화화 조직화의 기반에는 2016년 촛불 이후 시민 개개인의 정치와 권리에 대한 의식 향상과 더불어 직장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증가와 노조에 대한 인식 개선이 깔려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현실이 낙관적이기만 한 건 아니다. 최근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맹공을 펼치고 있는 자본과 보수세력은 다시금 ‘노동귀족’이나 ‘노조이기주의’를 들먹이고, 노조에 대한 이념적 공격과 더불어 자본이 노동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부터 노동자 사이의 양보(분배)로 프레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예전부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예고 없이 퇴사를 하는 등의 문제를 일컬어 ‘을질’이라 표현해 왔는데, 노조를 조직하려는 노동자들을 손가락질하는 표현에서부터 서비스노동자들이나 감정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비난하는 표현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이 다양해지고 있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과 인간은 권리를 가진 시민이어야 한다는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 이후, 그리고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이후, 아직도 노동에 있어서 인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권리로부터 배제 당하는 노동자들, 제도가 있음에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든 보수주의든 민주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이는 그 어느 누구도 두 ‘선언’에 대해 부정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두 ‘선언’이 누구에게나 지지 받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요구와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만든 것도, 그리고 이후 이 두 ‘선언’을 축으로 노동과 권리를 문제화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끊임없는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와 투쟁이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갑을 관계’나 ‘갑질’이라는 ‘말’이 그저 ‘언어’에만 계속해서 머물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사회와 현실에 대한 비난을 통해 자위에만 머물게 한다면, 결국 갑을이라는 말은 노동의 돋보기가 아닌 지우개가 되고 말 것이다. 말싸움의 과대함과 조직화, 연대, 투쟁의 과소함으로 말미암아 ‘노조’라는 매개체가 ‘귀족’이나 ‘을질’이라는

이미지에 지배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 모인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들 모두가 이에 동의하고 고민을 이어나가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 일 것이다. '갑을 관계'와 '갑질'이라는 말들이 노동자들의 조직화, 권리 요구, 연대,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 증대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운동 진영의 실천과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본인 또한 노력해야겠다. < 끝 >

문제적 인권, 인권의 문제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

9월 12일 (수)

세계인권선언70년
인권운동더하기 연속토론회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

강곤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제안이 있다. ... 이들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남기를 원하든, 다른 결정을 하든 이들의 의사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들의 결정을 유엔이 개입할 것도 아니고, 한국과 북한 정부가 내릴 것도 아니다.”⁷⁰⁾

“인권위를 포함해 우리 국민 모두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들 탈북 여종업원들이 탈북 시점에서 자유의사로 탈북했는지 여부를 솔직히 말할 수 없는 딜레마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들 중 일부가 재입북을 희망한다면 길은 얼마든지 있다. 여행의 자유가 있는 이들이 제3국을 통해 재입북하면 되는 일이다.”⁷¹⁾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던 북한

국가정보원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의 문제는 간단치 않다. 북한은 12명 전원 송환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민변과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립적인 기구의 진상조사를 전제로 이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보수우익 단체들은 이들에게 자유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 행위라며 ‘딜레마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상규명조차 반대하는 저들의 저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에 있는 종업원들 가족의 처지를 고려할 때(북한에서 외국 근무는 상당한 사회적 신분이 보장되었을 때 가능하다) 그 ‘딜레마’가 솔직히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바도 아니다. 이 사건이 지금처럼 첨예하게 정치적 이슈화가 되기 전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통한 접근이 되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본다. 남북, 북미 관계가 급진전하여 탈북민과 이산가족 모두에게 남이든 북이든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된다면 하는 상상도 해본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상상이다.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

1984년 강원도 한 부대에서 남한 병사가 동료 15명을 죽이고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다. 이후 그 병사는 북한에서 훈장도 받고 북한 매체에 나와 ‘새로운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사는 월북 대표선수’가 되었다.⁷²⁾ 1995년 경에는 GOP 초소에서 술자리 다툼 끝에 중사가 월북한 사건도 있었다. 이 중사 또한 며칠 뒤 귀순 영웅으로 ‘빠리’

70) 토마스 오헤이 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발언, 2018.7.10.

71)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입장문 중에서, 2018.8.1.

72) “15명 학살 범죄자도 ‘영웅’취급... 휴전선 넘은 이들의 운명”, 한겨레, 2018.7.29.

에 등장했다.⁷³⁾ 지난 2월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탈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1950년부터 1999년까지 6446명의 공작원을 남파했고 남한은 1951년부터 1972년까지 7726명의 공작원을 북파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문제도 여전히 남북 모두의 아물지 않은 상처이자 숙제로 남겨져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분단체제가 평화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인권, 인권운동은 수많은 딜레마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한국 인권운동에서 북한 문제, '북한인권'은 언제나 딜레마이자 뜨거운 감자였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량 기아 사태가 알려지고, 일부 보수언론을 통해 러시아의 북한 벌목공 노동 실태가 보도되면서 '인권'을 빙자한 반공주의의 확산과 노골적인 체제 붕괴 시도에 대해 경계와 우려가 인권운동 안에서 고민되기 시작되었다. 김일성이 갑작스레 사망한 직후였고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지 불과 채 10년도 안 된 시점이었다. 2004년경에는 미국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을 계기로 통일운동단체와 시민단체, 인권단체가 함께하는 비공개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그러나 어렵게 만들어진 이 테이블도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입장과 그 어떤 정치적 배경과 의도도 배제한 채 '동포 돕기'라는 인도주의만을 주장하는 입장의 긴장 속에서 결국 유의미한 활동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인권의 보편성과 한반도의 특수성, 그리고 사회운동의 복잡 미묘한 진영논리 사이에서 인권운동의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이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는 보수세력의 정치공세에 단골 메뉴가 되었고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의 숫자는 3만여 명에 이르렀다.

분단체제의 조난자, 탈북민

정부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통일부에서는 새터민, 과거에는 귀순자, 법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있는 탈북민 중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이가 20%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탈남한 사람들이 2000명,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이 800여 명이고, 북한으로 돌아간 이들도 28명에 이른다.⁷⁴⁾ 탈북민이자 통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주승현 교수는 스스로를 '조난자'로 호명한다. 탈북민은 분단이라는 재앙을 맞아 난파된 존재라는 것이다.⁷⁵⁾

여론조사들은 판문점회담 이후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시선이 담긴 탈북민의 SNS에는 "북한으로 돌아가라", "김정일, 김정은 개새끼 해봐"라는 등의 온갖 모욕적인 댓글이 달린다. 어느 탈북민 약사는 "한국에서 우리는 이등 국민이고 장애인처럼 사회에 적응 교육을 받고 재활해야 하는 존재"라며 한국의 정착지원 사업을 비판한다.

탈북민은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한국 국민이다.⁷⁶⁾ 이들은 자기 결단에서든, 외부적 요인에서든 자기가 태어나 성장했던 사회와 체제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다. 문화적으로 북한 사회는 핏줄과 혈통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제, 유교적인 사회다. 북한의 교육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이루자며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오랜 기간 북한 주민에게 휴전선을 넘어오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많은 탈북

73) 이 사건은 발제자가 군 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다. 당시 월북한 중사가 소대장을 죽였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해당 소대는 해체되어 모두 각기 다른 부대로 재배치되었다. 경계근무 중 중사의 월북을 그저 지켜보았던 병사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는데 헌병대 조사과정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간 같이 생활했던 중사에게 차마 총을 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74) 민주연구원 주최 "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자료집 17쪽.

75) 주승현, <조난자들>, 2018.

76) 이러한 사실이 자동으로 이들에게 국적이 부여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탈북민은 입국 시 '혈통적'으로나 법적, 사상적으로 '순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방되거나 범법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거나 비보호결정을 받게 된다. 반대로 국가안보에 쓸모 있는 정보를 가진 탈북민은 특별 대우를 받기도 한다. 이처럼 탈북민은 국가의 포섭과 배제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냉전과 분단체제의 역사적 산물인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난민, 국경을 넘나들며 노동하는 이주민과도 유사하며 이러한 같음과 다름은 언제나 국가의 손익에 따라 구획된다.

민은 한국에 와서야 나라가 직업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아서 직업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당혹스러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탈북민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이 받는 차별에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중반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에 나온 탈북민은 자신이 받은 차별을 증언하며 “솔직히 말해서 남한은 친구를 잘 만나서 이렇게 덩뎡거리며 살고, 북한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가난해진 거 아닌가”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여전히 다수의 탈북민은 스스로 조선족이라 밝히며 탈북민임을 숨기고 생활하고 있다. 제주에 도착한 예멘 난민을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난민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만약 가까운 시기 해외에 거주하는 수백 명의 탈북민이 집단으로 한국행을 요구한다면 어떤 반응일지 걱정스럽다. 실제로 인터넷 공간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금과 생활보조금에 대한 불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북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된다. 흔히들 10대, 20대가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가장 낮고 50대, 60대로 갈수록 높아진다고 하고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다. 그런데 한 연구에서 ‘통일로 인해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자 40대 이상에서 급격히 찬성률이 낮아진다고 하며 “기성세대의 통일의식은 위선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꼬집고 있다.⁷⁷⁾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민 절대다수가 급격한 통일, 남한체제로의 흡수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반면 한국 사회는 통일, 혹은 평화체제로의 전환 속에 값싸고 질 좋은, 통역도 필요 없고 노조도 불가능한 노동력의 출현, 새로운 블루오션의 등장, 돈벌이가 되는 희귀 광물이라는 휘토류 등의 매장량에 대한 높은 관심, 판문점회담 직후 건설, 철도 관련 주가의 폭등 등 북한을 내부 식민지로 삼고자 하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유머러스한 김정은과 세련된 김여정 뒤에 가려진 북한 주민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종편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소비하는 체제 순응적인 꼭두각시와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며 197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선량한 동포의 모습으로 대상화되는 가운데 갈등하고 불화하며 입체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북한 사람들의 얼굴은 여백으로만 존재한다.

3대 세습, 1당 독재와 정치범 수용소, 형과 고모부를 암살한 독재자의 나라. 꼭 TV조선을 봐야만 알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다. 여러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북한 지역에서, 최소한 평양에서만큼은 아직도 무상주거,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실현되고 있다고 한다. 한 편에서는 분단 70년 동안 쌓여온 반공이데올로기 위에 편견과 악의적 선동이 횡횡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북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장막처럼 드리워져 있다. 그 사이 빈자리를 혐오와 적대가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다시 생각하는 국가보안법

인권운동사랑방이 1993년부터 13년 동안 발행했던 팩스 신문 <인권하루소식>, 그 창간의 계기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잡혀간 인권운동사랑방 소속 활동가의 연행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인권단체의 주된 활동은公安기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연행을 막고, 구금과 고문 피해 사실을 알리고,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고, 석방된 양심수를 지원하는 등 국가보안법과 싸움이었다. 이 싸움은 1970년대 민주화운동이 1980년대 변혁적 민중운동으로 바뀌는 가운데 등장한 민족해방 노선과 노동해방 노선 사이에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남한 사회 계급혁명이라는 두 노선의 과제가 만나는 지점이자 초보적이거나 독자적인 인권운동 ‘진영’이 열리는 공간이기도 했다.

77) 박주화, “20~30대 통일의식에 대한 변명”, 통일연구원, 2018.1.30.

87년 6월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민가협이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과 같은 문화행사, 하루감옥체험과 같은 퍼포먼스는 물론 200여 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중심으로 100만 인 서명운동, 단식과 삭발, 집단 농성, 피해자 증언대회, 국제심포지엄 등 그야말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럼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 10년 동안 법의 폐지는커녕 단 한 조항의 개정도 이뤄내지 못했다.

반면 확연히 줄어든 양심수의 숫자만큼이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중과 운동사회의 관심도 식어 갔다. 인권운동 내에서도 비록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불처벌운동, 과거청산운동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자리를 대신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과거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김근태, 서준식으로 대표되는 가장 급진적이면서 반체제적인 운동가이자 동시대 가장 가혹한 국가폭력에 맞선 민주주의자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빨갱이’, ‘좌파’의 자리를 ‘종북’이 대신한 이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RO 내란음모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조작 간첩 사건의 피해자는 문화적으로 ‘후진’ 사람들, 시대 변화에 낙오된 운동권, 마치 사이버 종교집단의 광신도 모습으로 그려졌다. 통합진보당 사건은 평화통일의 동반자, 대화와 협상의 상대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주적’, 정부를 잠칭하고 있는 괴뢰집단이기도 한 북한과 공존하고 있는 분단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지만 ‘왜 위험한 사상을 품고 저항을 꿈꿔서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은 봉쇄된 채 ‘종북’이라는 낙인찍기와 혐오, 마녀사냥만이 난무했다.

그러는 사이 국가보안법의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했다. 원정화 간첩 사건, 황장엽 암살 간첩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북한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조작간첩 사건이다. 이 사건들 외에도 미수에 그친 사건까지 대략 10여 건의 탈북민 조작간첩 사건이 현재 민변에 집계되어 있다.

탈북민은 한국에 입국과 동시에 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최장 6개월 동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탈북 과정과 입국 경위는 물론 북한에서의 생애 전반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거나 다른 탈북민의 증언과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곧바로 국가보안법의 그물망이 좁혀 들어온다. 한국의 법 제도를 잘 알지 못했던 한 탈북민은 “한국에서는 마약범은 5년을 살아야 하고 간첩은 3년만 살면 된다”는 회유에 넘어가 간첩이라고 ‘자백’했다며 만기출소 후 민변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합동신문센터의 무사히 조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은 뒤 사회에 나온 탈북민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중국 브로커를 통해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공안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엮을 수 있는 먹잇감, 잠재적인 간첩 ‘풀’인 셈이다.

끊임없이 변주되는 ‘너는 어느 편이냐?’는 추궁

국가보안법을 무고한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법 이상의 그 무엇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의 문 앞에 선 문지기로 자기 검열 기재를 작동시키는 일종의 사회 규범이자 헌법 위의 법으로서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체제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테러방지법, 전기통신망법, 보안관찰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며 그 움직임이 멈춘 상태에서도 사람들의 내면을 규율하고 국제인권기준을 비롯한 인권의 보편적 원칙에 끊임없이 예외를 강요한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한국에서는 하나가 아닌 두 개의 헌법, 곧 공식 헌법과 함께 '이면헌법'이 존재해 왔다는 백낙청 교수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면헌법, 국가보안법은 일종의 관습헌법으로 헌법을 해석할 권위를 갖고 있으며 때로는 헌법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동성애 반대로 결집한 기독교 근본주의와 반공주의, 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전현직 국방부장관과 장성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장에서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며 사상검증이 벌어지는 작태, 그 질문이 성소수자 인권과 낙태의 찬반으로 바뀌는 상황, 대한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분향소에 태극기집회 사람들이 난입해 '종북' '빨갱이'라고 소란을 피우는 장면. 이 모두가 분단체제 아래서 이면헌법의 작동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2018년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의 해이자 제주 4.3사건 70주년이며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해이기도 하다.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겠지만 전대미문의 국가폭력을 교훈 삼아 전 세계 인류의 이름으로 인권선언의 문구가 다듬어 지던 바로 그 순간 제힘으로 해방을 맞지 못한 제3세계 식민지에서 이제 막 탄생한 국가 권력은 학살로 국가 만들기를 시작하며 앞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손에서 놓지 않을 국가폭력의 만능검을 버리고 있었다.

4.3사건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여 벌어졌다는 의미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와 연루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북한이라는 '국가'와도 연루되어 있다. 따라서 분단체제의 극복이 체제의 통합이든, 두 체제의 비적대적 안착이든, 새로운 평화체제의 도래든, 체제의 극복 또는 분단 문제의 해결 없이 4.3사건의 진정한 해결, 진실 규명과 화해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가폭력, 국가범죄의 단죄는 국가에 대한 성찰,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계 맺음의 상상력으로 이어져야 할 터이지만 우리의 사고는 어쩌면 고립된 섬처럼 갇혀 있고 어느새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제주에서,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만들기는 "너는 누구 편이냐?"는 물음⁷⁸⁾으로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것에서 출발하였으며 비국민은 곧바로 '적=절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너는 누구 편이냐?"는 추궁은 너는 종북인가, 너는 이성애자인가, 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가, 너는 군복무를 마쳤는가, 너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가, 너는 성실한 납세자이며 근로자인가, 너는 순수한 시민인가 등으로 끊임없이 변주하며 여전히 합동신문센터에서, 대공분실에서, 청문회장에서, 일터와 쉼터에서, 집과 학교에서 그리고 광장과 거리에서 오작동의 작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⁷⁹⁾

제주 4.3사건이 일어난 그해, 파리의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기 열흘 전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고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하고 강정의 해군기지 문제, 소성리의 사드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지만 이때 인권운동은 과연 어떤 응답을 마련할 수 있을까?

78) 이정준의 소설 <소문의 벽>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인지 인민군인지 알 수 없는 이가 비추는 전깃불 앞에서 "너는 어느 편이냐?"는 질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편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공포에 관한 이야기이다.

79) 노순택, "분단은 특하면 오작동으로써 작동한다", 비상국가Ⅱ 전시회, 2017.6.2.

분단 너머 연대의 가능성⁸⁰⁾

김성경 | 북한대학원대학교

1. 분단을 살아간다는 것

최근 한반도는 요동치고 있다. 과히 ‘대전환’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과거부터 통용되어 온 통념 너머 다른 세상이 움트고 있다. 이는 65년 넘게 지속되어 온 한반도 정전체제와 그 결과물로서의 남북의 정치체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심지어 일상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반도 분단과 정전체제가 설혹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장으로 이행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를 적대하며 구축한 각각의 문화와 역사는 쉽사리 사라지거나 청산되기 어렵다. 특히 사람들의 인식과 일상에 깊게 잠복해있는 분단은 아무리 정치적 화해 혹은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진다 해도 쉽사리 극복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분단은 지금의 남과 북의 결정요인으로서 미래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분단 문제는 역사를 관통하는 기본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에서 마치 당연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국가 안보라는 긴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의 사회문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화와 급격한 경제성장,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등의 파고를 거쳐 온 한국 사회는 분단을 사회의 긴박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아왔다. 백낙청의 표현을 빌려오면 한국사회는 ‘후천성분단인식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분단’이라는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지하게 하는 분단 효과가 우리의 인식체계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뜻이다.⁸¹⁾ 분단이 일상에서 각자의 삶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한국사회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수많은 고정관념이 사실은 분단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상 존재하는 북한이라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의 영토조항부터, 분단의 이름으로 여전히 공고하게 작동하는 국가보안법, 정전체제를 반영하는 징병제와 군가산점제도, 남남갈등과 종북몰이까지 한국사회의 모순이나 갈등의 근간에는 분단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해버린 분단은 논의의 지평에서 자취를 감추고, 분단을 배제한 비정상적인 인식과 감각 체계는 그 어떤 도전에도 직면하지 않은 채 세대를 넘어 확산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던질 질문은 ‘후천성분단인식결핍증’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백낙청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분단체제론을 참조할 만하다.

분단체제론은 남북한의 분단을 유동적이며 세계체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체제(system)’로 설명한다. 남북한은 분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정치·경제 체제가 아니라 ‘독특한 상호적대/상호결합의 굳건한 결합구조’를 공유한다.⁸²⁾ 백낙청은 남북한의 체제는 각기 완결성을 띠지 못한 채, 세계체제의 하위 단위로 작동하면서도

80) 이 발표문은 최근 몇 년간 필자의 출판 논문의 논지를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필자의 동의 없이 인용을 금합니다.

81) 백낙청, 김성민 대담, 『민족문화론, 분단체제론, 변혁적 중도론』, 『백낙청 회화록』 제7권, 창비, 2017, p. 520.

82) 백낙청, 『분단체제의 변혁의 공부길』, 창비, 1994.

동시에 분단체제라는 또 다른 체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즉, 분단체제론은 남북한 사회를 논의 할 때 세계체제의 일부로서의 측면과 분단체제 수준, 그리고 남한과 북한 체제 한쪽에 집중할 때 부상하는 문제를 다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안을 담고 있다.⁸³⁾ 백낙청은 세계체제-분단체제-남/북한체제가 중첩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한 국가 단위만의 문제와 모순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남북의 진정한 사회 변혁은 분단 체제의 극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변혁은 반자본주의 체제 혹은 사회주의 체제의 구축 보다는 그 내부에 존재하는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는 현실적 방안을 통해서 모색될 수 있다는 과감한 논지까지 담고 있다.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등장했던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것은 그만큼 세계단위로 구성된 자본주의 착취 체제가 공고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은 결코 과거와 같은 방식이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분단체제극복은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대변혁의 프로젝트가 된다.

분단체제론의 이러한 시각은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실천적 문제를 남북이라는 국가 단위와 지역, 그리고 세계 체제와의 연관성의 맥락에서 새롭게 사유하게 한다.⁸⁴⁾ 또한 분단체제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남한체제의 근본적 문제는 분단을 매개로 한 세계체제의 작동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남한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갈등과 같은 사회문제는 결국 분단을 배태한 세계 자본주의의 착취구조가 작동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한사회의 사회문제는 다른 어느 국가의 것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그만큼 이에 대한 극복방안 또한 분단과 절합되어 있는 세계체제를 문제시함으로써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한국사회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였다. 소위 말해 압축적 근대화 혹은 국가자본주의라고 정의되는 국가 중심적 경제성장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분단체제론이 남북의 기득권이 분단을 활용하여 기층 민중을 착취했음을 강조한 바 있는데, 한국사회는 국가 중심의 자본주의와 재벌을 위시한 기득권 세력이 민중을 억압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구조를 더욱 공고한 것이 예시가 된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경제성장의 속도라는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경제 불평등을 가중시켰으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복지체제를 구축하게 하였다. 또한 군사비 지출과 징집제 등은 경제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국가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이런 구조 하에서 개인의 권리나 이해관계는 국가의 이름으로 언제나 제압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점차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부분의 개인들은 끝없는 경쟁으로 인한 상시적인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마치 바우먼에 ‘액체근대’⁸⁵⁾라는 개념을 통해서 경고한 것처럼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확실성을 잃어버린 채 부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 분단이라는 또 다른 층위의 억압구조에 포획되어 신음하게 되는 것이다.

분단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구축한 세력들은 민중이 ‘분단’을 인식하여 극복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백낙청이 경고한 ‘후천성분단인식결핍증후군’은 지금껏 한국사회를 운영해 온 교육과 언론 등의 지식(담론)과 자본주의 체계의 기득권 세력 등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분단 폭력의 가해자/희생자

83)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비, 1998, pp.118-123.

84) 동아시아 맥락에서 분단체제론은 최원식 등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최원식은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 지역적 관점과 결합하여, 한반도 중심주의를 탈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최원식, 2009,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창비, 2009; 류준필,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 『아시아연구』, 제 52집 4호, 2009 를 참고하라.

85) 바우먼, 지그문트, 『쓰레기가 되는 삶들: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정일준 옮김, 새물결, 2008, pp. 34~35.

분단체제론의 주장에 따르면 분단을 살아가는 한반도의 모든 기층민중은 분단의 피해자이다. 물론 그 중에서도 분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도 있다. 평화학자 갈통이 폭력을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을 고려해볼 때 폭력으로 작동하는 분단을 문제시 할 경우 분단폭력 또한 위의 세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다.⁸⁶⁾예컨대 직접적 분단 폭력이라면 간첩단 사건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조적 분단 폭력은 일상적 사찰과 감시, 연좌제, 징집제 등을 아우른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분단폭력은 시간을 관통하여 역사적으로 전수되는 것으로 직접적 분단폭력과 구조적 분단폭력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힘 전반을 가리킨다. 그만큼 문화의 양식으로 작동하는 분단폭력으로 중복이나 빨갱이에 대한 낙인,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할 것은 이러한 세 층위의 분단폭력이 결코 구분되어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세 층위의 분단 폭력은 서로 배타적인 분류가 아니라 분단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 주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또한 분단은 상당수의 사람들의 인식을 비틀어지게 했다. 분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분단의식을 배태한 채 인식과 감정의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다. 예컨대 촛불혁명 시기부터 시작된 태극기 부대의 분단적 인식 또한 분단 폭력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연구가 태극기 부대의 인식이나 행동을 병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일부 노인층의 히스테리로 파악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태극기 부대 참가자들이 지극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시민으로 분단 사회가 생산한 주체라는 데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태극기 부대가 공유하고 있는 분단적 인식의 지평이 무엇이며, 그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를 밝혀내 분단적 인식, 감정 구조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태극기’의 등장 이후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바 있다. 태극기의 주축 세력이 60대 이상의 노인층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들을 시대착오적인 집단으로 진단하기도 하였다. 경쟁의 논리가 최고의 선이 되어 버린 현 사회에서 밀려난 ‘태극기’ 즉, 대다수의 노인 계층은 현재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가치에 매몰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과거’에 사는 대다수의 ‘태극기’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 분노한 이들이다. ‘태극기’들의 문제를 노인 빈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일견 의미가 있지만, 중산층의 노인들조차 ‘태극기’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은 이들이 ‘계급’을 뛰어넘으면서 과거와 기억을 지키려 한다는 것의 반증이다.

반공과 국가의 가치가 최우선하던 시대가 유동성과 효율성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생산할 수 없는 노인들은 ‘잉여(wasted lives)’로 구분되어 버려져도 되는 것으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만큼 생산하지 못해서 혹은 발전된 기술문명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동시에 사회적 위치 또한 박탈당한 자가 바로 태극기이다. 세계의 곳곳에서의 극우주의의 등장이 현 사회의 ‘잉여’들의 반란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사회에서 배제당한 노인층들이 ‘태극기’를 들고 반공, 반북, 친미를 외치는 것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자리를 찾기 위한 일종의 ‘인정투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노인들의 구술사 작업을 해오고 있는 최현숙에 따르면 그들은 사회에서 잊혀 버린 자신의 존재를 “아우성치려 [광장에/집회에]나온다.”⁸⁷⁾ 이들이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이들이 잃어버린 안정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자신들의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소환하여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처절한 투쟁이다.

김홍중은 87년 체제를 ‘진정성의 시대’로 정의한 바 있다. 그는 특정 시기의 사회는 집단의 파토스, 즉 공통의 정서, 감각, 감정 등을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87년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의 시대에는 생존이 부끄러운 것이며, 옳은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성’이 삶의 기준이 되는 파토스가 존재했고, 여기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이 진정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좌절감을 맛보면서 “살아남은 자”로서의 “슬픔”을 공유하고 있었다.⁸⁸⁾ 하지만 도덕적 가치를 추

86) 김중권 “분단폭력 트라우마의 치유와 ‘불일치’의 정치,” 『통일인문학』 제74집, 2018. 44-46쪽.

87) 최현숙, 『모든 밀려난 존재들의 악다구니는 아름답다』, 『문학동네』, 봄호, 2016, 469면.

88)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구하는 진정성의 시대는 IMF 사태를 겪으면서 생존의 가치가 가장 우선시 되는 또 다른 사회적 에토스로 변화하게 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만 하는 도덕적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에 충실한 속물이 되는 것이다. 김홍중의 언어로 “속물과 동물들의 세계, 몰럼(沒廉) 혹은 무치(無恥)의 에토스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이다.⁸⁹⁾ 동물과 속물들은 자신들의 생존에만 골몰한다. 이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쓰면서 각자의 시간을 계획하고, 자신의 몸을 디자인 하면서 자기계발에 골몰하는 주체가 되어버렸다.⁹⁰⁾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이 각 개인을 ‘자기계발하는 주체’로 호명하는 지금, 국가와 반공에 온 몸을 불살랐던 무리들은 자신들의 삶의 역사성과 현재의 요구 사이에 기나긴 간극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생존의 게임에 초대받지 못한 자이다. ‘생존’을 놓고 경쟁하는 것은 어쩌면 생산하는 경제적 주체들에게만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생산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속물이 되는 것도 동물로 살아남는 것도 남의 얘기일 수 있다. 즉 철저하게 유폐된 자들은 그만큼 자신이 생존했던 시대(생산의 주체였던 시기)나 화석이 되어 박탈되어버린 자신들만의 도덕적 가치를 움켜쥐고 있기 쉽다. ‘태극기’들이 ‘종북 척결’을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것이 강변해주듯이 말이다. 그만큼 ‘태극기’는 생존의 게임 또한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는 것이 아님을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에서 도태된 자들이 어떻게 ‘과거’에서 살고 있는 지 보여준다.

문제는 한국사회의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분단이데올로기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의 국면마다 부상하여 이들이 현실을 인식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사실이다. 노동조합의 파업이 결국 북한에 이득이 되는 것이라는 논리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반기를 들었던 대부분의 시민들이 ‘종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이다. 흥미롭게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법질서, 즉 현재를 운용하는 성문헌법 위에 “이면(裏面) 헌법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합헌으로 해석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북한이라는 반국가 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또한 ‘분단’상황에 따라 운용되어야 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사실상 “빨갱이로 몰린 자에게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관습헌법이 작동”하고 있음을 헌법 최고 기관이 명문화한 것과 다름 아니다.⁹¹⁾ 매순간마다 거론되는 ‘빨갱이’, ‘종북’ 등의 표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며, 과거를 현재로 소환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더욱이 최근 제주 난민사태를 비춰봤을 때 태극기들의 극우적인 행동은 분단을 가로질러 난민, 여성, 성적 소수자까지 확장되고 있는 양태다. 얼마 전 난민반대집회에 태극기 단체가 적극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부터 여성과 성적 소수자를 둘러싼 반동적인 움직임 이면에 태극기 세력들이 공고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그만큼 분단의 작동이 단순히 남북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문제와 결합되어 복잡화되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분단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물리적 분단에서 작동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그 모습이 진화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한국사회의 주요 논쟁 지점을 분단이라는 맥락에서 세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향후 좀 더 세심한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은 태극기 단체가 공유하는 반공적 이데올로기가 국가와 민족 밖의 존재하는 주체를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신자유주의 시대에 사회보장제도의 한계가 곳곳에서 불거지는 현 상황과 어떤 화학적 융합을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컨대 통일 독일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 동독 출신자들이 극우주의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논리 이면에는 자신들의 (이미 상당부분 박탈당한 - 동독 시절과 비교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난민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는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정의와 공정의 시대적 화두가 전 사회로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참고해볼만하다. 만약 노인층을 중심으로

89) 김홍중, 앞의 책, 2009, 66면.

90) 서동진, 앞의 책, 2009.

91) 백낙청, “촛불의 새세상 만들기와 남북관계,” 『창작과 비평』, 2017.

한 분단적 세력이 자신들에게 향한 복지 체계의 부담이라는 프레임을 난민, 사회적 약자(탈북민), 이주민 등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잊지 않으면서도 타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담론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3. 분단적 감정과 정동, 그 너머 인정(recognition)

분열증적 인식은 단순히 이성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복잡한 감정과 정동을 생산해내기도 한다. 감정이 오랫동안 학습되어 공유되는 정서와 느낌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동은 몸과 감정을 아우르며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강렬한 힘이라고 정의할 때, 분단이 생산하는 분열증적 감정과 정동은 그만큼 일상적 수준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제한할 확률이 높다. 분단적 감정은 이성의 수준에서 충분히 설명되기는 어렵지만, 전쟁과 냉전을 경험한 상당수의 남한주민에게 깊게 각인되며, 이는 정동적 순간을 거치면서 증폭되곤 한다.

특히 종편을 비롯한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산되는 ‘빨갱이’와 ‘종북’에 대한 혐오와 적대적 감각 등은 분단이 왜곡해버린 비틀어진 감정과 정동의 자원으로 재생산된다. 최근 한국사회의 병폐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혐오 정동은 분단과 관련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공격한다. 이는 탈북자부터 지식인까지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된다. 분단을 배태한 혐오의 정동은 한국사회의 나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된다. 주지하듯 혐오는 원초적 감정으로서, 주체의 고정된 영역의 안과 밖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에게 투영되는 정동이다. 단단하고 구획되는 것들의 경계를 타고 흐르는 모든 것들, 즉 타액, 생리혈, 배설물, 토사물 등은 유기체로서의 사람의 몸을 탈주하는 것이기에 혐오스러운 것이 된다. 혐오스러운 것을 배제하고, 유폐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순결함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 문제는 혐오의 감정이 사회적으로 확장되면서, 특정한 집단을 오염된 것으로 낙인찍고,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하게 되면서 발생한다. 즉 사회적으로 청결하고 완결되고자 하지만 결코 완전한 순결체가 될 수 없는 집단의 욕망이 투영되어, 특정한 집단을 오염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혐오의 정동이 되는 것이다.⁹²⁾

너스바움에 따르면 혐오의 대상이 된 집단은 사실 그 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속성이지만, 그 사회가 지향하는 순결성 경계 너머의 성격을 지녔다는 이유에서 추방되는 것이다. 예컨대 여성이나 성적 소수자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동물이 아닌 자율적 인간이고자 남성이, 자신들이 내재하고 있는 동물적 속성을 여성에게 투사하여 혐오함으로써, 자신들의 완결성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특정 사회가 혐오하는 대상의 속성은 사실 그 사회의 일부분이지만, 그 성향을 ‘타자’의 것으로 추방해야만 주체라는 고정되고 확실한 존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⁹³⁾한동안 SNS에서 회자되었던 ‘종북계이’라는 혐오적 낙인은 ‘적’인 북한을 ‘친구’로 여기는 성향과 성적 소수자라는 정체성이 한국사회가 유폐하고자 하는 ‘가장’ 불결하며, 비정상적인 성향임을 드러낸다. 조금 단순화해서 설명하자면, 북한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종북’이나 ‘빨갱이’와 같은 표식은 분단체제의 공고함의 경계에 균열을 내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며, 비슷한 맥락에서 성적소수자 또한 이성애주의라는 수천 년을 내려온 사회구조 밖에 존재하기에 불결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만큼 북한과 성적소수자가 한국사회가 욕망하는 순결성과 확실성의 경계, 즉 비/정상적인 것 경계를 구축하게 하는 지점이라는 것은 한국사회가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혐오와 적대가 커켜이 쌓인 분단체제에서 남북 사이에는 상호인정이라는 윤리나 사회적 의무 등은 작동하지 못

92) 너스바움, 마사,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pp. 141-142.

93) 이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분석은 임옥희, 『혐오발언, 혐오감, 타자로서의 이웃』, 『도시인문학』, 제8권 2호, 2016 를 참고하라.

한다. 호네트는 근대사회에서 작동하는 인정의 영역으로 사랑, 권리 그리고 연대를 주목하면서, 각기 다른 형태와 강도의 상호인정의 유형을 설명한다. 하지만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는 분단체제에서 상대방의 욕구를 그 자체로 인정하는 '사랑'이라는 관계는 불가능하며, '권리'의 영역에서 조차 남북은 서로 정당하게 인정하지 못해왔다. 게다가 분단폭력이 심 없이 자행되어 온 한국사회에서 북한과 관련된 것은 온전한 인정의 대상은커녕 폭력, 혐오, 적대의 대상으로만 의미화 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인정질서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다양한 투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는 조금씩 성과가 포착되기도 한다. 대북제재와 한반도 긴장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시도되어 온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 및 체육교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북한을 단순히 비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북의 다양한 모습을 알려려는 탈북자 단체, 남북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중국동포와 재일조선인의 노력까지 사실 일상의 수준에서 작지만 큰 울림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투쟁'이 공고한 분단체제에서 인정 불가능한 대상으로 단순화되어 온 상대방에게 공정한 자리를 내어주는 수준까지 확산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몰인정의 대상이었던 수많은 주체들이 조금씩 인정질서의 구조에 서 가시화된 사례는 많다. 예컨대 과거 노예시대의 노예, 봉건제의 농노, 근대 사회의 여성, 성소수자, 유색인종 등 등이 결코 '인정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정질서에 균열을 내고, 조금씩 권리와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더군다나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고 자아실현을 하려는 작은 몸부림이었지만 결국에는 사회의 진보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공고해서 흔들릴 것 같지 않은 분단체제 또한 분단적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성찰과 몸부림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단이 생산해 낸 주체들이 온당하게 인정받지도, 그렇다고 상대방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분단폭력의 희생자, 분단적 인지, 감정, 정동 등으로 인해 분단체제 내 대부분의 개인들은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아실현의 가능성 자체가 거세되어 있다. 각 개인이 자신에게 덧씌워진 구조적이며 인식론적 한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각자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시작점이다. 자율적인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분단체제의 내부에서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시민, 또 다른 말로는 탈분단적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반란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호네트가 인정투쟁을 주목한 이유는 주체와 타자가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상호인정을 통한 도덕적 사회발전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의 진보를 끊임없는 인정투쟁을 통한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정질서의 구축이라고 정의하기까지 한다.⁹⁴⁾ 기존의 상호인정의 범위와 방식을 인정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시켜 감으로써, 인류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존재 그 자체로 공존하고 화해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진보된 공동체로 발전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분단에 의해 절름발이로 존재하는 인정질서는 단순히 특정한 집단이나 체제가 배제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단체제 내 남북사회의 진보와 변혁의 불가능성의 근원이 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리적 상호인정과 도덕적 의무가 작동하지 않는 예외적 영역이 전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은 결국 분단체제로 인해 공동체로서의 '사회', 주체와 타자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결속체로서의 '사회'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를 만들어가는 문제는 결국 다시금 자율적이며, 도덕적인 주체와 그들의 상호작용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결국 분단이라는 비정상적이며 이질적인 '체제'가 흘러들어와 만들어낸 분단적 주체는 분단의 효과임에 분명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분단 극복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유일한 자원인 것이다.

94) 문성훈, 『인정의 시대: 현대사회 변동과 5대 인정』, 사월의 책, 2014, pp. 90~92.

4. 나가며: 윤리적 주체의 정치화

분단이 만들어낸 한국사회는 폭력적이다. 일상의 민중 대부분은 분단에서 자유롭지 못해왔으며, 이로 인해 비틀어짐 감정과 정동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물론 분단이라는 체제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변형될 때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구축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치나 제도가 만들어낸 변화로서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굳이 통독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분단으로 서로 적대해온 두 국가는 이곳의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배태되어 있고, 서로를 혐오해온 감정은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 이를 치유하고 서로를 공정하게 대하며 공동체를 구성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분단의 피해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그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며, 동시에 그 결과물로 구성된 분단적 감정과 혐오의 정동을 해체하려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와 폭력에 반대하는 윤리적 주체가 요구되며,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어낼 수 있는 정치적 힘을 조직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분단으로 인해 핍박받는 자가 누구이며, 분단을 활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불평등의 기저에 작동하는 권력을 간파한 윤리적 주체가 사회 변혁의 정치화를 이루어낼 때야 비로소 분단 너머 탈분단의 기획이 가능해질 것이다.

‘생존의 정치’에서 밀려난 사람들, 다시 ‘분단의 정치’와 만나다

김화순 | 한신대

“남북한의 통일은 단지 두 개의 국가의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체제의 희생자들을 사회로 통합시켜 내는 일,
 즉 남한 내의 통합과 평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김동춘, 2013: 110)

I. 들어가기

인권활동가인 강곤 선생님의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을 반갑게 읽었다. 그는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혹은 잠복되어 있는 인권문제들을 그간의 풍부한 인권활동 경험을 토대로 폭넓게 제기하고 있다. 북한식당 종업원 12인 문제, 남한에서 범죄인의 월북, 분단체제의 조난자, 탈북민, 북한주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보안법과 간첩조작, 4.3 등 역사적인 국가폭력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가 바라보는 시야는 실로 넓다.

지난 20여년간 진보진영 측에서 탈북민을 회피하거나 혹은 침묵해야 할 주제로 여겨지거나 심지어 배신자로 여기는 정서가 존재했다. 그러기에 남한 인권운동가들의 북한주민이나 탈북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반갑고 고맙다. 그렇지만 강곤 활동가의 글은 인권이라는 프레임에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까닭에 오히려 한계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북한이나 사람들에게 관한 한 왜곡해온 前史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의 프레임 저변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떤 인식틀을 가지고 그들을 보았는지 먼저 되돌아보아야 한다.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이행과정이 이미 도래하고 있으나 탈북민 정책은 과거 낡은 분단체제의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탈북민을 보는 시각 역시 진영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보수/진보진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생활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시각에서 탈북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에서 국가와 탈북민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II. 분단체제가 낳은 낡은 인식틀 벗어나기

탈북민을 보는 두 개의 대립적 인식틀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북한을 보는 대립적 프레임에 의해 규정된다. 첫 번째 시각은 북한을 적으로 보는 시

각이다. 대립과 극복 대상으로 북한을 본다. 두번째 시각은 북한을 존중과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두 개의 대립적 프레임은 다시 북한주민을 보는 시각을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적 프레임에서 북한주민은 적국의 주인이거나 혹은 동포로 규정된다. 그런데 탈북인에 이르면 그 시각은 또 다시 반전한다. 한국에 온 탈북인은 단순히 적대국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순한 투항자이다. 혹은 가난한 (불쌍한) 동포로 동정의 대상이다.

	북한	북한주민	탈북인	탈북동기	인권
①보수	적대적	적국 주민	귀순자	정치적 탄압/북한인권	북한 인권
②진보	협력적	동포	이주동포	경제적 동기	남한 인권

<표1> 탈북인을 보는 대립적 시각

이러한 진영프레임에서는 북한에 온 탈북인 아무개는 개인이 아니다. 그(그녀)는 북한의 대리인이자 북한주민이자 소수자인 탈북민 3만명의 일원으로 이중 삼중으로 망막에 포착되는 피사체로서 회피대상 거꾸로 특별한 관심대상이다. 보수진영은 북한의 인권을 소리높여 규탄하고 진보진영은 남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외치는 가운데, 탈북인들도 나뉘어져 어떤 이들은 북한의 인권을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남한에서 겪은 차별과 국가폭력에 대해 개탄한다.

분단체제에서 탈북인을 보는 두 개의 대립적 인식틀은 고정관념을 양산하였고 그 결과 많은 오해와 왜곡을 초래하였다. 본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 아무개를 북한이라는 프레임을 통하지 않고 생활세계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을 권하고 싶다. 보수든 진보든 북한-북한주민-탈북인이라는 집단이미지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 탈북인을 귀순자나 정치적 박해자 혹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경제적 이주자 혹은 이주동포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통해 바라볼 것이 아니다. 먼저 북한주민 홍길동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가 왜 북한을 떠나게 되었고 한국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지 구체적인 생활세계로부터 출발해 그들의 삶과 상황을 이해한 후에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그들의 인권을 말해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배신자인가? 혹은 폭압한 정권의 희생자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탈북민을 북한체제의 배신자 혹은 폭압한 정권의 희생자로 보는 양극단의 시각이 병존하였다. 그간 보수에게 있어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는 북한 체제를 공격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무기였으며 아직 유효시한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지라도 북한주민 인권문제가 지닌 폭발력은 여전하다. 트럼프는 북한협상에서 필요하다면 인권문제라는 폭탄을 다시 꺼내들 수 있다. 언제라도 백악관으로 탈북자들을 다시 불러들여 북한주민의 인권에 귀 기울이는 인권애호가의 자세를 취할 것이다.

북한사회를 비판하기 이전에 남한사회에서 탈북민 인권은 이미 문제적 상황에 놓여있었다. 탈북민의 인권은 입국경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유보되는 상황에 놓여졌다. 국민도 비국민도 아닌 상태에서 국정원 합동신문과정에서 6개월이나 계속된다. 합동신문-하나원 총 9개월을 거쳐 한국국민으로서 주민증을 받은 이후에도 이어지는 적응교육과 정보수집 협조, 그리고 정기적인 신변보호경찰관의 수시점검, 국정원요원들과의 만남이 심

수 년간 계속 이어지며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내내 그들의 관찰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은 한국의 시민이기 이전에 정치적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 3만명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비록 문재인정부 들어 합동신문과정이 비록 3개월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이러한 변화는 무의미한 수준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을 말하는 한편, 남한당국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북풍의 소재나 간첩의 단골 공급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여왔다. 지난 10년간은 탈북을 북한체제 붕괴의 조짐으로 보는 등 행태가 더욱 심해졌다. 심지어 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공식연설에서 북한주민을 향해 탈북을 적극 권유하기조차 하였다.

북한체제의 배신자라거나 혹은 폭압한 정권의 희생자라고 보는 양극단의 시각은 탈북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왜곡하고 변형한다. 이러한 왜곡의 발생 동기는 보는 자 자신의 관념을 투사한 산물이다. 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왜 폭정에 저항하지 않는지, 어떤 사람들이 왜 탈북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보다 그들의 실체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III. '생존의 정치'와 북한 노동자

거대한 생활공동체인 북한사회와 기초단위인 북한 공장

장마당에 관해 많은 신화가 있다. 시장세력이 곧 체제를 허물 것이며 80% 이상의 사람들이 장마당으로 먹고 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오늘날 북한사회가 비공식부문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비공식화가 공식부문을 허물기보다는 보완의 관계를 이루면서 혼합경제의 길을 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공장은 여전히 북한주민의 생활거점이며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기초단위이다. 북한장마당은 공장과 혼합된 상태이며 이들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지난 20여년간 북한 공장기업소는 노동자들에게 출근을 강제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커녕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조차 주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출근율은 공장가동율을 훨씬 상회하였다.⁹⁵⁾ '보상 없는 노동'과 '경제외적 강제'야말로 북한 노동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도 고질적인 문제이며 반인권적 상황임에도 북한 주민들은 마치 체제에 충성하는 듯이 보인다.

그 이유는 오늘날 북한의 공장사회는 하나의 정치사회적 공동체로서 '생존의 정치'가 지배하여 생존의 정치는 북한사회에서 일종의 질서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보상 공장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비밀은 '수령주의'로 집약되는 국가관료제의 낡은 틀에 터해 7.1조치로 상징되는 시장화의 영향력이 차별적인 식량공급과 공장의 위계적 질서로 재구성되면서 간부들의 생존투쟁과 그들의 주도하에 신규 충성노동자들이 동맹관계를 형성하면서 공장 내 새로운 주도층으로 정착한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같은 새로운 질서 하에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층노동자들은 아무 보상 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자리매김되는 극단적 희생 혹은 기본권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공장사회에서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지속하기 위한 간부층의 생존투쟁에 있으며, 먹을 알 있는 자리 즉 '공장직무가 곧 나의 이익'이 되는 새 충성노동자

95) 김화순, "북한주민의 직업실태", SSK 세미나 발표문, 2013. "전반적으로 비공식일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직장출근율은 기업소 가동율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식직업을 가진 배급생활자의 기업소 가동율은 74.4%이지만, 본인의 출근율은 95%에 달한다. 공식직업을 가지지만 부수입으로 생계를 유

들, 관념적이거나 자본주의에 거부감을 지니고 갈등하는 옛 총성노동자들 간의 연계가 공장사회를 지켜오고 있다.

오랜 생활공동체로서의 공장사회가 가진 공동체성이 이 시기 북한 공장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자 김정은 정권이 유지하는 동력이기도 하다. 공장가동율이 30%에 그치는 상황이 20여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동요하는 가운데서도 북한 생활공동체, 정치사회적 공동체는 아직도 견재하다. 그로 인해 북한체제는 강력한 구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부는 예상보다 더욱 안정적이다.

북한 체제전환의 주체는 북한 당국과 일체화된 북한주민 자신이다. 외적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만 체제전환이 일어날 수 있으며, 혁명의 기미는 전혀 없다.

<한 신총성노동자 이야기>

신총성은 지방산업 공장의 숙련노동자들의 '조절'형 생존전략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북한 공장사회에서 신총성의 행동은 매우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북한 전역에서 생산을 하는 모든 공장에서 수없이 많은 신총성이 존재할 것이다.

신총성: 그런데 내가 한 톤을 생산하면 내가 먹을 게 없잖아요. 한 톤 500(을 만드는게) 도둑질이 아니잖아요.

연: 그럼 그것을 무어라고 불러야 할까요?

신총성: 조절(調節)(당당하게) 도둑질이라고 안 합니다. 조절(중략) 우리는 도둑놈이 아니거든요(큰 목소리로). 원래 도둑놈은 나라잖아요. 나라가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게 큰 도둑놈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총성은 도둑놈인 나라가 자신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았으므로 완제품의 일부를 자신이 갖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조절(調節)이라고 생각한다. 조절이란 '균형을 잡아 어울리게 바로 잡는 행위'이며, 그는 국가를 대신하여 노동력의 제공자인 스스로에게 보상함으로써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 원자재를 '조절'했기에 비로소 생존할 수 있었다.

IV. 김정은 시대 북한주민은 왜 여전히 탈북하는가?

그들은 정치적 동기에 의해 탈북하였는가?

혹은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여 한국에 온 경제적 이주자인가?

보수적 시각에서는 북한인권 문제 혹은 정치적 탄압에 의한 주민들의 반란으로 탈북현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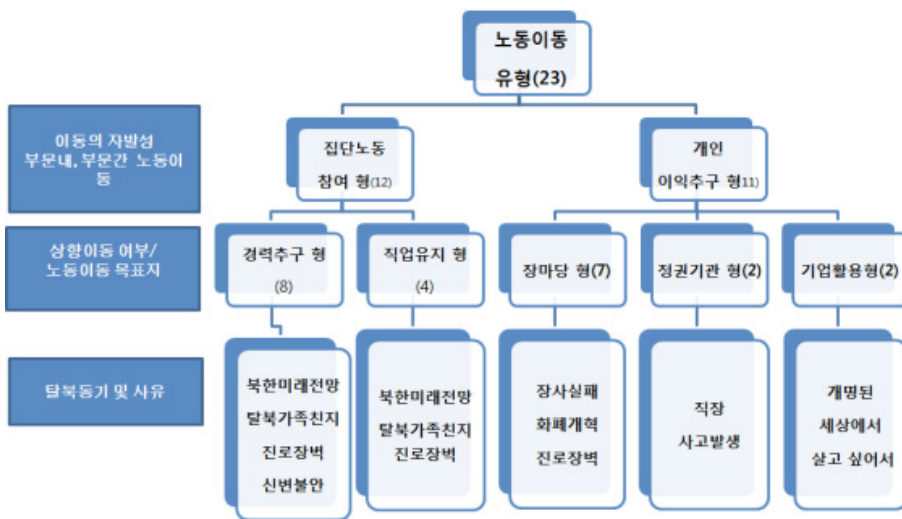
이해하며, 진보는 경제적 이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사례분석결과는 이와 다르다

지하는 사람의 출근율은 94.22%로서 역시 기업소 가동율 85.6%보다 높다. 8.3노동자의 출근율 61.5%는 기업소 가동율 61.4%와 비슷하며, 단, 비공식직업 종사자만이 출근율 45.5%로서 기업소 가동율 72.7%보다 낮다.*

2016년에는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뜨거운 공방들이 벌어졌다.⁹⁶⁾ 그 해 4월에는 총선 직전 북한음식점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이례적 공개발표가 있었는가 하면, 이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북한주민의 탈북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지난 정부는 북한주민의 탈북과 ‘북한붕괴론’을 상호연계하여 국민들의 안보경계심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직행탈북(연: 북한에서 바로 남한을 목적지로 해서 탈북하는 경우)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노동이동, 탈북자 가족이기 때문에, 출신성분, 혼합경제하에서 비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경제행위가 만들어내는 범죄자들, 시장세력에 대한 탄압 등이 다수의 잠재적 범죄인을 양산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 직행탈북이주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탈북은 왜 일어나는가?

2000년대 이전 식량난 시대에는 탈북사유가 아주 단순하고 자명했다. 미증유의 기아사태는 북한주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두만강을 건너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된 이후에 식량난 시대와 비교하여 생활여건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탈북규모는 계속 증가해왔다. 1990년대의 북한의 식량위기는 수많은 식량난민들을 배출하였으며 고난의 행군시기 식량을 구해 국경을 넘었던 북한주민의 탈북행위는 그 이후 20여 년 동안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탈북이주의 흐름을 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 국경감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향해 매년 수 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조종간 국경을 넘어가고 있다. 탈북이주 제 2세대들이야. 이들은 인권을 찾아서인가?



<그림 1> 노동이동 유형별 탈북사유

식량난민 이후 새로이 등장한 ‘직행과 탈북이주 세대’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탈북과정을 노동이동 맥락에서 살펴본 결과, 북한내부에서 비공식부문이 성장하면서 노동이동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북한에서 노동

96) 2016년 총선 직전인 4월 8일에 통일부는 북한음식점 종업원집단탈북사건의 경위를 공개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같은 이례적 행위는 북풍을 위한 기획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같은 탈북사건 ‘공개 기준’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 집단 탈북 관련 발표가 그간 정부가 지켜왔던 탈북 사실 확인에 대한 원칙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는 <<http://news.kbs.co.kr/news/view.ncc=3262661>> (검색일: 2017.6.1). 참조. 이같은 의혹에 대해 2017년 5월 29일 국회 청문회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답변은 “유독 식당 종업원 탈북 사례에서는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빠른 시간에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19238> (검색일: 2017.6.1). 같은 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북한주민의 탈북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동 경험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나 자신감을 형성함으로써 탈북을 촉진하며⁹⁷⁾ 각 노동이동 유형별 탈북 사유를 분석한 결과, 집단노동참여유형(공장노동형)의 경우 탈북자가족이나 친지이기에 당국으로부터 받은 감시, 비사회주의 행위로 인한 신변불안, 본인과 가족의 진로장벽, 북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 등이 탈북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이익추구형(장마당형)의 경우에는 집단노동참여유형과 동일한 이유 외에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탈북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림 1).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들이 남한으로 인권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서 온다고 보기 어렵다. 그들은 생존욕구에 의해 촉발된 경제적동기와 동시에 신변불안 등 정치적으로인들이 어우러져 동기화된 이주자들이다. 새로운 삶의 추구로 인해 탈북했다는 설명 역시 지나치게 자유민주주의적인 시장경제에 익숙한 우리식의 낭만적 시각이다. 이 주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다는 것은 단지 경제적 이주 이상의 절실한 동기 없이는 행하기 어렵다.

V. 12인의 여종업원 사건과 국가폭력의 면책

4.13 총선을 앞두고 2016년 4.8일에 통일부는 북한 음식점인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의 탈북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북한식당 이용 자제 계도 등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집단탈북으로 이어졌다"라는 해석을 내놓았으며 게다가 이들이 입국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까지 제공했다. 북풍기획이었다는 점과 더불어 탈북사건을 이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2000년 이후 탈북민 신문과 탈북경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공개 원칙'을 깨뜨렸고⁹⁸⁾ 북한에 있는 그들 가족들을 위협을 빠뜨렸다. 즉, 북풍기획을 위해 탈북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다. 북한당국은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북한음식점 종업원 집단납치사건'을 꼽고 있다. 국정원 개입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2018년 5월 10일 이규연의 스포츠라이트에서 방영되었으며 결국 조사에 나선 토마스 오헤아 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제안이 있다. ... 이들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남기를 원하든, 다른 결정을 하든 이들의 의사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들의 결정을 유엔이 개입할 것도 아니고, 한국과 북한 정부가 내릴 것도 아니다."⁹⁹⁾

지난 6.30일날 남북시민통합연구회 13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한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물건

97) 첫째, 북한 공식부문 국영경제(Ⅰ)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공적시장경제부문(Ⅱ), 비공식국영경제(Ⅲ), 비공식 시장경제(Ⅳ)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남녀별로 다른 행동패턴을 보였다. 둘째, 북한근로자는 노동이동 유무에 따라 집단노동참여유형과 개인이익추구유형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또, 집단노동참여형은 상황이동여부에 따라 다시 경력추구형, 직업유지형으로 분화되었으며, 개인이익추구형은 이동선택지에 따라 다시 장마당형, 정권기관형, 기업활용형으로 분화되면서 총 다섯 개의 노동이동 유형이 도출되었다. 셋째, 각 노동이동 유형별 탈북사유를 분석한 결과, 집단노동참여유형의 경우 탈북자가족이나 친지이기에 당국으로부터 받은 감시, 비사회주의 행위로 인한 신변불안, 본인과 가족의 진로장벽, 북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 등이 탈북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개인이익추구형의 경우에는 집단노동참여유형과 동일한 이유 외에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탈북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98) 탈북민이 김씨 일가 등 로열 패밀리거나 고위급 인사일 경우에만 탈북 사실과 신분 등을 공개해왔다.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였던 이한영씨나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12명의 탈북 종업원, 국정원이 '특별관리'해야 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2017.9.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8477

99) 토마스 오헤아 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발언, 2018.7.10.

이 아니므로 북풍수요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일괄적으로 자유의지에 상관없이 도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인에게 자유를 주고 알아서 하도록 할 문제라는 것이다. 김련희씨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 3국을 통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12인의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 이같은 사태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국정원 책임자를 사법처벌하도록 해야 하며, 탈북민 신문과 탈북경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공개 원칙'을 깨뜨린 점에 대해 역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 등 어디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아쉽다.

한편, 통일부 정책혁신의견서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사안과 관련하여 탈북민 본인은 물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에 명시해서 방지해야 하고, 북한 이슈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하고, 대외발표 주체는 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통일부의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통일부 정책혁신의견서". 2017.12. pp. 35~37)

분단, 평화, 통일

노혜경

◆기초발제와 심화발제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분단체제로 인한 한국사회의 폭력성과 그 가장 큰 피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읽었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 바로 분단체제라는 사실이 한국이 처한 특수현실을 잘 말해 줍니다. 평화는 현 시기 한국에서 안보의 하위개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목표입니다. 평화협정 이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를 이번 토론에서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곤 선생님과 김화순 선생님이 탈북민 문제를, 김성경 선생님이 태극기부대의 노인들 문제를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이라는 기초발제는 그동안 분단체제로 인해 발생한 인권문제들을 총망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체제 경쟁의 승리의 표지로도 보일 수 있는 탈북민들을 매개고리로 분단과 북한을 한국정부가 어떻게 이용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멀게는 4.3에서 가깝게는 소성리에 이르기까지, 분단은 편가르기의 강력한 기제로 움직이며 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크게 공감합니다.

◆한편 김화순 선생님의 “노동시각에서 본 탈북민과 북한 주민의 삶 바라보기”는 조난자/배신자/희생자라는 진영논리적 언어를 벗어나 실제의 북한 주민은 어떻게 살고 또 왜 탈북하는가를 노동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난민’이 주였던 과거와 달리 소위 ‘직행탈북자’들은 인권적 관점뿐 아니라 ‘노동이동’이라는 측면도 포함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동의합니다.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과, 그럼에도 변화하지 않는 남한의 인식 간의 괴리 또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더 주목한 발표는 김성경 선생님의 “분단 너머 연대의 가능성”입니다. 김성경 선생님은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을 중요한 분석도구로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옥죄면서 옥죄는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드는 강고한 분단체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후천성분단인식결핍증’)

평화체제의 구축이 세계체제와의 연관 속에서 분단을 바라보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의

복미관계만 보아도 분명하지만, 지금이 분단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며, 지난 지자체 선거는 분단체제에 기생하던 지역감정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해체과정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사각지대의 존재들, 흔들리는 분단체제 아래 '잉여'가 된 노인들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념의 담지자이면서 경쟁의 탈락자라는 태극기 부대의 위치는 한편으로는 혐오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혐오를 생산하는 주체들이기도 하며, 앞으로 평화체제로 이행해가는 데 내부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분단으로 인한 폭력이 직접적인 국가폭력을 넘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문제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율적인 개인의 성장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노사모의 슬로건이었던 “자유로운 개인의 느슨한 연대”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

이정주 앰네스티

지난 4월 몇십 년 간의 적대관계를 뒤로하고 남북의 정상은 손을 맞잡은 날, 한쪽의 사람들은 그렇게 염원했던 ‘평화’와 ‘통일’이 이렇게 쉽게 오 수 있구나! 놀라워하면서 기뻐했고, 한쪽의 사람들은 북한을 어떻게 믿냐며 정치적인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으로 갈라진 반응 속에서 저는 제일 먼저 남한의 어떤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탈북인들은 그 장면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누군가는 죽기 전에 북에 남아있는 가족 혹은 지인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김정일이 살아있는 이상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웃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 강요에 의해서든, 혹은 생존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자발적으로 - 했던 ‘반북’ 발언이나 행위(예컨대 북한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알리는)를 돌아보며 혹시라도 북송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로 여겼을 수도 있겠지요. 결국 저는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했든, 현재의 삶을 일구는 남한과 과거의 역사와 경험, 즉 자신이 과거에 존재했던 북한이라는 두 나라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을 사람들,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떠올린 것이지요.

북한 식당 종업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측도, 자유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행위라며 진상규명조차 반대하는 측도, 어쩌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대의 혹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가려, 그 문제의 당사자와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남북한의 사람들(당사자의 가족들과 탈북인을 포함하여)이 마주할 수 있는 상황과 어려움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질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평화’이든 ‘통일’이든 혹은 ‘인권’이든 그것으로 가는 길목에서 분단 체제가 만들어 낸, 적대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소외되고 배제되는 존재들이 누구이며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다가온 질문들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김성경 선생님이 발제문에서 주장하신 것처럼 ‘인정질서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다양한 ‘투쟁’이 공고한 분단체제

에서 인정 불가능한 대상으로 단순화되어 온 상대방에게 공정한 자리를 내어주는 수준까지 확산되기까지는 지난 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너무나 공고해서 흔들릴 것 같지 않은 분단 체제 또한 분단적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성찰과 몸부림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그렇다면 한국의 인권운동은 어떠한 성찰과 몸부림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김성경 선생님께서 (발제문은 아니지만) '분단의 마음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글에서 '탈북민 대부분은 북한체제에 대한 적대적 감정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고향'과 그곳에 남겨둔 '사람'들에 대한 애착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다. 적대와 두려움의 감정과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는 연민, 공감 그리고 연대성을 재발견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분단의 마음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일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또한, 김화순 선생님께서는 진보/보수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탈북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두 분과 참석하신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기존의 한국 사회와 인권운동 진영(북한인권운동을 포함하여)은 탈북인을 어떻게 호명하고 타자화해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탈북인은 어디에 위치해왔는지요? 동포, 희생자, 배신자, 증언자, 꽃제비, 빨갱이, 사회부적응자, 통일의 가고.. 기존의 탈북인들을 호명하는 '말'들을 넘어서, 한국의 인권운동은 탈북인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발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특히 발화의 객체로만 존재해왔던 사람이나 집단이라면 더 무대 위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운동이란 무대 밖에 존재하는 말들을 찾아내고, 발화의 주체들과 말하기를 위한 무대를 함께 만드는 것, 그리고 무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가치관으로 무대 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화된 집단으로서가 아닌 다양한 역사와 경험과 생각을 가진 존재, 고유한 개별성을 가진 존재로서 탈북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떠한 형태로든 분단체제가 평화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인권, 인권운동은 수많은 딜레마를 만나게 될 것이며, 또 지금까지 한국 인권운동에서 '북한 인권'이 언제나 딜레마이자 뜨거운 감자였다는 강곤 선생님의 분석과 보수에게 있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상대 체제를 공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그 약효가 지금도 전혀 바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김화순 선생님의 분석에 동의하면서도, 저는 '북한 인권'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환경은 딜레마일 수 있으나, 북한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딜레마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생각입니다. 북한이라는 곳은 북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며, '북한 인권 운동'도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폐쇄적이며 과거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고, 또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시장경제 시스템을 확대해왔고, 북한 사람들 상당수가 북한 정부의 암묵적(또는 계획적) 허용하에 시장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과의 경제교류도 증가 추세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90년대의 절대 빈곤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절로 북한 사람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어

떻게 움직이는지, 북한 사회는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가두고 있는 분단 체제를 넘고, 탈정치적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새롭게 다시 쓰는 운동을 한국 인권운동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과연 탈정치적 관점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은 가장 많은 탈북인이 거주하고, 북한에 관한 가장 심도 있는 정보가 교류되며, 가장 높은 수준의 대북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한국은 권리주체이자 권리보유자인 북한 사람들과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위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이러한 자원을 탈정치적 관점에서 새롭게 쓰는 ‘북한 인권’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권리주체로서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력화를 통해 권리주체 스스로가 자존감과 권리 의식을 내면화하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창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 발제자 선생님들처럼 분단 체제가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전히 건재한 국가보안법과 ‘너는 누구 편인지’에 대한 물음을 통해 편 가르기와 우/열 가르기를 시도하고, 내가 아닌 것과 열등한 것에 대한 혐오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확장되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인권운동이 어떠한 응답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곤 선생님의 고민에 함께 하며, 김성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분단 체제의 구조적 제도적 원인의 해결과 동시에 그 결과물로 구성된 분단적 감정과 혐오의 정동을 해체하려는 시도의 구체적 모습들도 함께 상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한국 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사회 내부의 인권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아왔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석진 활동가는 <‘북한인권’, 오해와 침묵을 넘어> 에서 북한인권의 의미를 1) 북 내부의 인권 상황, 2)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적 조건, 3) 남한 ‘북한인권’ 담론의 정치적 의미, 등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박석진 활동가와 발제자들이 지적하듯 (위에서 말한 세 가지가 모두 뭉뚱그려진) ‘북한인권’은 미국과 일본, 유엔연합, 남한 보수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왔고, “입체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북한 사람들의 얼굴은 여백으로만 존재”(강곤)했습니다. 그렇기에 김화순님이 제안한 대로 “분단 체제가 낳은 낡은 인식틀”을 벗어나, 북한, 혹은 북한 주민, 혹은 탈북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시도”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분단 체제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첫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비핵화·평화정착 의지를 신뢰한다는 대답은 14.7%에 불과했습니다.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에는 64.7%로 신뢰도가 치솟았지만, 판문점 선언 이후 진행된 과정에서도 북한의 진정성은 항상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성경님의 말씀대로 “한반도 분단과 정전체제가 설혹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장으로 이행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를 적대하며 구축한 각각의 문화와 역사는 쉽사리 사라지거나 청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판문점 선언 이후 현재의 평화적 기류 속에서 분단 체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기대되진 않습니다. 5년 전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이 바로 어제 구속되었지만, 지난 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분은 여전히 구치소에 있습니다. 군사실무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헌법재판관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체제’이자 ‘자기 검열 기제를 작동시키는 일종의 사회규범’인, ‘이면헌법’으로써의 분단 체제(강곤)를 해소하는 작업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적어도 각국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선언이 평화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분단 체제를 해소함으로써 모두 함께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말하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한반도의 모두가 ‘평화롭게 살 권리’를 위한 논의를 포함해서,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을 고민하는 과정이 평화로 걸어가는 길을 만드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끝>

일시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6시 30분

기초발제 강곤 (인권저널(준))

심화발제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김화순(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

사회 장보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속기 미류

장보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상근하는 장보람 입니다. 연속토론회 네번째 시간. 주제는 평화.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 기획팀에서 고민 많이 하며 준비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고 분단체제 때문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탈북민 등, 인권운동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해왔고 앞으로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나누지 못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강곤 : 판문점 선언 즈음해서 조선희 작가가 쓴 <세여자>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사회주의운동을 하던 여성 세 명의 이야기. 광활한 무대를 보면서 깜짝 놀랐고, 외세에 의해 분단됐다고 하지만 1920년부터 50년까지 분단을 막을 수 있는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적어도 전쟁이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가지 않기 위해 무엇을 놓쳤던 걸까. 지금 한반도에 열리는 국면이 거대한 국제질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발을 딛고 구체적 삶을 놓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인권운동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기초발제의 바탕이었습니다.

<기초발제 :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 - 강곤(발제문 참조)>

장보람 : 분단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보안법, 탈북민, 제주 4.3까지 아우르면서 보편성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인권운동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경님의 심화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김성경 :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반도 대전환의 시기에 인권운동이 분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논의를 하고 있어서 기쁘고 많이 배워가고 싶습니다. 제 발제문은 여기저기 쓴 글을 풀었다가 다시 요약한 글이라 논리적 정합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어요. 최근 제가 고민하는 것까지 포함돼 정신없을 수도 있고요. 중간 중간 읽으면서 보강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가 분단으로 많이 비틀어졌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연대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방기하고 산 지 오래입니다. 연대의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심화 발제1 : 분단 너머 연대의 가능성 - 김성경>

장보람 : 발제를 통해 분단체제론, 태극기 부대, 혐오가 옮겨가는 과정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는 윤리적 주체의 정치화가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엔 김화순 님 심화발제 듣도록 하지요.

<심화 발제2 : '생존의 정치'에서 밀려난 사람들, 다시 '분단의 정치'와 만나다 - 김화순>

장보람 : 탈북민 주제 논의하는 자리가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자리가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고 지정토론 이어가보도록 하지요.

<휴식>

장보람 : 지정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문 순서대로 들어보지요.

<지정토론1 :노혜경>

연속토론 5강 다 페미니즘 주제인 줄 알고 신청했었는데, 3강부터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정토론 신청하라고 했는데 뭘 신청했는지 몰랐어요. 연대 신청한 줄 알았는데 평화라서 더 놀랐구요. 소화가 잘 안됐습니다. 피상적으로 알던 얘기를 깊게 들어가다 보니 하나하나 말 떼기가 힘들더라구요. 저 같은 천주교 신자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가마,' 하는 예수님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다. 평화란 무엇인가. 종교에서 말하는 평화와 정치에서 말하는 평화는 같은가 다른가. 요즘 생각으로는 같은 거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조건을 따지면 아무래도 분단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근원적 해결 어렵다는 주장과, 과거를 하나하나 펴는 방식은 근본주의적 사고방식이고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분단이 근원적 문제긴 합니다. 조금 더 통합적인 평화 담론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토론문 참조)

<지정토론2 :이정주(엠네스티)>

엠네스티에서 활동하고, 북한인권 담당하고 있고, 2년 정도 됐습니다. 토론회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평화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을 함께 얘기해보자는 자리가 뜻 깊구요. 발제문을 보면서 제 고민을 나누는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토론문 참조)

<지정토론3: 어쓰(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은 북 인권 관련 활동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저는 해보지 못했으나 역사를 살피며 저한테 남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토론문 참조)

<지정토론4 : 신강협(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신강협입니다. 신청해놓고 깜빡 잊었어요. 요새 뜻하지 않게 유명세를 탔습니다. 네이버에서 엄청 욕한다고. 난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제주에 살면서 평화 얘기 많이 하는데 인권 문제로서 평화 얘기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하면서 평화권 말할 때 쫓게 되요. 북한 얘기, 반전 얘기가 하는데 인권으로서의 평화권 얘기가 한국처럼 군사주의 문화 있는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주제는 평화권과 인권, 북한, 분단체제에 대해 말할 때 '남한 대중은 어디에 있는가' 입니다. 탈북민이나 국방부 등을 얘기하는데 남한 대중의 여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해군기지는 정부가 제주도민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놓았습니다. 개발하게 해줄게 하며 유혹했죠. 결정은 제주도민이 했습니다. 유치신청을 했고. 자기가 결정하고 결국 자기가 평화권을 침해받게 되었죠. 군함식 문제 불거졌을 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군사주의적 문화와 인식이 군사기지를 수용하게 만들고 군사기지가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해군기지 앞에서 일상적으로 반대 시위 하는데 왜 그대로일까? 제주도민이 지지하니까가 그 이유입니다. 핵심적인 요인은 경제예요. 일자리가 생기고 돈을 벌 거라는 기대. 유엔에서 만든 평화권 초안 보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경제적 발전의 권리도 평화권으로 봅니다. 유엔 결의안에서도 발전 얘기 나오니까요. 평화권 얘기할 때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침해당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민 문제로 언론을 만나보면 제주가 무슨 계엄인 줄 알아요. 난민들과 트러블도 없어요. 제주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은 구제해줘야 한다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육지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무섭다고 하니까, 제주에서도 꺼림칙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동네는 안 오면 좋겠다고. 사람들의 호의를 눌러버리고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난민 숙소 구하기가 힘들어요. 후원금은 많이 들어오는데, 도와주는 사람 많은데, 정작 숙소 마련이 어렵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권력이 제주도민의 의사와 반대로 행사되는 것이죠. 송악산 미군기지 투쟁이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군사기지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던 것이 제주입니다. 그런데 중앙의 압력, 대중의 시선 등이 평화에 대한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도 그렇죠. 제2공항. 앞으로 수용인원을 45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중앙권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논리가 주변부를 압박하고 희생양 삼고 있습니다. 개발을 한들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난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안전을 통해 이야기 되고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를 조작하는 거죠. 제주는 전쟁경험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4.3 항쟁에 대해서는 많이 말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라 할 때 제주가 출발이나 시범이 될 수 있을까. 성공적인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장보람 : 지정토론 잘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는 분들 얘기해주세요.

참석자 :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제 질문은 한 가지예요. 연속토론이 다섯 개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 중이고 그 중 하나가 평화 또는 분단인데, 발제자들이 모두 분단 문제가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분단과 평화의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운동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계획하고 있는지. 분단을 어떻게 자기 문제

로 이해하고 있는지. 북미관계가 변하거나 하는 외적 요인만이 아니라면 어떤 계기나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장보람 : 발제자 분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화순 : 제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질문 잘 못 들었어요. 탈북민 관련해서는 엠네스티에서 많이 얘기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기는 했는데 인권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과 연계할 것인지 이 문제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운동 쪽에서 최근 탈북민 관련해 바람직했다고 본 사례는, 열 두명의 종업원 문제를 제기해준 것과 문화연대에서 이경희 체조코치의 미투를 투쟁의 소재로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은 지금 주체가 되어 운동을 벌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인권활동가들이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 탈북민은 국가로부터 매수를 당했고, 특히 이명박/박근혜 이후로는 많은 지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 예를 들어 대학 특례 입학과 학비 지원 등,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조건 있는 백지수표. 그들은 항상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죠. 더 열악한 수준의 돌봄과 국가로부터 무엇을 얻는 대신 감시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 일반 사회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주로 북한을 겨냥한 활동이었어요. 북한 정권 타도와 북한 인권 얘기하며 국가권력에 동원되고 기여하며 보람 느끼고 살아온 사람들. 이런 구조에서 인권 문제가 돌출했을 때 제기할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유오성 사건과 이경희 코치 사건은 특별했다. 끝까지 해보려는 중입니다. 인권활동이 초기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권운동은 누구의 대변인이 되기보다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남북시민통합연구회의 중요한 고민은, 탈북인이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준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돌아보면 정보 수집을 위한 보호 감시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영양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경찰이 계속 연락하고 보호하고 돈 준다고 제안도 하고. 이런 질문들이 평화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의원실과 합동신문에 관한 토론회를 했는데 탈북 초기부터 국정원과 연계되는 문제가 시민사회에 굉장한 위협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토론한 결과 내린 결론은, 우리가 말한 대로 안 될 거다라는 거죠. 국정원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탈북민이 풀어갈 수 없습니다. 잠재적 간첩이기 때문에. 북한과 메신저를 주고받는 사람들인데. 그들 스스로는 불가능하지요.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체계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고립된 상태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탈남입니다. 소극적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분단체제로부터의 도피.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신 분 있나요? 가려진 측면 중 하나죠. 연구자들도 용기가 없었습니다. 문제로 제기하지 않아왔죠. 탈북민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오늘 토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해소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해줄 수 있는 인권단체가 필요합니다. 인권단체가 여기에서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게, 한 개라도 출현하면 좋겠다는게 연구자로서의 소망입니다.

강곤 : 박석진님 질문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 알고 계실 듯한데, 제 주관적인 경험을 말하면. 90년대 후반 러시아 벌목공 인권침해 문제를 조선일보가 터뜨렸을 때, 인권운동사랑방이 비공개 내부 워크숍을 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랑방도 놀랄 정도로 연구자와 언론인들이 왔죠. 그러나 이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될 때, 미국의 어떤 재단이 북한인권 관련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당시 참여연대 등과 함께 한반도인권회의 꾸렸습니다. 통일운동 했던 세력은 북한인권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북한에 인권문제는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좋은 벗들은 동포들이 굶어죽고 있는데 자금 출

처가 어디든 어떠냐 일단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구요. 이때 인권운동은 침묵과 회피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엔엘과 피디의 입장 차이. 엔엘과도 연대하고 피디와도 연대해야 할 때 인권단체로서 목소리 낼 때 연대가 끊어질 수 있는 현실적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북한 인권이 당시의 북한 주민이나 탈북민과 같은 인권 주체가 빠진 논의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이 택한 것은, 진정한 북한 인권운동은 '국가보안법 폐지다' 인권운동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라고 정리했던 것 같다. 그 후 세대교체도 많이 되고, 국가보안법 피해자 집단도 변하면서 달라진 듯합니다. 사회운동가가 간첩으로 잡혀가면 지원세력도 있고 대책 위도 만들어집니다. 유우성 씨도 한국에서 대학원 나오고 공무원이라서 대응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시민사회와 완전히 분리돼있어서 과거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제가 만난 탈북민은 조작 간첩사건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이주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복지원 같은 시설 생활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다르다면 보수적이고 극우에 포섭돼있다는 것. 그렇지 않았다면 인권단체들은 손잡으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분단체제라는 정치적 조건은 여전히 고민으로 남아있습니다. 포획되지 않은 탈북민들이 등장하거나 목소리 낼 때 인권운동이 충분히 만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작간첩 피해를 당한 탈북민조차도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생계 때문이기도 하고, 탈북민 사회에서도 고립된 사람들이라는 중첩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만날 것인지 고민하기 위해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엠네스티에서 새로운 북한인권 운동 말씀하셨는데,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 사회가 북한 인권 얘기하는 것이 옳은가 고민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그렇구요.

태극기 집회 분들에게 대한 얘기 나왔는데, 또 하나의 가려진 분들, 일평생의 통일운동 한 범민련 분들, 전향했으나 이제 송환을 원하는 분들-인권단체의 지지를 원하지 않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처럼 잊혀진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범민련 행사 다녀왔는데 문화행사가 태극기 집회랑 비슷했습니다. 서글프더라고요. 이 분들의 이야기도 젊은 세대들에게는 똑같이 보이겠구나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김화순 : 탈북민 문제를 깊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혜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민성을 어떻게 획득하느냐가 탈북민 사회에서 근본적 문제입니다. 국정원에서 탈북민 교육을 의뢰했던 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였어요. 교회와의 관계는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자유시민대학. 탈북민이 교육을 받으면 한 달 50만 원 줬습니다. 논문 쓰면서 그때 사람들 만나서 얘기 나눴습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나왔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독교가 가장 우군이었죠. 보수기독교와의 끈끈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여전히 출석하면 10만 원 줍니다. 보수우익에 둘러 쌓이면서 길들여진 과정을 겪어왔어요. 인권운동은 무엇인가 다시 질문해봅니다. 소수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것인가, 대중적인 방식을 채택해 다가설 수도 있는 것인가. 분리된 상황이 너무 오래됐고,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탈북민 위해 쓰는 돈이 1년 3천 억 이상입니다. 분리된 체계 자체를 허물기 어렵습니다. 연구자로서 너무 한계 느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나 인권운동이 나서면 연구자로서 지원할 수는 있는데. 민변은 사건을 쟁점화 시키는 일을 했는데. 시민사회로 들어가 합쳐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인권운동은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김성경 : 저녁 수업이 있어 가봐야 합니다. 인권운동이 곤란함을 가졌던 것 자체가 분단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인권법에 대한 이중적 시각을 가졌거나 하는. 북한과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편합니다. 북한과 뭔가 하려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잡성을 갖는 것 자체가 지금

한반도에서 중요한 스탠스 인 것 같아요. 탈북민은 이중 삼중의 힘겨운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경제적 정착과 동화에 맞춰서 정책이 운용돼왔죠. 일할 수 있으면 한국사회에 들어온 것처럼. 2세대가 좋은 대학 다니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 정착만으로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게 현재 상황이구요. 탈북민 관련 정책이 제2기로 넘어가야 하는 때가 아닐까합니다. 공정과 정의의 시대에 과도한 사회보장이 한 집단에게 몰려있다는 점은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구요. 먼저 가야 해서 죄송합니다.

강곤 : 제가 인권운동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을 전략적 고민을 엄청 하면서 시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주노동자들이 쇠사슬 묶고 농성하니까 찾아간 것이죠. 형제복지원도 마찬가지고요. 한 축으로는 인권운동의 전략이나 노선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인권운동사랑방이 탈북민을 전담하는 상근자를 둘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주체가 등장하기 어려운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참가자 : 김화순님과 탈시설 간담회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날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전달체계 생기고 병원에 침대 지속사에 방 생길 때 그게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탈시설 하는 사람들만 빼오는 방식의 지원 정책을 정부가 하는데 시설 폐쇄라는 목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로 시설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탈북민과 구체적으로 관계 맺는 것을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난민도 등록하고 지원하면서 난민에 대한 특정한 모델이 만들어지고 가짜 난민이 만들어집니다. 탈북민은, 제도가 만들어질 때 인권운동이 개입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달체계를 없애면서 권리를 만들어가는 투쟁이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에이즈 감염인들도 특수한 전달체계에 갇혀있어요. 장애인이 아니라 특례대상. 탈북민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장벽을 같이 깨나가는 과정에서 탈북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 : 보육교사 얘기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인식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해서 엄청 후회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도 일반 대중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다 듣고 나니까 분노스럽고 좌절스러워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겠지만 우리는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아왔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인권단체도 북한에 대해 얘기할 때 북한은 헤어스타일 자유롭게 할 자유도 없다고 말하더라구요. 대표적인 아동단체에서는 북한의 아동 인식 조사 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이 심각하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됐어요. 인권단체가 그런 인식도 없이 북한 인권을 하고 있다는 데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권운동에서 당사자 인권운동 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통일 된다고 사람들 들뜨고 있는데, 그들과 만나는 우리를 준비시켜줄 것은 누구일까요? 인권운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권운동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걸 인식해야 하는 것 같아요.

참가자 : 박석진님이나 강곤님 이야기 이어가자면, 운동이 주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운동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어떤 정체성이나 의제를 가지고 운동하는 단체들 중 어떤 주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작된 단체 있을까? 인권운동은 모든 문제에 다 개입하는 운동인가? 개별 단체에서 계획하거나 결의하는 게 가능하지 않지만 시작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해요. 청소년운동을 오래 했어요. 청소년을 계도하는 걸 떠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청소년 당사자가 하는 운동을 오래 했는데, 청소년 운동을 말할 때 우리가 먼저 떠올

르는 상황이 쉽지는 않아요. 인권운동이 다 대리하거나 앞장서지는 못할 텐데,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지 하는 고민이 모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참가자 : 난민 간담회 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탈북민을 구체적인 얼굴로 떠올리지 못했어요. 인권운동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얼굴이 있죠. 탈북민은 그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난민이 그랬어요. 한국사회에서 난민 문제가 파장 일으킬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잘 모르겠어서 간담회를 했어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말, ‘저들도 사람이예요’라는 말로는 달을 수 없는 조건. 얼굴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난민지원 하는 분들은 그게 어려운 조건이다 얘기하시면서 기다릴 필요도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성이 시작되었죠. 당사자성과 관련된 고민과 딜레마. 탈북민은 난민보다도 더 쥐고 있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불리기는 하지만 다른 위치성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난민 이슈가 이렇게 다가올 줄 몰랐던 것처럼, 등장했을 때 어떻게 만날지 준비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회 달을 때 함께 하는 경험을 쌓는 것부터. 연구자들과 더 만나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고. 뽀족한 수는 없지만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경험이 교류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세팅이 지금 다시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가자 : 우리가 계속 탈북민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닥친 어려움은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를 만나줄까.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화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로부터 더 이상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매우 공감합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구나’ 계속 깨닫고 있었거든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미지는 굉장히 소수예요. 3만 탈북민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대표할 수 없죠. 얼굴을 모르는 건 우리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만나가면서 생각이 쌓일 수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참가자 :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건 이 자리에 제가 참여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 왔어요.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나도 고민했지만 어디에서 얘기할 수 없었던 것. 엠네스티에서 이 문제 관심 있다고 할 때 의심했어요.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북한 문제에 관심 없다고 서럽게 생각했거든요. 보수단체들은 우리를 이용해서 혐의감도 컸습니다. 이런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 가장 큰 문제는 탈북민에 대한 진입장벽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을 다른 소수자와 비교하면서도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가야 합니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 많아요. 나는 대학원 다니는데, ‘잘하면 탈북민인데 잘하네,’ ‘못하면 탈북민인데 못해’. 그리고 어디 발표하면 ‘재는 탈북잔데 탈북민이라고 왜 애길 안하느냐’고 합니다.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도마 위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되거나 재료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탈북민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고 들어주는 데도 없죠. 내가 역량을 키워서 ‘내가 목소리 내야겠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 때문이죠. 분단 때문에 분열이 초래됐더라도 분열을 해소하는 길만이 분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 안에서 서로를 배척하는데 어떻게 북한까지 합치겠어요. 북한에 있을 때 정부의 감시는 어려웠지만 관계는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는 풍요롭지만 관계는 늘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탈북민이 왜 탈북민인지 말하기 어려운지부터 살피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체들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도 인권운동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참가자 : 제주에 살면서 평화의 원리 말합니다. 난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얘기할 때, 여성의 안전 문제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권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연대나 통합, 연결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난민은 '우리의' 관계에 들어 와있지 않죠. 분단의 문제와 탈북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을 권리의 문제로 인식되게 하는 것이 인권운동의 노력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화순 : 분단체제나 탈북민, 난민, 이런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우리가 괴물이 되었죠. 우리 스스로 성찰하며 연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가자 : 관심이 많은 주제였는데 속기를 맡아서 아쉬워요. 오늘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저희가 분단 체제를 어떻게 평화 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분단 체제라는 게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을 바꿔나가기 위한 인권운동의 그림? 방향? 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체제라는 건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권력을 억압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통일과 개발이 경제적인 착취구조를 불러오는 방향으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이러한 얘기가 오늘은 좀 덜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얘기 더 해야겠다는 생각 하나가 들구요. 또 하나는 오늘 탈북민 얘기를 한 건 분단 체제의 문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몸으로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면에서 앞서서 토론한 평등, 안전 등의 주제와 맞닿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제인 연대에서도 그렇겠지만, 요즘 교차성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혐오에 맞선 연대의 정치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엠네스티 질문에서, 북한인권 운동의 탈정치적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바라는 북한인권 운동이 탈정치적 방향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다. 인권도 그렇고 사실 탈정치가 가능한가 싶은데,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방향을 담은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강곤 : 80년대 학생운동의 세례를 받아 세계를 인식하게 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발제문 쓰고 공부하면서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운동이 반제국주의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처럼 돌아가자는 것은 아닌데. 난민 문제도, 제국주의 문제 신자유주의 문제가 엮여 있는데 예전에는 거대담론으로 치부되었던 것들을 지금 방식으로 다시 얘기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조난자들>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어떤 목소리로 환원되지 않는 온전한 목소리 같았어요. 심화발제 섭외했다가 강의 일정 때문에 안됐어요. 오늘 엠네스티에서 같이 오신다는 말씀 듣고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보수 어용 탈북민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티오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었어요. 비록 얼굴을 상상할 수 없어도 얼굴 없는 이들이 우리 곁에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들의 빈 자리를 남겨놓는 것이 지금 인권운동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보람 : 토론회를 계속 할수록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주제, <피해자의 자리와 연대의 거리>입니다. 많이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마치겠습니다.

평화는 그냥 다가오지 않는다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DMZ 지역의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는 세계정세에 불안하던 시간도 지나고, 이제 각국 정상회담도 익숙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된 요즘에는 '정말 세상이 바뀌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평화로운 한반도'가 찾아오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각국 정상들이 모여 한반도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서 곧장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질까요? 거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작된 분단은 이후 70년 동안 한반도 전체에 스며들어왔습니다. 70년간 쌓인 불신과 갈등이 말 몇 마디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네 번째 토론을 통해, 가슴을 설레게 하는 평화의 바람에 앞서 우리에게 다가온 질문들을 살펴봤습니다.

분단 체제와 분단 폭력

강곤 활동가는 기초발제를 통해 그동안 한국 (인권)운동이 분단과 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종의 관습 헌법인 '이면헌법'으로써 남한 사회를 지배해온 국가보안법, 끊임없이 "너는 누구 편이냐"는 질문을 서로에게 던지게 만드는 분단 체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단 폭력 등. 남한 국가수립 당시의 제주 4.3사건부터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북 경험사업가까지, 한국 사회에서 분단이 미쳐온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을 떠올렸습니다.

이어지는 심화발제에서 김성경 님은 분단 체제가 만들어진 배제와 혐오의 분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노년 보수 집단의 분단적 인식 체계를 살펴보면, 이들이 분단 체제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분단 체제를 유지/확산시키는 가해자로서의 정치적 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분단 체제의 작동이 단순히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문제와 결합하여 복잡해지는 양상을 확인하며, 이를 넘어서기 위한 인정(recognition)과 '윤리적 주체의 정치화'에 대한 제안을 나눴습니다.

탈북인 - 난파된 조난자들

분단 체제로 인한 현존하는 아픔으로, 기초발제의 강곤 활동가와 심화발제의 김화순 님은 탈북인을 이야기했습니다. 분단이라는 재앙을 맞아 난파한 '조난자들'¹⁰⁰⁾, 현재 한국 사회에 3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떠오르지는 않는 존재들에 대한 많은 고민과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서로 편을 가르는 분단 체제의 낡은 인식틀을 벗어나 탈북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시도가 중요하다고 확

100) 주승현, <조난자들>, 2018.

인했으나, 바로 그 낡고 오래된 분단 체제의 습속을 벗어던지기 힘들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부터 탈북인은 국가의 검증과 감시를 받습니다. 이후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국가는 탈북인에게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이 과정에서 체제와 국가 권력은 탈북인을 시민사회와 분리시켜 왔습니다. 서로 만나고 알아갈 기회는 사라져 버렸고, 여전히 동정의 대상이나 인생승리의 아이콘으로만 탈북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탈북인은 남한에서 권리를 요구하는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70년 전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고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헌법 재판관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남한 정부는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을 말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주 강정마을에서 국제 관함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자기 분열적 인식체계 속에서 평화는 그냥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을 살피는 작업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뚜렷한 방향이나 목표를 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가 같은 질문과 고민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흘러가는 세계정세 속에서 각국 정상들이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말하고 있는 이 때, 한반도의 모두가 ‘평화롭게 살 권리’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더욱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분단 체제를 해소하고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분단 현실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하기

박석진 역사학 박사 과정

“一切追问都必须从自我追问开始。”- 汪晖

“모든 질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왕휘

인권단체들이 ‘분단과 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고 들었을 때 무엇보다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보편적 인권’의 대명사적인 세계인권선언의 7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전세계에서 ‘유일하다’는 분단 국가의 문제를 주제로 인권 활동가들이 토론을 한다니, 다소 의외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최근의 급변하는 남북미(南北美) 정세를 떠올렸을 때에는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회에 참가하면서 발표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예리한 통찰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문제의식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의 차이가 확인되기도 했고, 또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불쑥불쑥 떠오르곤 했지만, 큰 틀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언제나 반가운 일이다. 어차피 분단과 북조선, 통일 등에 대한 토론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는 생각의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모두가 견고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세계관의 덩어리가 부딪히는 느낌이랄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토론을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겠는 순간순간들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이성적인 논리보다는 이성과 감성이 뒤섞인 어떠한 신념 체계가 부딪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서 할 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예를 들어, ‘북한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어떤 경험론적 결론(신념 체계)과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믿어보자’는 낙관론(또 다른 모종의 신념 체계) 혹은 ‘북의 자주적 사회주의 역사’ 운운하는 역사관 등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은 종편과 케이블 TV 등 텔레비전 채널만큼이나 다양한 듯하지만 서로 쿨해지기는 의외로 힘들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생각보다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 어쩌면 분단의 역사만큼이나 긴 시간의 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기존의 모든 가치관의 간섭 없이 분단과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출발선에서부터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분단이나 북조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약간의 긴장을 느끼며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어떤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어디까지 이야기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긴장하며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분단이나 북조선에 대한 토론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닌데,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확실히 다른 조건을 만들어낸다. ‘북조선’이라고 입력하는 이 순간에도 국가보안법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북조선에 대한 비판은 제한 없이 자유롭지만 반대로 그에 대한 옹호는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토론 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전제는 무엇일까.(이와 비슷한 복잡한 문제가 강권 활동가의 발제 중에도 ‘탈북 여종업원’을 둘러싼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토론 중에는 당사자(피해자)의등장이 운동의 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당사자의 등장과 조직을 강조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나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백퍼센트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운동도 ‘당사자’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70

년 넘게 이어진 분단 상황 하에서 ‘나’는 분단과 통일 문제의 당사자일까 아닐까.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북한인권’이 아니라 ‘한반도인권’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 스스로 당사자로서 남북의 인권 현실에 주체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80~90년대 당사자로서 남한의 대중들이 일궈낸 통일운동의 성과가 민간에서는 쇠퇴하고 있지만 제도 정치권을 통해 일정 정도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운동 활동가들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것을 분단과 평화 문제에서 스스로의 당사자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지. 사실 토론회 내내 인권운동 활동가들이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얼마나 자기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기획한 다섯 번의 토론회 중에서 한 차례의 토론 주제로 기획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고민의 무게가 실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인권운동의 이후 방향에 대해서도 주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로 여기고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이번 토론회가 최근 남북미 관계의 극적인 변화로 인한 흥미성 일회적 토론회에 그치지 않을지 적잖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나는 과거 꽤 오랫동안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북(한)인권 대응 활동’ 담당자로 활동했었다. 당시 ‘북(한)인권 대응 활동’은 보수적이고 반복적인 소위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반대/대응 활동뿐만 아니라 분단 문제 및 사회주의 인권론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활동할 ‘동지’를 찾고자 인권단체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새로운 동지를 찾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를 통해 아무래도 남한의 인권단체들은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해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 운동의 과제로 그다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다. 하지만 이도 벌써 10년도 더 전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토론회 기획에서부터 토론을 진행하면서 인권운동 활동가들이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지 사뭇 궁금하다.

이번 토론회 동안 나는 무엇보다도 내가 과거 인권운동사랑방을 통해 참가했던 ‘북(한)인권 대응 활동’ 혹은 ‘한반도인권운동’이 너무나도 부족했음을 많이 느꼈다. 부족하나마 과거 축적했던 고민과 활동의 성과가 인권운동의 역사에 잘 녹아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보여 아쉬움이 컸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나를 포함해 과거 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새롭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과거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면서 과거의 성과 위에서,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지점에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제적 인권, 인권의 문제

피해자의 자리와 연대의 거리

9월 13일 (목)

세계인권선언70년
인권운동더하기 연속토론회

피해자의 자리와 연대의 거리

타리/나영정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1. 피해자라는 자각

"피해자로만 산다는 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해자로 산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원히 형제복지원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의 고통과 상처가 박물관에 걸려 있는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물건처럼 처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한종선)

인권침해와 차별의 피해자를 만나고, 지원하고, 그 안에서 권력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고, 법제도적 공백이나 문제를 발견하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그 과정을 최대한 피해자와 함께 하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인권옹호자'가 되어 증언하고 또다른 타자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겪어나가는 과정을 인권운동이라고 해보자. 인권운동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 성소수자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이라고 이름붙은 대부분의 운동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나간다. 운동안에서 피해자의 자리는 어떠해왔나? 나만해도 "아 당사자가 나타난다면 뭔가 시작할 수 있을텐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피해당사자의 출현은 문제의 출현으로 동일시되기도 하고, 피해당사자의 서사는 문제의 본질이나 강도에 규정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하다. 때문에 이 피해자성, 당사자성은 수행성이며, 때로 이 수행성에 윤리적 문제가 개입하기도 한다. (여론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개입되거나 과장되는 것, 또는 이 서사의 힘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일상이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 등)

피해자의 자리 이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은 시작된다. 일단은 이것이 나 혼자 겪은 일인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나선다. 그것을 통해서 피해의 발생이 나로부터 기인하는지, 내 잘못인지 아니면 다른 여지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타인에게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역사와 이론을 동원하는데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병리화와 범죄화라는 큰 벽에 부딪히게 된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병리적 속성에 그 피해 경험이 촉발된다는 권위있는 설명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은 권리라기보다 치료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그 피해가 아직 인정받을 만한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 경험 자체가 범죄적인 것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병리화, 범죄화 모두 어떤 사건을 당사자의 잘못이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권력이 작용할 때 이 피해는 아직 어떤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동력이나 자원이 되기 어려워진다. 폭력이나 차별이 정상성을 가지게 될수록 이러한 병리화와 범죄화 전략은 유효하다. 간성,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 성판매 여성, 유색인 남성, 발달장애 남성 등 성적 낙인이 결합될 때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

운동의 출발 이래 피해자와의 관계맺기에 대한 고민을 멈춘 적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고민이 점점 깊어진다. 광우병 촛불집회에서부터 드러났던 ‘대중’과 운동권, 활동가 사이의 간극은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까지 이어지고 있고 SNS를 통한 홍보와 선동이 일상화되면서 활동가의 역할이 상대화되면서도 가짜뉴스, 혐오선동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또한 최근 가장 주목할만한 영역은 여성대중들의 움직임이다. 여성단체를 포함한 ‘운동권’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익명에 기반한 온라인 집단을 형성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대중이 참여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주목할 것은 그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인권의 가치로 합의되어 왔던 반차별, 반혐오라는 원칙이 무력화된다. 이것은 일베로 대표되는 여혐문화에 대한 미러링 전략으로 추동되었지만 이러한 원칙의 무력화는 무차별적인 속성을 가진다. 남성(으로 지정받은, 페니스를 가지고 있는 몸)이라면 누구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원칙 속에서 장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인종 등의 다른 차별 요소들은 고려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혐오의 매개가 될 뿐이다. 오히려 이러한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한남’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소수자성이 ‘벼슬’로 작동한다면 더 빈번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여성으로서 피해받았던 경험을 기반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주된 방법으로서 공격적 혐오표현이라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는 수많은 차이를 가진 대중들이 참여하지만 ‘여성대중’들의 분노와 시의성, 국가의 무능력과 언론의 특정한 부채질 역할 등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유사 이래 최대의 여성(만) 집회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불편한 용기’ 시위에서 채택한 피해자성은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소수자 차별 논리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러한 ‘전략’이 얼마나 근본적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듯하다.

2. 피해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피해자의 자리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단번의 극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 자리에 정박된 피해자는 그 다음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 이동을 위해서는 피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정받고, 피해자를 둘러싼 관계가 변해야 하며, 진짜 피해자/가짜 피해자를 나누는 규범적 질서가 흔들려야 한다. 누군가의 어떤 피해가 인정되면, 또다른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제로섬 게임과 같은 시각으로 인해서 집단과 개인의 차원에서 ‘순수한 피해자’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강요가 벌어지고, 피해를 개인화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기각하는 병리화와 범죄화의 논리까지 동원되어 피해자를 향한 혐오표현이 득세하기도 한다. 불안과 분노가 지배적인 정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의 표출은 상대적인 약자에게 향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 가치를 조정하고 협상을 통해서 ‘상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있다고 자각할 때 타인의 존재와 가치는 절멸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떤 분노는 대중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인권규범을 상대화시키면서 대중의 생존을 위해서 정치가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현상을 포퓰리즘 혹은 국가주권을 강화하는 권리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피해와 권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주권에 대한 감각과 연결된다. 국민의 주권, 소비자 주권으로 표현되는 감각들은 인권과 권리의 상호존성과 불가분성을 쉽게 해체한다. 또한 이러한 주권에 대한 감각은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주권의 정당성을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주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한 주장, ‘권리화’의 요구들은 인권의 방법론과 불화한다. 예컨대 “난민이 위험하니 몰아내라”는 요구는 난민과 국민을 분리하고, 국민 보호의 책임을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 요구는 국가권력을 강화할 뿐이다.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요구 또한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지원을 국가에게 요구하면서 경찰 책임자의 성비를 여남 9:1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여성은 성평등 실현이 주체가 아니라 공권력의 대리자이다.

불법촬영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운영진(수만명의 참여자들과는 분명 분리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의 상당

수는 위마드라는 공간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있고,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여성차별금지법 찬성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난민반대집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는 주요한 주장이다. 이 주장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소수자라는 이유로 남성들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차별금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위마드가 트랜스젠더, 게이남성을 여성에게 위협하고 문란하고 소수자의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라고 비난해온 것과 궤를 같이하며 보수개신교의 혐오선동논리와 공명한다.¹⁰¹⁾ 피해의 감각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 수만명이 모인 집회의 공간 안에서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정동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을 만나서 요구안을 전달하고 조율하고 있는 이들의 역할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여성폭력반대운동을 해왔던 어떤 활동가들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황금기라고 하지만(대통령은 여러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 황금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결국 이 질문은 운동의 역할로 향한다.

한편 ‘여성우선’, ‘여성만 챙긴다’라는 주장은 차별을 다루어온 법제와 함께 고민해볼 여지가 많이 있다. 김벌리 크렌쇼는 미국의 반차별법제가 가진 한계를 이렇게 지적한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었을 결정이 인종이나 성별 요소로 인해 왜곡되는 것을 문제로 보는 반차별 법의 관점의 한계가 있다. 수없이 많은 요소의 교차적 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본질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향적 의무를 기초로 삼지 않는다. 대신,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인종이나 성별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만을 한정적으로 규제한다는 입장이 반차별 법이 담고 있는 지배적 메시지이다. 이렇게 협소한 목표는 인종이나 성별의 효과를 규명할 때 오직 ‘~만 아니었다면’이라는 분석만 사용하는 하향적 전략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¹⁰²⁾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과 반차별 법제에서 전제하는 것이 ‘타고난 차이’, ‘그것만 아니라면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었을 결정’이라는 전제로 인해서 내포된 난점들이 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주의와 정상성이 동원되고 다른 집단이 가지고 있다는 차이를 배격하는 과정에서 병리화와 범죄화의 논리가 다시금 동원된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배격하고 여성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이들의 인식론은 ‘내가 당하는 차별이 여성만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에 가깝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현실을 왜곡한다. 이미 모든 여성은 성별이라는 특징뿐만 아니라 가족상황, 경제적 배경, 학력, 외모, 나이 등 수많은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모두 같은 여성”이라는 언설은 환상에 가깝다. 이러한 특정한 피해자상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차별이 가지고 있는 위계화의 매커니즘에 대해서 ‘모두’ ‘함께’ 대항하지 않는다면 위계의 순서만 재배치될뿐이다.

3. 이용당하기를 거부하는 연대의 방법론

예멘에서 출발해서 제주에 도착한 500여명의 난민들이 대부분 성인남성이었다는 사실은 전쟁과 재난으로 인한 ‘순수한 피해자’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고, 무슬림사회가 가부장적이며 일부다처제를 신봉하고, 극심한 강간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가짜/팩트’가 함께 확산되었다.¹⁰³⁾ 인종적 편견에 기반해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피해자의 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국내에서 장애남성이, 트랜스젠더가, HIV 감염인이, 성판매여성이 경험해온 바였다. 이러한 낙인은 이 집단에 속한 이들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모두를 향한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 낙인은 모두의 수행 속에서 강화되거나 약화된다. ‘나는 장애인이지만 발달장애인이 아니다’, ‘나는 성폭력피해자이지만 꽃땀이 아니다’, ‘나는 HIV 감염인이지만 문란하지 않다’는 자기 방어를 하도록 만들고, 혹은 어떤 여성이 자신의 옷차림을 검열하거나 어떤 게이남성이 HIV 감염인처럼 보이지 않도록 신경쓰게 만든다. 이러한 낙인에 도전하기 위해서 ‘나는 나쁜 장애인이다’, ‘나는 나쁜 페미니스트

101) 자세한 논의는 나영, “지금 한국에서, TERF와 보수 개신교계의 혐오선동은 어떻게 조우하고 있다”, [문화과학] 93호 참조.

102) 웬진 인-무브 페미니즘 번역모임 <http://en-movement.net/173?category=718342>

103) 이러한 ‘가짜/팩트’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하던 보수 개신교계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퍼트렸고 이혜훈 전 국회의원 같은 인물들이 주도

이다'라는 저항적 전략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피해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피해자의 정체성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위치를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소수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들의 가지고 있는 사회변화/혁명에 대한 전망을 계속 당사자의 문제로 협소화시키는 경향이 운동사회, 학계에도 있지 않은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이용당하지 않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본다. '가짜/팩트'를 바로잡기 위해 그간 한국에서 분투해왔던 난민인권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왜 그들이 다른 가족구성원들을 남기고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성인남성이 내전 상황에서 남아있을 때 어떻게 징집, 고문, 사망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누가 더 어려운가를 경쟁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떠난 사람도, 남겨진 사람도 누구의 삶도 쉽지 않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남기와 떠나기가 내 존재와 신체를 보호하려는 노력일뿐 아니라 내 존재와 신체가 전쟁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이다.¹⁰⁴⁾ 여기에는 이미 전쟁에 이용당할만한 신체와 탈락하는 신체가 나뉘어져있다.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의 구분은 전쟁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어딘가에서 떠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이유로 당한 처우가 무엇인지는 전쟁 상황이 아니라도 가능할 수 있다.¹⁰⁵⁾ 우리가 각각이 처한 자리를 누락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떤 피해가 더 중요한지를 경쟁함으로써 이 피해를 만들어내는 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체화의 양식이 요청된다.¹⁰⁶⁾

"교차성 이론은 인종,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등이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억압을 구성하는 여러 체계라고 보는 분석틀"이다. 이러한 인식은 불가피하게 연대의 구축을 지향한다. 하지만 좀 더 주체화와 연결해서 교차성을 고민해볼 때, 억압이 얽혀있기 때문에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내가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닌 것이 되기 위한 과정, 질서 속에서 구성된 정체성이 해체되는 과정, 우리가 믿었던 권리화의 양식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추동하는 것이 연대성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억압의 교차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나의 요구와 주장이 누군가의 억압에 동원되지 않기와 연결될 때 운동이 될 수 있다.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난민을 몰아낼 때 그것은 전쟁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을 두고 먼저 탈출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한 비장애인성인남성난민보다 페미니즘에 멀다. 나의 생존 전략이 특정한 낙인을 강화한다면 기꺼이 다른, 더 나은 전략을 찾아나서는 수고와 노력이 운동일 수 있다. 피해자로 머물러있기를 거부하는 한중선씨가 다른 사람이 되려면,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이 되어야한다.

했던 것이기도 하다.

104) "저는 베트남 전쟁 참전자입니다. 징집되어 베트남에 갔죠. 감옥에 갇히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게 베트남에 간 가장 큰 이유예요. 군대 생활이 어렵진 않았고, 체력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 편찮았어요. 그런데 베트남에 가서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죠. 우리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한다는 걸 깨달았어요."(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지음, [병역거부: 변화를 위한 안내서], 어지우:최정민 옮김, 전쟁없는세상 엮음, 경계, 2018) 전쟁과 재난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위계와 구분을 폭로하고 누구도 여기에 동원되거나 이용당하지 않기 위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난민만 받자"라는 주장이 대체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105)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모두가 그 지역을 떠났을 때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장애인과 노인이었다. 피난처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피난처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된다는 점을 알아챈 장애인들은 피난처와 자신이 살고있는 재난 지역 중에서 더 나은 곳을 고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

106) 자끄 랑시에르는 치안과 정치, 정체성과 주체성을 구분하였다. 우리가 각각의 정체성에 따라 권리를 배분하는 틀을 고쳐서 질서가 잘 작동하는데 그런다면 치안일 뿐이라고 하면서 그 틀에 배제되어 있는 사람을 인식하고, 기존의 틀 자체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묵과 목소리가 없었던 사람이 참여할 때 그것을 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구분되어 있던 정체성 자체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 또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주체화과정이라고 부른다.

여성시위, 피해와 권리의 정치학, 그리고 페미니스트 행위성

김보명 | 여성학연구자

“If I recognize you as a being entitled to rights only because you are like me, then I deny your fundamental individuality that makes you different. If I refuse to recognize you as a being entitled to rights because you are so other than me, then I deny our common humanity.”¹⁰⁷⁾

- Sheila Benhabib, 2013, p.40

거리로 나온 여성들

지난 8월 4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불편한 용기>의 4차 집회를 곁에서 잠깐 지켜보았습니다. 냉장고 바지와 마스크 및 썬캡에서 보이는 탈코르셋의 정치학, 지역별로 줄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입장하는 모습에서 보이는 팬덤 문화의 영향, ‘생물학적 여성’만의 입장을 허락하기 스태프들의 활동에서 보이는 위마드의 흔적, 불법촬영으로 인해 세상을 등진 여성들을 추모하는 묵념에서 보이는 민중의례의 문법,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를 개사한 노래에서 묻어나는 촛불집회의 기억, 구호와 삭발행사, 그리고 뜨거운 더위에 불구하고 대열을 지키는 참여자들의 태도에서 묻어나는 비장함과 절박함, 그리고 집회가 끝난 후 이어진 트위터 및 포탈 총공세가 보여주는 디지털 세대의 사회운동 방식 등, 지난 3년간 재부상한 페미니스트 정치학에 내포된 다양한 요소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 집회의 어떤 모습은 지지하고 어떤 모습은 비판하는 태도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현재의 한국사회를 살아내는 20대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적 차별과 억압이 얼마나 촘촘하고 복잡하면서 동시에 너무도 뻘뻘스럽고 노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생각할 때 광화문을 메운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를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하게 됩니다. 불법촬영과 그에 연계된 디지털 포르노그래피 산업,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무심하거나 혹은 무능력한 대응은 그 공포와 분노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에 저항하는 실천으로서의 혜화역 시위, 그리고 그에 앞서 일어난 강남역 시위와 메갈리아 등의 사건은 분명 넓은 의미에서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새롭게 부상한 페미니스트 정치학이 성 소수자와 장애인, 그리고 이제는 난민을 향한 적대와 배제의 정치학을 포함 및 포괄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음을 봅니다. 새로운 페미니스트 정치학이 보여준 일견 고립되고 단선적인 저항의 정치학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들은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기에 이 자리에서 길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여성들의 갖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취약성(vulnerability)의 감각, 즉 실재적, 잠

¹⁰⁷⁾ Sheila Benhabib, “Reason-Giving and right-Bearing”, Constellation, 20.1 (2013), pp.38-50.

재적 '피해자'로서의 위치, 그리고 그에 대한 정치적 자각이 다른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순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시 지난 8월 4일의 광화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생물학적 여성만 입장 가능'이라는 원칙이 다시 한 번 선언되고 또 집행되었습니다. 광화문에 세워진 스크린에는 "생물학적 여성만 입장 가능"이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떴고 줄지어 입장하는 참여자들을 인솔하는 스태프들은 이들의 성별을 (아마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역할 또한 담당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화문 집회의 기획자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생물학적 여성만' 허용하는 입장이 (생물학적 동질성 자체를 정치적 토대로 보는) 원칙이기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여성들을 모으기 위한) 실용적인 측면의 선택임을 알고 또 인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들은 남성 카메라 기자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용인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부여한 프레스 카드를 부착한 남성 카메라 기자들은 비록 페니스와 카메라라는 가장 문제적인 부위 혹은 기표를 버리지 않은 채 시위공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성(sex, gender, sexuality)이 사회문화적 실천임을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실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날의 광화문 거리에 출현한 '여성' 공동체로서의 시위집단이 결국은 임시적이고 고립된 공간이자, 주변의 수많은 이질적이고 위험한 집단들에 의해 둘러싸인 섬과 같은 공간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의 경계는 대부분 남성으로 보였던 경찰들이 줄지어 섬으로써 만들어졌으며, 멀지 않은 곳에서는 <불편한 용기>의 집회에 앞서 광화문 거리를 차지하였던 <대한 애국당>의 (끝나지 않는) 마무리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고, 거리에는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을 비롯한 몇몇의 관찰자들이 나와 있었고, 조금 더 멀리는 세월호 천막이 자리하고 있었고, 더 멀리에서는 현 정권의 대북정권을 비판하는 보수집단의 플래카드, 그리고 또 그에 맞서 리플렛을 나눠주던 통일선봉대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발견이지만 '여성'과 '페미니즘'의 공간은 외부와의 만남 속에서 그 경계와 차이가 의미화됩니다.

피해와 권리, 그리고 소수자 정치학

새롭게 부상한 페미니스트 정치학과 그 주체들이 다른 소수자 집단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한국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젠더 (기반) 폭력과 그것이 초래하는 여성들의 취약하고 불안한 삶의 경험,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재부상의 경로에는 맥심 코리아 커버 사건이나 강남역 사건, 소라넷 폐지운동,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불법촬영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대중적 토대는 '여성혐오'로 명명되는 다양한 층위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이슈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저항은 이러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강력한 불안과 분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분노는 게이 남성, 트랜스젠더 여성, 장애인 남성, 그리고 난민 남성은 모두 여성의 안전과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실재적 가해자로 정의하고 배제하는 정동적 기반과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여성으로서 내가 경험하는 피해가 해결되기 전에는, 같은 피해의 경험을 공유하는 (생물학적) '여성' 외에는 누구도 믿을 수도 없고 연대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덧붙이자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새로운 페미니스트 저항이 보여주는 일견 강력하고 비타협적인 전투성은 이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취약성의 반증이자 이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강력한 열망의 반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피해'의 경험이 아닌 정치적 정당성, 그리고 '권리'의 언어를 넘어서는 정치적 저항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타리/나영정님이 발제에서 잘 짚어주신 바와 같이 피해에 대한 인식은 저항의 시작일 뿐 그 종착점은 아니며, 소수자 운동의 지향은 이성 사회에 대한 소수자의 통합이 아니라 사회와 주체 모두의 급진적 재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웬디 브라운이 지적하듯

규범적 주체의 위치에 대한 동일시와 선망은 소수자 운동을 추동하는 강력한 정동적 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의 경험과 그것이 초래하는 분노는 소수자 정체성의 강력한 정동적 원천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소수자 정치학을 반동적(reactionary) 운동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라운이 지적하듯 이러한 분노의 정동경제학은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정치학이 제시하는 규범적 위치로서의 주권적 주체(sovvereign subject)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역설적으로 재생산하게 됩니다. 타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하고 자기 완결적인(self-sufficient)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환상 혹은 욕망은 (주디스 버틀러 또한 비판적으로 지적하듯) 신자유주의와 안보의 시대에 우리가 목격하는 인종주의 및 이슬람포비아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성애 중산층 삶에 대한 이민자 집단의 강력한 욕망을 추동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국경을 지키기 위해 나선 자경단의 백인 남성들은 스스로를 특권자나 권력자로 인식하기보다는 난민과 이주노동자에 의해 위협받는 ‘위태로운’ 존재로 인식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왜곡된) 인식에는 자신의 삶이 당연히 안전하고 평온해야 한다는 시민권자의 특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접근하자면, 이는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규범적 주체, 혹은 권리를 가진 자(rights bearing subject)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와 손상을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피해자이기 때문에 (혹은 피해자가 되어야만) 권리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권리를 갖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상을 ‘피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이유로 예맨 난민 남성들의 난민 인정을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먼저다’라고 외칠 수 있는, 혹은 ‘여성이 먼저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주체들은 이미 스스로를 사람, 인간, 시민, 소비자 등으로 위치 짓고 그에 따른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사법정의를 외치는 지금의 모습은 피해의 인식 뿐 아니라 그 피해를 부당한 문제로 구성해주는 권리의 존재와 작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이 ‘권리’의 정치학에서 다른 소수자에 대한 배려나 연대는 나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고려되며, 나에게 위협이 되는 소수자들에 대한 배제와 적대는 권력이 아닌 정당한 자기 보호와 ‘권리’의 행사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도 온전히 스스로의 노력이나 투쟁의 결과로 ‘인권’을 누리지 않습니다. 인권은 (근대 국민국가 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이미 주어진 무엇으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자 역사적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인권은 우리가 인권이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의 결과가 아닌 모두에게 ‘자연적으로’ 부과된) 그러한 것이라고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재합의하고 또 실천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 그 의미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인권’이 이야기되고 요구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렌트가 말했듯이 ‘권리를 가질 권리 (the right to have rights)’를 행사하는 주체들이며 역사적 합의로서의 인권과 현재적 실천으로서의 인권이 서로 맞물리고 서로를 소환하는 과정에서만 ‘인권’이 그 구체적인 의미와 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렌트가 강조하듯 이 권리는 우리가 인간됨(humanity)의 공동체에 속하고 특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만 실현가능한 무엇입니다.

페미니스트 행위성과 지향

강남역 시위에서, 혜화역/광화문 시위에서, 그리고 (안희정 사건 1심 판결 이후의) 미투 집회에서 거리에 선 여성들은 ‘여자라서 죽었다’, ‘살려주세요’, ‘유췌무죄 무췌유죄’, ‘여혐민국 땡처리 세일 여성인권 단돈 100원’, ‘여자도 사람이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 살겠다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페미니스트 의식에 불구하고 여전히 척박한 여성들의 삶의 조건, 둘 사이의 간극이 표출되는 구호들로 보입니다. 또한 이 구호들은 지

금의 페미니스트 실천이 보여주는 전투적 저항성을 만들어내는 집합적 정서로서의 분노와 불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분노와 불안은 여성의 안전과 이해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삼는 정치학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성은 물론 성 소수자나 장애인, 난민이 배제된 안전하고 동질적인 여성 공동체에서 (임시적이거나) 누릴 수 있는 여성의 자유로운 행위성에 대한 열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은 소수자들이 갖는 저항적 행위성에 대한 대안적 사유와 실천이라 생각됩니다. 페미니즘이 여성이 해방되고 자유로운 세계를 지향한다고 할 때, 그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세계에서 여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상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세계에서 집합적이고 지배적인 정체성인 범주로서의 '여성'은 여전히 기능할까요? 혹은 이 세계는 급진 페미니스트 솔라미스 파이어스톤이 상상했듯이 '(여)성 없는 사회(sexless society)'가 될까요? 그리고 파이어스톤이 그려낸 유토피아/디스토피아적 지향이 만들어내는 현재적 페미니스트 실천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권리가 개인적 성취의 산물이 아닌 것처럼 행위성(agency) 또한 개인의 주권적 실천이 아닌 사회적 분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행위성은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가능해지고 또 제약되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나의 행위성은 나의 의지나 욕망에서만 생성된다기보다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출현할 수 있습니다. 글의 시작에서 이야기하였듯 '생물학적 여성만'으로 구성된 해방된 공간을 꿈꾸는 이들의 실천 또한 이미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서울의 한 복판에서 수많은 이질성과 잠재적 위협과의 만남과 충돌 속에서 그 가시성과 감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근대국가가 자신에게 약속한 권리에 대해 방해받지 않은 접근성을 갖는 주권적 주체(sovereign subject)의 위치는 결국 공백이자 환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범적 주체의 위치에 대한 환상적 동일시도 아닌, 그렇다고 냉소와 조롱만도 아닌, 그에 대한 담담하고 비판적인 응시와 분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성이 인간, 혹은 시민으로 대우받는 사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인간' 혹은 '시민'이 어떤 모습인지, 페미니스트 정치학이 그 '인간' 혹은 '시민'의 모습에 동의하는지를 다시 한 번 물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 되기를 넘어, 얼굴을 가진 피해자로 싸우기

이진희 | 장애여성공감

1. 들어가며

장애여성은 여전히 장애+여성이라는 이중적 억압으로 주로 설명되며 취약한 피해자리가 쉽게 허락되는 위치였다. 어쩌면 피해자의 자리만 허락되었다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그 자리를 조금만 이탈하여도 사회적 시선은 달라진다. 피해자에게 허락된 ‘착한, 불쌍한, 불행한, 도움이 필요한, 슬픈...’ 등의 수사는 장애여성의 삶을 박제화 한다. 박제는 살아 움직이지 않는/못한다. 하나의 표본으로 특정한 이미지를 상징하며 전시된다. 주로 소수자 집단은 이런 박제화된 이미지로 사회 속에서 전시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기 쉽다. 장애여성 운동은 오랫동안 피해자의 위치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피해를 생산하는 구조와 환경의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려고 노력해 왔다.

내가 활동하는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의 몸과 경험이 ‘장애’로만 환원되는 것을 비판하고 장애와 성별이 교차하는, 그러나 독자적인 운동을 지향하며 활동하는 단체다. 장애여성의 위치를 드러내는 교차성은 나이, 성적지향, 성별, 시설거주 경험, 계급 등 장애인 안에서도 단일하지 않은 차이들이 존재함을 일깨워준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차이는 언뜻 분명한 기준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의학적, 생물학적 기준으로 구분하고 장애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거부할 때 ‘장애인’,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과 제도에서 일정한 개념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시대에 따라 달랐고, 국가에 의해 강요된 기준인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시설수용정책, 분리교육 등 합법적 배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런 차이를 인식하는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배제와 연대 어느 길에 설 것인지는 갈라지게 된다. 또한 피해를 드러내며 피해자로 싸우는 것과 제도와 사회가 허락한 피해자의 삶을 산다는 것도 다른 문제다.

교차성과 독자성은 언뜻 반대 입장에서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자성을 존중받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정체성과 이슈는 만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애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때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해 여전히 ‘저항이 어려운 몸’을 설명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인다. 이때 장애여성의 성적권리를 법에 위탁하는 것을 거부하며 폭력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여성이 섹슈얼리티를 탐색하고 표현하는 언어를 말하고 표현하려고 애써왔다. 이것은 생물학적 당사주의로 집단의 고유성만 특징만을 강조하려는 것과는 다르다. 권리의 언어에 소수자의 경험이 새겨지는 과정으로 의미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성은 권리로서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싸우지만, 또 다른 사회적 규범화와 제도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이다.

2. “내가 증거자예요. 다 봤어요.” 정중한 피해자를 거부한다.

몇 달 전 식당 직원들이 자신들을 가리키며 비웃었다고 발달장애여성 회원이 상황을 들려주었다. 이야기하던 한

회원의 한마디, “내가 증거자예요. 다 봤어요.” 사전에 없지만 증거와 증인의 묘한 합성어처럼 혐오와 차별의 경험을 설명해주는 것만 같다. 자꾸 쳐다보고 웃는 사람들을 처음 마주하진 않았을 거다. 아무 뜻 없었다고 해도 쉽게 쳐다볼 수 있는 대상이 되었던 기억은 무수히 많다. 수년에 걸친 경험들은 왜 직원들이 나를 쳐다보는지 감각하게 해준다. 혐오와 차별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은 증거(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드는 근거)이자 증인(사건을 목격하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넘어 증거자로 주체가 된 순간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피해경험을 강조하거나 더 많이 드러내야하는 상황을 종종 마주한다. 장애등급제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등급별로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등급이 높을수록 많은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이다. 장애인은 사회적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한 무능을 증명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장애여성학자 수전웬델은 “전형적인 시민에게 주어지는 것과 비교할 때 종류나 다른 양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의존적이라고 간주된다”고 말했다. 생산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낙인은 지속적으로 ‘복지의존’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한다. “살기 나아졌으니 국가에 그만 요구하라”고 어떤 이들은 훈계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늘 최소값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더 많은 권리의 요구는 문제로 비쳐진다.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모습이 때론 혼란을 야기하는 무질서한 행동으로 비난받기도 한다. 할당된 몫을 받으며 침묵할 때는 동정 받을 자격을 갖지만 저항하는 주체가 되는 순간 장애혐오는 얼굴을 드러낸다. 그러니 차별받는 순간에도 이상한 장애인이 되지 않기 위해 평범함과 정중함으로 이야기할만한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장애인은 혐오 앞에서도 정중한 피해자가 되라고 억압받아 왔다. 이런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맞서는 것은 개인의 과제로 남겨지고 반차별과 평등의 가치는 시혜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제는 5년간의 투쟁을 마치고, 자리를 옮긴 광화문 농성장. 그 앞에는 8개의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었다. 제도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사진이다. 장애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여 죽었다라는 서사를 넘어서 국가가 만든 사회적 죽음임을 강조하며 장애인 운동은애도를 넘어 국가를 비판하는 운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부양의무제, 활동지원 추가 시간확보 등 국가 지원체계 요구하면서 긴장을 드러내는 것은 피해자의 위치를 다른 방식으로 변화 시키려는 시도이다. 장애인 운동이 이런 긴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주의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보호주의가 강화될수록 자립생활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는 논리 보단 더 안전한 통제와 관리, 더 안전한 시설이라는 분리로 나아가기 쉽다. 장애인 운동에서의 취약성을 설명하는 말은 언제나 좋은 전략이지 않았다.

3. 등을 맞대고 자라나는 혐오와 동정

혐오를 개인적인 감정과 심리상태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은 여성혐오라는 사회적 맥락은 삭제한 채 정신장애인이인 가해자의 심리상태와 감정으로 몰아간 한 예이다. 그러나 소수자에 대한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된 적대감과 증오의 표출이라는 맥락을 읽어야 여성 전체가 느끼는 공포와 위협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혐오표현은 어떤 특성을 이유로 사람을 구분하고, 이들을 열등하고 불쾌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묘사하며,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근거로 해당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배척하고 불이익을 주고 폭력을 가하거나 억압하는 내용들로 구성된다. 혐오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사람들은 해당 집단이 원래부터 구분된 이질적인 사람들처럼 여기게 되고, 이들을 구별, 배척, 제한하는 차별을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처럼 생각하게 된다.”¹⁰⁸⁾ 혐오라는 감정은 차별적인 사회 구조에서 따리를 틀고 자라난다. 혐오하는 감정은 차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장애를 가

108) 김지혜(2017), 「모두를 위한 평등:구조적 차별과 공동체의 책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진 몸에 대한 혐오는 시설수용정책과 같은 차별로 이어졌다. 그리고 일상에서 멀어진 장애인에 대해 사회는 계속 무지해졌다. 무능, 비정상, 불쌍, 불결, 불편... 장애인에 대한 무지는 혐오의 감정을 강화시켰고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게 했다. 그러니 선의를 표하는 “희망을 가져”라는 말도 장애가 있는 몸과 삶을 부정하는 함의를 담은 혐오표현일 수 있다. 여기에 혐오의 효과를 누리는 집단과 권력이 결탁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기 싫은 기업, 복지재벌로 불리는 일부 재단과 같은 이들 말이다.

4. 권리를 박탈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할 때

성폭력개념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확장하고자 사용했던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은 권리를 가진 개인을 기준으로 구성하며 합리적인 동의와 협박의 정도를 질문 받게 만들었다. 캐롤 페이트만의 말처럼 성적계약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여성은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고, 이미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상실되었냐고 질문하는 모양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법원에서의 성폭력 유무를 판단하는 합리성은 최협의설, 항거불능 상태로 구성되는 성폭력은 ‘피해자움’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게 한다. 성과 관련된 관계맺음, 성적의사소통을 얘기하는 반성폭력운동의 의도와는 달리 성폭력의 개념 자체를 법, 제도의 문장으로만 해석하거나 단죄하려고 할 뿐 자신의 일상의 문제, 관계로까지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다. 법, 제도의 틀 안에 가둬버리고 범주화 해버리는(이임혜경, 2014) 상황이라는 것이다. 관계 안에서 권리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발휘되느냐는 복잡한 상황과 맥락이 작동하지만 법 안에서 이러한 내용이 인정받기는 쉽지 않게 되어 버린다.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결정권, 선택권의 개념은 애초부터 없는 권리이다. 그래서 발달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나보다 못하고 불쌍하고 안된 사람에 대한 끔찍한 사건으로 타자화 된다(장애여성공감, 2005). ‘장애인 특성, 피해자다움, 취약성, 폭행과 협박, 항거불능...’을 갖추면서도 일관된 진술,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들이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언어가 그대로 사법절차 안에 전해지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또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회구조를 오랫동안 설명하지만 결국 취약성, 항거불능으로 수렴되는 법체계는 좌절을 느끼게 한다.

가해자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주로 이런 판결의 이유를 단다. “발달장애인 이지만 학교에 혼자 갈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수차례 받아서 성폭력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읽고 쓸 줄 알며 보호 작업장에서 일할 정도로 학습능력이 좋고” 장애로 인한 취약한 상태였음을,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장애=항거불능 이라는 도식을 낳을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자신의 장애가 얼마나 무력한지 증명해야 한다.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피해자 지위를 갖게 된다. 결국 장애인은 피해자다움을 위해서 성적 권리를 애초부터 주장하기 어려운 사람임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다움에 장애를 대입시킴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적 주체성을 제한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은 전 생애적으로 보호자, 선생님, 복지사, 활동보조인 등 수많은 주변인들에 의해 ‘보호’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통제’하에 살아야 하는 위치에 놓여진다.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다.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은 너무 크다.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제안 받은 경험이 적고, 때문에 선택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낯설어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동료시민들과 접촉하고, 관계 맺고, 갈등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다시 시작해 보는 경험은 애초에 박탈되는 경우가 많다. 주변인들도 사회적으로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보호를 위한 통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지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구역을 찾지만, 완벽하게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사회를 거대한 시설로 만드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외쳐도 들리지 않는 미투’

로 장애인 미투운동을 설명하기도 한다. 어찌 보면 장애인 성폭력의 현실을 잘 담아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외칠 수 없는 사람이란 무능을 강조하는 화법이기도 하다. 이미 오랜 시간 미투를 외쳐왔던 수많은 장애인의 말을 듣지 않는 차별적인 현실을 돌아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수자의 몸을 통제할 때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받는 보호와 안전이란 담론을 넘어서지 않으면, 소수자는 안전하기 어렵다.

나는 미투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사회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질문들이 더 많아질 것이란 기대를 내심 했었다. 수 십년 말해온 폭행과 협박이 아닌 '위력'이라는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기대했던 것이다. 미투 운동은 폭행과 협박이 아닌 위력의 문제, 위력을 구성하는 수많은 권력으로 인한 일상과 몸의 통제를 향한다. 결국 평등하지 않아서 우리는 안전할 수 없는 거다. 보호, 통제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거나 미성숙한 사람들이라 규정하고, 그들의 말을 언제나 충분히 신뢰되는 발언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직장에서 노동권을 담보로 한, 이주여성의 체류권을 볼모로 한, 10대이기 때문에 성적인 존재가 아님을 빌미로 한, 장애인은 무능한 존재라는 낙인이라는 수많은 불평등 속에서 성폭력은 발생한다. 차이가 있는 다른 위치는 이런 식으로 차별의 현실을 되짚으면서 교차되고 연결되는 현실을 발견하게 한다.

차별을 유지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장애인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강조로만 사회적 대책은 강조될 것이다. 그러나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자의 경험으로만 정체성이 설명될 때, 피해자 경험 외에 다른 경험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피해자의 삶은 납작해지고 주어진 자리와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5. 피해자를 위한 공권력의 강화는 결국 인권을 약화 시킨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4대악(성·학교·가정폭력, 불량식품) 척결을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이 영향으로 당시 충북 진천경찰서는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집에 CCTV(폐회로텔레비전)를 설치했다. 진천경찰서는 '4대 사회악척결'의 하나로 재가 장애여성 성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고, 진천군에 거주하는 1, 2급 중증장애여성 83가구를 직접 방문해 보호자 입회하에 CCTV 설치 여부를 직접 물었다고 밝혔다.¹⁰⁹⁾ 국가정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집적하였으며, 가해자 겁주기 식의 근시안적인 보호정책 이다.

2014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에 시위에 참가했던 장애인들은 수많은 체증 카메라에 둘러싸였다. 어떤 장애인 시설과 학교에서는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한다. 그리고 정부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집과 집주변에 CCTV를 설치한다. 장애인의 몸은 '안전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보여 지는 몸이어야 하고, 자기 소리를 내며 사회를 비판할 땐 범법자 취급을 받고 체증 카메라에 담긴다. 참으로 씁쓸한 이 장면들은 전혀 다른 듯 보이지만 일상화된 감시와 통제 안에 놓인 장애인의 삶을 보여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정책들은 이렇게 모순적이다.

분명한 것은 안전할 권리는 중요하며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해야하지만 안전할 권리 확보를 위해 침해당해도 되는 기본권은 없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에서는 '방해받지 않을 권리' 뿐만 아니라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사생활을 형성하고 전개해나갈 권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으며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로서의 의미와 함께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영위하고 발전시켜나갈 적극적 권리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는 인간답기 위해 전제되어야할 소중한 조건일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감안하여 선택하는 것도 독립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또 장애여성독립생활운동에선 장애여성이 응급상황이나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평상시에 미리 고민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챙기면서 사회적으로 장애여성을 위한 안전망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109) 비마이너, 2월 20일 '장애인을 '위한' 전(全) 사회의 시설화' 참조

말한다. 자신의 공간과 안전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만의 안전한 방식을 터득하고 익히는 것,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는 것을 독립적인 삶을 획득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의미와 다르다. 사회전체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는 속에서 이러한 삶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 마무리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불화의 광장으로
- 소수자들이 등장하고 자기 소리를 낼수록 광장은 소란스러워진다. 광장이 긴장하고 불일치하며 시끄러워지는 때야말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치열한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시우 | 문화연구자

1.

피해의 문제에 접속하는 복합적인 논의를 요청하는 타리 님의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개인적인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지난겨울, 저는 정치적 신념과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폭력적인 환경에서 타인의 의지에 따라 처분되는 몸이 되고 싶지 않았고, 군사주의 체제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년 정도 지속된 병역거부 과정은 제가 갖고 있던 인간, 국민, 시민으로서의 감각이 재구성되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 정부가 남성으로 지정된 모든 이들에게 특정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복무 가능한 몸을 식별하고 분류해온 상황에서, 병역을 수행하는 일은 적법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의무이자 동시에 적법한 시민이 되는 과정으로 기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호명에 거부하는 몸에게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부과하는 일은 누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없는 몸인지를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통치 과정이었습니다.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외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방법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특정 나이 이상의 병역의무자에게는 여권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영토 밖을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역의무자가 잠재적으로 '병역기피자'로 여겨지면서 그 자체로 불온한 몸으로 독해된 것입니다. 보다 황당했던 지점은 여권 발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에 가족과 친지의 긴박한 건강상의 문제와 더불어 신혼여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에 가족질서를 체현하는 몸에게 특별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규범적 기획을 마주했던 일은 환영받지 않는 몸, 취약한 자리로 내몰리는 몸, 처분되는 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익히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병역거부 과정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된 피해의 서사로 설명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병역거부 과정은 제가 국민국가의 적법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자각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입대를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입대해야 하는 몸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을 소지한, 남성으로 지정받은, '건강한' 청년이라는 점은 병역이 부여되는 이유이자 동시에 병역을 거부하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병역거부 운동에서는 병역거부가 징병제가 실시되는 나라에서 입대를 거부하는 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체제와 불화하는 다양한 실천을 조명합니다. 다만 입대를 거부하는 공적 선언 이후에 HIV 감염인으로 등록되어 이른바 규범적인 병역거부자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 경우, 이때의 피해를 의미화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회적 언어는 적극적으로 발명해야 하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병역거부, 더 정확히는 병역거부에 따른 처벌과 제재는 분명 삶의 지속 가능성에 커다란 위해지만, 어떤 면에서 특별한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위치되는지도 모릅니다.

절차 면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체제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절차의 민주성은 기만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공무를 맡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직접적인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일련의 법적 처분의 과정을 ‘몸의 자율성을 지키고 스스로 믿고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서 각성되는 경험’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마치 택배 물품처럼 감옥 수감을 목적지로 하는 경로에 운반되는 경험은 상당히 모욕적인 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에서 정치적 신념을 밝히고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제게 주어진 형사처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병역거부자의 자리는 국가의 인구 배치에 저항하는 다른 이들, 예컨대 비혼을 선택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자리와 똑같지 않습니다. 이는 병역거부자에게 강력한 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현실과 같은 물적 조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병역거부자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도덕적 존재, 정해진 생애 경로에서 벗어난 이상한 존재로 기입하려는 힘만큼이나 존경받을 만한, 용감한, 주체적인 남성으로 의미화하는 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동원되고 이용되기를 원치 않는 이들, 전쟁을 통해 초과이익을 생산하는 자본의 유통을 정지시키려는 이들,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양심과 신념을 따르는 이들로 위치될 때, 이들이 겪는 고통이 부당하고 부정의한 것으로 인식될 때, 다시 말해서 피해의 자리에 투자하고 피해의 중대함을 증언할수록, 남성-주체로서의 위치가 공고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소 장황하게 개인적인 경험을 꺼낸 이유는 피해를 해석하고 위치시키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피해는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투명한 경험이 아니기에 어떤 경험이나 상황을 피해로 서술한다고 때, 어떻게 피해를 맥락화할 것인지, 누가 피해를 식별하는 권위를 획득하는지,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등은 정치적 논쟁과 투쟁을 수반하고는 합니다. 또한 피해를 구성하는 힘이 하나가 아니기에, 피해에 대한 논의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병역거부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양심에 따른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때로는 병역거부자들이 적법한 남성 위치를 거부하는 정치적 실천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더라도, 현재의 지형에서 병역거부 실천은 국가에 정면으로 맞서는 저항적인 남성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근대 사회의 성별 규범과 맞물리고는 합니다.

병역거부 문제를 피해의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은 무엇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대체복무로 대표되는 제도가 마련되는 일이 가져오는 변화에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몇몇 정책의 도입으로 진보를 측정하고 논의를 종결시키기보다 오히려 논쟁을 확장시키는 접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병역거부자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석하는 인식론이 이들이 경험을 공적인 것으로 번역함으로써 사회적인 응답을 요청하면서도, ‘피해의 자리를 출발해서 적법한 주체의 자리로 돌아오는 귀환의 서사’에 기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이해의 양식이 필요할까요? 다시 말해서 피해의 문제를 물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론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2.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평등의 약속 위에 구성된 근대 사회에서 피해의 문제는 체제의 근본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가한 위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평등의 약속을 깨뜨리는 일이자 현 체제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를 회복하는 일은 민주주의 이상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이른바 현 체제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에 얼마나 가까운지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 문제에 대한 근대 사회의 규범적 개입 방식은 비합리적인 이유로 인해 차별과 폭력을 겪는 이들을 ‘인간화’하는 일, 권력과 자원의 분배 회로에 참여시키는 일, 정치적 공동체

에서 시민권과 성원권을 부여하는 일, 법적 보호와 문화적 인정을 선사하는 일 등을 포함합니다. 피해의 서사가 타자나 비체가 아니라 주체의 언어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권 운동은 피해를 회복되어야 하는 주체성의 문제로 이해하는 방식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몸과 받아도 괜찮은 몸으로 분할해서 통치하는 과정의 일환임을 비판해왔습니다. 피해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 평등의 약속을 공정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자격, 백인,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 등이 이루는 형제애의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자격의 다른 이름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 체제는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몸을 포섭하거나 배제하고,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장애, 나이, 종교 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권력 관계에 따라 다른 자리를 할당하기 때문에, 비인간, 비국민, 비시민으로 분류된 몸이 겪는 고통이 ‘피해’로 포착되거나 설명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권력 관계에 질문하지 않은 채로 피해를 문제화하는 일이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근대의 인구 배치를 은폐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를 인권 관점에서 조명한다는 것은 피해를 생산하고 의미화하는 위계와 격차에 개입한다는 뜻이자 지배와 착취가 정당화되는 자리에 놓인 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체제의 권위를 정지시키고 부정하는 일, 인간, 국민, 시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동하는 일, 피해를 둘러싼 권력 관계, 물적 토대, 교차하는 역사를 인식하며 기존의 배치와 기획을 바꾸어내는 일인 셈입니다. 이에 때로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처리하려는 쉬운 시도 quick fix와 불화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와 피해의 구도라기보다 이분법적 구도로 환원되기 어려운, 불평등한 질서와 규범에 저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사례를 도식적으로 수집하고 대중의 열정을 반영해서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인간, 국민,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이 체제의 언어라면, 피해를 영속화함으로써 이익을 나눠가지는 권력의 회로를 봉쇄하고 인간성, 국민성, 시민성의 경계를 해체하는 작업이 인권의 언어에 가까울 것입니다.

여기서 타리 님의 글에 담긴 고민을 다시 되짚어보게 됩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를 물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때, 다시 말해서 피해를 경유해서 현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국가의 기획에 저항하는 데 실패했을 때, 혹은 피해를 등록시키는 것을 통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일정한 영토를 확보하고자 했을 때, 인권의 가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말입니다. 피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권력의 재배치와 같은 이동이 요청되며, 이는 분명 사회적 힘을 필요로 합니다. 권력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협상 과정은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국가가 상징하는 이른바 중립적이고 권위적인 질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이유는 현 체제가 ‘그들’을 배제함으로써 ‘우리’의 이해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든, 소수자를 관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더 나은 주체로 자임하든, 현 체제는 지는 싸움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회적 소수자가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일은 피해자가 지닌 역량을 강화하기보다 약화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인간, 국민, 시민이었을 몸이 전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은 외부의 조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말았다는 서사 속에서 피해 문제 해결은 일종의 구원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순수하고 무고한 피해자임을 증명함으로써 피해를 인정받는 과정은 소수자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무능력한 존재임을 주장하도록 만듭니다. 피해자가 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움직이더라도, 현 체제는 피해자를 특정한 시공간에 고정시킴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자가 겪는 불평등한 현실을 방치하거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생산한 국가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자로서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란 말입니까?’라고 외치는 이들 앞에 소환될 때, 피해자이기도 한, 피해의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자리에서 말하는, 피해-생존자인, ‘나쁜’ 피해자인 이들은 번역 불가능한 몸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한편 피해의 자리는 지배와 통치가 작동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의무와 원칙이 유예되는 곳이자 자원이 가장 빠

르게 유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성, ‘우리’ 국민, ‘우리’ 부모의 자리에서 전개하는 운동, 피해가 충분히 인정받기 전까지 이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운동은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움직일 것을 요청하는 권리의 주체를 생산합니다. 정치 공학의 선택으로 정산되는 자원들, 예컨대 ‘그들’이 일으킬 수도 있는 could-be-ness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적법한 시민이 누려야 마땅한 자유, 국가에 대한 사랑 등을 확보하려는 전략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일로 연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의 다른 말로서 양가적인 효과를 띠게 됩니다. 한편으로 우연히 살아남은 모든 여성, 난민 때문에 위기에 처한 모든 국민, 퀴어 변화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는 모든 부모를 표상하며 수많은 이들을 결집시키는 동원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보편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각각이 지닌 차이를 ‘모든’ 여성, 국민, 부모라는 범주로 되돌리지 않는/못하는 몸을 위생 처리하고 단속함으로써 마치 근대 사회의 평등의 약속이 비인간, 비국민, 비시민 범주에 의존하는 것처럼 규범적인 인구 배치를 재승인하게 됩니다.

현 체제도 피해자를 원하고 피해를 입은 이들도 국가 주권에 의존하게 될 때, 피해에 접속하는 다른 언어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요? 피해의 자리에서 이동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 이동할 수 없는 이들, 혹은 이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들과의 만남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것일까요? 좋은 몸, 나쁜 몸, 이상한 몸을 판별하고 분류하고 배치하는 국가 주권에 도전하는 일, 고통과 불평등이 오랜 기간 피해로 인식되지 않았던 역사를 고려하는 일, 피해자화려는 힘, 피해자의 위치에 고정시키려는 힘, 피해자를 무능력하고 불운하고 수치스러운 몸으로 만들려는 힘에 저항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피해를 정치적인 문제로 만드는 시도는 피해를 물화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것이라면, 피해가 구성, 식별, 인식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효과에 주목하는 일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지도 모르겠습니다.

3.

지난여름, 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는 친구가 한국에 들렀을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백인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쇠락한 산업지역의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신이 사는 곳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는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는 1년에 한 차례, 이 도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될 만큼 떠들썩한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게 바로 자금심 행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월마트와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화려하게 치장된 트럭을 따라 거리를 누비는 모습, 경찰관과 소방관이 제복을 차려입고 힘차게 행진하는 모습, 아이들과 손을 잡고 나온 가족이 밝은 미소로 손을 흔드는 모습, 이에 질세라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퀴어 연구자인 친구는 관용과 다양성, 상호존중과 배려라는 가치가 어떤 면에서 국가 이상, 교회의 권위, 도시 마케팅에 복무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상업화된 자금심 행진에 반대하는 이들, 대부분 흑인, 트랜스젠더, 청(소)년들로 구성된 이들이 별도의 시위를 꾸렸지만 그 수가 매우 적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피해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던 중에 불현 듯 씩씩함이 밀려왔습니다. 국가 폭력으로 인해 수많은 비백인들이 살해당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자들이 추방되며, 집, 학교, 광장, 클럽 등 곳곳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구 집단이 끔찍한 과거와 단절하고 인간, 국민, 시민이 된 것을 기뻐하는 축제를 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 집단이 사회적 배제, 종교적 낙인, 경제적 불안정을 겪어내고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 내몰리며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적으로 표출하는 실천으로 제안된 자금심 행진을 1세계에서 활동하는 급진적인 퀴어 활동가들이 보이콧하거나 가로막는 여러 사건은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일이 특정한 정체성 집단의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일로 전치되었을 때 나타나는 ‘비극’을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별과 폭력, 배제와 주변화, 박탈과 실격의 문제를 권력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될 때, 사회적 소수자는 체제의 정당성과 관용성을 증명하는 기호로 도구화하려는 힘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피해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피해자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온 페미니스트 역사는 ‘우리에게도 권리가, 계보가, 언어가, 용기가 있다’는 주장이 사회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이상, 자본주의 회로, 가족 질서를 재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동원될 수 있음을 경계할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축하하며 기념하는 일에서 ‘우리’와 ‘그들’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일로 이동하는 것, 피해와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구사하는 것, 국가 주권에 비동일시하는 감정의 질서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얼마만큼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피해를 둘러싼 교착된 전선을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이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란 말입니까’라는 다급한 외침에 ‘맞다’, ‘아니다’라는 단순한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피해를 물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이들과 대항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의 자리, 연대의 거리> 토론문

민선

언어화하지 못했지만 단편적으로나마 가졌던 물음들, 답답하거나 난감하거나 끔찍했던 고민들이 발제문을 읽으면서 나눠준 문제의식과 연결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제문으로 나눠준 이야기들에서 경험과 더불어 그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 깊이 들여다본 시간이 떠올려졌습니다.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많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로서만 위치 지어지는 것이 문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자신도 피해자라는 규정 짓기에 어떤 식으로든 동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어떻게 균열이 가능할까 막막함이 있습니다.

“피해자로 머물러있기를 거부하는 한종선씨가 다른 사람이 되려면,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이 되어야한다.”는 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 되기가 어떻게 가능할지 저부터도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 되기를 시도하고 추진하는 게 운동의 과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던져진 질문과 고민들에 대해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앞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주거권 활동을 하면서 주거권 침해 당사자들과 만났던 경험. 당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상황들이 있었지만, 내 상황을 주거권의 침해로, 나를 피해자로 호명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 피해자를 고통의 얼굴로 떠올리는. 그러나 피해자로서만 살아가지는 않는다. 피해자로서 이야기해야 그 이야기를 그나마 들어주는 사회에서, 고통의 얼굴이 아닌 다른 피해자가 가능할까.

- 어떤 피해로 규정될 때의 거리? 연행되어 유치장 갔을 때 브래지어 탈의, 당시 느꼈던 복잡했던 감정이 대응 과정에서 ‘성적수치심’으로 이야기될 때의 불편함. 내가 느낀 것은 성적수치심이 아닌데. 당사자면서 대응에 미온적인 것에 서운함을 들었을 때,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말하기 위해서에 앞서 내 자신을 위해.

- 권리 간 경합, 피해 간 경쟁처럼 구도화되는 상황, 그 왜곡을 어떻게 비틀 수 있을까? 난민반대맞불집회 슬로건 ‘자국민 차별과 혐오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차별과 혐오로 왜곡하는 것은 결국 자국민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 세월호와 천안함. 소수자 특혜. 화살의 방향이 바뀔 수 있을까.

일시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6시 30분

기초발제 타리(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심화발제 시우(문화연구자), 김보명(여성학연구자), 이진희(장애여성공감)

사회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속기 랑희

미류 : 오늘은 연대를 주제로 한 ‘피해자의 자리와 연대의 거리’ 토론회입니다. 내가 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권의 언어가 때로는 폭력의 언어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아슬아슬한 긴장 속에서 다시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오늘 나눠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제하실 때 소개하시면서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발제 : 피해자의 자리와 연대의 거리 - 타리(발제문 참조)>

미류: 좀 어려운 주제,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병리화나 범죄화의 우려를 뚫고 피해자가 되는 그 자리가 결국 국가가 할당한 자리일 뿐이라면 도대체 여기서 또 다른 주체화의 양식은 가능한가라는 고민을 연대라는 키워드와 같이 말씀해주셨습니다. 타리의 기초발제 영역 중 특히 피해와 권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심화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명 : 제 주제는 여성들의 시위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큰 질문은 피해자는 무엇일까, 피해자의 권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심화 발제1 : 여성시위, 피해와 권리의 정치학, 그리고 페미니스트 행위성 - 김보명>

미류: 권리를 가졌음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실제로 그 권리가 기존의 국가에서 부여한 만큼의 것일 때 지금 여성들의 피해자화 혹은 피해자로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이 상황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데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피해자를 경유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발제2 : 여피해자 되기를 넘어, 얼굴을 가진 피해자로 싸우기 - 이진희>

미류: 앞의 발제와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토론하려는 주제의 위치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여성은 피해자가 되기 위해 무력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지금 불편한 옹기 여성들은 나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왜 국가가 나를 보호하지 않아? 여기서 출발하는 이 지점, 사실 무력함을 증명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내 권리 찾기에서 출발하는 이 프레임을 넘어서고자 하는 이런 장애여성의 경험들이 피해자를 둘러싼 모순, 곤란함 등을 더 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심화발제로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시우: 심화하는 발제라기보다는 타리의 고민,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피해 서사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였습니다.

<심화 발제3 :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 시우>

미류: 타리의 기초발제로 열어준 이야기가 보명, 진희님의 이야기로 풍성해지면서 다시 시우 님이 기초발제를 다룬 질문으로 전환해서 제시해준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되는 그 자리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인권에서 자신의 시민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뒤집어보면 ‘국가도 언제나 피해를 입힐 수도 있지만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력이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도 피해자다’라는 것을 통해 ‘서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이 정체성 집단의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더 이야기를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선 강의에서 계속 나왔던 지금 필요한 정치적 관계의 구성, 이런 고민과도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쉬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미류: 지정토론문을 내주신 분부터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토론1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토론문을 어떻게든 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뭐라고 써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끄적여 봤습니다.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스스로 언어화하지는 못했지만 답답했던 고민들이 발제문에서 나눠주신 문제의식과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이번 발제문의 경우 경험과 더불어서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 깊게 들여다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떠오르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어려웠어요. 자유롭게 질문하고 싶은 것도 써주시면 된다고 안내가 있었지만 질문도 이해를 해야 할 수 있어서 고민스럽고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로서만 위치 지워지는 것이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제 자신도 그런 피해자라는 규정을 짓는데 동참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 단체 이메일로 난민 반대하시는 분들 보도자료 보내주고 계세요. 하필이면 이번

주 일요일 난민 집회에 맞불 집회를 연다는 보도자료가 오늘 들어왔어요. 슬로건이 '자국민 차별과 혐오를 넘어 난민법 폐지하라'는 것이더라고요. 발제문을 읽으며 겹쳐졌어요. 뭔가 권리간의 경합, 혹은 피해의 경쟁처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저건 인권이 아니야, 저건 인정해야 하는 피해가 아니야'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되는 게 있거든요. 같은 표현을 씀으로써 뭔가 동등한 경합처럼 왜곡되는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점점 더.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고민이 듭니다. 세월호와 천안함을 비교하면서 누군가는 특혜고 누구는 소외되는 것처럼 여론이 이어지는 것을 보는 과정이라든지, 특권이라고 하는 권력 집단을 향한 말이 소수자를 향한 말이 되었을 때 서로를 겨냥하는 방식으로 화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발제해준 분들의 제안이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전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미류: 인권활동가로서 이런 토론회를 하고 있지만 이 사회 구성원으로 부딪치게 되는 부분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정토론2 : 이해경(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저는 요즘 피해, 연대, 이런 것이 저에게 어려운 화두예요. 왜냐하면 저는 동북여성민우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다 보니 지역의 이슈에 연대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저런 연대 요청이 오는데 해야 된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그러다보니 어디까지 연대를 해야 하고, 연대가 정말 어떤 의미일까. 성차별을 반대하니 당연히 연대해야지 했는데 들어가 보니 연대하는 사람들끼리 온도를 맞추는 것도 너무 어렵기도 하고 '내가 힘을 보태는 것이 방향에 맞는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또 피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 생활에서는 제가 청소년 딸이 있는데 학교에서 성차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면 제게 엄청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힘을 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제가 당사자가 된 것처럼 네가 학교 안 다녀도 괜찮다, 이런 차별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게 더 문제가 될 것 같다, 제가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제 딸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죠. 그런데 뭔가 제게 쏟아 붓고. 그러면서 이게 연대와 피해가 도대체 뭘까, 제 안에서의 고민들이 생기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연대는 피해, 고통, 이런 것은 개인의 차원이 있고 연대로 다 치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고통이 개인의 이유가 아니라 사회와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구조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힘을 모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중간이 너무 어렵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가 제일 고민이에요. 지역에서도 연대를 할 때 예를 들면 노점상 권리 투쟁이 있어서 가면, 여성들이 운영하는 노점상들인데 가면 거기에 노조가 있어서 되게 조그만 지하철역에 몇 천 명이 모여서 엄청 무섭게 하는 걸 보고 여기 연대하는 게 맞나? 이런 방식에 동의하는 게 연대인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권리의 침해가 피해인지, 피해자로서 내가 행위성을 갖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게 되고. 또 이진희 선생님 발제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보호주의도 생각하게 되고.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였는데 먼저 활동하는 선배들에게 여쭙보고 싶어요. 연대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대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요.

미류: 오늘 토론회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던 연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연

대를 할 때 피해를 중심으로 연대를 하게 되면 피해에 대한 해석의 당사자의 지위, 권력, 사실 이런 것이 생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할 때 곤란함이 있죠.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곁이 되어주고 싶을 때 이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피해자의 자리에 대한 고민과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정토론3 : 배경내(인권교육센터들)>

무의식의 발현인지 수신거부 처리가 되었는지, 발제문을 어제 밤에 뒤늦게 받았어요. 인권교육을 많이 하니까 어디 가면 저 이야기를 꼭 교육에서 써먹어야지 하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밑줄 그으면서 읽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문장들을 만나고 고민꺼리도 만나고 그랬는데 저 역시도 어렵게 느껴졌어요. 인권교육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려면 굉장히 통역이 필요하겠구나, 통역하는데도 제 머릿속에서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이 이슈에 발제해주신 분들보다 제가 더 고민이 깊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와서 들으니 조금 더 이해가 되었어요. 글로 보는 것보다 들으니까 더 낫다고 느꼈습니다. 떠오른 몇 가지 고민이나 장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는 인권교육에서 굉장히 다양한 참여자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 여기서 문제적 현상으로 지목해주신 장면들을 인권교육에서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강력한 분노가 있고 피해와 피해를 경쟁시키는 것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 예가 시설종사자들이 장애인 인권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쨌든 자기는 발달장애인에게 공격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이미 딱 들어 와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인권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종사자들이 구조적 자리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피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해서 구성되어 있죠. 최근 페미니즘 여교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저는 페미니즘이 철학으로 생각하면 청소년,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연결해보려고 갖은 애를 쓰는데 연결이 사실은 잘 안 돼요. 페미니즘을 지금 교사로서 자기 직업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에게서 10대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이고 자기에 대해 공격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누군가에게 성폭력을 가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강력한 주입식이든 페미니즘 교육을 해야 하고 이들의 도전, 여교사에 대한 젠더 긴장이 있으니 교사가 강력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들을 만나며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교차성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문제들을 매번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우리가 하고 있다. 진짜 중요하고 그래서 인권운동이 이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가 발등에 떨어져 있는 이슈라고 말씀드려요. 발제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몇 가지 질문은 첫째, 피해가 뭘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청소년 인권 쪽 활동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 상담전화를 걸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체벌 문제를 상담한다거나 갑자기 바뀐 교칙 문제를 이야기한다거나 두발규제에 빠친다, 여전히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상담하다보면 학생들이 자기가 이것에 열을 받아서 상담전화를 한 것인데 체벌에 자기가 빠쳤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피해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구체적인 몸의 손상이 있는 것들, 혹은 언어적 폭력, 이런 식으로 폭력이라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 분류되어 있는 것에 피해를 입으면 그것을 피해라고 인식하는 반면에 규정을 개정하는 것, 완전히 배제 당했다는 이런 것을 문제적이지만 피해라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상담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구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피해라는 것을 폭력, 사회적으로 분류된 폭력의 피해로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지 않은지. 사실은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고 그런 존재라는 위치 설정 자체가 문제적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을 피해라는 말로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고민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라는 규정, 피해가 있지만 나는 피해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피해자로 자기를 위치 짓는 것이 망설여지거나 어려울 때 그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할 때 실제 존재하는 피해 속에서 내가 했

던 행위 주체성이 피해자라는 말에 잘 들어나지 않는 것. 피해자가 되었고 피해 생존자로서 자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체성이 있지만 피해를 입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부단히 이 사회와 맞서면서 했던 주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피해자라는 말은 나의 행위성을 드러낼 수가 없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시우 님 발제,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회가 인식하는 것은 징집 문제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발적으로 안 갔으니. 이러한 방식이 존재하는 것 같고 수용소의 여러 생존자를 떠올렸을 때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 여성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했다, 수용과 학살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반파시즘, 반파시즘 운동을 하다 수용소에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를 거 같아요. 그랬을 때 반파시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수용소 피해자, 생존자로만 생각할까 하는 게 떠오르는 질문이었어요. 피해자라는 말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든 피해자가 된 이후 자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말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자임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좀 언어화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를테면 자본주의의 최대 피해와 착취의 대상이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세상을 건설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노동억압을 더 잘 말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누가 피해를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저는 시우님이나 다른 분 이야기처럼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취약성, 사회가 만들어낸 취약성 때문에 이들의 불안과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잘 짚어주셨는데 동시에 그것이 내가 징집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기에 거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처럼 자원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의 위치 설정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라는 분류로 분류되기를 원치 않는 경험을 가진 10대 여성들도 떠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연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차성이나 이런 것을 잘 시민들과 나눠야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많이 고민되었어요. 발제문에서 아이디어로 떠오르는 것은 지금 예멘 난민을 단지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쟁에 이용되기를 거부한 사람으로 동시에 위치 짓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야기들이 더 많이 해야 하나. 그리고 역사적 연결성, 교차성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되었어요. 지금 염려하는 주체들이 다들 자기가 시조새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페미니즘의 시조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내가 지금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성된, 전승된 유산이기도 하다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억압의 교차성만이 아니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는 조건, 내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들릴 수 있는 연대의 교차성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자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교육을 하니까 인권교육에서 교차성의 고민을 끌어안고 교차성에 대한 고민이 일절도 없는 여러 인권교육부터 바뀌어야겠다는 다짐도 해봤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뭔지, 어떻게 돌파해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는 질문으로 피해는 무엇이고 누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되기 망설여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연대하자는 이야기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앞서 이야기해주신 분들의 고민 포함해서, 발제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들어보죠.

타리: 고민이나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겠고 약간의 변주로 떠오른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보명님 이야기처럼, 안희정 사건에서 자기결정권 해석들을 보면서 '왜 소유하고 있는데 행사를 안 했냐'라는 질문을 보며 권리 개념에 대해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대중의 인식일 수도 있고 법의 인식일 수도 있고 지배적 관념일 수도 있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실천적 과제인 것 같아요. 성명서 쓸 때나 피켓 문구 만

들 때도 긴장되는 지점인데 사실 어떤 구호로 정리할 때 “내 몸은 나의 것”, 이런 걸 만들 때 제가 이 문구로는 피켓을 못 만들 것 같은데 이 문구와 함께하는 현장에 함께 있을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발달장애인, 국가가 책임져라’는 말들에 함께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조금도 인권의 언어를 소유 개념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언어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연대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까를 매 순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피해 경쟁이나 피해자가 맞냐? 역차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이런 소유권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가 뭘까’라고 할 때 법은 손해로 산정하잖아요. 재산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얼마만큼 손해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고 자꾸 상상하게 되는데 이런 소유와 손해에 대한 관념, 그리고 그 손해를 내가 받았는데 혹은 내가 피해자로서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할 때 역차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후지이 다케시 이야기였는데 그냥 손해 입었다는 느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부당하다는 느낌과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부당하기 때문에 무엇을 바꿔야겠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손해입지 않아도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때, 부당한 것을 바꾸기 위해 누가 잠정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권리가 제한되고 내가 두려웠던 것에 대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가 두려웠던 것은 구제받을 수 없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혐오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일 수도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사실 저는 기성정치인들은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진보정당에서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죠. 증세하려고 할 때 너무 걱정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럴 때 이것이 현실 정치나 지배적 규범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는 인권운동이 대중들과 당장 못 만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당장 구제받아야 할 피해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누려온 특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서로 폐를 끼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누적되어온 차별이 많기 때문에 바뀌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의미 있는 고통일 때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그것이 연대의 의미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의 손해와 어느 정도의 발전되지 않을 수 있음. 이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이 안 될 수 있고 당장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좋아진다는 것의 의미가 정상성일 수도 있고 성장일 수도 있고 풍요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일정부분 포기해야 한다는 것. 어느 순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교육에 가서 이런 이야기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좀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안심하고 싶고 우리 운동이 성장하지 않아도 좀 그냥 버티는 상태여도 괜찮다, 이것이 망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김보명: 권리에 대한 감각도 중요하지만 정의나 평등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정의라는 감각은 굉장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것, 내 몫을 빼기지 않고 무임승차 당하지 않기, 계산을 때리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운동과 연대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몫을 빼긴다는 것이죠. 정의라는 관념은 결국 사회 정의이고 분배,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라고 하면, 타리 말대로 내 몫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 내 공간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 마음이 중요하죠. 또 내가 좀 더 위험해지고 불편한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거나 벗어나는 것이 효과도 없다, 그 취약성의 감각과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거기에서는 권리에 대한 상상을 뛰어넘어서 정의와 평등, 관계맺음이 필요한 거 같아요. 학교에서 페미니스트 여성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방법이 나에게 오는 침해를 누를 수 있는 힘인 것이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그 힘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강력 한 권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힘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미러링과 같은 방식이

기도 하고요. 조금 다른 상상력이 현실에서 필요한 거 같아요. 글에서는 되지만 현실에서는 잘 안 되죠. 그런 고민을 더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우회 분의 이야기, 연대와 관련되어서는 저는 모든 운동에 제가 가는 것이 연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교차성이라고 할 때 운동이 정말 왜 만나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서 찾아야 하는 지점이지, 내가 네 운동을 해주고 너도 내 운동을 해달라는 상부상조 이상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군형법, 성추행 조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실 여성의 반성폭력 운동을 해온 언어와 비슷하거든요.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이야기로 해왔는데 그런 만나는 지점을 열심히 찾아야지 단지 우리 모두 진보 진영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원을 공유하는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잘 지형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급박하죠.

이진희: 추상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연대가 실패의 경험을 같이 끝까지 해나가는 것, 그것이 연대의 중요한 약속이랄까,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잘 안 될 거 같고, 물론 잘 되는 게 뭔지 다시 질문할 수 있겠지만, 법이 만들어진다든가, 이기는 싸움이라든가, 이런 도식이 분명히 운동 사회 안에서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런데 되게 안 될 거 같은 게 있잖아요. 정말 하기 어려울 거 같고 실패할 거 같다는 싸움에 모여드는 게 저는 저의 연대의 원칙,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고 그 실패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채워지고 쌓인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될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 질문을 그 끝에서 만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될 거 같은 싸움 속에서 실패 경험이 많이 쌓이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 안에서 정의와 평등의 감각이 실패를 통해서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인권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게 권리나 차별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규범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실 다른 도전이나 상상력이나 다른 실패, 실수,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답을 언제나 참여자들이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하죠. 10대 발달장애인 남성을 통제를 해야 하나요? 그거 참, '통제하시면 안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권리와 차별, 피해라는 경험 자체도 점점 규범화되고 정형화될수록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뭔가 다툼이 일어나는 관계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는 거 같아요. 분명히 이 과정이 상당히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참여한 싸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너무 인권의 원칙, 지켜야 할 매뉴얼, 에티켓, 이런 말들이 그 갈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싸울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빼앗고 있는 거 같아요. 인권교육이 제도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물러설 수 없게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시설종사자 분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존댓말을 쓰고 있다, ~씨라고 부른다, 저희는 서로 선생님이라고 해요. 사실 서로 반말을 해도 평등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전히 되게 고민이 되죠. 특히 발달장애인 쪽에서는 복잡한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피해자화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프레임도 되게 제도 안에서 규범화한 부분이 있잖아요.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면 이 문제가 공론의 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문제인 거 같아요.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에 관해서 말하자면 학교 안에서 이 사람의 성적 권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되기는 어렵죠. 그런데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면 공론의 장으로 이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아주 간편하게, 쉽게 눈에 띄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모습이 아니면 문제화가 안 되고 토론이 시작되지 않으니까 자꾸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의 권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반복되고 있다는 고민을 현장에서 하게 되요.

시우: 제 고민 지점은 이런 거 같아요. 차별과 권리의 경쟁을 주장하는 사람들, 남성들, 교회들, 국가와 적극적으로 동일시하는 주체들이 주장하게 된 맥락이 있다면 그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이동 가능성이 차단된 사회일수록 이런 적대와 폭력이 권리의 담론으로, 국가에 얼마만큼 자신이 안전한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 내가 얼마만큼 자원을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로 번역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피해자화

를 거부하는 맥락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욕망이 작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 삶의 지속 가능성이 불가능한 맥락에서는 사실 이것이 끔찍한 것이죠. 광고가 되었던 상품이 되었던 안전하고 자유롭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체와 동일시하는데 피해자는 여기에서 완전 분리되어서 끔찍하고 우울하고 항상 울고, 이런 이미지로 상상된 방식, 그러니까 둘 중 하나 밖에 없고 한번 피해자가 되는 순간 나는 이 자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이미 실각된 사람들이 다른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만한 사회적 공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이죠. 피해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다거나, 혹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피해가 아니야’라고 설득 당하게 되는 것이죠. 타리의 글에서 인상적인 부분, 한중선 선생님이 이동하려면 우리도 이동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사람들은 이동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나는 이동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큰 것 같거든요. 이동이 또 다른 가능성이나 역량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불안, 탈락, 혹은 공포와 증오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이동을 전혀 원치 않는 것이죠. 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힘 같은 것이 없으니 나만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소외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동도 연습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경험이 축적되었을 때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지도 같은 게 마련될 수 있을 텐데 그 지도가 전혀 없는 사회에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피해와 권리의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갖는 경험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문화적으로 다르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이게 정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뭣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게 한편으로는 ‘내가 더 잘살고 싶다’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기적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올바름, 그게 평등한 것이고 그게 맞기 때문에 나는 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죽어가는 동안 국가는 뭐했나? 여성단체는 뭐했나?’ 이런 주장을 할 때, 피해를 서사화할 때는 정의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기 때문이죠. 사라 암베드의 표현이기도 한데 정의가 좀 더 나은 기분을 누리는 것, 뭔가 바뀌었다는 감정을 갖게 하는 것, 피곤했다가 피로가 가서 쾌활하고 자유롭게 기쁘고, 이런 가능성과 연결되는 것, 상처가 없어지고 치유된 상태가 아니면 고통과 상처는 흔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 나에게 주는 불편함들, 고통들, 지는 거 같은 억울함들, 나만 계속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손해 감정들, 이것들을 그대로 두고 취약해질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어요. 힐링 담론의 확산, ‘당신은 취약한 상태입니다’라는 진단이 있고 그 취약을 극복해야 하는 조건들, 당신이 지금 잠시는 괜찮지만 미움 받을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도 있고, 어렵고 외롭고 그렇지만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과 연결될 때 고통과 상처가 흔적으로 계속 남아 있어서 어지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감정과 함께, 그 감정을 갖고 있는 몸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 행복이나 즐겁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것, 사회적인 존중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이 오히려 정의에 더욱 가까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맥락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혹은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고민이 모이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연대에 대해 고민했던 방식은 ‘어떻게 연대하지?’ 연대의 자세, 태도에 대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토론에서는 시우님 이야기처럼 이 시대, 보수 정치가 차별과 권리를 적극적인 자기 담론을 가져가는 시대에 ‘연대를 왜 해야 하지’라는 질문이 다시 필요한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인권운동의 답은 잠재적 피해자인 당신을 위해, 혹은 모두에게 이롭기 때문에 같은 공리주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다, 혹은 이 상처를 공유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의 다른 담론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고민, 질문인 것 같아요. 위치를 이동하는 것에 따른 불안을 좀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고민이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경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피해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사건으로 미리 규정

된 것이 아니라면 구조적 불평등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문제일 텐데 그것이 공론의 장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택하는 방식이 피해자 되기였죠. 그럴 때 인권운동의 과제는 한편으로는 피해자 되기를 경유하지 않고 공론장에 들어올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피해자 되기의 순간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 할 수 있는가? 고통의 전시가 아니라 아까 난민에 대한 이야기처럼 피해자 되기의 순간, 그렇게 공론장에 들어온다는 말은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게 국가가 할당해준 자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 혹은 사회적인 것을 구성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들 속에서 다시 왜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차성이라는 것이 그냥 담론이 아니라 최근 병역거부 운동이 평화군축 운동과 연대하다가 여성의 병역거부 선언을 하면서 운동의 의미를 함께 재구성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뭔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실제 운동과 운동의 연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변화를 통해서 또 피해자의 자리나 연대의 거리가 재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이야기들 속에서 보인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 지점에서 토론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엉뚱한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노사모라고 하는 단체가 20여 년 전에 결성이 되었죠. 노무현 대통령을 만 들고 세상에 주목을 받으면서 너무 많은 논의들을 갖고 ‘대통령을 만든 모임이다’ 라는 방식으로만 소비되다 지금은 지리멸렬하게 되었는데, 시대의 화려한 승리자에서 땅바닥에 떨어진 지경까지 갔는데 이 단체가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표방한 슬로건이 자유로운 개인의 느슨한 연대였어요. 노사모 소속 사람들은 자신을 나는 정치적 인간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다른 멤버들과 느슨하게 연대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연대가 오늘의 연대와 개념이 다른 거 같아요. 저는 연대라고 하는 말에서 피해자와 연대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연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식인이라는 위치에 있는데 노동자, 노동계급과 연대하죠. 계급과 계급, 정체성과 정체성의 연대로 생각했죠. 노사모 조직의 특이한 점이 일단 가입하면 그 사람의 성별, 지역 아무 것도 안 묻고 한글로 닉네임을 정하고 게시판에서만 이야기하니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모르죠. 그러다 번개를 하면 그 사람의 성별, 나이를 알게 되는데 게시판에서 만났으니 그가 누구인지 상관없는 상태가 오프라인에서도 지속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노사모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연결되었죠. 그때 우리가 연대라는 말은 서로간의 굉장히 많이 다른 생각, 사회나 정치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다른 생각이 사회 전체에 해로움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두자, 노무현에게 해롭지만 않으면 냅두자. 저 사람이 하고 싶은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도와주자, 이것이 연대였어요. 이것이 인권에서의 연대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사모 안에서 인권침해는 별로 없었거든요. 잘 발생하지 않다보니 외부에서 어떤 침해가 받았을 때 비슷한 논리가 적용이 되었죠.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도와줘야 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피해에 내가 옆에서 보기에 화가 나서 나는 도와준다, 이런 것이었죠. 그랬던 노사모 시절은 길게 잡아도 2년 정도였죠. 그런데 대통령 당선이 되니 정치적 이익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부에서 좋은 문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많이 했지만 결국 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늘 피해자를 만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피해자를 보는 시각과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되어서였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피해자의 문제,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말하자면 주체적인 시민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담론적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 피해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대등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내 언어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에 대해 운동가들이 너무 진을 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오늘 글들이 소화가 안 되는데 그 큰 부분이 제가 세상에서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한 번도 나를 이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국가권력에서 엄청난 공격을 당했고 대중들에게도 공격을 여러 번 당했는데 그때 저의 저항은 ‘내가 피해자다’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었거든요. 정치적 상황

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 정치적 지향 때문에 나는 박해자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피해자만은 아닌 상황이지만 실제로 고립이 되고 엄청난 연대가 필요하죠. 하지만 아무도 연대를 안해주니 나 혼자 버텨야 하고 내가 나와 연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나를 무슨 언어로 규정해낼 것인가. 저는 병역 거부자와 비슷한 딜레마에 놓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 자신과 연대하기 위해 나는 나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번번히 실패를 했거든요. 어떨 때는 생존자 같고 어떨 때는 승리자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피해자, 혹은 가해자 같아요. 내 정치적 입장이 저 사람을 그토록 괴롭게 해구나.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인권의 언어가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피해자와의 연대, 시혜적인 것은 결코 아닐지라도 베푸는 것일 때 당사자들이 과연 이 언어를 충분히 소화하고 이것이 내 문제이고, 더 나아가 피해 당사자는 자기가 피해 당사자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다른 피해자와 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어떤 주체성이랄까,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국가, 자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국 어떻게 인권 담론을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갈지, 그래서 사회 속에서 재구성해내고 그게 나중에 국가권력에까지 미칠 수 있는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피해자를 넘어서는 사람들과의 연대, 단체를 넘어서는 사람들과의 연대 문제, 인권이나 기타 문제에 관심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 손잡을 수 있는 말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참가자: 저는 속으로 맞아, 맞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답답함도 있지만 현재 우리 운동의 저력을 발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페미니스트들이 난민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당혹감이 있었죠. 태극기 부대가 나와서 반대하면 그러려니 할 텐데. 그런 문제들을 여기저기서 글도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 발제하신 분들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현장에서 교육을 가보면 권리의 총돌로 이야기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무원 인권교육 가면 민원인에게 당한 이야기,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안전할 권리를 위협당하는 것, 총돌로 설명하는데 이것이 총돌이 아니라 일종의 특권이고, '다른 권리 없음 이다'라고 정리해준 것은 너무 잘 해주셔서 이제 쉽게 설명하는 것만 고민하면 굉장히 좋고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을 조금 나누자면 작년에 한국에 살고 있는 난민 분들 인터뷰 책을 썼는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당사자의 삶은 정말 다른 거 같아요. 난민 여성을 추상적으로 떠올리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만나면 그냥 살거든요. 문제의식이 없어서라기보다 그 나름의 현장에서 씩씩하게. 책 내고 어떤 교회에서 도와주겠다고 연결해달라고 했는데 난민 공동체에서 거부했어요. 우리 동정 받고 그런 거 안 하고 싶다.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겠다. 그게 꼭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하지만 불쌍하게 여기고, 피해자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존엄한 선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당사자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생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경내가 이야기한 당사자들이 피해자로 명명되기를 거부하는 것, 특성화고 학생들을 만나면 우리는 꿈을 갖고 사는데, 일종의 허황된 허위의식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피해자화 되는 것을 극히 싫어했어요. 다른 언어가 정말 필요하구나 생각을 많이 했죠. 또 하나는 제가 광주에 가서 난민 문제로 강연을 했는데, 오랫동안 인문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인데 난민에 대한 태도가 아주 좋았어요. 시리아 난민은 다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는다, 그냥 거주만 할 뿐이지 아무런 사회적 권리가 없다고 하니까 청중에서 당장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난민에 대한 혐오와 편견 때문에 걱정하고 갔는데 당장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은 가게 해줘야 한다든지 아이들 공부는 어찌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자기 이해관계와 부딪칠 때는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지만, 한편 우리가 연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문제를 알게 되면 의외로 쉽게 갈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언어가 부족하다는 것에 동감하지만 우리 스스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현장으로 가져갈 때 피해자

의 언어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피해자가 아닌 언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여전히 고민이지만 고민하면서 실천하면 잘 될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참가자: 저는 안전에 대한 발제를 했는데 연결되는 것이 많죠. 그때도 여성, 난민 등의 문제가 언급이 되었고요. 오늘 들으면서 ‘피해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이 계속 들었어요. 인권활동을 하며 피해자를 많이 만나고 진술 듣고 보고서 내고 증언대회하고 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권리가 있다,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박탈되거나 침해되거나 그런 과정을 겪어왔는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거나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어떻게 주체로 설 것인가. 이런 고민과 함께 피해라는 고민이 들었을 때, 피해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한쪽에서는 내가 불가항력의 상황에 놓인 것,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겪게 되는 일들, 그래서 종종 피해자들이 무기력한 존재, 피해로 인해 무기력한 상태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해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되는 피해는 나는 어떤 다른 개인이든 삶을 살아가는 주체이고 삶을 구성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 목표, 방식, 관계를 염두에 두거나 계획하거나 희망하거나 그러면서 내 삶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종 어떤 의도적 개입, 장벽, 방해들을 만나고 있고 혹은 그것이 가해의 조건이든 개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의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방식과 관계를 훼손하고 있거나 망가뜨리고 있는 것, 그것들에 가로막음을 당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닐까. 그러면 이럴 때 회복될 것은 무엇이고 보호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는 것이죠. 권리의 보호라고 이야기할 때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책임으로 가기도 하는데 사실 권리의 보호라는 것이 굉장히 의존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해요. 국가에게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에게 의존하고 있고 함께 구축하고 싶은데 그 의존이 계속 다른 방식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느낌, ‘국가가 사회가 집단이 하지 않았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에 의존하거나 보호의 내용이 우리 관계나 의존, 혹은 나의 삶의 구축 방식이 무엇이 되어야 하나, 이런 본질적인 질문, 여기에 안전에 대한 것도 다시 질문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정리가 되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가자: 파편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예전에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인가에서 ‘노동자가 애야’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있었어요. 흔히 사장들이 우리 애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직원을 애처럼 대한다는 취지의 글이고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글이었는데 호의적으로 유니온을 보고 있다가 그 글을 보고 상심을 하게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은 그런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건가? 시우 님 토론을 듣다 떠올랐는데,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공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표현이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의 피해는 사적이고 마땅하다는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또 하나는 현장실습하다 사망한 사건들이 있을 때 죽지 않으면 사건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피해? 죽음 정도는 되어야.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 청소년노동네트워크는 결국 교육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말하자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졸업해서 취직만 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그 이상의 고민을 하라고 하면 ‘특성화고 목적은 취업이다’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것도 떠올랐어요.

참가자: 타리님이 ‘손해 좀 보면 어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정말 신자유주의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려 하잖아요. 또 한편으로 권리를 굉장히 이기적인 것, 자기 이익 챙기기로 이해하는 것도 현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기적 주장을 인권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을 보며 연대가 없는 인권, 연대를 말하지 않는 인권의 위험성을 평소에 많이 느꼈는데 그렇다면 그 연대는 과연 누가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국가와 시민, 시민과 시민, 소수자와 비소수자와의 관계, 이럴 때 국가가 자기 역할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적극적 역할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그러면 시민은 단지 국가에 대한 요구만 하는 것인가? 시민의 역할, 책임 이런 것은 논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국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러면 자칫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위험해보기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시민 사이의 연대를 좀 더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참가자: 운동이 계속해서 언어들을 만드는 싸움을 해온 것 같거든요. 그 언어를 만드는 것이 제도화 되었을 때 더욱 더 언어들에 의해서 어떤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지 않은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폭력, 언어가 없는 데서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를 제도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예를 들면 성폭력특별법 제정 된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에서 돌아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당한 것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상담을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모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굉장히 편의적으로 공식처럼 스스로 활용하고 그것으로부터 인정 되었을 때 본인이 갖는 안전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언어들을 만드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장애인운동 같은 경우 장차법 제정운동을 하고 또 개정운동을 하는데, 지평을 넓혀가는 운동을 했는데 또 동시에 피해라고 하지 않는 것을 피해의 범주로 넣는 지금의 운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저의 고민은 성폭력 관련해서 예를 들면 남성 집단 안에서 가해자로부터 나를 구분하고 '나는 그들과 달라' 라고 스스로 선언을 하잖아요. 다른 측면은 그것의 공식적인 가해, 피해 구분이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인식되는가 하면 정확하게 권리 개념이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언어가 설명해주는 순간 그로부터 갖게 되는 만족감이 있죠. 반면 어떤 남성들은 성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태도의 문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성폭력이나 권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관계라는 맥락의 다층성을 설명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맥락성이라고 할까, 관계성이라고 할까, 사실은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그러나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상대적인 관계에서,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 여성도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한 순간도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한 인간들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언어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어요. 너무 불분명하니까 설명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결국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의 답답함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운동이 해왔던 것의 한계는 너무 분명히 보이는데 그렇다고 언어화되지 않는 어떤 것을 언어화시키기는 되게 어려운데 언어화시켜주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고, 언어화되지 않고 상대적 맥락, 관계에 따라 권력이 늘 재 작동 되고 효과가 발휘되고. 정말 민주주의적인 시민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고민으로 넘어가고. 사람들은 어떤 권리, 권리에 대한 개념도 다 다른데, 그 모호한 권리를 놓고 권리끼리 계속 충돌하는 것, 가치가 아닌데 가치의 경합으로 보이는 것, 이런 답답함이에요.

미류: 어쨌든 오늘의 고민을 나누면서 두 가지 정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피해자라는 말을 아주 깊게 고민해보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것 같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문헌을 보다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전에 권리를 보유한 주체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피해에만 주목하니까 자꾸 피해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를 더 내놓으라고, 이렇게 밖에 읽지 못하는 것을 인권운동에서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어쨌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금 불편한 용기 시위가 드러난 것인데, 오히려 이럴 때 피해자에게 또 다른 주체성이 있는가가 아니라 피해자 되기 자체의 주체성, 행위성 혹은 이것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우

리가 권리를 보유한 주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도 될 수 없잖아요. 이미 그것이 권리인 줄 모르는 채로 살아간 사람도 많고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사회라면 피해자 되기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행위일 수 있는데 이것의 가능성에 좀 더 주목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이런 피해자 되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럴 때 핵심은 우리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구성하는 방식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용기 시위에서는 타 집단에 대한 배타성을 통해 우리를 구성하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인권운동은 어떻게 다른 방식의 우리 되기, 그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정동일 수도 있고, 담론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어떤 활동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자원이든, 사회적 네트워크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우리라는 것을 그동안에 인권운동은 국가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피해자 되기를 통해 드러내는 것은 내가 침해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해, 그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원해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런 우리 되기의 가능성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발제 해주신 분들의 소감, 남는 고민, 질문을 들어볼게요.

시우: 저도 많이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부족하고 깨닫게 되는 소중한 자리였고요. 피해 문제를 비판적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피해의 불인정을 해온 역사가 축적되어온 것, 부인하거 침묵하거나, 그래서 피해를 말하고 피해를 공적 자리에서 꺼내고, 피해자로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화두였고 그것이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한정된 자원 속에서 피해를 등록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해하고 피해를 통해 소통하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인권운동은 호소하는 사람들의 상담만은 아니고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는 위치만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사회적 고통이나 부정의의 문제를 기존의 권력 관계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풀기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런 처리해버리는, 사건이든 특정 몸이든, 처리 혹은 처분하거나 처벌하는 방식으로 때우려는 이 지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혹은 거슬러 읽는 작업들로 생각할 수 있을까. 국가의 작용 혹은 규범, 불평등의 세계에서 요구하는 처리, 처분, 처벌하는 이 장소, '처'가 공간, 장소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너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맞아. 너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움직일 수 없어. 혹은 스스로 여기서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지 않겠다고 자신의 삶의 제한을 경험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발제자분들의 고민, 이동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마음을 이동하고 감동시킨다는 것, 영어에서는 표현이 그렇다고 해요.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의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피해이고 도움이 필요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정의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 하는 말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지나서 연대의 장면으로 나가는 맥락들이 계속 그림자처럼 놓치고 있는 순간들, 지점들, 언어가 없어서 황당하다는 지점들, 너무 엄청난 것인데 이것에 개입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런 감정의 경험들이 굉장히 불연속적인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인권의 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을까. 이런 피해와 연대의 고민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고민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김보명: 이렇게 긴 시간을 토론할 수 있는 활동가들, 여러분에게 힘이 있지 않을까 해요.

타리: 저도 오늘 와서 다시 한 번 활동가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좀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할 거 같아요. 정치공동체 경험을 나눠주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손해 상정이 안 되는 사람들, 어떤 공동체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익명이라서 아무도 안 들어냈을 때 진짜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노출시키는 사람이 소수자라고 생각할 때 그 목소리를 어떻게 같이 낼까. 그런데 정말로 피해가 있을 때 공론화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해주셨던 것처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피해자가 아니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장을 발견할 때도 그때부터 시작된 경험이 정말 많은 거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도 당장은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 개입하는 방식은 인권의 언어들이 굉장히 풍요로운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투쟁을 통해 역사와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연대할 때 가지고 가는 것, 그랬을 때 그 판을 조금은, 그 판이 좀 더 흔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해자 편이 10명이 왔다, 이게 아니라 성적 피해가 있을 때 피해자로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이 성적 즐거움도 가진 사람이고 성적 권리까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피해는 인식 가능한 피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진 도전적인 것. 사실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들이 그런 도전적 연대자의 행동을 원하지 않기도 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피해자 상과 안 맞아서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실 너 연대하러 왔으면 그런 이야기 하지마라고 하면 고민이 시작되죠. 나는 여기서 어떤 위치로 있어야 하는가.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얼굴 있는 사람들로 연대하고 그 얼굴이 어떤 궤적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을 때,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그 연대 경험을 통해 또 변화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나마 뭔가 새롭게 찾아오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더 좋게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아닐까 싶고요. 질문을 들으면서 답을 잘 하기는 어렵겠지만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운동을 할 때 소위 시민사회에서 연대를 어떻게 구할까. 실질적인 문제죠. 저 단체 좀 같이 하면 좋겠는데 왜 안 할까? 사실 그럴 때 솔직히 그 단체의 위치나 자원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발언력, 현재 정권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되죠. 그게 정말 계산적인 것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대화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질문을 받아주었을 때, 그것은 굉장히 도전이기도 한 것이죠. 저 위치에 있는 어떤 단체나 운동이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왔을 때 우리도 되게 도전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 연대할 때 우리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아닐까, 주장이 그대로 남을 수 있을까. 이런 서로의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정말 도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인권운동은 그런 위치에 서는 게 참 어려울 텐데, 어쨌든 그것이 정치 세력화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니까, 그럴 때 시민사회에서 인권운동이나 소수자 운동을 만날 때도 어떤 식의 도전적 느낌을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들여보고 싶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좀 더 문재인 시대를 그나마 덜 나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진희: 너무 많이 배우는 자리였어요. 열심히 고민을 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추가로 법제도라는 것이 한 편으로는 되게 다양한 현장과 또 다른 숨겨진 당사자들을 만나는 허브가 되기 때문에 항상 줄타기처럼 곡예 하듯이 운동을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현장 활동이 2018년 하반기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풍성하게 기획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여기의 고민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류: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의 자리에 정박시키는 것을 넘어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70주년 연속토론회의 마지막은 <피해자의 자리, 연대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기획단에서는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를 아래처럼 소개했다.

“인권운동은 어떻게 피해자와 피해경험을 박제하지 않고, 그 요구를 국가의 보호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로 구성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한다. 하지만 최근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 적대가 표출되는 양상은 포퓰리즘과 페미니즘 사이에서 혼란스럽고 난감한 상황을 만들고 있고 인권운동에게도 많은 고민을 안겨준다. 피해자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주권을 강화하면서 보호를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 연대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

인권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피해경험 당사자들을 만나왔다. 언제나 피해자와 어떻게 관계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됐던 것 같다. 이슈화하기 위해 피해경험을 ‘전시’하면서 피해자로서만 대상화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전해야 할지는 늘 맞닥뜨리는 문제였다. 최근 논란이 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서 ‘피해자다움’을 잣대로 삼는 재판부에 대해 문제제기도 있었다. 고정된 ‘피해자’ 상을 갖고 그에 부합하는 지 여부로 접근하는 것은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피해경험을 납작하게 만든다. 그리고 ‘피해자’로서만 접근하는 것은 피해경험을 해석하고 발화하기까지 긴 시간을 통과한 후 다시 삶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전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번 토론회는 ‘피해자의 자리’를 키워드로 연대의 방향, 운동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피해자로만 산다는 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해자로 산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원히 형제복지원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의 고통과 상처가 박물관에 걸려 있는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물건처럼 처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였던 한종선 씨의 말을 소개하며 시작한 기초발제에서 타리 님은 혜화역 몰카 규탄 시위에서 보여지듯 피해경험을 공격적 혐오표현이라는 전략으로 가시화하는 양상에 주목하며 언제나 운동이 고민해왔던 ‘피해자와의 관계 맺기’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할 때임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피해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질문하면서 피해를 또 다른 권리의 문제로 주장하며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요구는 위계의 순서만 재배치될 뿐 ‘모두’, ‘함께’ 대항해야 할 문 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어떤 정체성/집단에 대한 낙인은 그 집단에 속한 이들만이 아니라 그 집단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모두를 향한 것이라는 점, 이렇듯 모두의 수행 속에서 낙인이 강화되거나 약화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수행으로서 ‘이용당하기’를 거부하는 것-누군가의 억압에 동원되지 않기를 연대의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심화발제에서 김보명님은 <여성시위, 피해와 권리의 정치학, 그리고 페미니스트 행위성>이라는 제목으로 권리 박탈/침해로 피해자가 생기지만, 피해자여야만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짚으며 피해와 권리는 어떻게 발화되고 요구되는지 살폈다. <피해자 되기를 넘어, 얼굴을 가진 피해자로 싸우기>라는 제목으로 심화발제를 진행한 이진희님은 장애여성공감의 활동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피해 증명이 어떤 식으로 요구/강요되는지 보여주고 피해자를 '위해서'라며 공권력이 강화될 때 결국 인권이 약화된다는 문제를 짚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만들어낼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우님은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병역거부 과정을 피해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국민국가의 시민임을 자각한 경험으로 떠올리며 피해의 문제를 '물화'시키지 않는 방법론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했다.

발제자들의 발표에서 경험과 더불어 그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 깊이 들여다본 시간이 떠올려졌다. 어떻게 언어화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던 것들이 발제자들의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떠오르기도 했다. 참여자들도 저마다의 경험과 고민을 끄집어냈다. 구체적으로 손해/손실/손상의 결과가 있을 때 피해로 인정되는데 피해를 어떻게 규정할 건가.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고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드러나나 한편으론 자원이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로서의 위치가 가능한데 피해자는 누구인가, 누가 피해를 말할 수 있나. 피해자로서만 위치 지어지는 것이 문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로서 이야기해야 그나마 들어주는 사회에서 고통의 얼굴이 아닌 다른 피해자가 가능할까. 어떤 피해로 규정되는가에 따라 피해경험이 굴절되면서 타자화되기도 하는데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로 해석하고 말하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 권리 간 경합, 피해 간 경쟁처럼 구도화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잠재적) 피해자의 권리언어로 왜곡하는 상황에 인권운동은 어떻게 맞서야 할까.

이런 고민들에 명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같이 나눈 이야기들에서 인권운동이기에 더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운동이 부딪히고 막혀있는 지점에서 한 발짝 내딛기 위해 쥐어야 할 질문이 드러났다. 피해자와의 관계 맺기에서 (전형적인) 피해자의 서사를 다르게 드러내기를 고민하고, '피해자되기'가 아닌 방식으로 공론장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제안도 있었다. 고민이 또다른 고민으로, 질문이 또다른 질문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면서 다시 이 고민과 질문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나 막막함도 들기도 했다. 동시에 타리님이 발제 마지막에 이야기한 "피해자로 머물러있기를 거부하는 한중선씨가 다른 사람이 되려면,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 되기'가 어떻게 가능할지 막연하고 나부터 자신이 없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 되기'를 시도하고 추진하는 게 운동의 과제겠다 싶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경험이 재구축되고 관계가 재구성될 때 열리는 지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궤적을 넓혀가는 의존의 연대로!

이은지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의 슬로건은 “피해자의 자리와 연대의 거리”였다. 언뜻 생각해보면, 피해와 연대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피해와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소수자’로 호명되는 사람들은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고, 혹은 취약한 환경 때문에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는지, 내 피해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하지만 피해로 이야기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시작할 순 없을까? 하는 고민들을 토론회를 통해 나누게 되었다.

피해자라는 자각, 혹은 정체성은 고정되어있지 않고, 피해자의 당사성과, 강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이것이 여론을 움직이게 하고 본질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게 하기도 하는데, 또한 피해자다움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타리님은 기초발제에서 나누었다. 비판에 성역이 없다는 것이 공정성으로 이야기되고, 소수자는 혐오의 매개가 될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협소해진다.

이어지는 심화발제에서도 김보명의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경험했을 때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피해자로 이야기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힘이 약하기때문이기도 하지만, 권리를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인식하는 것은 그것을 나의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짚어주었다.

이진희님은 장애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삭제되는 경험과 언어는 피해자라는 위치에서 다양하게 말해왔던 요구들을 지우는 과정이고, 피해를 경험했을 때만 호명되는 사람들에게 대해 억울한 서사를 넘어 권리로 어떻게 이야기할 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주었다.

시우님은 병역거부와 연관지어 피해의 서사를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치를 정당하고 이해가능한 언어로 만드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정치적 책임을 호소하게 되는 과정이, 적법하고 올바른 주체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하였다. 국가는 피해가 많아지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을까, 피해해결의 수단으로 국가에 기대게 되거나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제 등의 고민을 나누었다.

이후 참여자들의 토론에서는 피해를 중심으로 연대할 때 당사자의 위치가 생기는 것, 피해자로만 규정하는 것,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피해자로서만 이야기해 이야기를 들어주는 순간들에 대한 고민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발달장애여성회원들도 여러 피해를 호소한다. 지나가는 사람이 기분나쁘게 쳐다본 일,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이야기를 한 경험 등 즐거운 일상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보다 피해

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감정이 증폭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 발표자들이 나누어주신 것처럼, 내가 겪은 일이 잘못된 것이고 차별이라는 인식을 하고 그것을 차별로, 피해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인식의 변화이고 권리의 언어를 말하기 위한 시작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공유했던 생각은, 피해자로서만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이야기를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져주고 들어주게 되었던 강력한 경험이 피해를 서술하는 것 뿐이라면,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로 고민을 확장하기보다는, 더욱 더 나는 나쁜 피해를 입은 경험을 가졌다는 말만 재생산될 것이다.

연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에 대한 고민도 토론회 참여를 통해 더 깊어지게 되었다.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이 공허하고 당위성만 있는 말로만 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언젠가 당신도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왜 장애를 다가올 불행과 피해로만 이야기할까에 대한 울컥하는 심정과 답답함이 있다. 서로의 차별경험과 분노를 나누는 것 외에 더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얽혀있는 고민들 속에서 함께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성공적인 경험이 아닐 수도 있고, 때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우선은 만나서 실패를 쌓아가며 서로에게 의존할 수 있는 동료가 되는 것이 피해를 넘어서는 연대로 귀적을 넓혀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한다. 그랬을 때 제도적 요구 외에도 우리의 권리를 더 폭넓게 나눌 수 있는 언어를 쌓아가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있는 세상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Footnotes)

- 1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외된 수치(5만3천명). 전교조 포함시 10.5%
- 2 <갑질의 개념, 금지 의무 규정(안)> △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 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호에 구체적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포괄적 금지규정도 마련)
- 3 기관별 내부 인트라넷에 갑질 퀴즈, 체크리스트, 갑질 처벌 사례 등을 게시, 자가 점검 실시(매월)
- 4 '17.8 발표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운영 중
- 5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등 위반시 형사처벌(3년이하 또는 3천만원) / 불이익 처우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규정 확대 적용)